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816-14

2020 국가인권통계 심층보고서

2021. 12.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12. 24.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삶의질학회
연구책임자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정병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훈 (스탯코리아 대표)
연구보조원	이수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연구보고서는 연구자의 견해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차

들어가며	i
제1부.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분석	1
1. 머리말	1
2. 분석 방법	3
3. 인권인식	4
4. 인권침해	21
5. 차별 경험	49
6. 인권 관련 쟁점	69
7. 인권교육 및 개선	129
제2부. 2020년 통계로 본 인권상황 국제 비교	152
1. 시민·정치적 권리 국제 비교	152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제 비교	156
3. 취약집단 인권상황 국제 비교	167
맺음말	178
참고문헌	180

표 목 차

제1부

〈표 3-1〉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차이	5
〈표 3-2〉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에 대한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6
〈표 3-3〉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에 대한 종교, 정치 성향별 비교	7
〈표 3-4〉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인지 정도	7
〈표 3-5〉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한 교육 수준, 직업별 인지 정도	8
〈표 3-6〉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한 종교, 정치 성향별 인지 정도	8
〈표 3-7〉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교육 수준별 비교	10
〈표 3-8〉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직업별 비교	11
〈표 3-9〉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종교 유무별 비교	11
〈표 3-10〉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정치 성향별 비교	12
〈표 3-12〉 본인 삶에 대한 가치의 교육 수준별 비교	13
〈표 3-13〉 본인 삶에 대한 가치의 직업별 비교	14
〈표 3-14〉 본인 삶에 대한 가치의 종교 유무별 비교	14
〈표 3-15〉 본인 삶에 대한 가치의 정치 성향별 비교	15
〈표 3-16〉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인식 차이	17
〈표 3-17〉 본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차이	19
〈표 3-18〉 본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에 대한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20
〈표 3-19〉 본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에 대한 종교, 정치 성향별 비교	20
〈표 4-1〉 전년 대비 인권 항목의 존중도 변화	21
〈표 4-2〉 인권 항목의 존중도에 대한 성별 비교 - 남성	24
〈표 4-3〉 인권 항목의 존중도에 대한 성별 비교 - 여성	25
〈표 4-4〉 인권침해 차별에 취약한 집단 변화	28
〈표 4-5〉 인권침해 차별에 취약한 집단	29
〈표 4-6〉 배경별 인권침해 차별에 취약한 집단(복수응답)	30
〈표 4-7〉 인권침해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 변화	35
〈표 4-8〉 인권침해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복수응답)	36
〈표 4-9〉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이나 상황	44
〈표 4-10〉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복수응답)	45
〈표 4-11〉 인권침해 경험 시 도움 요청 기관(복수응답)	45
〈표 4-13〉 장애인의 가족 내 폭력 피해 경험	46
〈표 4-14〉 아동 청소년의 폭력 피해 경험	47
〈표 4-15〉 노인의 학대 경험 변화	48

〈표 5-1〉 배경별 차별 유형(복수응답)	55
〈표 5-2〉 차별 이유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복수응답)	57
〈표 5-3〉 차별을 가한 사람이나 상황-세부(1순위)	58
〈표 5-4〉 차별 이유에 따른 가해자(1순위)	59
〈표 5-5〉 차별에 대한 대응(복수응답)	61
〈표 5-6〉 차별 경험 시 도움 요청 기관(복수응답)	61
〈표 5-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경험 비율(복수응답)	63
〈표 5-8-1〉 아동·청소년의 차별 경험 비율	65
〈표 5-8-2〉 성인의 차별 경험 비율	65
〈표 5-9〉 노인의 차별 경험 변화	66
〈표 5-10〉 결혼이주민의 사회적 차별 경험 변화	67
〈표 5-11〉 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변화	68
〈표 6-1〉 사형제에 대한 배경 변수별 의견 비교	71
〈표 7-1〉 인권 규범 인지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130
〈표 7-2〉 인권 규범 인지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131
〈표 7-3〉 인권 규범 인지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132
〈표 7-4〉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처 방법의 인지 정도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133
〈표 7-5〉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처 방법의 인지 정도	134
〈표 7-6〉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처 방법의 인지 정도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135
〈표 7-7〉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처 방법의 인지 정도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135
〈표 7-8〉 인권교육 경험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137
〈표 7-9〉 인권교육 경험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138
〈표 7-10〉 인권교육 경험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138
〈표 7-11〉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비교	140
〈표 7-12〉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141
〈표 7-13〉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142
〈표 7-14〉 인권교육 여부별 인권교육 필요성	142
〈표 7-15〉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에 대한 성별 비교	146
〈표 7-16〉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수 비교	148
〈표 7-17〉 성별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방안 비교	149
〈표 7-18〉 성별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비교	150

제2부

〈표 1〉 HRMI 안전권 지수 항목별 점수, 2020	153
〈표 2〉 HRMI 역능권 지수 항목별 점수, 2020	155

그림 목 차

제1부

[그림 3-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4
[그림 3-2]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비교	5
[그림 3-3]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에 대한 직업별 비교	6
[그림 3-4]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9
[그림 3-5]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성별 비교	9
[그림 3-6]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	10
[그림 3-7] 본인의 삶에 대한 가치의 성별 비교	12
[그림 3-8] 본인 삶에 대한 가치의 연령대별 비교	13
[그림 3-9]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16
[그림 3-10]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변화	16
[그림 3-11]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17
[그림 3-12] 본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	18
[그림 3-13] 본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비교	19
[그림 4-1] 시민·정치적 권리 항목별 존중도의 변화	22
[그림 4-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항목별 존중도의 변화	23
[그림 4-3] 시민·정치적 권리 존중도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	26
[그림 4-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존중도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	27
[그림 4-5] 배경별 인권침해·차별에 취약한 집단	31
[그림 4-6] 전체 여성 응답자와 여성 취약성 인지 집단 비교	32
[그림 4-7] 배경별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 평가	37
[그림 4-8] 시민·정치적 권리의 침해 비율 변화	38
[그림 4-9] 시민·정치적 권리별 침해 비율 변화	39
[그림 4-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 비율 변화	40
[그림 4-11]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 비율 변화 (복수응답)	41
[그림 4-12] 권리 유형별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의 유형(복수응답)	42
[그림 4-13] 권리별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이나 상황	43
[그림 5-1] 차별 경험 비율 변화	49
[그림 5-2] 차별 경험 수 변화	50
[그림 5-3] 차별 이유에 따른 차별 경험 비율 변화	52
[그림 5-4] 차별 경험의 유형	53
[그림 5-5] 차별 이유에 따른 차별의 유형	54
[그림 5-6] 차별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복수응답) 변화	56
[그림 5-7] 차별을 가한 사람이나 상황(1순위)	58

[그림 5-8] 차별 이유에 따른 가해자(복수응답)	60
[그림 5-9] 장애인의 장애인차별 인식 변화	62
[그림 5-10] 아동·청소년 인권의 존중도 평가 변화	64
[그림 5-11]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 경험 변화	67
[그림 6-1]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의 변화	70
[그림 6-2] 사형제 유지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72
[그림 6-3] 사형제 유지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72
[그림 6-4] 사형제 유지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73
[그림 6-5] 사형제 폐지와 대체형벌 도입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73
[그림 6-6] 사형제 폐지와 대체 형벌 도입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74
[그림 6-7] 사형제 폐지와 대체 형벌 도입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75
[그림 6-8]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75
[그림 6-9]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76
[그림 6-10]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76
[그림 6-11] 국가정보기관의 개인 간 대화 및 통신 조사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77
[그림 6-12] 국가정보기관의 개인 간 대화 및 통신 조사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78
[그림 6-13] 국가정보기관의 개인 간 대화 및 통신 조사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78
[그림 6-14] 국가보안법 유지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79
[그림 6-15] 국가보안법 유지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80
[그림 6-16] 국가보안법 유지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80
[그림 6-17] 국가보안법 대체 법률 적용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81
[그림 6-18] 국가보안법 대체 법률 적용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82
[그림 6-19] 국가보안법 대체 법률 적용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82
[그림 6-20]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83
[그림 6-21]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84
[그림 6-22]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84
[그림 6-23] 학생 체벌 허용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85
[그림 6-24] 학생 체벌 허용 비율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86
[그림 6-25] 학생 체벌 허용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86
[그림 6-26] 난민 허용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87
[그림 6-27] 난민 허용 비율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88
[그림 6-28] 난민 허용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88
[그림 6-29]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89
[그림 6-30]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90
[그림 6-31]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90
[그림 6-32] 아동·청소년의 부모, 교사 의견 추종 찬성 비율의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91
[그림 6-33] 아동·청소년의 부모, 교사 의견 추종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92

[그림 6-34] 아동 청소년의 부모, 교사 의견 추종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92
[그림 6-35] 아동 청소년의 부모, 교사 의견 추종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93
[그림 6-36] 아동 청소년의 사회참여 찬성 비율의 아동 청소년과 성인 비교	93
[그림 6-37] 아동 청소년의 사회참여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94
[그림 6-38] 아동 청소년의 사회참여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94
[그림 6-39] 아동 청소년의 사회참여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95
[그림 6-40] 각급 학교 정규수업 인권내용 강화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95
[그림 6-41] 각급 학교 정규수업 인권내용 강화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96
[그림 6-42] 각급 학교 정규수업 인권내용 강화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96
[그림 6-43] 이웃, 친구로서 장애인과의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차이	97
[그림 6-44] 선출 지도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비교	99
[그림 6-45] 장애인 친구나 이웃, 친척 존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의 비교	100
[그림 6-46] 이웃, 친구로서 결혼이주민과의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차이	101
[그림 6-47] 선출 지도자로서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비교	102
[그림 6-48] 결혼이주민 친구나 이웃, 친척 존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의 비교	103
[그림 6-49] 이웃, 친구로서 이주노동자와의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차이	104
[그림 6-50] 선출 지도자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비교	106
[그림 6-51] 이주노동자 친구나 이웃, 친척 존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의 비교	107
[그림 6-52] 이웃, 친구로서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차이	108
[그림 6-53] 선출 지도자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비교	109
[그림 6-54] 북한 이탈주민 친구나 이웃, 친척 존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의 비교	110
[그림 6-55] 이웃, 친구로서 성소수자와의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차이	111
[그림 6-56] 선출 지도자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비교	113
[그림 6-57] 성소수자 친구나 이웃, 친척 존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의 비교	114
[그림 6-58] 이웃, 친구로서 난민과의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차이	115
[그림 6-59] 난민 친구나 이웃, 친척 존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의 비교	116
[그림 6-60] 선출 지도자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비교	117
[그림 6-61] 선출 지도자로서 청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비교	118
[그림 6-62] 선출 지도자로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비교	120
[그림 6-63] 혐오표현 경험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121
[그림 6-64]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의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122
[그림 6-65] 혐오표현 대상의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123
[그림 6-66] 혐오표현 접한 경로와 대상의 교차분석 결과 빈도	124
[그림 6-67]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의 배경변수별 비교	125
[그림 6-68] 혐오표현 규제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127
[그림 6-69] 혐오표현 규제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127
[그림 6-70] 혐오표현 규제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128

[그림 7-1] 인권 규범 인지의 성별 비교	129
[그림 7-2] 인권 규범 인지의 연령대별 비교	130
[그림 7-3] 인권 규범 인지의 직업별 비교	131
[그림 7-4]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처 인지여부의 성별 비교	132
[그림 7-5]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처 인지의 연령대별 비교	133
[그림 7-6]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처 방법의 인지 정도의 직업별 비교	134
[그림 7-7]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성별 비교	136
[그림 7-8]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	136
[그림 7-9]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교육 수준별 비교	137
[그림 7-10]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직업별 비교	138
[그림 7-11]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성별 비교	139
[그림 7-12]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	139
[그림 7-13]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교육 수준별 비교	140
[그림 7-14]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직업별 비교	141
[그림 7-15] 인권교육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성별 비교	143
[그림 7-16] 인권교육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	143
[그림 7-17] 인권교육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교육 수준별 비교	144
[그림 7-18] 인권교육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직업별 비교	145
[그림 7-20]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	146
[그림 7-21]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에 대한 교육 수준별 비교	147
[그림 7-22]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에 대한 직업별 비교	147
[그림 7-23]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복수응답)	148
[그림 7-24] 성별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법 인식 비교	149

제2부

[그림 1] HRMI 안전권 지수, 2020	152
[그림 2] HRMI 역능권 지수, 2020	154
[그림 3] OECD 회원국의 사망률, 2017	156
[그림 4] OECD 회원국의 회피가능사망률, 2017	157
[그림 5] OECD 회원국의 사망외인사망률, 2017	158
[그림 6] OECD 회원국의 공공의료지출 비율, 2019	159
[그림 7] OECD 회원국의 교육단계별 이수율, 2019	160
[그림 8] OECD 회원국의 공교육지출 비율, 2020	161
[그림 9] OECD 회원국의 취업자 근로시간, 2020	162
[그림 10] OECD 회원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 2018	163

[그림 11] OECD 회원국의 상대적 빈곤율, 2018	164
[그림 12] OECD 회원국의 소득재분배효과 지수, 2018	165
[그림 13] OECD 회원국의 공공사회지출 비율, 2019	166
[그림 14] OECD 회원국의 여성 고용률, 2020	167
[그림 15] OECD 회원국의 성별 임금격차, 2018	168
[그림 16] OECD 회원국의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2018	169
[그림 17] OECD 회원국의 관리직 여성 비율, 2019	170
[그림 18] OECD 회원국의 대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2020	171
[그림 19] OECD 회원국의 영아 사망률, 2018	172
[그림 20] OECD 회원국의 유아 취원율, 2017	173
[그림 21] OECD 회원국의 아동 상대적 빈곤율, 2018	174
[그림 22] OECD 회원국의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 2017	175
[그림 23] OECD 회원국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 2018	176
[그림 24] OECD 회원국의 노인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 2017	177

들어가며

- ‘통계에 기반한 정책’ 입안 및 평가는 국가정책에 필수적 사항이나, 현재 인권통계가 종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과 시계열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기 어려움
- 이에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인권 상황을 요약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인권통계의 체계적 작성의 필요에 따라 국가인권통계의 개발을 추진함
- 국가인권통계 개발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대한민국 거주자들의 ‘인권 의식’, ‘인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인식 및 피해 경험’, ‘인권 관련 쟁점’ 등을 조사하여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국가인권통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또 다른 방향은 기존 국가통계로부터 자료수집 및 지표작성을 통하여 국가인권통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임
- 이를 위해 2018년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 및 통계 구축>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 확정, 인권통계 발굴, 국가인권실태조사 조사표(안)을 마련, 2019년에는 국가인권실태조사의 국가통계 승인(2019년 8월 4일)과 조사를 실시함
- 본 보고서는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자료를 심층 통계 분석한 결과임.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가 8~9월 통계청 대행으로 이루어지고, 최종 검수자료가 12월 초에 가용했기 때문에 시간상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기초적 분석만 이루어졌으며, 이후 2021년 상반기에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심층분석 보고서를 2021년에 발간하게 되었음
- 심층분석 보고서에서는 국가인권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배경변수를 포함한 다양한 다변량 분석을 통해 인권 의식, 경험, 의견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함께, 이전 조사 결과와의 시계열적 비교, 유사 문항을 이용한 해외 조사결과와의 비교 등을 포함하고 있음

제 1부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분석

1 머리말

- 한국 사회는 20세기에 걸쳐 식민지와 권위주의 정부를 겪으면서 권력에 의한 인권의 침해 경험이 많았으며 독립과 민주화 이후 인권침해의 과거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 광범하게 이루어져 왔음. 민주화 이후 한국은 국제인권 규범의 영향과 함께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1966년 채택 및 1976년 발표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에 1990년 가입했음
- 주요 주제 및 집단별 협약으로 한국은 「인종차별철폐 협약(1978)」, 「여성차별철폐협약(1984)」 가입에 이어 「아동권리협약(1991)」과 「고문방지협약(1995)」, 「장애인권리협약(2008)」에 가입했음. 제도적으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됨으로써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의 주체가 만들어짐
- 정책 노력의 결과 객관적 사실을 종합한 인권지수(Fariss, 2019)에서 한국은 1990년 183개국 중 122위로 열악했던 인권 상황이 2000년 193개국 중 91위로, 2010년에는 194개국 중 57위로 개선. 반면 이후 악화되기 시작해 2017년 195개국 중 67위로 후퇴. 최근 정부의 인권 상황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각종 차별과 성폭력, 고용 및 계약 관계에서의 갑질, 청년층 중심 불공정 비판 등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한국의 압축적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측면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인권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임. 2000년 정치 집권 세력 주기적 변화, 소수자 중심 사회운동 발전, 고용관계 재편에 따른 노사문제 개인화 등의 변화의 영향이 인권 상황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인권 상황에 대한 자료는 다양하지만, 객관적 자료의 한계와 정보의 신뢰성 등의 이유로 단일 자료를 이용한 인권 상황 평가에 많은 제약이 있음. 인권실태와 인권 의식에 대한 조

사는 일반 종합사회조사의 일부로 실시된 경우(KGSS 2011, 2018)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의식에 대해 실시한 조사(2005, 2011, 2016)가 있음. 자료 제약의 개선과 보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시도로서 국가인권실태조사가 2019년 통계청 승인통계로서 통계청 대행으로 실시됨

- 본 보고서는 2020년 2차 국가인권실태조사 자료의 다각적 통계적 분석을 통해 그 심층적 함의를 밝히고자 함

2 분석 방법

- 본 심층분석 보고서는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자료 및 국가인권통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 평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의견 및 평가와 경험,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한 현황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음
- 배경 변수별 문항 분석을 위해 교차표 분석 및 집단별 평균 비교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배경변수로는 성별, 연령의 인구학적 변수와 교육 수준, 직업군의 사회경제적 변수, 그리고 종교의 유무와 이념 성향에 대한 의식적 변수가 포함됨
- 국가인권실태조사는 표본 설계상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집단의 사례 수가 적거나 아동·청소년은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취약집단의 인권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충분한 사례 수의 취약집단 실태조사와 국가인권실태조사를 비교하여 취약집단과 일반 국민의 인권상황을 비교하고자 함

3 인권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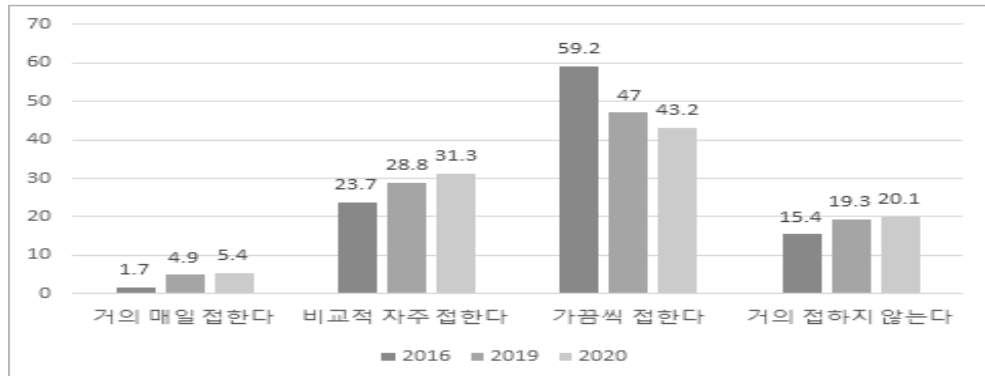
3.1. 인권에 관한 관심

3.1.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사람의 비중 변화

- “귀하는 평소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 접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2019년과 2020년 사이 거의 매일(4.9%→5.4%), 비교적 자주(28.8%→31.3%), 거의 접하지 않는다(19.3%→20.1%)는 비율이 증가했지만 가끔 접했다(47%→43.2%)는 비율은 감소함
- 평소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거의 매일 접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6년 1.7%에서 2019년 4.9%에서 2020년 5.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거의 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2016년 15.4% → 2019년 19.3% → 2020년 20.1%로 증가하고 있어 연도별 일관된 변화추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그림 3-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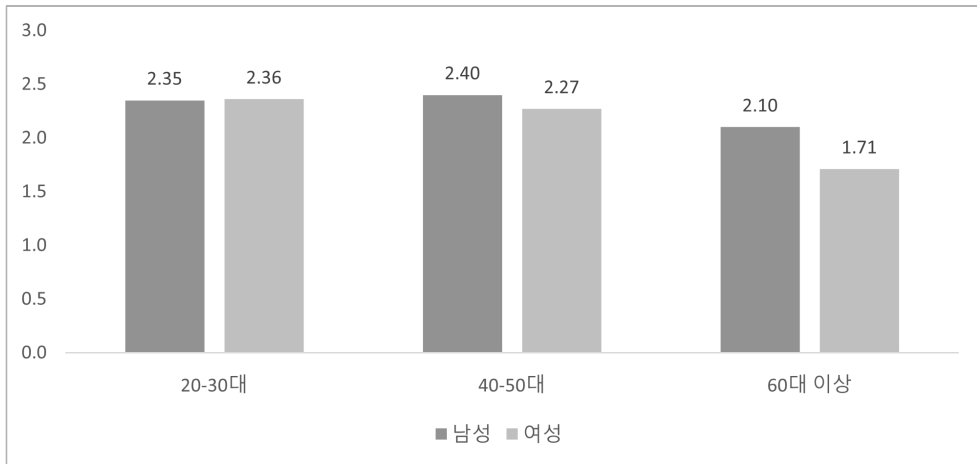


3.1.2. 배경 변수별 차이

- 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해볼 때 모든 연령대별로 남성과 여성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20~30대 여성들은 그 외 연령대의 여성들에 비해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에 자주 접하는 반면, 40~50대 여성과 50~60대 여성들은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에 자주 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비교

(단위: 점)



-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에 있어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20~30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40~50대와 60대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20~30대의 젊은 세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인권에 관심이 많거나 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3-1>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차이

구분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값
20~30대	남성	2.35	-.01***	0.017	-23.517
	여성	2.36			
40~50대	남성	2.40	0.13***	0.015	328.922
	여성	2.27			
60대 이상	남성	2.10	-0.39***	0.018	829.059
	여성	1.71			

*p<0.05 **p<0.01 ***p<0.001

주) '1점=거의 접하지 않는다', '4점=거의 매일 접한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단어를 접하는 정도가 높다고 해석해야 함

- 교육 수준과 직업을 고려했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와 대학교 재학 이상인 경우 모두에서 관리·전문직 직군이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었고,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생산직이 다른 직군에 비교해 가장 적게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에 대한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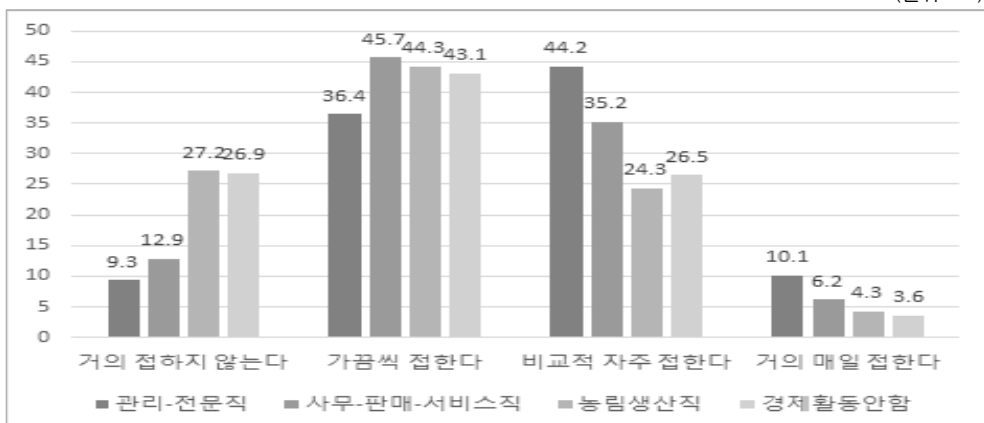
구분	관리·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직	농림생산직	경제활동안함
고졸 이하	2.30	2.19	1.92	1.81
대재 이상	2.60	2.45	2.38	2.37

주) '1점=거의 접하지 않는다', '4점=거의 매일 접한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단어를 접하는 정도가 높다고 해석해야 함

-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를 직업별로 보면, 관리·전문직의 경우 거의 매일 접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10.1%, 비교적 자주 접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44.2%였음. 농림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 중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에 비교적 자주 접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4.3%, 거의 매일 접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3%에 불과했음. 관리·전문직 종사자 중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에 거의 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9.3%에 불과한 반면에 농림생산직 종사자 중 거의 접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7.2%에 달해서 직업별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3]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에 대한 직업별 비교

(단위: %)



- 종교와 정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와 종교가 있는 경우 모두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었고, 정치에 무관심 할 때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장 적게 접하고 있었음. 정치 성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장 적게 접한다고 응답함

<표 3-3>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에 대한 종교, 정치 성향별 비교

(단위: 점)

구분	보수	중도	진보	무관심
종교 없음	2.17	2.33	2.44	1.93
종교 있음	2.19	2.30	2.48	1.86

주) '1점=거의 접하지 않는다', '4점=거의 매일 접한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단어를 접하는 정도가 높다고 해석해야 함

3.2.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한 인지 정도

3.2.1.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한 인지 정도

- 헌법에 인권 보호가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세대별로 볼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집단은 40~50대 남성인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집단 다시 말해서 헌법에 인권 보호가 명시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집단은 60대 이상 여성 집단인 것으로 나타남

<표 3-4>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인지 정도

(단위: 점)

구분	남성	여성
20~30대	3.06	3.03
40~50대	3.09	2.93
60대 이상	2.68	2.16

주) '1점=전혀 모르고 있다', '4점=매우 잘 알고 있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잘 알고 있다고 해석해야 함

- 교육 수준과 직업을 고려했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과 대학교 재학 이상의 집단 모두에서 관리·전문직이 헌법에 인권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안다고 응답함

였음.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농림생산직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헌법에서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을 더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교 재학 이상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농림생산직이 인권 보호 명시에 대해 더 모른다고 답변하였음

<표 3-5>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한 교육 수준, 직업별 인지 정도

(단위: 점)

구분	관리·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직	농림생산직	경제활동안함
고졸 이하	2.97	2.79	2.51	2.33
대재 이상	3.32	3.15	3.08	3.13

주) '1점=전혀 모르고 있다', '4점=매우 잘 알고 있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잘 알고 있다고 해석해야 함

- 헌법에 인권 보호가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가에 대해 종교와 정치 성향을 고려했을 때는 종교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진보적이라고 선택한 응답자들이 헌법에 명시 여부를 가장 잘 알고 있었으며,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선택한 응답자들이 헌법의 인권 보호 명시를 가장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치 성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에서는 보수적인 응답자들이 헌법의 인권 보호 명시에 대해 가장 모른다고 답변하였음

<표 3-6>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한 종교, 정치 성향별 인지 정도

(단위: 점)

구분	보수	중도	진보	무관심
종교 없음	2.79	3.01	3.13	2.53
종교 있음	2.80	2.99	3.11	2.43

주) '1점=전혀 모르고 있다', '4점=매우 잘 알고 있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잘 알고 있다고 해석해야 함

3.3.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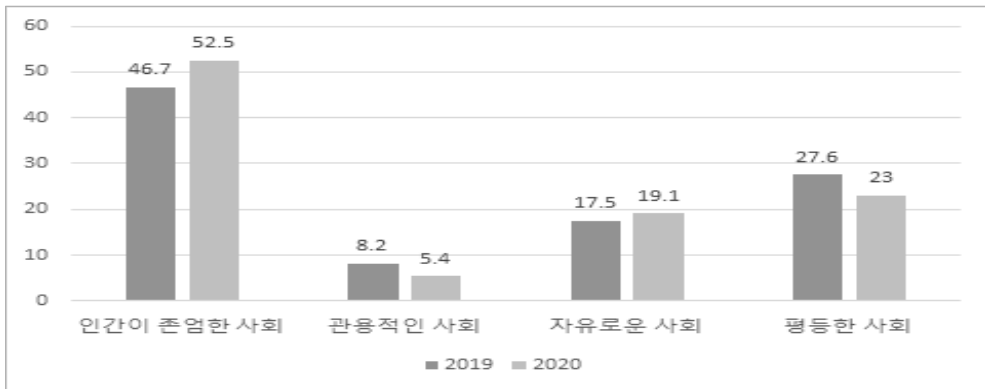
3.3.1.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인식의 비중 변화

-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가치로 응답된 1순위는 '인간이 존엄한 사회'로 2019년과 2020년 사이 감소함(46.7%→52.5%). '평등한 사회'(27.6%→23.0%)와 '관용적인 사회'(8.2%→5.4%) 또한 2019년과 2020년 사이 감소한 반면 '자유로운 사회'는 2019년과 2020년 사이 증가함(17.5%→19.1%)

- 코로나19의 영향 중 시행된 조사인 만큼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하지 않았을까 추정함

[그림 3-4]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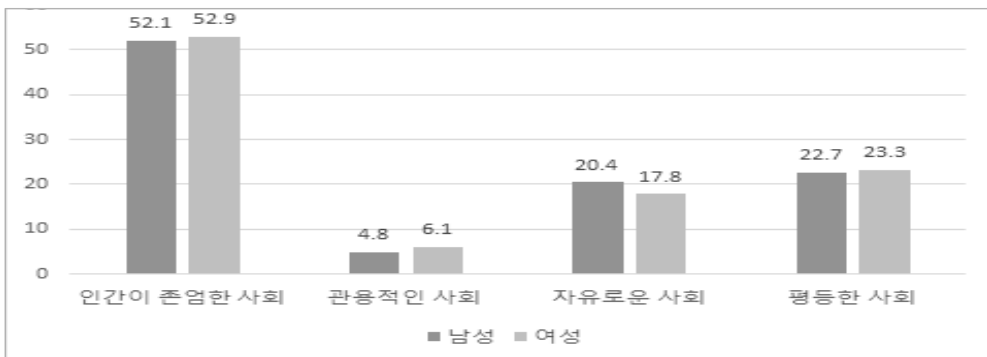


3.3.2. 배경 변수별 차이

-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응답 결과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차이는 크게 발견되지 않음. 여성이 52.9%로 남성(52.1%)에 비해 '인간이 존엄한 사회'를 1순위로 선택한 경향이 약간 높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자유로운 사회에 대해서는 남성(20.4%)이 여성(17.8%)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평등한 사회가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한 비중이(23.3%) 남성에 비해(22.7%)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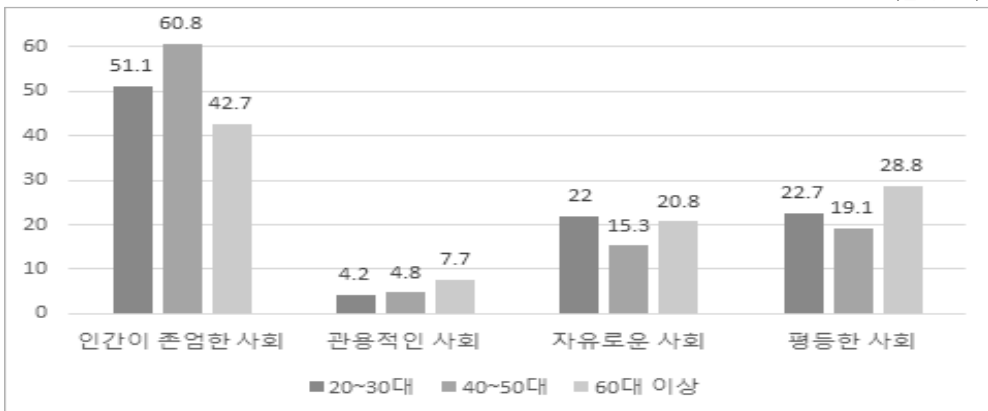
[그림 3-5]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성별 비교

(단위: %)



- 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인간이 존엄한 사회’를 1순위로 선택함. 다음으로는 ‘평등한 사회’였음. 반면 ‘관용적인 사회’는 모든 연령대에서 1순위로 꼽는 경향이 가장 낮았음
 - 40~50대 집단에서는 인간이 존엄한 사회를 1순위로 지목한 비율이 60.8%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높았음
 - 반면 관용적인 사회가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60대 이상의 집단 중 7.7%가, 20~30대 연령집단은 4.2%만 관용적인 사회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함

[그림 3-6]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 (단위: %)



- 교육 수준별로 보면 ‘인간이 존엄한 사회’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에서는 44.9%인 반면 대학교 재학 이상의 집단에서는 60.0%로 나타나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인간이 존엄한 사회’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대학교 재학 이상의 집단에 비해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은 자유로운 사회(20.5%)나 평등한 사회(28.0%)가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높음

<표 3-7>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교육 수준별 비교 (단위: %)

구분	인간이 존엄한 사회	관용적인 사회	자유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
고졸 이하	44.9	6.5	20.5	28.0
대재 이상	60.0	4.3	17.6	18.1

- 우리나라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직업별로 살펴보면 모든 직업군에서 ‘인간이 존엄한 사회’가 가장 많이 1순위로 선택받았는데, 그중에서도 관리·전문직 집단에서 6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농림생산직에서 46.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반면, ‘관용적인 사회’, ‘자유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에 대해서는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농림생산직에서 가장 높은 선호가 나타남

<표 3-8>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직업별 비교

(단위: %)

구분	인간이 존엄한 사회	관용적인 사회	자유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
관리·전문직	64.9	2.9	15.8	16.4
사무·판매·서비스직	55.6	4.8	17.6	22.0
농림생산직	46.3	5.9	20.6	27.1
경제활동안함	48.3	6.7	20.9	24.2

- 종교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인간이 존엄한 사회’를 중요한 가치 1순위로 선택한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54.2%)가 종교가 없는 경우(51.2%)보다 더 높은 선택 비율을 보임. 나머지 가치에 대해서는 종교가 없는 경우가 모두 높게 나왔지만, 종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음

<표 3-9>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종교 유무별 비교

(단위: %)

구분	인간이 존엄한 사회	관용적인 사회	자유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
종교 없음	51.2	5.5	19.6	23.7
종교 있음	54.2	5.3	18.4	22.1

- 우리나라의 중요한 가치 1순위에 대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응답을 살펴보면, ‘인간이 존엄한 사회’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62.1%로 가장 높은 선택 비율을 보였고, ‘관용적인 사회’와 ‘평등한 사회’에 대해서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6.6%와 28.4%로, ‘자유로운 사회’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23.1%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0>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정치 성향별 비교

(단위: %)

구분	인간이 존엄한 사회	관용적인 사회	자유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
보수	51.5	5.5	23.1	20.0
중도	57.3	5.2	18.1	19.3
진보	62.1	3.7	11.9	22.3
무관심	42.6	6.6	22.4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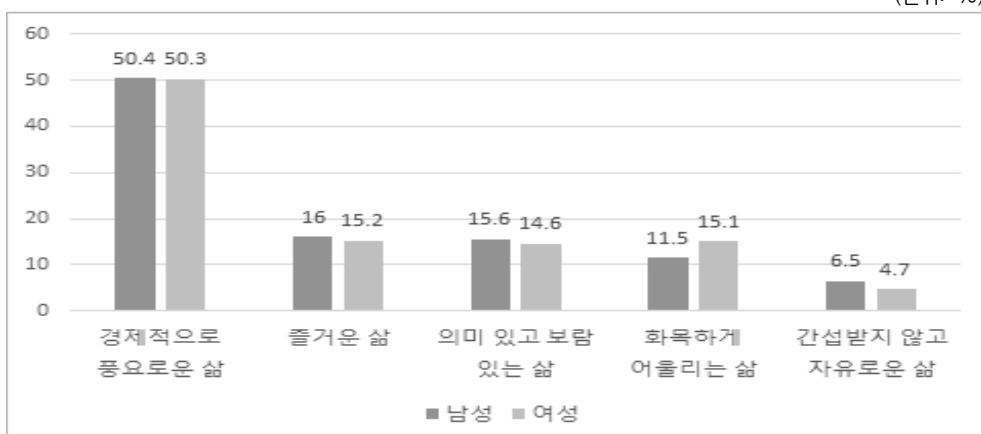
3.4. 본인의 삶에 대한 가치

3.4.1. 본인의 삶에 대한 가치

- 본인의 삶에서 어떠한 가치가 중요한지의 응답 결과 1순위를 바탕으로 배경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성별을 기준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1순위로 응답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여성은 '화목하게 어울리는 삶(15.1%)'을 선택한 비중이 남성(11.5%)에 비해서 높은 반면, 남성은(16.0%) 여성(15.2%)에 비해 즐거운 삶을 선택한 비중이 높았음

[그림 3-7] 본인의 삶에 대한 가치의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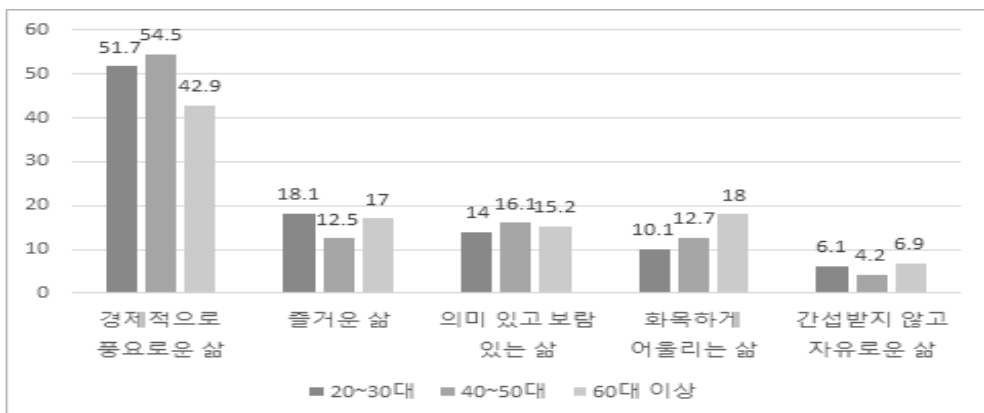
(단위: %)



- 모든 연령대를 기준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1순위로 응답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만 60대 이상의 사람들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에 대한 선호도가 4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화목하게 어울리는 삶이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편임(18.0%)
- 즐거운 삶(12.5%)과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4.2%)이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40~50대 사람들이 떨어지는 편임. 이 세대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54.5%)인 것으로 나타났음.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켜야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큰 생애주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림 3-8] 본인 삶에 대한 가치의 연령대별 비교

(단위: %)



-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대학교 재학 이상(18.6%)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11.6%) 보다 높았고, '화목하게 어울리는 삶'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15.3%)가 대학교 재학 이상(11.3%) 보다 높음

<표 3-12> 본인 삶에 대한 가치의 교육 수준별 비교

(단위: %)

구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즐거운 삶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	화목하게 어울리는 삶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
고졸 이하	52.4	15.1	11.6	15.3	5.6
대재 이상	48.4	16.1	18.6	11.3	5.6

- 직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직업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선택 비율이 가장 높지만, 관리·전문직(20.8%)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에서, 사무·판매·서비스직(15.0%)과 농림생산직(14.3%),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16.8%)는 ‘즐거운 삶’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택 비율을 보임

<표 3-13> 본인 삶에 대한 가치의 직업별 비교

(단위: %)

구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즐거운 삶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	화목하게 어울리는 삶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
관리·전문직	48.6	15.7	20.8	11.0	3.9
사무·판매·서비스직	53.7	15.0	14.6	12.0	4.6
농림생산직	52.7	14.3	12.8	13.8	6.4
경제활동안함	46.7	16.8	14.7	15.1	6.7

- 본인의 삶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종교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종교 없음(53.0%)이 종교 있음(47.0%)보다 높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에 대해서는 종교 있음(18.5%)이 종교 없음(12.5%)보다 높게 나타남

<표 3-14> 본인 삶에 대한 가치의 종교 유무별 비교

(단위: %)

구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즐거운 삶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	화목하게 어울리는 삶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
종교 없음	53.0	16.2	12.5	12.3	6.0
종교 있음	47.0	14.9	18.5	14.5	5.1

-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즐거운 삶’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중도가 17.2%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보다 높았고, 진보는 18.1%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에서 가장 높은 선택 비율을 보임. 무관심의 경우 13.8%가 ‘화목하게 어울리는 삶’을 선택하여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보다 높게 나타남

<표 3-15> 본인 삶에 대한 가치의 정치 성향별 비교

(단위: %)

구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즐거운 삶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	화목하게 어울리는 삶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
보수	50.6	13.1	16.6	13.1	6.6
중도	48.6	17.2	16.3	12.9	5.0
진보	50.5	13.6	18.1	13.2	4.5
무관심	51.9	16.2	11.6	13.8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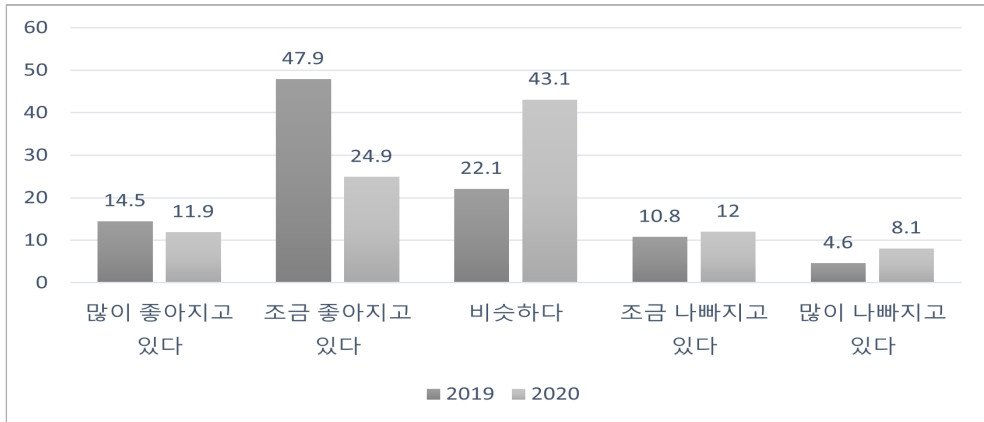
3.5.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3.5.1.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어떠하다고 인식하는지 확인한 결과, 인권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36.8%(조금 좋아짐 24.9%, 많이 좋아짐 11.9%)로 나빠지고 있다는 평가 20.1%(조금 나빠짐 12%, 많이 나빠짐 8.1%)에 비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2020년의 결과는 2019년의 긍정적 평가 62.4%(조금 좋아짐 47.9%, 많이 좋아짐 14.5%)와 부정적 평가 15.4%(조금 나빠짐 10.8%, 많이 나빠짐 4.6%) 보다 긍정적 답변은 줄어들고, 부정적 답변은 늘어난 수치임. 특히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2005년 조사 이후 가장 낮았던 2011년의 42.5%(조금 좋아짐 38.5%, 많이 좋아짐 4.0%)보다도 5.7%p 낮음. 이는 2020년 조사가 코로나 기간 중에 시행된 조사인 만큼 강력한 방역 조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기 어렵게 했을 것으로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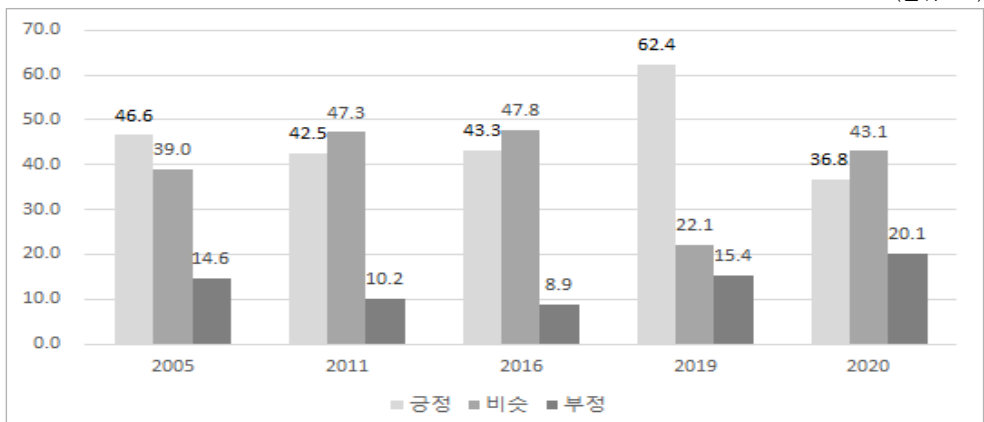
[그림 3-9]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단위: %)



[그림 3-10]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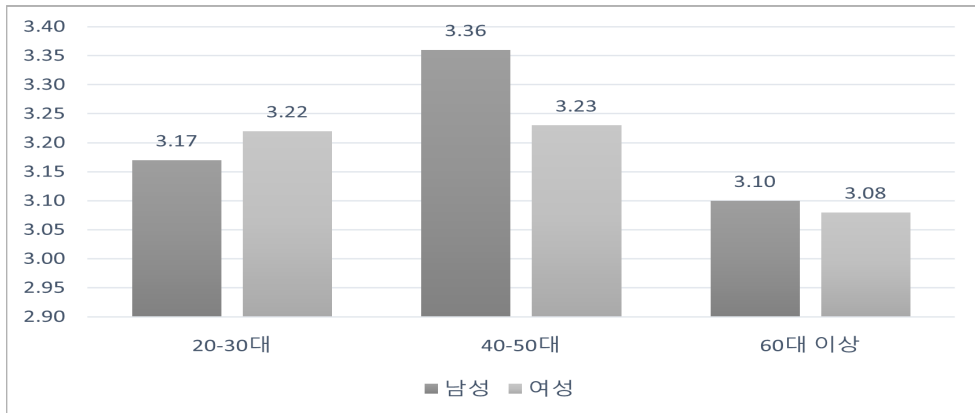


* 자료: 국민인권의식조사(2005, 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2020)

-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질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모든 연령대별로 남성과 여성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20~30대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인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40~50대 여성과 50~60대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인권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1]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단위: 점)



주) '1점=많이 나빠지고 있다', '5점=많이 좋아지고 있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인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함

<표 3-16>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인식 차이

구분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값
20~30대	남성	3.17	-.05***	0.0005	-100.44
	여성	3.22			
40~50대	남성	3.36	.12***	0.0005	227.57
	여성	3.23			
60대 이상	남성	3.10	.02***	0.0006	28.09
	여성	3.08			

*p<0.05 **p<0.01 ***p<0.001

주) '1점=많이 나빠지고 있다', '5점=많이 좋아지고 있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인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함

3.6. 본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

3.6.1. 본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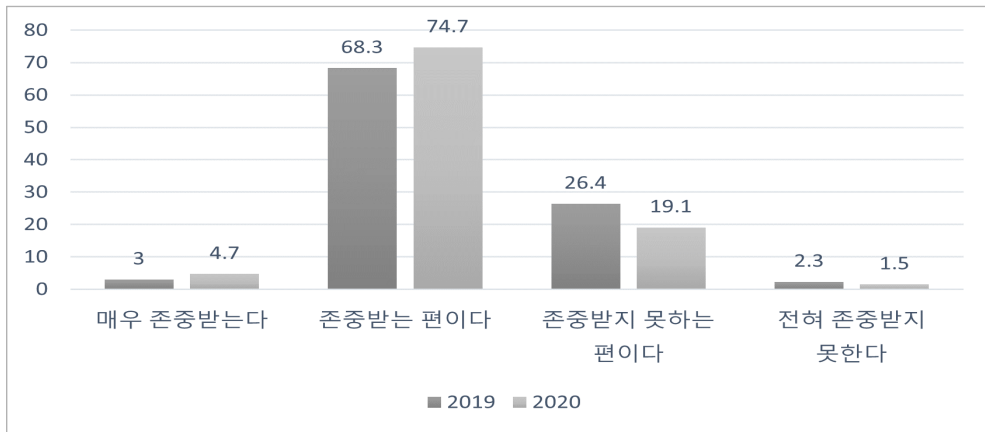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응답 결과 인권이 존중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79.4%(존중받는 편이다 74.7%, 매우 존중받는다 4.7%)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 20.6%(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19.1%,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1.5%)에

비해 크게 높았음

- 같은 문항에 대한 연도별 차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2019년도 68.3%에서 2020년도 74.7%로 늘어난 반면,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2019년도 26.4%에서 2020년도 19.1%로 줄어들

[그림 3-12] 본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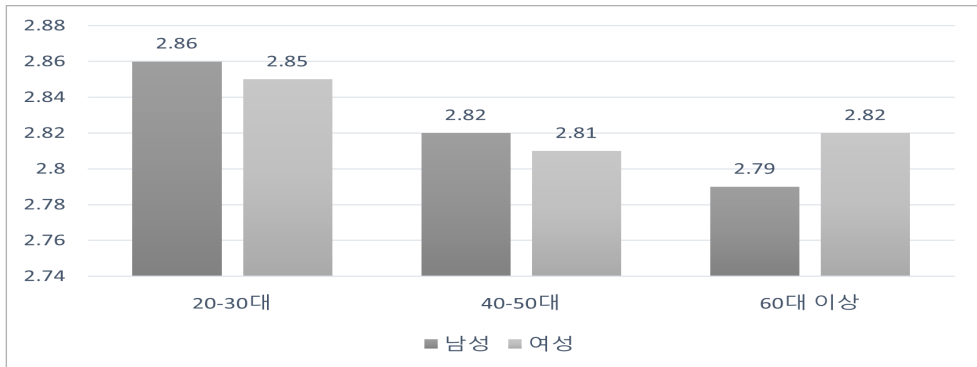


3.6.2. 배경 변수별 차이

-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에 대해 성별 및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30대 여성(2.85점)이 남성(2.86점)에 비해, 40~50대는 여성(2.81점)이 남성(2.82점)에 비해, 60대 이상은 남성(2.79점)이 여성(2.82점)에 비해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함
- 본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동일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본인의 인권이 가장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20~30대 남성(2.86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집단은 60대 남성(2.79점)이었음

[그림 3-13] 본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비교

(단위: 점)



주) '1점=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4점=매우 존중받는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존중받고 있다고 해석함

<표 3-17> 본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차이

구분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값
20~30대	남성	2.86	.01***	0.0003	28.60
	여성	2.85			
40~50대	남성	2.82	.01***	0.0003	17.60
	여성	2.81			
60대 이상	남성	2.79	-.03***	0.0003	-105.65
	여성	2.82			

*p<0.05 **p<0.01 ***p<0.001

*주) '1점=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4점=매우 존중받는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존중받고 있다고 해석함

- 교육 수준과 직업을 함께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2.81점)와 대학교 재학 이상(2.91 점) 모두에서 관리·전문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인권을 가장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음.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사무·판매·서비스직(2.77점)이, 대학교 재학 이상에서는 농림생산직(2.82점)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덜 느끼고 있음

<표 3-18> 본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에 대한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단위: 점)

구분	관리·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직	농림생산직	경제활동 안함
고졸 이하	2.81	2.77	2.78	2.80
대재 이상	2.91	2.86	2.82	2.86

주) '1점=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4점=매우 존중받는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존중받고 있다고 해석함

- 종교와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종교가 있는 경우(2.88점)와 없는 경우(2.92 점) 모두에서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끼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가졌을 때의 존중 정도가 종교가 없는 경우 (2.75점), 종교가 있는 경우 모두(2.77점)에서 가장 낮았음

<표 3-19> 본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에 대한 종교, 정치 성향별 비교

(단위: 점)

구분	보수	중도	진보	무관심
종교 없음	2.75	2.85	2.88	2.78
종교 있음	2.77	2.85	2.92	2.78

주) '1점=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4점=매우 존중받는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존중받고 있다고 해석함

4 인권침해

4.1. 자유와 권리 존중 정도의 평가

4.1.1. 자유와 권리 존중 정도의 평가와 변화

-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인권이 존중되는지를 17개 항목으로 질문하고, '1=매우 존중된다 ~ 4=전혀 존중되지 않는다'의 척도로 응답하였음. <표 4-1>을 보면 인권이 존중된다는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높은 항목은 '신체의 자유'(90.1%), '사상·양심·종교의 자유'(90.1%)가 가장 높고, '건강권'(88.6%), '교육권'(86.0%)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모든 항목의 응답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항목은 '사회보장권'(9.4%p),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8.7%p), '안전권'(8.7%p), '환경권'(8.5%p) 등으로 전 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해당됨. 반대로 변화가 적은 항목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9%p), '주거권'(2.2%p), '의견과 표현의 자유'(3.5%p), '집회·결사의 자유'(3.5%p) 등으로 대부분 시민·정치적 권리 항목으로 나타났음

<표 4-1> 전년 대비 인권 항목의 존중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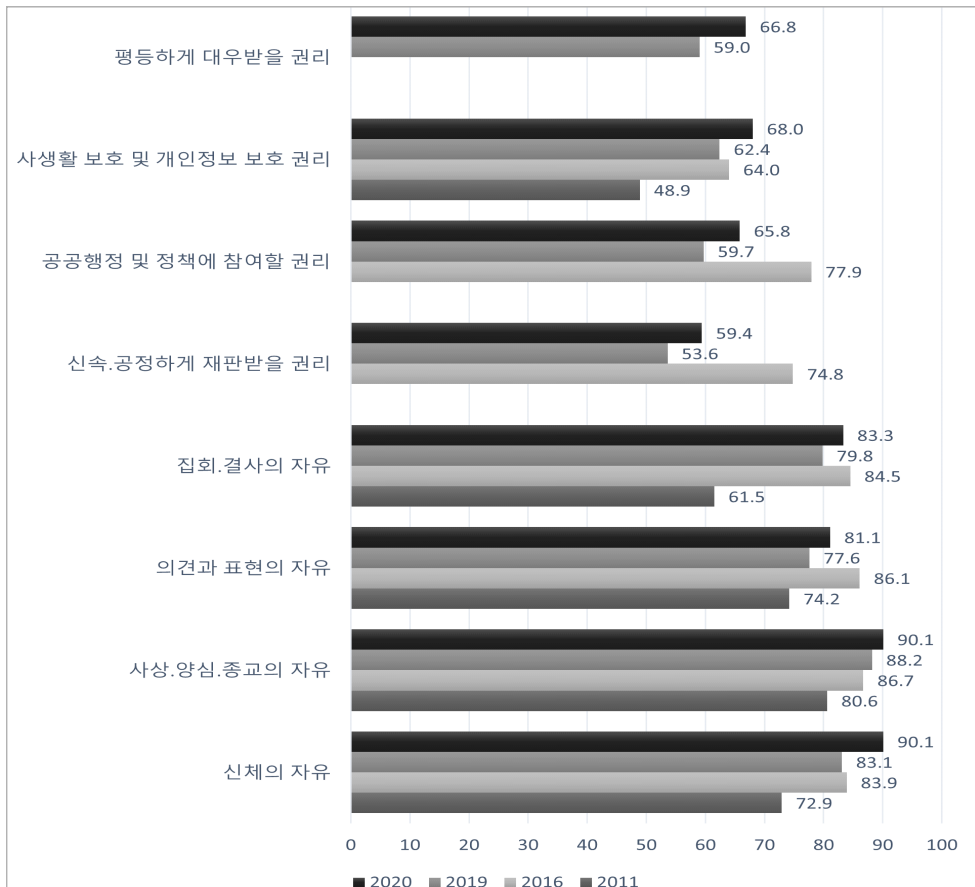
(단위: %)

항목		2019년	2020년	증감
시민·정치적 권리	신체의 자유	83.1	90.1	7.0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88.2	90.1	1.9
	의견과 표현의 자유	77.6	81.1	3.5
	집회·결사의 자유	79.8	83.3	3.5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53.6	59.4	5.8
	공공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59.7	65.8	6.1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62.4	68.0	5.6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59.0	66.8	7.8
경제·사회·문 화적 권리	주거권	77.2	79.4	2.2
	사회보장권	54.2	63.6	9.4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71.8	80.5	8.7
	노동권	57.4	62.4	5.0
	건강권	82.0	88.6	6.6
	교육권	81.9	86.0	4.1
	안전권	65.7	74.4	8.7
	환경권	64.2	72.7	8.5
문화권	75.1	80.4	5.3	

- [그림 4-1]의 시민·정치적 권리의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시계열로 비교해 보면, 전통적 자유권에 해당되는 항목인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긍정적 평가가 높은 반면, ‘평등권’, ‘참여권’, ‘신속·공정한 재판’, ‘사생활 및 개인 정보 보호’는 상대적으로 긍정 비율이 낮음
- 2011년부터 실시된 4차례의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서 존중된다는 비율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 항목은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로 나타남. ‘공공행정 및 정책에 참여’, ‘신속·공정한 재판’ 등의 항목은 2016년에는 긍정 비율이 75% 내외였지만, 2019년, 2020년에는 약 10%p 이상 감소하였음

[그림 4-1] 시민·정치적 권리 항목별 존중도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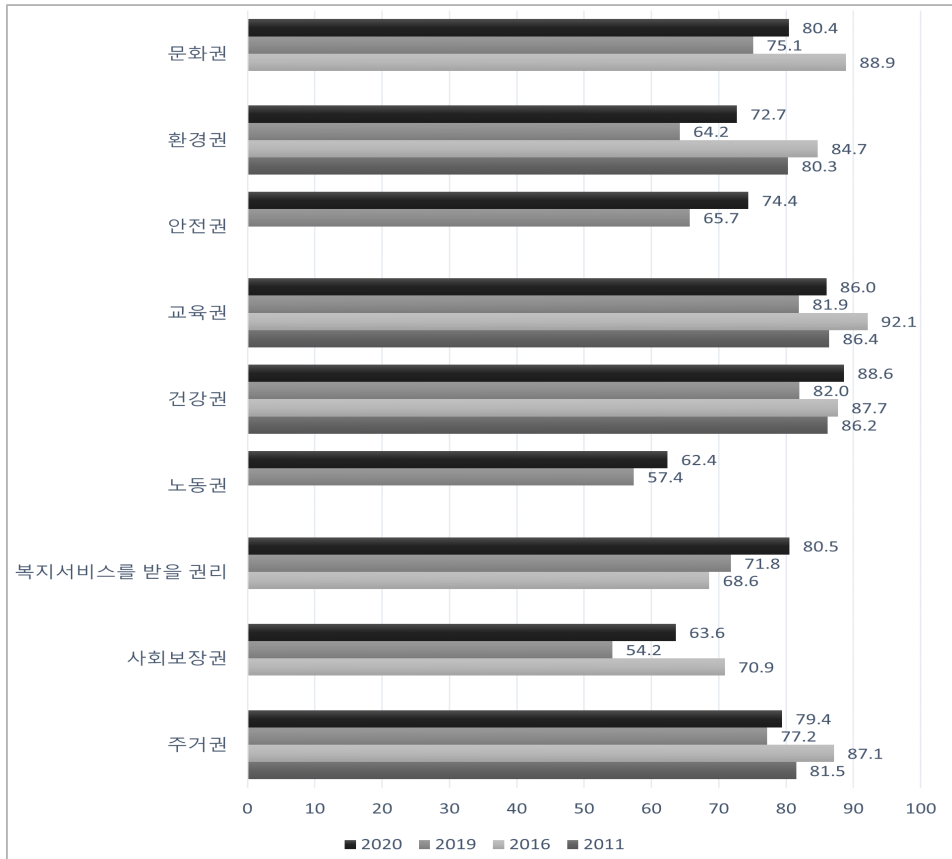


* 자료: 국민인권의식조사(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2020)

- [그림 4-2]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시계열로 비교해 보면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복지서비스권’이 존중된다는 비율은 80% 이상으로 높은 반면, ‘노동권’, ‘사회보장권’이 존중된다는 비율은 60%대에 머물러 있음
 - ‘사회보장권’은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권’과 함께 60%대의 낮은 평가에 머물러 있음.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화된 고용 불안, 실업,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011년부터 실시된 4차례의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서, 복지서비스 권리, 안전권, 노동권은 증가 경향을 보이며, 다른 항목은 조사 시점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였음

[그림 4-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항목별 존중도의 변화

(단위: %)



* 자료: 국민인권인식조사(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2020)

4.1.2 배경별 인권 항목의 평가에 대한 성별 비교

- 배경 차이(연령대, 교육 수준, 직업, 종교 유무, 정치 성향)에 따라 17개 인권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하고 카이제곱(χ^2) 검증을 하였음
- 배경 차이는 ‘연령대’: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이상, ‘직업’: 관리·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직, 농림생산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 ‘종교 유무’: 종교 있음, 종교 없음, ‘정치 성향’: 보수, 중도, 진보, 무관심으로 구분하였음
- <표 4-2>는 5가지 배경별로 인권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다른지를 유의도(p)로 표시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을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표 4-2> 인권 항목의 존중도에 대한 성별 비교 - 남성

구분	연령대 차이	교육 수준 차이	직업 차이	종교 유무 차이	정치 성향 차이
신체의 자유	.000	.000	.000	.157	.000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000	.000	.000	.159	.000
의견과 표현의 자유	.000	.000	.001	.055	.000
집회·결사의 자유	.000	.000	.000	.001	.000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000	.000	.000	.101	.082
공공행정 및 정책에 참여	.000	.057	.044	.141	.013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000	.036	.076	.246	.000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000	.015	.003	.676	.177
주거권	.000	.000	.000	.679	.116
사회보장권	.000	.660	.036	.710	.000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000	.196	.003	.196	.001
노동권	.000	.002	.001	.678	.001
건강권	.004	.055	.041	.252	.000
교육권	.000	.000	.016	.934	.000
안전권	.000	.000	.004	.413	.000
환경권	.000	.719	.156	.612	.178
문화권	.000	.000	.000	.247	.006

* 주 1) 표 안의 숫자는 카이제곱(χ^2)의 통계적 유의도(p)를 나타내며 0.05보다 작으면 95% 수준에서 배경에 따른 응답 차이가 있음을 뜻함

- 남성의 경우 모든 인권 항목에서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교육 수준, 직업, 정치 성향에서도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음. 반면 종교 유무에 따른 인권 존중도 평가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에도 연령대에 따라서 모든 인권 항목의 존중도 평가에 일관된 차이를 보이며, 교육 수준, 직업, 정치 성향에서도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음. 종교 유무에 따른 평가는 다수의 항목에서 차이가 없지만,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주거권', '복지서비스권', '교육권', '안전권'에 대한 평가는 차이를 드러낸다는 점이 남성과 다름

<표 4-3> 인권 항목의 존중도에 대한 성별 비교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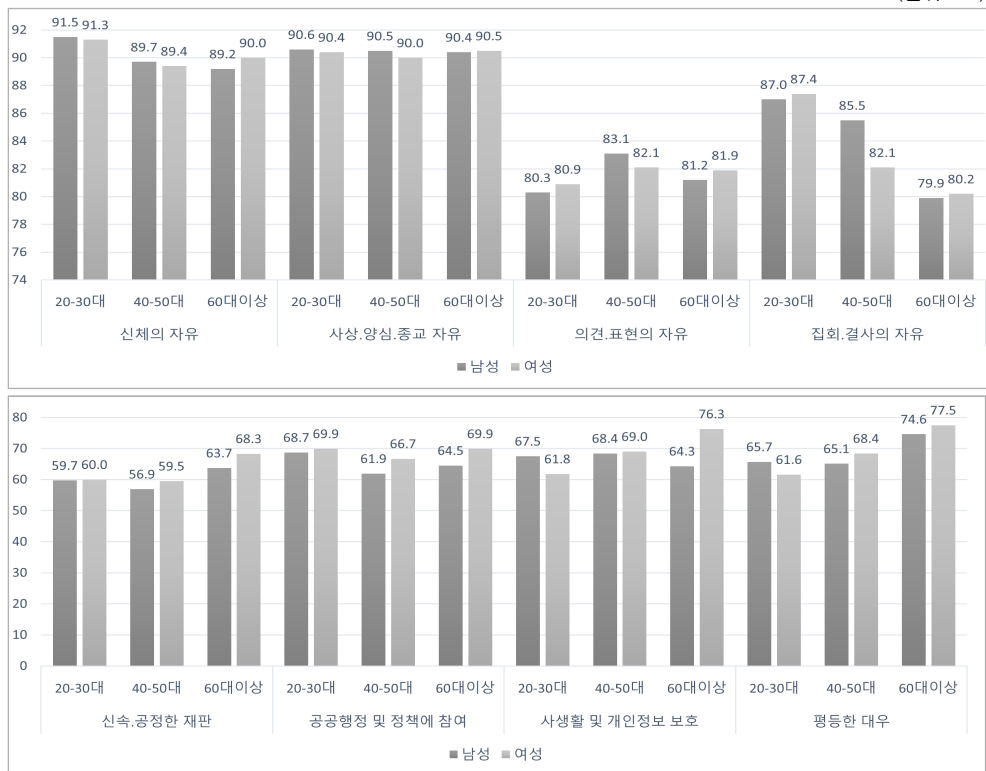
	연령대 차이	교육 수준 차이	직업 차이	종교 유무 차이	정치 성향 차이
신체의 자유	.000	.000	.000	.331	.000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000	.000	.000	.241	.000
의견과 표현의 자유	.000	.000	.102	.639	.000
집회·결사의 자유	.000	.000	.001	.001	.000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000	.000	.003	.771	.000
공공행정 및 정책에 참여	.002	.455	.175	.764	.000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000	.000	.000	.020	.000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000	.000	.000	.179	.000
주거권	.000	.000	.000	.005	.000
사회보장권	.000	.002	.001	.141	.024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000	.000	.000	.000	.000
노동권	.000	.126	.117	.556	.074
건강권	.001	.272	.062	.068	.000
교육권	.047	.008	.008	.043	.000
안전권	.000	.056	.007	.015	.002
환경권	.000	.005	.011	.667	.129
문화권	.000	.000	.002	.782	.000

* 주) 표 안의 숫자는 카이제곱(χ^2)의 통계적 유의도(p)를 나타내며 0.05보다 작으면 95% 수준에서 배경에 따른 응답 차이가 있음을 뜻함

- 연령대별로 17개 인권 항목의 존중도에 대한 평가가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 시민·정치적 권리 중에서 전통적인 자유권에 해당되는 인권 항목(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별로 없음
 - 성별 차이를 보이는 4개의 항목(신속·공정한 재판, 참여권,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평등권)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평등한 대우' 항목은 여성 20~30대의 긍정적인 평가가 각각 61.8%, 61.6%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든 연령대의 남성보다 낮음. 또한 동년배 남성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다른 연령대 여성과 비교해도 일관적으로 낮은 비율임

[그림 4-3] 시민·정치적 권리 존중도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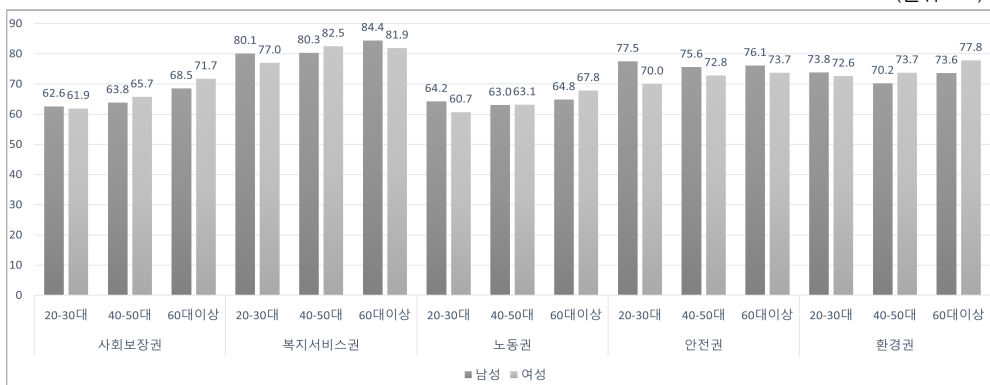
(단위: %)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항목들은 성별 차이가 별로 없거나,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안전권’은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낮다는 점에서 다른 인권 항목과 차이를 보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권’, ‘노동권’, ‘안전권’ 항목은 20~30대 여성의 긍정적인 평가가 61.9%, 60.7%, 70.0%로 낮는데, 이는 전체 남성 및 다른 연령대의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임
 - ‘사회보장권’, ‘노동권’의 경우는 존중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하위에 머물러 있는 권리 항목이며, ‘안전권’은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일관되게 낮게 나타남.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열악한 상황, 일상의 안전 위협 등이 여성의 응답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됨
 -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여성 청년층과 여성 노년층에서 남성보다 긍정적 평가가 낮은 반면 여성 중년층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여성 청년층과 여성 노년층에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됨

[그림 4-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존중도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

(단위: %)



4.2. 인권침해·차별에 취약한 집단

4.2.1. 인권침해·차별에 취약한 집단 평가의 변화

-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차별에 취약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2개 응답하도록 한 것에 대해 2011년, 2016년, 2019년, 2020년의 응답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 4-4>와 같음. 2019년

조사는 인권침해·차별에 취약한 사람과 조건을 분리해서 질문한 반면 다른 조사들은 인권 침해·차별에 취약한 사람과 조건을 통합하여 질문했다는 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비교해야 함

- 2020년 조사는 3개를 응답하도록 질문하였으나 2011년, 2016년, 2019년 조사는 2개를 응답하도록 질문하였으므로, 시계열 비교를 위해서 2020년 조사에서도 2개까지 응답한 결과를 활용하였음

<표 4-4> 인권침해·차별에 취약한 집단 변화

순위	2011년	2016년	2019년	2020년
1	빈곤층	빈곤층	장애인	장애인
2	저학력층	저학력층	빈곤층	빈곤층
3	이주민	장애인	저학력층	여성
4	장애인	이주민	이주민	저학력층
5	노인	여성	여성	노인

- 2020년을 다른 연도와 비교해 보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빈곤층이 1순위로 지목되었다가 근소한 차이로 2순위로 밀려나고, 장애인이 가장 인권침해·차별에 취약한 대상 1순위로 꼽혔다는 점에 주목함. 또한 여성이 2011년에는 5순위 안에 들지 못하다가 2016년에 포함된 이후 시간이 갈수록 순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나타나고 있음
 - 열악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장애인운동, 여성운동으로 장애인과 여성의 인권침해·차별이 드러나고 이들의 권리 옹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저학력층은 2020년에는 4위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취약한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음
 - 그동안 지속적으로 3~4위권에 들었던 이주민은 2020년도 조사에서는 5순위 밖으로 밀려났으며, 2011년 조사에서 5위에 있다가 이후 밀려났던 노인은 2020년 조사에서 다시 5순위로 포함되었음
 - 코로나19로 인해 시설거주 장애인, 노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특수한 상황도 인권침해·차별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4.2.2. 인권침해·차별에 취약한 집단의 배경적 평가

- 2020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차별에 취약한 사람을 우선순위대로 3개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과거 조사와의 비교를 위해서 <표 4-4>는 1순위와 2순위의 응답을 분석하였음. 그런데 원래의 문항대로 1순위~3순위까지의 응답을 분석해보면 순위에 다소간 변동이 생기는데, <표 4-5>에 1순위, 1순위+2순위, 1순위~3순위의 응답을 정리해 보면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음
 - 1순위로 인권침해·차별에 취약한 집단은 장애인→빈곤층→여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가는 2순위까지 고려했을 때도 그대로 유지됨. 3순위까지 고려했을 때는 빈곤층과 장애인의 순위가 바뀌고, 저학력층의 순위가 점점 올라가는 반면 노인의 순위는 점점 내려가는 상황이 나타남
 - 1~3순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살펴보면 빈곤층과 장애인은 50~52%로 인권침해·차별에 가장 취약하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저교육층, 여성, 비정규직이 취약하다는 응답은 25~28%에 분포하고 있으며, 노인과 이주민은 21~22%를 차지함
 - 취약집단으로 꼽힌 집단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

<표 4-5> 인권침해·차별에 취약한 집단

순위	1순위	1순위+2순위	1순위~3순위
1	장애인	장애인	빈곤층
2	빈곤층	빈곤층	장애인
3	여성	여성	저학력층
4	노인	저학력층	여성
5	저학력층	노인	비정규직
6	이주민	이주민	노인
7	비정규직	비정규직	이주민

- 배경별로 인권침해·차별에 취약한 집단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취약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의 평가는 뚜렷하게 갈리는데, 여성이 ‘여성’ 인권의 취약성을 훨씬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 반면 남성은 취약집단으로서 여성보다는 ‘저학력층’과 ‘비정규직’의 인권 취약성을 더 강하게 느낌

- 다른 연령대는 장애인보다 빈곤층의 인권이 더 취약하다고 보지만 20~30대는 빈곤층보다 장애인의 인권이 더 취약하다고 보고 있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농림생산직 종사자는 '저학력층'을 지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사무·판매·서비스직은 '빈곤층'과 '장애인'을 지목한 비율이 51%로 비슷하고, '여성'을 지목한 비율이 29.1%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빈곤층'을 꼽고 있으며, 보수 성향은 '저학력층'을 지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진보 성향은 '빈곤층'을 지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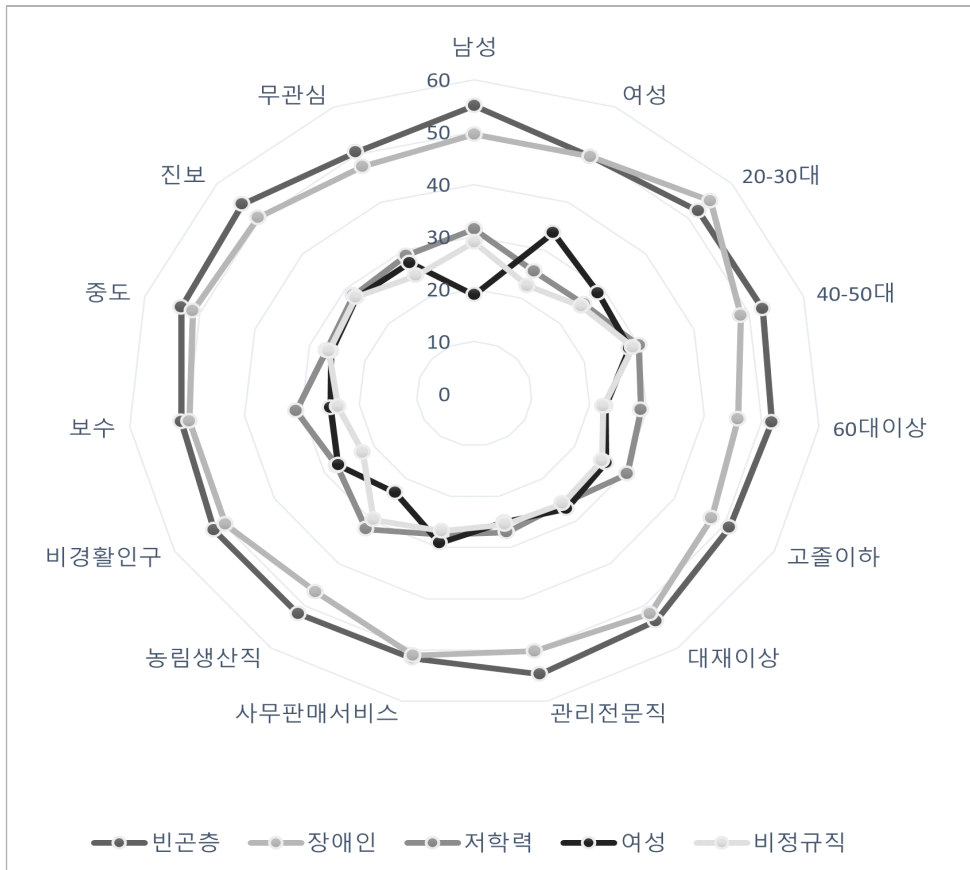
<표 4-6> 배경별 인권침해·차별에 취약한 집단(복수응답)

(단위: %)

구분		빈곤층	장애인	저학력층	여성	비정규직
성별	남성	55.0	49.5	31.5	18.9	29.0
	여성	49.6	49.6	25.6	33.7	22.6
연령	20~30대	52.2	55.1	25.6	28.8	25.0
	40~50대	52.5	48.5	30.0	28.3	28.9
	60대 이상	51.8	45.9	29.0	22.8	22.4
교육	고졸 이하	51.0	47.5	30.6	26.3	25.5
	대재 이상	53.6	51.9	25.9	27.1	25.9
직업	관리·전문직	54.7	50.2	27.0	25.0	25.5
	사무·판매·서비스	51.6	51.1	27.5	29.1	26.8
	농림생산직	51.9	46.7	31.9	23.3	29.7
	경제활동없음	52.0	49.8	27.5	27.2	22.3
정치성향	보수	51.0	49.6	31.0	25.0	23.7
	중도	53.4	51.3	26.9	26.1	26.5
	진보	54.1	50.3	28.1	27.5	27.6
	무관심	50.5	47.5	28.9	27.4	24.7

[그림 4-5] 배경별 인권침해·차별에 취약한 집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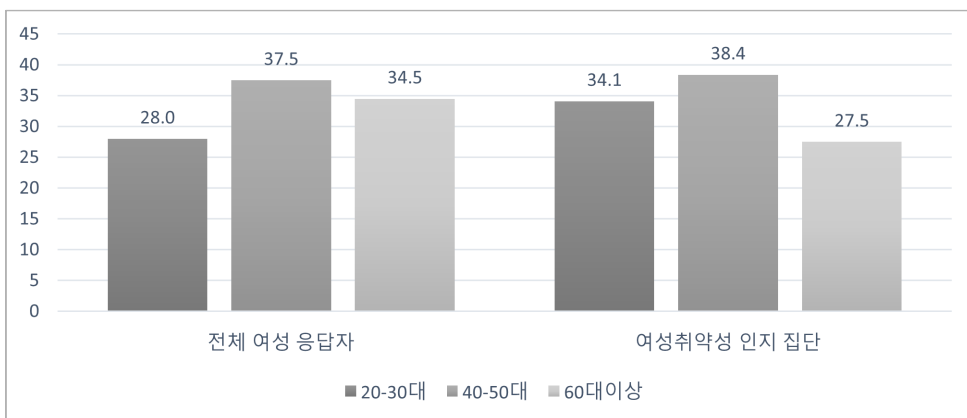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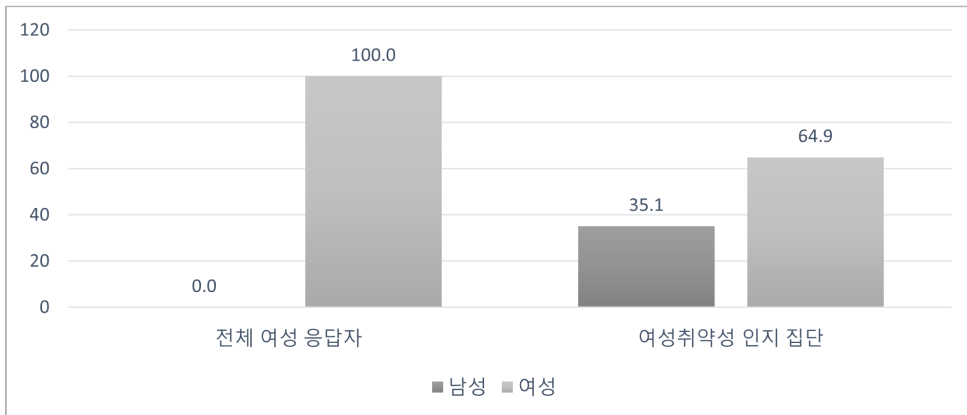
4.2.3. '전체 여성' 응답자와 '여성의 인권취약성 인지' 응답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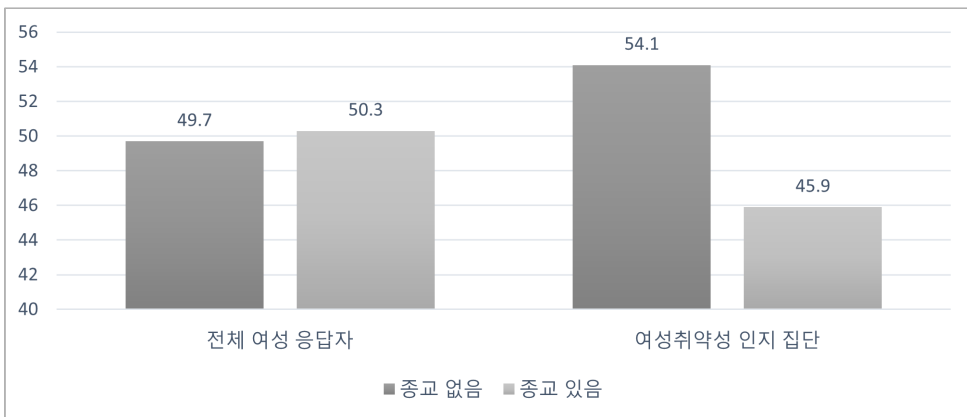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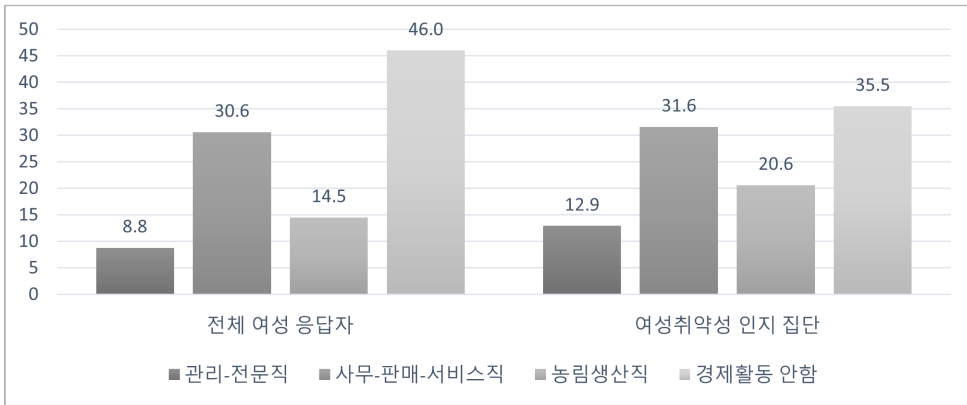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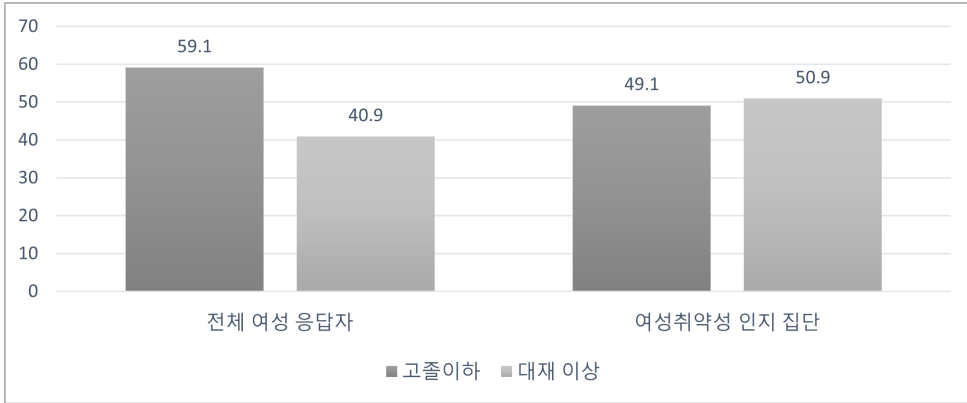
-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질문하여 1순위에서 여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여성 인권침해·차별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집단, 즉 '여성의 인권취약성 인지' 집단으로 정의하고 '전체 여성' 응답자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 여성 인권이 취약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성별은 남성 31.4%, 여성 68.6%로 구성되었으며, 연령대는 청년층이 28.3%, 중년층이 43.0%, 노년층이 28.7%로 나타나 전체 여성 응답자보다 중년층의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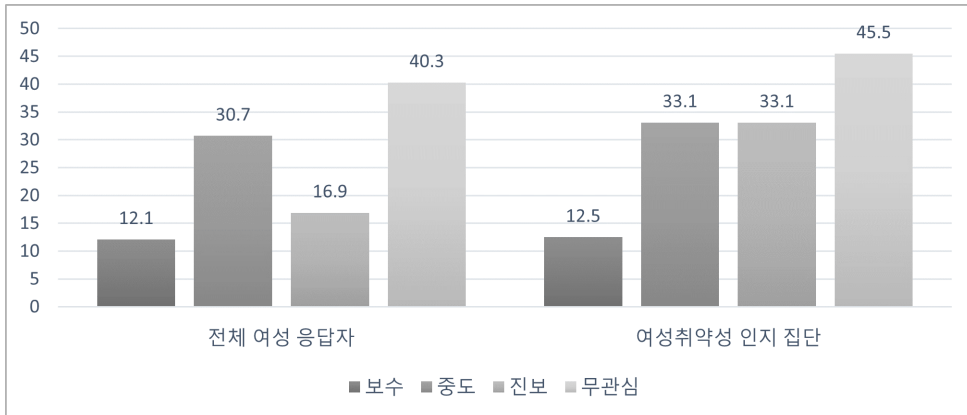
- 여성 인권이 취약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교육 수준은 대학교 재학 이상이 43.0%로 전체 여성 응답자 40.9%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63.1%로 전체 여성 응답자 중 경제활동인구 54.0%보다 더 높음. 이는 노동 현장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임
- 여성 인권이 취약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종교 없음이 54.3%로 더 많으며, 정치적 성향은 전체 여성 응답자보다 정치에 관심이 더 많고 보수 또는 진보 성향이 더 강함

[그림 4-6] 전체 여성 응답자와 여성 취약성 인지 집단 비교

(단위: %)







4.3.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

4.3.1.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의 변화

-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을 2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까지 종합한 결과를 <표 4-7>에 정리하였음
 - 2019년 조사에서는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와 상황을 분리하여 질문하였으나 2020년에는 분리하지 않고 질문했고, 응답 보기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고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9년 조사에서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 1~3순위(직장, 보호시설, 군대), 그리고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 1~4위(경·검찰의 조사, 수사, 구직·취업, 재판, 민원처리)가 2020년 조사에서 모두 1~6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경·검찰의 조사·수사는 일부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상황이지만 인권침해의 깊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직장생활(구직·취업 포함)은 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으로 인권침해의 범위가 넓게 퍼져있음을 보여줌

<표 4-7>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 변화

순위	2019년				2020년	
	장소		상황		(장소+상황)	
	1순위	1순위+2순위	1순위	1순위+2순위	1순위	1순위+2순위
1	직장생활	보호시설	구직·취업	경·검찰의 조사·수사	경·검찰의 조사·수사	경·검찰의 조사·수사
2	보호시설	직장생활	경·검찰의 조사·수사	구직·취업	직장생활	직장생활
3	군대	군대	재판	재판	민원처리	보호시설
4	유치원·어린이집	학교생활	민원처리	민원처리	보호시설	민원처리
5	학교생활	유치원·어린이집	병원치료	병원치료	재판	재판
6	기타	기타	재화·용역 이용	재화·용역 이용	군대	군대
7	-	-	입학	입학	병원치료·입원	병원치료·입원
8	-	-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이용	교도소	교도소
9	-	-	기타	기타	재화·용역 이용	재화·용역 이용
10	-	-	-	-	대중교통 이용	학교생활
11	-	-	-	-	유치원·어린이집	대중교통 이용
12	-	-	-	-	학교생활	유치원·어린이집
13	-	-	-	-	가정생활	가정생활
14	-	-	-	-	기타	기타

4.3.2.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의 배경적 평가

-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주요 5가지 상황으로 한정시켜 살펴보면, 다른 연령 집단들은 모두 '경·검찰의 조사·수사'를 가장 많이 지목했지만 유독 20~30대만 경·검찰의 조사·수사보다 '직장생활'을 더 많이 응답하였음

<표 4-8>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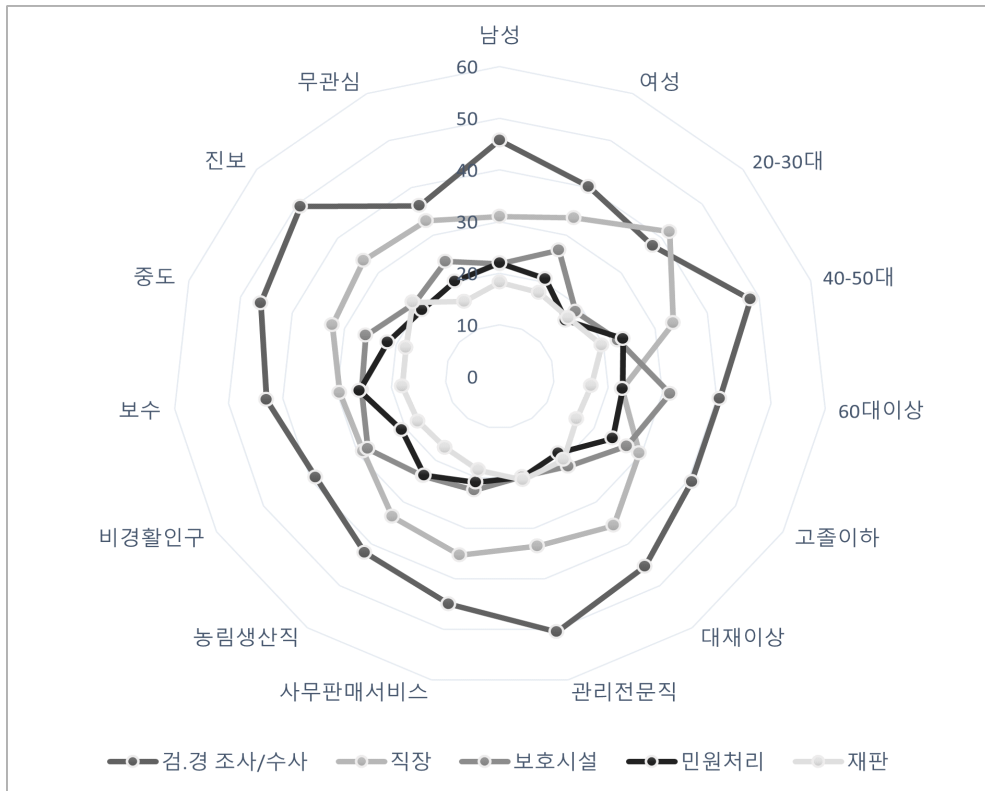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경·검찰 조사·수사	직장생활	보호시설	민원처리	재판
성별	남성	45.0	32.4	20.3	21.4	18.4
	여성	41.2	35.1	26.1	20.2	17.9
연령	20~30대	37.8	41.9	18.8	16.3	17.0
	40~50대	48.4	33.5	22.8	23.8	19.7
	60대 이상	40.6	22.6	31.4	22.7	16.9
교육	고졸 이하	40.7	29.6	26.9	23.9	16.3
	대재 이상	45.4	35.6	21.5	18.3	19.9
직업	관리·전문직	50.5	33.5	19.8	19.9	20.4
	사무·판매·서비스	45.0	35.3	22.5	20.9	18.5
	농림생산직	42.1	33.5	23.8	23.6	17.0
	경제활동안함	39.0	28.9	27.9	20.7	17.3
정치 성향	보수	43.0	29.5	25.5	25.9	18.0
	중도	46.1	32.3	25.8	21.6	18.1
	진보	49.2	33.6	21.1	19.2	21.5
	무관심	36.2	33.0	24.4	20.2	15.9

- ‘경·검찰의 조사·수사’ 상황에서 인권침해·차별이 많다는 응답은 40~50대, 대학교 재학 이상, 관리·전문직,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인 응답자들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이들 집단이 경·검찰에 가장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
 - 이와 연관 지어서 ‘재판’ 상황이라는 응답도 40~50대, 대학교 재학 이상, 관리·전문직, 정치적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집단이 경·검찰, 사법 기관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고 있음을 보여줌
 - ‘공무원과 민원처리’ 과정을 지적한 응답은 40~50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농림생산직, 정치적 보수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고, ‘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차별이 많다는 지적은 여성, 60대 이상, 고졸 이하,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4-7] 배경별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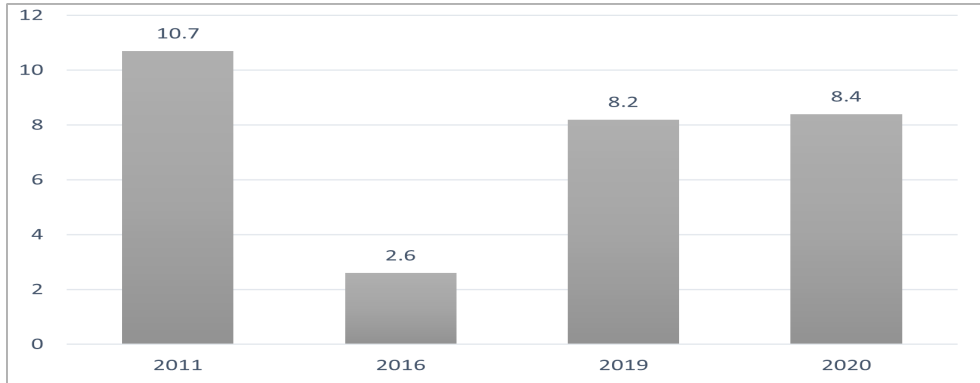
4.4. 인권침해 경험

4.4.1. 시민·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

- 지난 1년 동안 시민·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한 번이라도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8.4%로 나타남. 2011년, 2016년의 결과와 비교하면 2011년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2016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고, 2019년과 비슷한 수준임
- 시민·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 중에서 1종류 경험한 사람은 70.0%, 2종류 경험한 사람은 23.5%, 3종류 이상 경험한 사람은 6.5%로 나타남

[그림 4-8] 시민·정치적 권리의 침해 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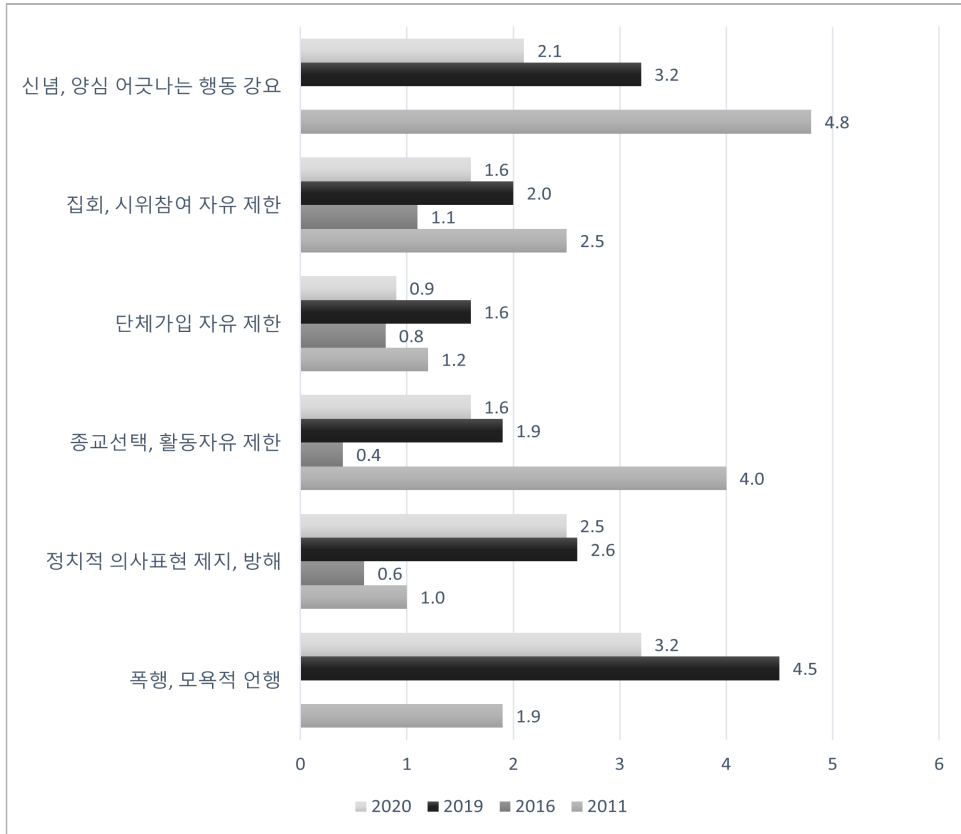


* 자료: 국민인권익조사(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2020)

- 시민·정치적 권리의 각 항목별로 침해 경험을 2011년~2020년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4-9]로 제시하고 있는데, 각 조사 시점에 따라서 권리 항목들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임
 - 시민·정치적 권리의 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각 항목별로 5% 이내이며, ‘폭행, 모욕적 언행’과 ‘신년,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 2019년보다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20~30대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을 많이 경험했고, 대학교 재학 이상은 고졸 이하보다 시민·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그림 4-9] 시민·정치적 권리별 침해 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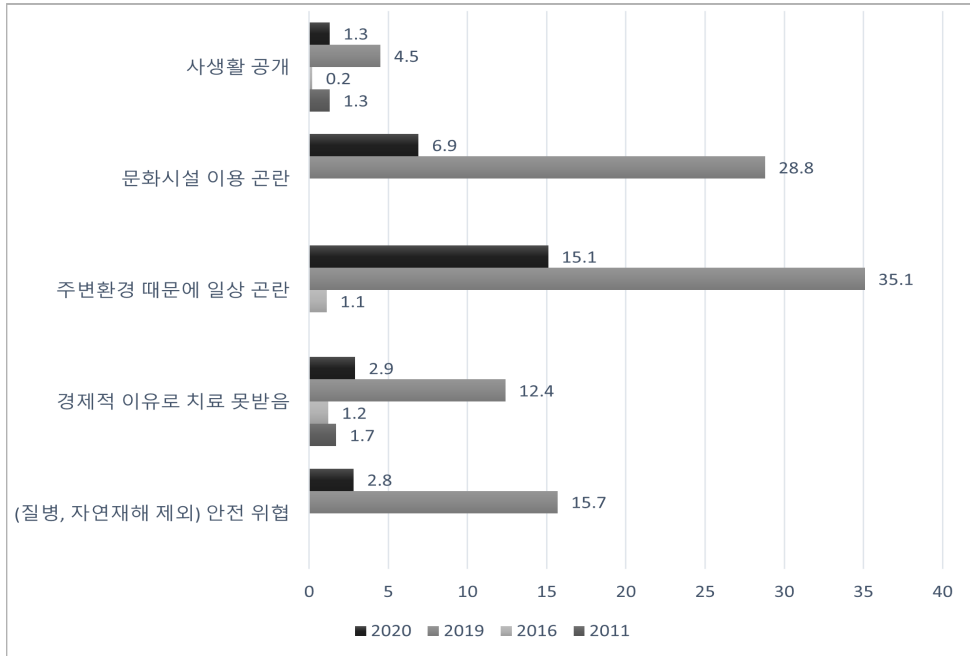
* 자료: 국민인권의식조사(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2020)

4.4.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 지난 1년 동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한 번이라도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전체 응답자의 22.1%로 나타남
- 조사 시점에 따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받은 비율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구조적 환경과 맥락에 따라서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음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 중에서 1종류 경험한 사람은 74.2%, 2종류 경험한 사람은 21.5%, 3종류 이상 경험한 사람은 4.3%로 나타남. 시민·정치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1가지 종류의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음

[그림 4-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 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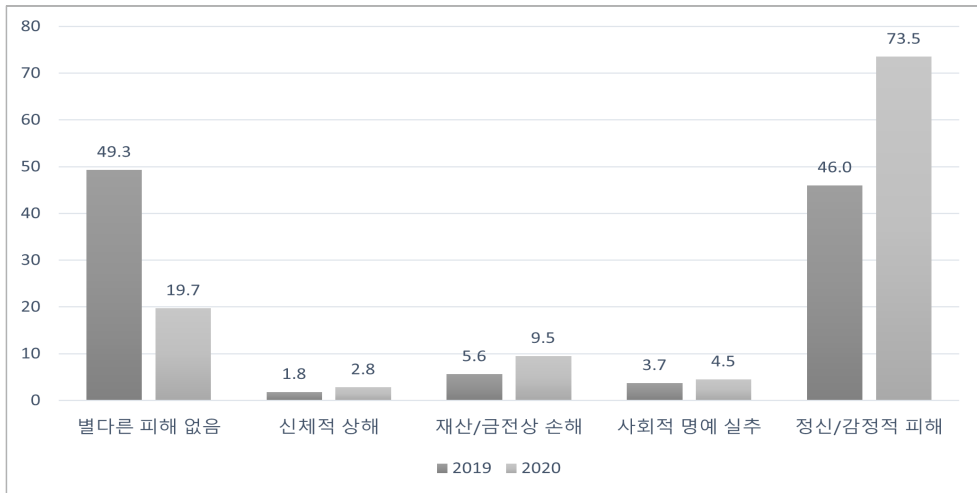
* 자료: 국민인권의식조사(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2020)

4.4.3.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

-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있었는지 해당 되는 것을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 인권침해 경험자의 19.7%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음
 - 2019년 조사의 동일한 문항과 비교해 보면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응답이 49.3%에서 19.7%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정신·감정적 피해가 있다는 응답이 46.0%에서 73.5%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신체적 상해, 재산·금전상 손해, 사회적 명예 실추도 근소한 차이지만 2019년 조사에 비해 증가하였음
 -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면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일단 부정적 정서의 반응을 강하게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짐.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불편함이 초래되면서 나타난 현상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림 4-11]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 비율 변화(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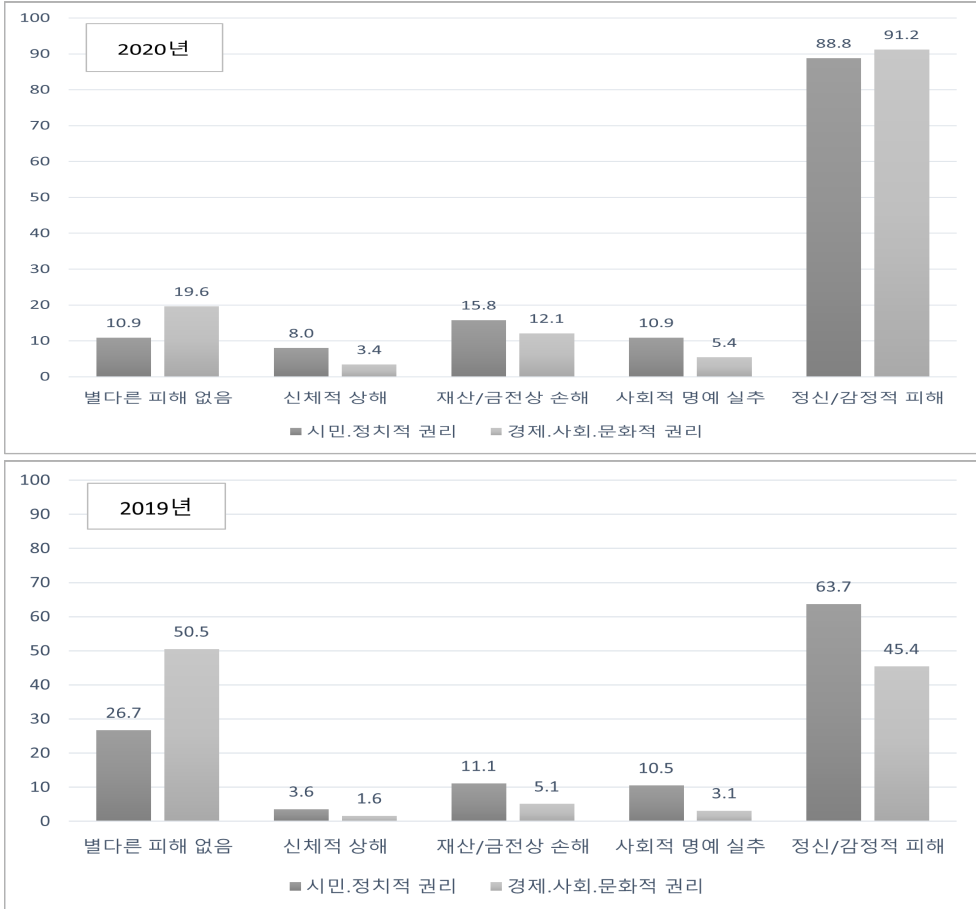
(단위: %)



- 인권침해 경험을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나누어 피해나 불이익을 비교한 결과,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응답은 시민·정치적 권리 10.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9.6%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12]와 같이 4가지로 제시된 피해나 불이익 중에서 정신적·감정적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은 약 90%로 압도적으로 많아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가장 큰 피해는 분노, 울분과 같은 정서적 차원으로 드러남. 시민·정치적 권리를 침해받았는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정신적·감정적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은 모두 매우 높음
- 정신·감정적 피해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피해나 불이익을 당했다는 응답들은 15% 이하인데, 시민·정치적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보다 피해나 불이익을 당했다는 응답이 다소 높은 편임
- 2019년 조사에서는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의 경우 정신적·감정적 피해 응답이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응답보다 더 많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경우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응답이 정신적·감정적 피해 응답보다 더 많은 반면, 2020년 조사에서는 정신적·감정적 피해 응답이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모두 비슷한 비율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4-12] 권리 유형별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의 유형(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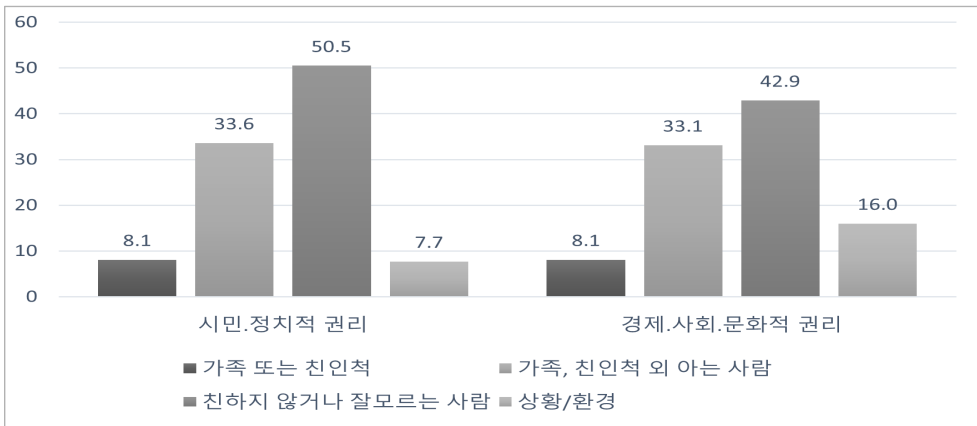
4.4.4.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이나 상황

- 지난 1년 동안 인권을 침해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에게 권리를 침해한 사람 또는 상황을 질문하여 1순위로 지목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가족 친인척' 11.3%, '가족 친인척 외 아는 사람' 49.1%, '친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 29.9%, '상황이나 환경' 9.5%로 나타남. 친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소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도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인권침해를 시민·정치적 권리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구분하여 인권침해 가해자가 다

른지를 살펴보면, 시민·정치적 권리의 침해자는 ‘가족 친인척’ 8.1%, ‘가족 친인척 외 아는 사람’ 33.6%, ‘친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 50.5%, ‘상황’ 7.7%로 나타남.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자는 ‘가족 친인척’ 8.1%, ‘가족 친인척 외 아는 사람’ 33.1%, ‘친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 42.9%, ‘상황’ 16.0%로 나타남

[그림 4-13] 권리별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이나 상황

(단위: %)



- 인권침해 가해자로서 1순위로 지목된 사람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웃·단체회원(13.9%) → 직장상사·상급자(11.0%), 자연환경(11.0%) → 공권력(10.7%) → 서비스업자·종사자(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인권침해 경험 사례를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구분하면, 시민·정치적 권리의 침해자는 공권력(17.4%) → 이웃·단체회원(13.7%) → 직장상사·상급자(11.7%) → 서비스업자·종사자(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이웃·단체회원(13.6%) → 자연환경(12.0%) → 직장상사·상급자(11.0%) → 서비스업자·종사자(1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통적으로 이웃·단체회원, 직장상사·상급자, 서비스업자·종사자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며, 인권침해 경험이 드러나기 어려운 가족 또는 친인척에 의한 권리 침해 상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표 4-9>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이나 상황

(단위: %)

구분		인권침해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가족 또는 친인척	배우자	1.0	1.4	1.0
	(조)부모	1.6	1.3	1.7
	(손)자녀	0.5	0.5	0.4
	형제자매	1.2	1.6	1.3
	친인척	3.5	3.3	3.7
가족, 친인척 외 인 사람	직장상사·상급자	11.0	11.7	11.0
	이웃, 단체사람	13.9	13.7	13.6
	친구·동료	7.5	7.6	7.4
	교사·강사·교수	1.0	0.6	1.1
친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	공권력	10.7	17.4	9.5
	건물 소유주	3.5	2.9	3.7
	고객	9.8	9.6	9.8
	서비스업 종사자	10.6	10.9	10.4
	거래처	8.8	9.2	8.7
	기타	0.8	0.5	0.8
상황	자연환경	11.0	6.5	12.0
	기타	3.7	1.2	4.0

4.4.5.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대응 방법으로는 ‘가해자에게 시정 요구’,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 ‘인터넷·SNS에 알림’,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민간단체·전문가에 도움 요청’을 제시하였음. 또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도 포함되었음
 - 약 70%에 해당되는 피해자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약 30%의 피해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침해에 대응하였음
 - 가해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처도 약 15%를 차지하고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약 10%를 차지함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와 비교해서 시민·정치적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가해자에게 시정 요구,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민간단체·전문가에 도움 요청 등과 같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무대응은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의 경우 61.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의 경우 68.2%로 나타남

<표 4-10>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인권침해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가해자에게 시정 요구	14.8	17.1	15.2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	8.6	9.8	8.9
인터넷·SNS에 알림	2.5	3.1	2.5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10.1	14.0	10.1
민간단체·전문가에 도움 요청	5.2	8.4	4.9
아무런 행동하지 않음	68.5	61.9	68.2

-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51.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7.6%에 달함
- 도움을 요청한 민간단체·전문가는 시민사회단체와 법률가가 49.2%, 38.5%를 차지함

<표 4-11> 인권침해 경험 시 도움 요청 기관(복수응답)

(단위: %)

공공기관		민간단체·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	17.6	시민사회단체	49.2
청와대	10.1	법률가	38.5
검찰·경찰	27.7	언론기관	17.6
지방자치단체	51.0	기타	4.7
기타	2.7		

4.5. 취약집단의 인권침해 경험

- 국가인권실태조사는 표본 설계상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집단의 사례 수가 적거나 아동·청소년은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취약집단의 인권침해 경험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충분한 사례 수의 취약집단 실태조사와 국가인권실태조사를 비교하여 취약집단과 일반 국민의 인권침해 경험을 비교하고자 함

- 취약집단과의 인권침해 경험 비교를 위해 참고한 조사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장애인 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임

4.5.1. 장애인의 인권침해 경험

-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조사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8.4%였으며 이중 ‘가족·친인척’으로부터의 인권침해를 당한 비율은 11.3%로 나타남.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폭력 피해 경험을 가족 내부로 한정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대부분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고 있으므로 가족 내 폭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음. 가족 내 폭력 경험 비율은 2011년 7.1%에서 2017년 5.3%로 다소 감소하였음
 - 주로 폭력의 가해자는 배우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형제자매, 부모이며, 자녀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약 10%에 달함
 -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와 형제자매인 경우는 별로 변화가 없지만, 부모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자녀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음

<표 4-13> 장애인의 가족 내 폭력 피해 경험

(단위: %)

구분		2011	2014	2017
가족 내 폭력 경험 있음		7.1	7.2	5.3
가족 내 가해자 유형	배우자	37.7	34.1	36.5
	부모	17.2	17.8	21.8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14.8	15.9	10.5
	형제, 자매	22.5	25.5	23.6
	조부모	1.2	0.9	1.2
	손자녀	0.8	0.5	0.0
	배우자의 가족	4.4	2.6	3.5
	기타	1.4	2.6	2.8

* 자료: 장애인실태조사(2011, 2014, 2017)

4.5.2.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

- 국가인권실태조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조사 응답자들의 14.0%가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아동·청소년을 꼽고 있음(1순위+2순위+3순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다양한 폭력 피해 경험을 제시하여 가해자를 파악하는데,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는 비율은 22.9%로 낮지 않은 수준이며, 교사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비율은 4.0%로 시간이 지날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부모와 교사의 신체적인 벌과 모욕적인 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림4-14]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듯이 부모의 신체적인 벌과 모욕적인 말은 2013년과 비교하면 약 5% 정도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교사의 신체적인 벌은 약 20% 감소하였고 모욕적인 말도 약 15% 이상으로 감소하였음
 -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폭력 행위가 있는데 따돌림, 돈/물건 갈취, 성희롱/성추행, 강제 심부름, 사생활 폭로가 있는데, 모두 5% 이하이고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의 경험 비율이 각 30% 이상으로 높음
 - 경험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또래로부터 다양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6.1%에 달해 온라인상의 다른 폭력에 비해서 경험했다는 비율이 높은 편임

<표 4-14> 아동·청소년의 폭력 피해 경험

(단위: %)

구분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따돌림	돈/물건 갈취	성희롱/성추행	강제 심부름	사생활 폭로
부모	22.9	28.8	-	-	-	-	-
교사	4.0	10.3	-	-	-	-	-
또래	4.4	0.9	4.1	1.6	2.1	1.4	-
사이버	-	16.1	1.8	-	3.0	-	4.2

* 자료: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2020)

4.4.3. 노인의 인권침해(학대) 경험

- 2020년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참여한 60대 이상 노년층의 14.7%가 지난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노인실태조사」에는 노인에 대한 다양한 폭력을 학대의 개념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뿐만 아니라 금전적 피해, 방임까지 포함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경험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이 경험한 유형임
-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고통’은 다른 유형과 달리 2011년, 2014년, 2017년에는 0.5% 미만이었지만 2020년에는 1.3%로 증가하였음
- ‘가족/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방임은 2011년, 2014년, 2017년에는 2%대의 경험률을 보였지만 2020년에는 0.2%로 감소하였음. 이와 연관되어 ‘가족/보호자가 돌보지 않는’ 유형도 2011년, 2014년, 2017년에는 약 1.5%였으나 2020년에는 0.3%로 감소하였음

<표 4-15> 노인의 학대 경험 변화

(단위: %)

구분	2011	2014	2017	2020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고통	0.5	0.2	0.3	1.3
성폭력 또는 성추행	-	-	0.1	1.1
타인의 말과 행동	9.4	7.3	7.4	6.6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	1.5	0.3	0.4	0.4
가족/보호자가 돌보지 않음	1.4	1.5	1.7	0.3
가족/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 주지 않음	2.5	2.8	2.3	0.2

* 자료: 노인실태조사(2020)

- 학대 유형별 행위자는 신체적 학대의 경우 친구 및 이웃의 비율이 91.9%로 가장 높고, 정서적 학대의 행위자는 친구 및 이웃이 45.9%, 배우자가 25.1%, 노인의 아들이 14.4%로 나타남. 신체적 방임은 배우자 30.4%, 아들 40.1%, 딸 26.9%로 나타나며 경제적 방임은 아들 53.4%, 딸 29.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배우자와 자녀 및 친인척을 포함한 가족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전체의 37.0%로 나타남

5 차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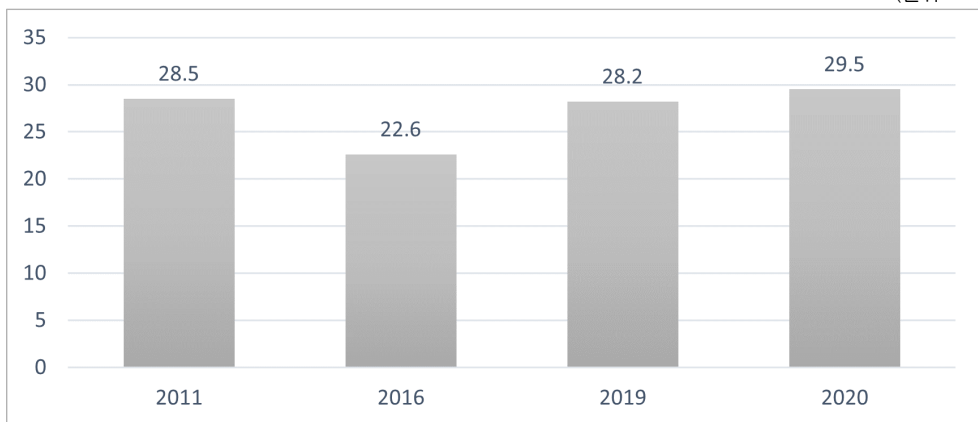
5.1. 차별 경험의 빈도

5.1.1. 차별 경험 비율의 변화

- 지난 1년 동안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한 번이라도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전체 응답자의 29.5%에 달함
 - 2019년의 28.2%보다 조금 증가하였으며, 2016년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다소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5-1] 차별 경험 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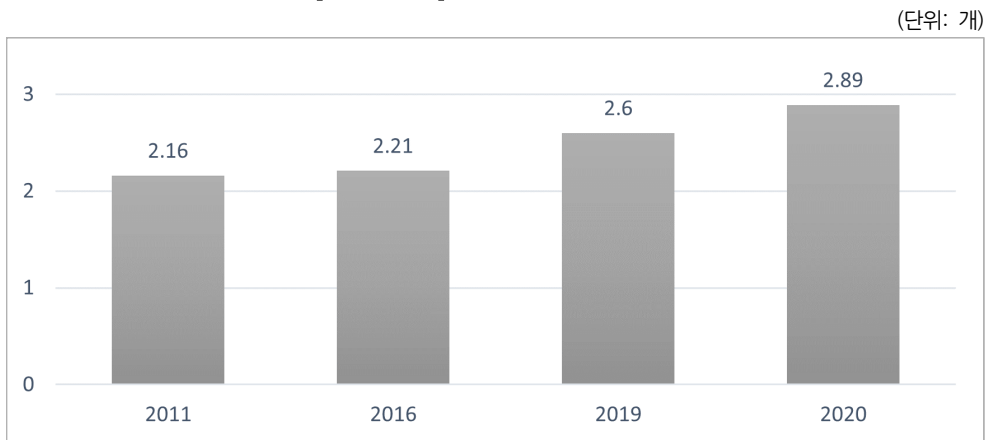
* 자료: 국민인권의식조사(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2020)

5.1.2. 차별의 누적 경험의 변화

- 차별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여성, 임신과 출산 상황에 따라, 또는 교육 수준, 고용상태,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서 차별이 중복적으로 발생하면 피해는 가중될 것임. 이를 상호교차성이라고 하는데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 중에서 차별의 이유에 따른 종류가 몇 가지인지를 분석하였음
 - 차별의 이유는 평균적으로 2.89개로 나타났으면 2019년의 2.60개와 비교하면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2011년에는 2.16개, 2016년 2.21개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차별의 교차

성이 늘어가고 있음. 2011년에는 2개 정도의 이유로 차별을 받았는데 2020년에는 3개 정도의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므로 차별 경험자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5-2] 차별 경험 수 변화



* 자료: 국민인권의식조사(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2020)

5.2. 차별의 내용과 피해

5.2.1. 차별의 이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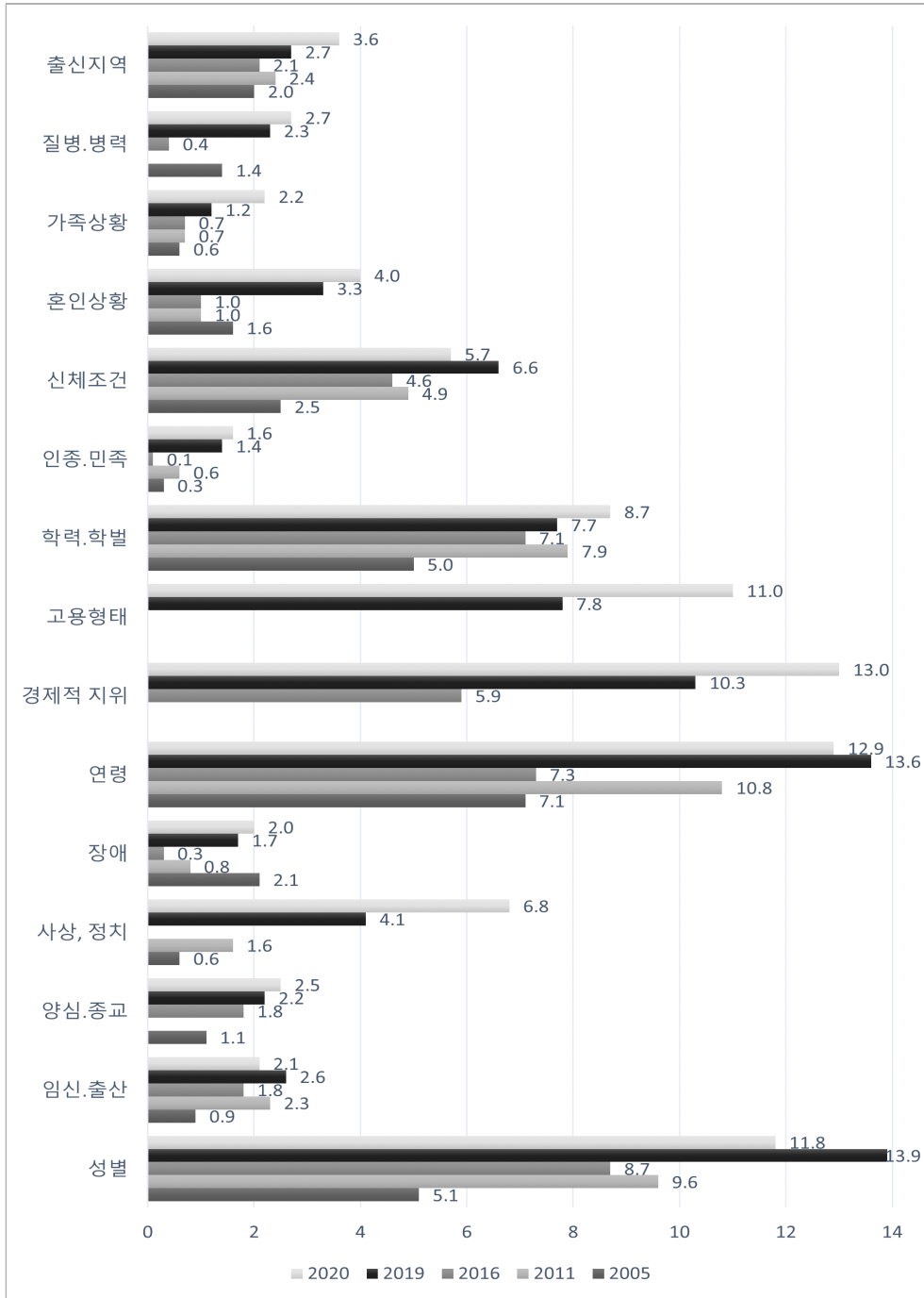
- 어떤 이유에서 차별받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을 조사 시점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그림 5-3]에 비교하고 있음
- 가장 차별 경험 비율이 높은 차별의 이유는 '경제적 지위'(13.0%)와 '연령'(12.9%)이며 그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 11.8%, '고용형태' 11.0%, '교육 수준·학벌' 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차별 경험이 가장 높은 차별의 이유는 '성별'(13.9%), '연령'(13.6%)이며 다음으로 '경제적 지위'(10.3%), '고용형태'(7.8%), '교육 수준·학벌'(7.7%) 등의 순이었음
- 성별, 연령, 경제적 지위, 고용형태, 교육 수준·학벌은 연도에 따라 다소 순위변화가 있지만 가장 상위에 놓여있는 차별의 이유이며, 노동시장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2005년과 비교해서 증가의 폭이 큰 차별은 성별 차별과 연령 차별인데, 성별 차별은 2005

년 5.1%에서 2011년 9.6%, 2016년 8.7%로 10%를 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2019년 13.9%, 2020년 11.8%로 10%대를 넘어서고 있음

- 연령 차별은 2005년 7.1%에서 출발하여 2011년 10.8%로 증가했다가 2016년 6.9%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는 13.6%, 2020년에는 12.9%로 10%대를 넘어서었음. 연령차별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며, 성별 같은 요인과 결합하는 여성 청년층, 여성 노년층은 더욱 차별에 취약해짐
- 과거에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던 출신 지역 차별은 2005년 2.0%에서 2020년 3.6%로 증가 폭이 크지 않음
-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인종, 출신국, 사상이나 이념, 종교에 따른 차별은 한국에서는 아직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크게 증가하고 있지도 않음

[그림 5-3] 차별 이유에 따른 차별 경험 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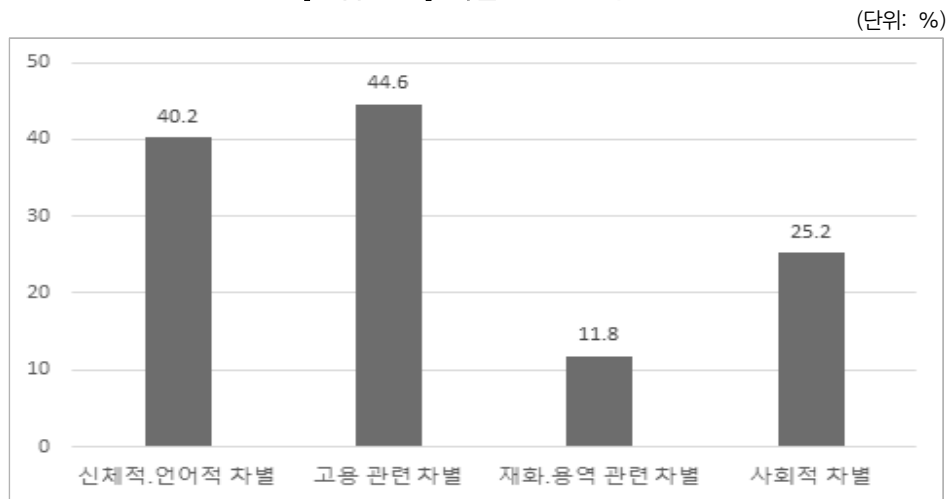


* 자료: 국민인권익식조사(2005, 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2020)

5.2.2. 차별의 유형

- 차별 경험자를 대상으로 어떤 유형의 차별을 경험했는지를 질문하여 응답한 결과가 [그림 5-4]에 나타남. 차별의 유형은 신체적·언어적 차별, 고용 관련 차별, 재화·용역 관련 차별, 사회적 차별로 분류되었음
- 고용 관련 차별이 44.6%로 가장 차별이 많이 일어나며, 신체적·언어적 차별은 40.2%로 나타남. 재화·용역 이용 시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은 11.8%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함. 사회적 관계에서 부딪히는 차별은 25.2%로 작지 않은 비중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5-4] 차별 경험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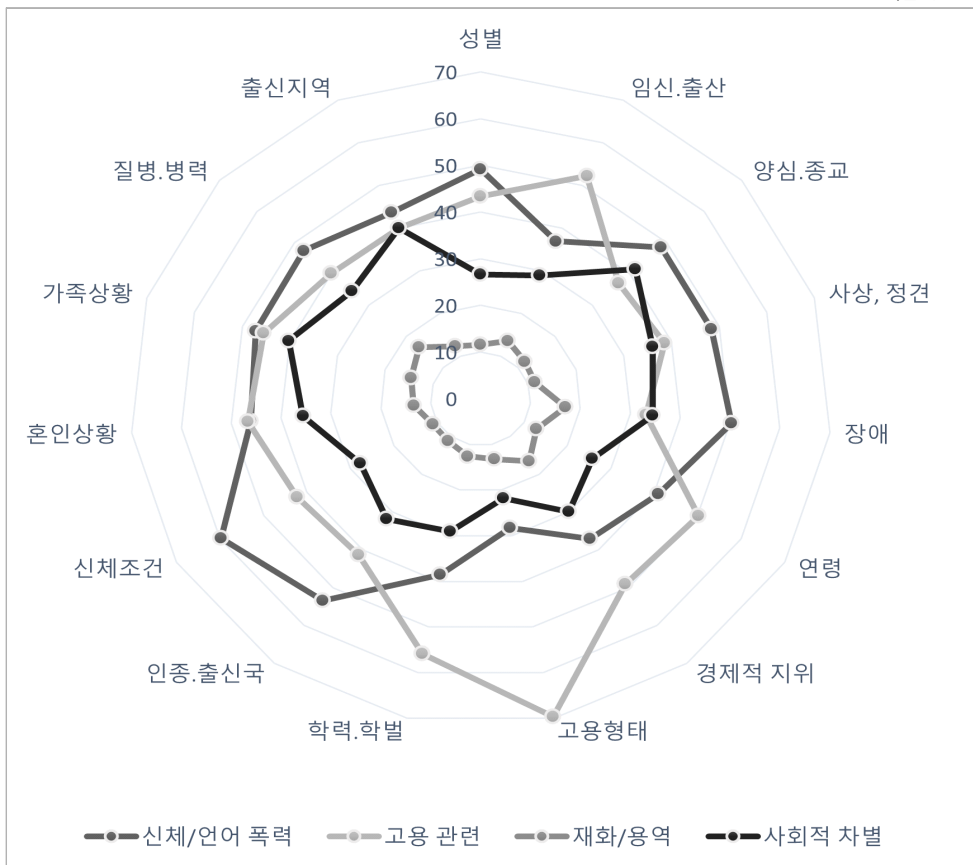


- 차별의 이유에 따라 다른 유형의 차별을 겪게 될 것이므로 차별의 이유를 각각 구분하여 차별의 유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한 결과, [그림 5-5]에서 차별의 이유에 따라서 표출되는 차별 유형이 다르다는 것으로 발견할 수 있음
-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형태로 많이 드러나는 차별은 신체조건(59.7%), 인종·출신국(53.5%), 장애(50.3%), 성별(49.2%) 등의 순서인데, 몸·신체에 드러난 특성을 이유로 차별을 가하는 경우임
- 고용 관련 차별은 고용형태가 69.6%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며 교육 수준·학벌(55.9%), 임신·출산(52.2%), 연령(50.2%)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고용불안, 취업제한, 실업, 해고, 퇴직 등으로 표출되고 있음

- 재화·용역을 이용하는데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차별은 장애가 17.0%가 가장 많고, 질병·병력 16.5%, 가족상황 14.6% 등의 순서로 나타남. 장애인의 음식점 출입제한, 대중교통 승차 거부 등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사회적 차별은 양심·종교 41.5%, 가족상황 40.2%, 출신 지역 40.0% 등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거나, 관계맺기의 회피 등이 이에 해당됨

[그림 5-5] 차별 이유에 따른 차별의 유형

(단위: %)



-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의 배경에 따라 차별의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 <표 5-1>에서와 같은데, 남성은 고용 관련 차별이 46.4%로 가장 많은 반면 여성은 신체적·언어적 폭력이 45.0%로 가장 많은 것이 특징적임

- 신체·언어적 폭력으로 차별을 겪은 사람들은 여성(45.0%), 20~30대(46.8%), 대학교 재학 이상(42.7%),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46.2%)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 고용 관련 차별은 남성(46.4%), 40~50대(47.7%), 농림생산직(51.5%), 정치적 진보(46.7%)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표 5-1> 배경별 차별 유형(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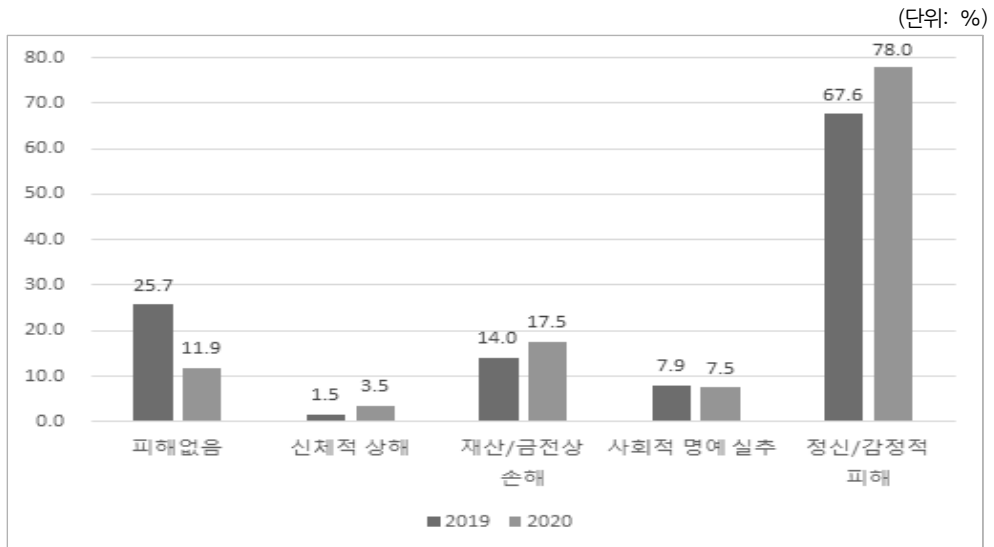
구분		신체·언어적 차별	고용 관련 차별	재화·용역 차별	사회적 차별
성별	남성	34.6	46.4	12.8	25.8
	여성	45.0	42.9	10.9	24.7
연령	20~30대	46.8	44.8	10.3	24.2
	40~50대	36.0	47.7	10.7	24.6
	60대 이상	42.8	32.6	13.1	26.0
교육	고졸 이하	40.1	41.2	11.2	24.3
	대재 이상	42.7	44.9	11.0	25.2
직업	관리·전문직	35.3	43.6	15.8	27.3
	사무·판매·서비스	41.8	44.4	12.2	25.5
	농림생산직	35.8	51.5	9.7	20.6
	경제활동 안함	46.2	35.9	9.2	28.1
종교	없음	41.5	45.6	10.6	22.8
	있음	41.5	40.4	11.7	27.1
정치 성향	보수	41.9	41.4	13.2	25.6
	중도	40.6	44.2	11.6	23.1
	진보	38.8	46.7	10.6	26.7
	무관심	44.6	40.2	9.8	24.8

5.2.3. 차별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

- 지난 1년 동안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있었는지 해당되는 것을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 차별 경험자의 11.9%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음

- 2019년 조사의 동일한 문항과 비교해 보면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응답이 25.7%에서 11.9%로 감소하고 정신·감정적 피해가 있다는 응답이 67.6%에서 78.0%로 증가하였음. 신체적 상해, 재산·금전상 손해도 근소한 차이지만 2020년 조사에 비해서 증가하였음. 인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차별도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면서 차별을 당했을 때 부정적 정서의 반응을 강하게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짐

[그림 5-6] 차별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복수응답) 변화



- 차별의 이유에 따라 입게 되는 피해나 불이익이 다를 것이므로 차별과 그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을 교차하여 어떤 차별의 이유가 어떤 피해나 불이익을 많이 초래하는지를 분석한 것이 <표 5-2>임
- 차별의 이유와 피해나 불이익을 교차시켰을 때 4가지의 피해나 불이익을 기준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비율이 높게 표출된 결합 형태는 ‘장애×신체적 상해’, ‘고용형태×재산·금전상 손해’, ‘양심·종교×사회적 명예 실추’, ‘양심×정신·감정적 피해’로 나타남

<표 5-2> 차별 이유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복수응답)

(단위: %)

구분	신체적 상해	재산·금전상 손해	사회적 명예 실추	정신·감정적 피해
차별피해있음	3.9	19.9	8.5	88.6
성별	4.7	17.9	8.8	91.7
임산, 출산	5.2	21.7	7.4	87.2
종교	6.6	13.7	14.3	95.3
사상, 정치	6.2	17.3	13.9	92.9
장애	12.0	19.3	7.2	92.4
연령	4.1	22.4	9.4	89.7
경제적 지위	4.9	24.9	11.6	88.2
고용형태	4.4	30.6	10.2	85.9
교육 수준, 학벌	5.1	25.7	11.5	89.2
인종, 민족	6.1	19.2	8.9	93.0
신체조건	6.5	19.9	11.5	94.3
혼인상황	6.8	22.8	13.7	90.1
가족상황	6.8	23.6	12.4	94.1
질병, 병력	8.5	23.3	8.7	91.4
출신지역	7.7	15.8	12.9	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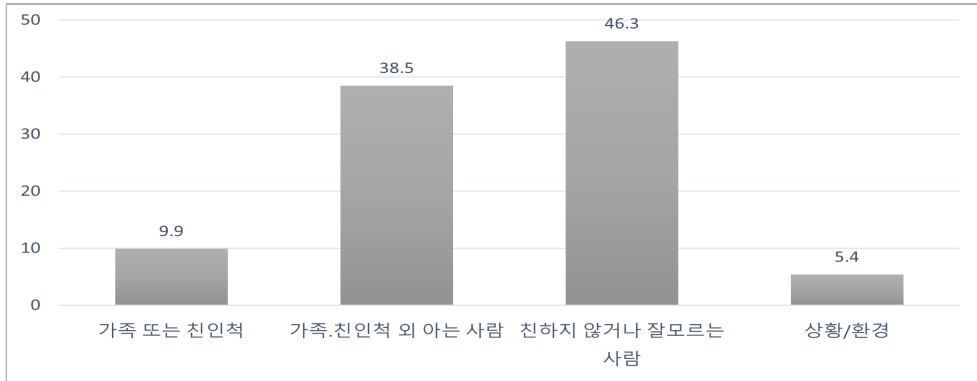
5.3. 차별의 가해자와 대응 방식

5.3.1. 차별의 가해자

- 지난 1년 동안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에게 차별한 가한 사람 또는 상황을 질문하여 1순위로 지목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가족 친인척' 9.9%, '가족 친인척 외 아는 사람' 38.5%, '친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 46.3%, '상황이나 환경' 5.4%로 나타났다. 친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한테서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

[그림 5-7] 차별을 가한 사람이나 상황(1순위)

(단위: %)



- 차별 가해자 1순위로 지목된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웃·단체회원(14.9%)→서비스업자·종사자(12.6%)→직장상사·상급자(12.1%)→고객(11.4%)→친구·동료(10.1%) 순으로 나타남
- 인권침해와 마찬가지로 이웃·단체회원, 서비스업자·종사자, 직장상사·상급자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며, 인권침해와 달리 고객, 친구·동료의 순위가 다소 위에 있음

<표 5-3> 차별을 가한 사람이나 상황-세부(1순위)

(단위: %)

차별 가해자	비율	
가족 또는 친인척	배우자	0.8
	(조)부모	2.1
	(손)자녀	0.4
	형제자매	1.7
	친인척	4.9
가족, 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	직장상사·상급자	12.1
	이웃·단체회원	14.9
	친구·동료	10.1
	교사·강사·교수	1.4
친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	공권력	8.2
	건물 소유주	3.6
	고객	11.4
	서비스업자·종사자	12.6
	거래처	9.9
	기타	0.6
	상황	5.4
상황	자연환경	4.2
	기타	1.2

- <표 5-4>는 차별의 이유에 따라 차별을 가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음. 차별의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된 '가족, 친인척 외 아는 사람'과 '친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으로 제한하였으며, '가족, 친인척 외 아는 사람'에서는 ① 이웃·단체회원, ② 직장상사·상급자, ③ 친구·동료가 선택되었음. '친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에서는 ④ 고객, ⑤ 서비스업·종사자, ⑥ 거래처가 선택되었음
- '가족, 친인척 외 아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가해자를 살펴보면, ① 이웃·단체회원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별의 이유는 장애(20.2%), 가족 상황(19.4%)이며, ② 직장상사·상급자로부터의 차별이 많은 이유는 혼인상황(16.8%), 임신·출산(15.6%), 고용형태(15.4%)이며, ③ 친구·동료의 차별이 많은 이유는 사상, 정치(13.3%), 출신 지역(12.4%) 등임
- '친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가해자를 살펴보면, ④ 고객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별 이유는 고용 형태(12.8%), 성별(12.7%)이며, ⑤ 서비스업·종사자로부터 차별을 당한 이유는 질병·병력(16.8%), 연령(15.3%)이며, ⑥ 거래처 사람이 차별한 이유는 고용 형태(13.6%), 경제적 지위(11.7%), 교육 수준·학벌(11.4%) 등으로 나타남

<표 5-4> 차별 이유에 따른 가해자(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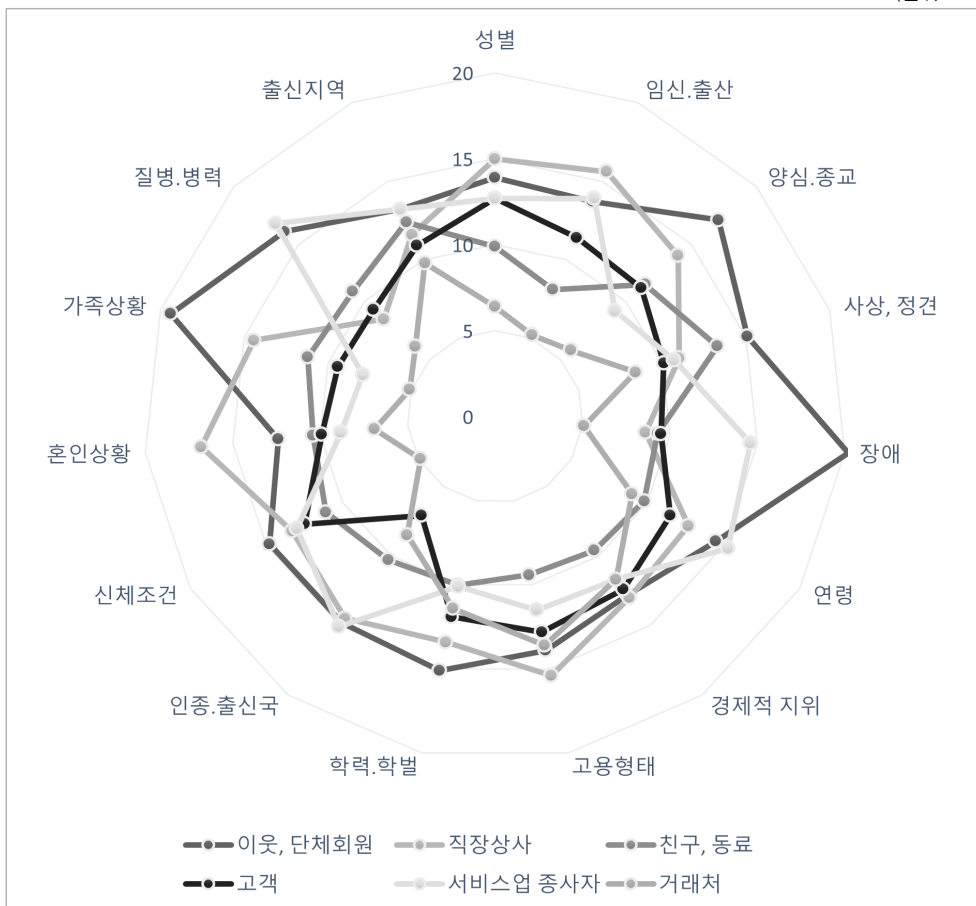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가족 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			친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		
	이웃· 단체회원	직장상사· 상급자	친구· 동료	고객	서비스업 종사자	거래처
성별	13.9	15.0	9.9	12.7	12.7	6.4
임신·출산	13.7	15.6	8.1	11.4	13.9	5.2
양심·종교	17.1	14.0	11.5	11.2	9.2	5.8
사상, 정치	15.1	11.0	13.3	10.1	10.7	8.4
장애	20.2	8.6	9.3	9.5	14.6	5.1
연령	14.5	12.7	9.8	11.5	15.3	9.0
경제적 지위	12.8	13.0	9.6	12.4	11.7	11.7
고용형태	13.9	15.4	9.4	12.8	11.5	13.6
교육 수준·학벌	15.1	13.4	10.0	11.9	10.1	11.4

구분	가족 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			친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		
	이웃· 단체회원	직장상사· 상급자	친구· 동료	고객	서비스업 종사자	거래처
인종. 출신국	14.8	14.5	10.3	7.1	15.1	8.5
신체조건	14.8	13.3	11.1	12.5	13.0	4.9
혼인상황	12.4	16.8	10.4	9.9	8.8	6.9
가족 상황	19.4	14.4	11.2	9.4	7.9	5.1
질병.병력	16.1	8.5	10.9	9.3	16.8	6.1
출신 지역	13.2	11.6	12.4	10.9	13.2	9.8

[그림 5-8] 차별 이유에 따른 가해자(복수응답)

(단위: %)



5.3.2. 차별에 대한 대응

- 차별을 당했을 때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대응 방법으로는 ‘가해자에게 시정 요구’,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 ‘인터넷·SNS에 알림’,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민간단체·전문가에 도움 요청’을 제시하였음. 또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도 포함되었음
 - 약 70%에 해당되는 피해자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약 30%의 피해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에 대응하였음
 - 가해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처도 약 15%를 차지하고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7.6%, 민간단체·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4.5%를 차지함

<표 5-5> 차별에 대한 대응(복수응답)

(단위: %)

대응 방법	응답률
가해자에게 시정 요구	15.3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	9.1
인터넷·SNS에 알림	2.5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7.6
민간단체·전문가에 도움 요청	4.5
아무런 행동하지 않음	69.6

-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4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2.6%에 달함
- 도움을 요청한 민간단체·전문가는 시민사회단체와 법률가가 각각 49.7%, 38.0%를 차지함

<표 5-6> 차별 경험 시 도움 요청 기관(복수응답)

(단위: %)

공공기관		민간단체·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	22.6	시민사회단체	49.7
청와대	9.8	법률가	38.0
검찰·경찰	29.0	언론기관	17.9
지방자치단체	44.5	기타	5.7
기타	4.2	-	

5.4. 취약집단의 차별 인식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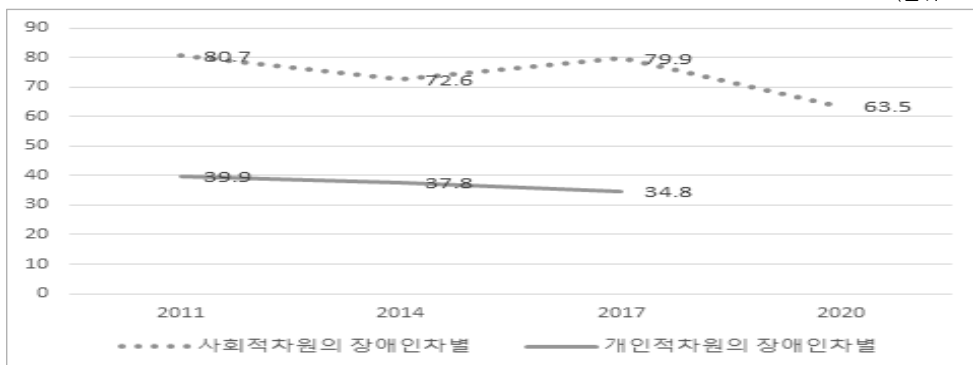
- 국가인권실태조사는 표본설계상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집단의 사례 수가 매우 적거나 아동·청소년은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충분한 사례 수를 확보한 취약집단 실태조사의 설문 문항 중에서 국가인권실태조사와 유사한 설문 문항을 골라 비교하여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향후 취약집단의 실태조사에 인권 관련 문항을 포함시키거나 기존의 문항을 개선하면 주요 취약집단의 인권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임
- 취약집단과의 차별 인식과 경험 비교를 위해 참고한 조사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임

5.4.1. 장애인의 차별 인식과 경험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인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보는 평가는 60%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2011년에 비해서 장애인 차별이 있다는 평가는 10% 이상 감소하였음. 개인의 차원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보는 평가는 3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 비해서 소폭 감소하였음

[그림 5-9] 장애인의 장애인차별 인식 변화

(단위: %)



* 자료: 장애인실태조사(2011, 2014, 2017, 2020)

-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은 2.1%로 나타났는데,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6%로 추정되므로, 장애인의 약 1/3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

- 음. 이는 「장애인실태조사」의 사회적 차별 항목을 통해 뒷받침됨
- 장애인 차별 중에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차별이 감소하지 않고 모든 학교급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별이 다소 감소하는 반면 유치원, 초중고 시기에는 차별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학교생활에서 교사로부터의 차별이 20%로 높고, 또래로부터의 차별은 무려 50%에 달하고 있으며,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된 장애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는데 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취업 기회가 제한되고, 취업 이후에도 소득, 동료관계, 승진 등에서의 차별로 인해 고용유지가 어려움
 - 의료기관, 정보통신, 지역사회 생활에서 차별 경험이 낮은 이유는 실제로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 정보통신 이용, 지역사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표 5-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경험 비율(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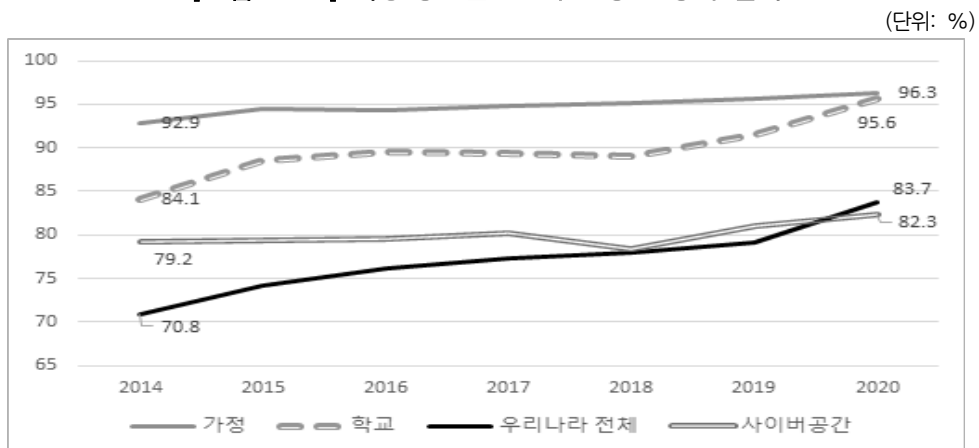
구분		2011	2014	2017
입학·전학	유치원	30.5	27.1	37.1
	초등학교	34.2	38.8	40.3
	중학교	29.8	31.6	33.0
	고등학교	29.3	25.1	26.0
	대학교	16.3	12.5	11.6
학교생활	교사로부터	21.4	18.7	19.8
	또래학생으로부터	49.2	47.1	50.7
	학부모로부터	15.1	13.7	18.4
결혼		26.5	16.4	17.9
취업		34.0	35.8	30.9
직장생활	소득	20.7	23.9	19.4
	동료와의 관계	16.9	20.0	17.6
	승진	14.2	13.3	12.4
운전면허 취득		14.3	10.2	8.9
보험 계약		53.7	45.4	36.4
의료기관 이용		3.7	4.6	4.0
정보통신 이용		2.0	1.9	1.9
지역사회 생활		7.8	7.3	8.1

* 자료: 장애인실태조사(2011, 2014, 2017)

5.4.2.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도 평가와 차별 경험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우리나라 전체, 가정, 학교, 사이버공간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아동·청소년인권이 존중된다는 평가는 2014년 70.8%에서 2020년 83.7%로 증가하였음.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비율은 2014년 84.1%에서 2020년 95.6%로 10% 이상 증가하여 아동·청소년인권의 개선은 주로 학교에서의 개선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됨
- 아동·청소년 인권이 가장 잘 존중되는 ‘가정’은 90%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인권은 약 80%에 머물러 있고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았음

[그림 5-10] 아동·청소년인권의 존중도 평가 변화



* 자료: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2014~2020)

- 아동·청소년이 성별, 학업, 연령, 외모/신체조건, 어려운 가정형편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매년 조사했는데, 빈곤을 이유로 한 차별 경험은 1.6%로 일반국민의 경험률 13.0%보다 낮지만 다른 이유의 차별 경험 비율은 일반국민보다 높은 수준임

<표 5-8-1> 아동·청소년의 차별 경험 비율

(단위: %)

차별 이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자/여자	19.5	21.4	24.9	28.8	28.2	23.3
공부를 못한다	24.0	25.8	28.2	28.6	27.6	22.6
나이가 어리다	21.0	21.3	20.4	21.3	28.1	24.5
외모·신체조건	19.6	21.6	23.0	24.2	28.9	20.9
어려운 가정형편	2.8	2.4	2.8	3.2	--	1.6

* 자료: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2014~2020)

<표 5-8-2> 성인의 차별 경험 비율

(단위: %)

차별 이유	2005	2011	2016	2019	2020
성별	5.1	10.2	8.7	13.9	11.8
학력/학벌	5.0	8.2	7.1	7.7	8.7
연령	7.1	12.0	7.3	13.6	12.9
외모·신체조건	2.5	5.3	4.6	6.6	5.7
경제적 지위	-	-	5.9	10.3	13.0

* 자료: 국가인권실태조사(2005~2020)

5.4.3. 노인의 차별 경험

- 노인의 차별 경험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의 차별은 2014년, 2017년에 비해 2020년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식당·커피숍 이용에서의 차별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일터에서의 차별도 2017년 21.4%에서 2020년 10.6%로 크게 줄었음
- 식당·커피숍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2014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노인의 차별 경험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표 5-9> 노인의 차별 경험 변화

(단위: %)

구분	2014	2017	2020
대중교통수단 이용	37.7	38.2	20.8
식당·커피숍 이용	9.6	5.3	16.1
판매시설 이용	17.7	10.8	14.7
공공기관 이용	11.0	7.4	8.7
의료시설 이용	14.4	10.1	12.7
일터	-	21.4	10.6
가족 내 의사결정	-	-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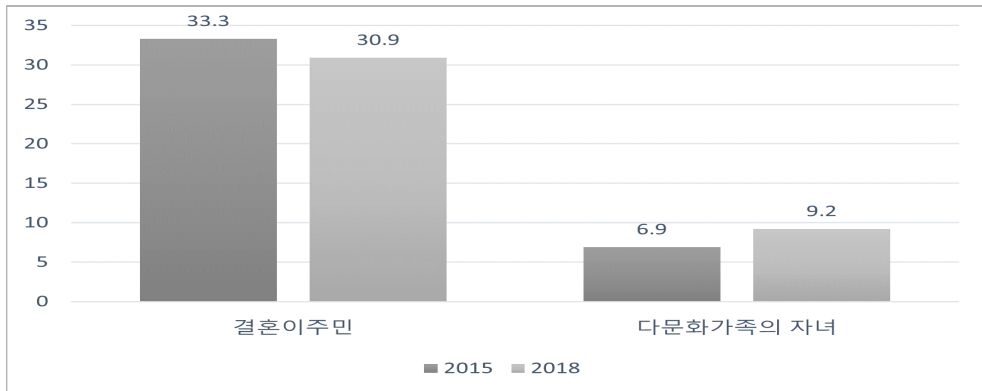
*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2017, 2020)

5.4.4. 이주민의 차별 경험

- 이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가 있으며, 이 중에서 차별 경험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분석했음
 - 2가지 조사는 조사대상자, 조사과정 등 조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결혼이주민(귀화자 포함)과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각각 차별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두 집단의 변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남
 - 결혼이주민(귀화자 포함)이 지난 1년간 사회적 차별을 받은 경험은 2015년 33.3%, 2018년 30.9%로 다소 감소했지만,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사회적 차별을 받은 경험은 2015년 6.9%, 2018년 9.2%로 증가했음
 - 다양한 장소에서의 차별 경험은 4점 척도(2012년, 2018년) 또는 5점 척도(2015년)로 질문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할 수 없음. 2012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차별 경험 비율이 감소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음

[그림 5-11]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 경험 변화

(단위: %)



* 자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5, 2018)

<표 5-10> 결혼이주민의 사회적 차별 경험 변화

(단위: %, 점)

구분		2012	2015	2018
지금까지 차별 경험 있음		41.3	40.7	-
지난 1년간 차별 경험 있음		-	33.3	30.9
장소별 차별경험	거리나 동네	1.73	2.13	1.50
	상점, 음식점, 은행 등	1.74	2.10	1.53
	공공기관(주민센터, 경찰서 등)	1.53	1.76	1.27
	직장, 일터	2.50	2.69	1.87
	자녀의 학교나 보육시설	1.50	1.82	1.36
	집(가족관계, 친척 등)	-	-	1.24

* 자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2, 2015, 2018)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도 차별의 경험을 질문하였는데, 외국인의 경우 차별받은 경험은 2018년 21.2%에서 2020년 20.3%로 별로 변화가 없음. 귀화허가자가 차별받은 경험은 2018년 23.1%에서 2020년 24.1%로 별로 변화가 없음
- 차별의 원인은 출신 국가가 약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5-11> 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변화

(단위: %)

구분	차별 경험	2018	2020
외국인	차별 받았음	21.2	20.3
차별 원인	출신 국가	60.9	61.1
	한국어 능력	25.7	24.9
	기타	13.4	14.0
귀화허가자	차별 받았음	23.1	24.1
차별 원인	출신 국가	64.5	63.2
	한국어 능력	26.4	28.2
	기타	10.1	8.6

*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18, 2020)

6 인권 관련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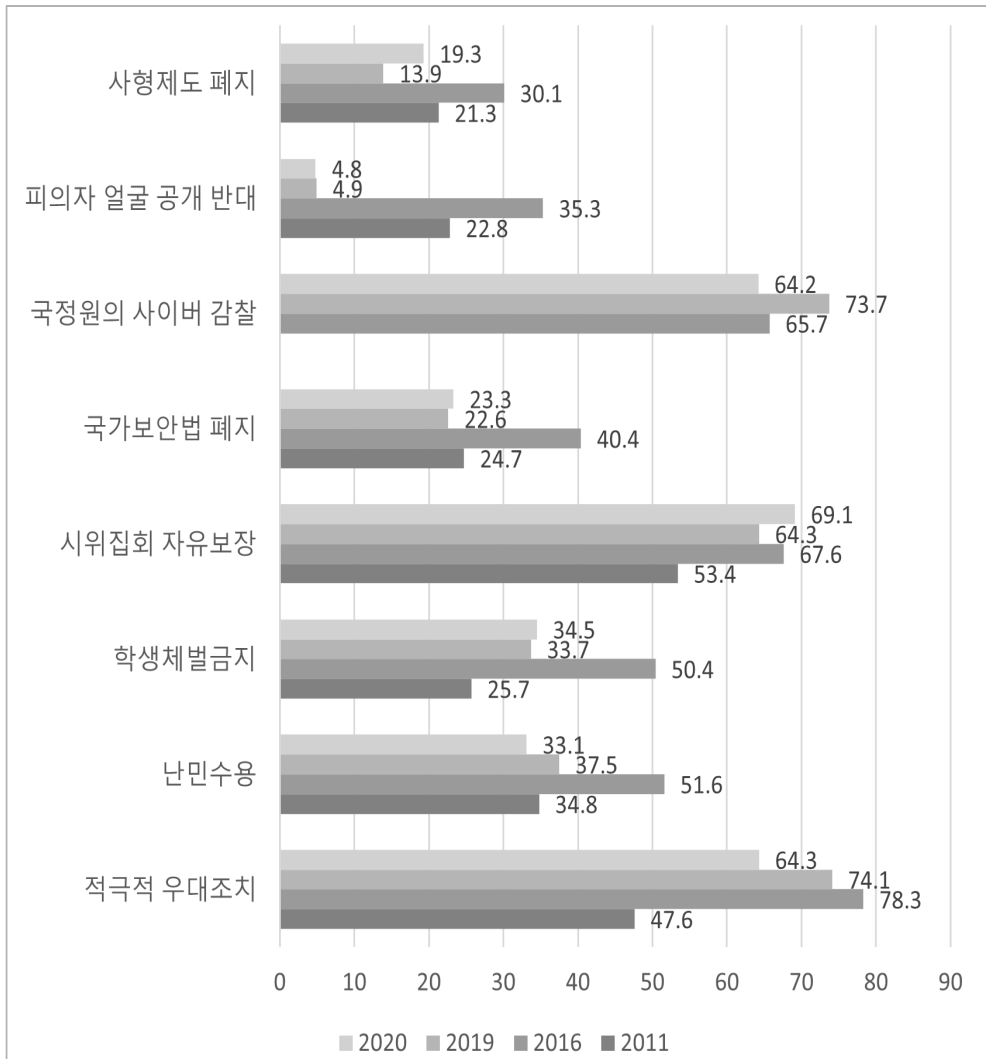
- 인권은 내용이 포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함.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경우도 있음. 또한 인권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그 내용이 바뀌기도 함. 인권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때문에 인권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고 이러한 의견들의 교류와 논의를 거쳐 인권 관련 정책과 제도가 생겨남. 그럼 현재 한국에서 인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의 분포는 어떤가,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함

6.1.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의 변화

- [그림 6-1]은 2010년 이후 한국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되고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의견 변화임
 -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은 19.3%로 2019년의 13.9%에 비해 증가했으나, 2011년 21.3%와 2016년 30.1%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한 반대는 2011년 22.8%, 2016년 35.3%에 비해 2019년 4.9%, 2020년 4.8%로 매우 낮아짐.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임
 - 개인 간 통신과 대화에 대한 정보 수집에 반대하는 의견이 64.2%로 2019년의 73.7%에 비해 낮아지기는 했지만 높은 비율을 보이며,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도 64.3%로 2019년의 74.2%에 비해 낮아짐
 - 정치적 권리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되는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은 69.1%로 2019년의 64.3%에 비해 증가함.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성은 23.3%로 2019년 22.6%에 비해 늘었지만 2011년 24.7%, 2016년 40.4%에 비해 줄었음
 - 학생체벌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은 34.5%로 2019년의 33.7%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2016년의 50.4%에 비해 적은 편임

[그림 6-1]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의 변화

(단위: %)



6.2. 시민적 정치적 권리 관련 쟁점

6.2.1. 사형제도 폐지

- 사형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폐지할지의 문제는 인권을 존중한다는 모든 사회에서 중요한 쟁점임.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배경 변수에 따라 비교함

<표 6-1> 사형제에 대한 배경 변수별 의견 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전체		3.27	1.02	
성별	남성	3.28	1.04	1.695
	여성	3.26	1.01	
연령대별	20~30대	3.32	0.96	6.220**
	40~50대	3.24	1.06	
	60대 이상	3.26	1.01	
교육 수준	고졸 이하	3.30	1.00	18.264***
	대재 이상	3.23	1.04	
직업	관리·전문직	3.24	1.06	1.693
	사무·판매·서비스직	3.30	1.01	
	농림생산직	3.26	1.05	
	경제활동안함	3.43	0.87	
정치 성향	보수	3.43	0.95	39.925***
	중도	3.27	1.01	
	진보	3.11	1.14	
	무관심	3.29	0.98	
종교	종교 있음	3.20	1.07	50.841***
	종교 없음	3.33	0.98	
인권교육	인권교육 받았음	3.19	1.01	19.636***
	인권교육 안받았음	3.29	1.07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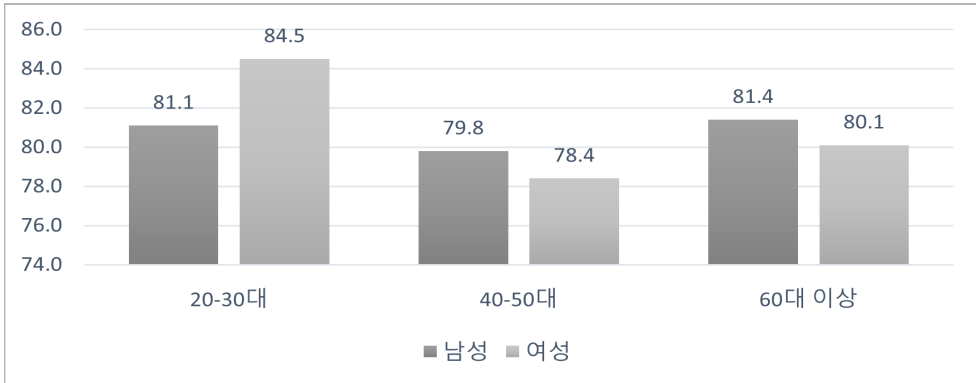
*주) '1점=적극 폐지', '4점=적극 유지'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사형제 유지에 찬성한다고 해석해야 함.

● [그림 6-2]는 사형제 유지를 찬성하는 비율을 성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것임

-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20~30대 여성으로 84.5%가 찬성하고 있음. 같은 연령대 남성에 비해 3.4% 높음
-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40~50대이며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별로 없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40~50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며 남성이 81.4%로 여성보다 1.3% 높음

[그림 6-2] 사형제 유지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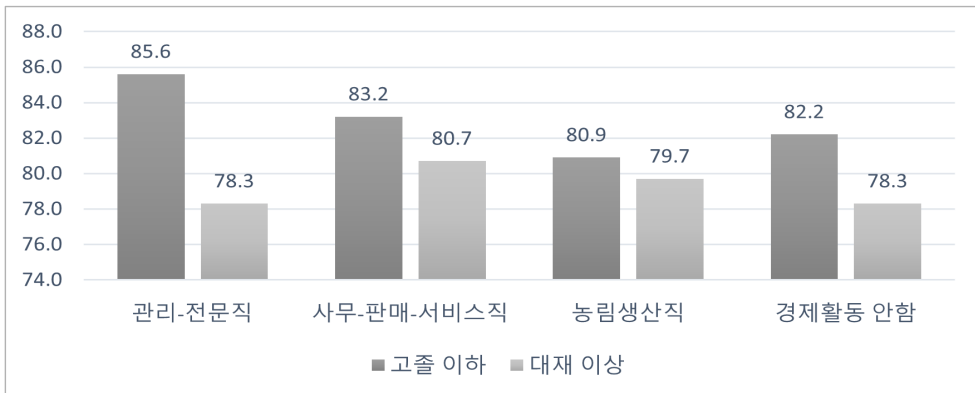
(단위: %)



- 사형제 유지를 찬성하는 비율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그림 6-3]에 제시되어 있음.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는 뚜렷함. 고등학교 졸업 관리·전문직이 사형제 유지 찬성 비율이 85.6%로 가장 높으며, 대학교 재학 이상 관리·전문직이 78.3%로 가장 낮음

[그림 6-3] 사형제 유지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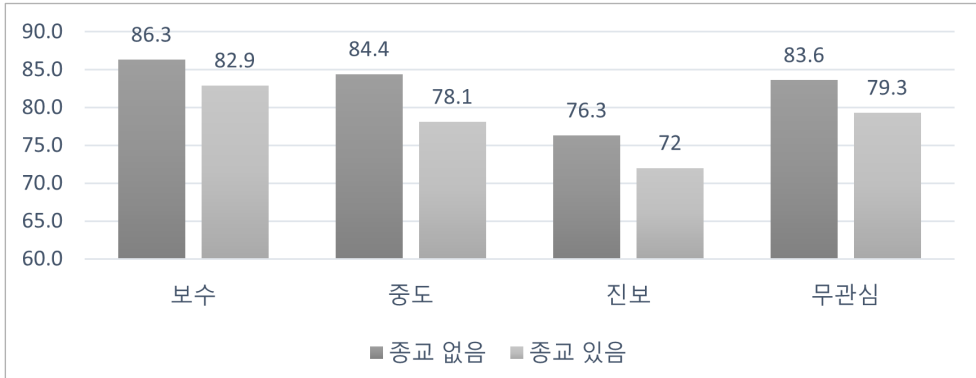


- 사형제 유지 찬성 비율을 정치, 사상적 배경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그림 6-4]에 제시되어 있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뚜렷하게 사형제 유지 찬성 비율이 낮으며, 정치 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낮음
- 사형제 유지에 가장 많이 찬성하는 집단은 종교를 갖지 않은 보수로 86.3%에 이르며, 가장 적게 찬성하는 집단은 종교를 가진 진보로 72%임.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집단은 대체로 중

도 성향과 비슷한 정도의 찬성 비율을 보임

[그림 6-4] 사형제 유지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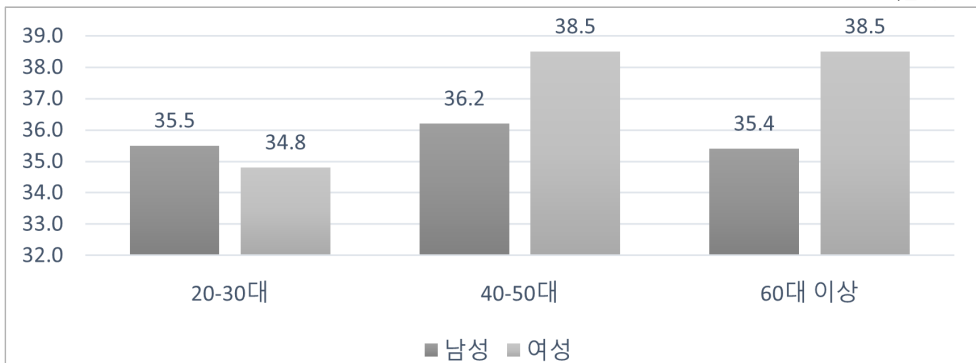
(단위: %)



-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은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 특히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대체할 형벌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도입할 것을 제시하는 경우 응답이 달라지기도 함. 사형제를 대체할 형벌(종신형 등)을 도입하는데 찬성 하는 비율을 배경 변수별로 비교한 결과가 [그림 6-5]부터 [그림 6-7]에 제시되어 있음
- [그림 6-5]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20~30대 남성과 여성은 대체형벌 도입에 대해 35%로 가장 낮은 찬성 비율을 보임. 남성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대체형벌 도입 찬성 비율의 차이가 별로 없는 반면, 여성은 40~50대와 60대 이상은 모두 38.5%로 20~30대 여성에 비해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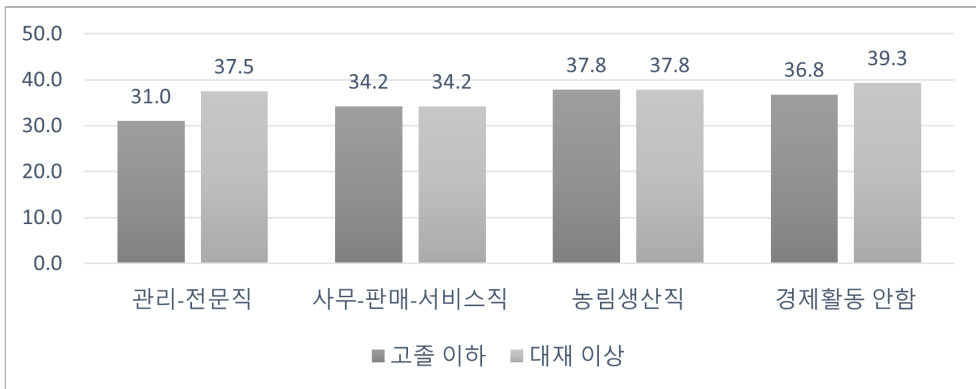
[그림 6-5] 사형제 폐지와 대체형벌 도입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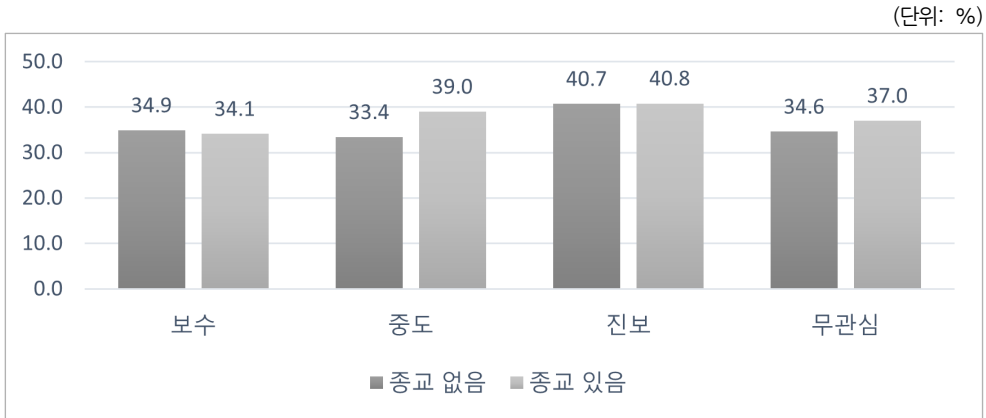
-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사형제 폐지와 대체 형벌 도입 찬성 비율을 비교한 [그림 6-6]에 따르면 교육 수준별로 차이가 뚜렷하며 특히 관리·전문직에서 차이가 두드러짐. 고등학교 졸업 관리·전문직의 경우 31%로 가장 낮으며, 대학교 재학 이상 관리·전문직의 경우 37.5%로 큰 차이를 보이며 높은 편임.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농림생산직, 사무·판매·서비스직, 관리·전문직으로 갈수록 찬성 비율이 낮으며, 대학교 재학 이상의 경우 사무·판매·서비스직과 농림생산직은 비슷한 수준이고 관리·전문직의 비율이 좀 더 높음
-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대체 형벌 도입에 더 많이 찬성하지만 농림생산직에서만 다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찬성 비율이 높는데 이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그림 6-6] 사형제 폐지와 대체 형벌 도입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단위: %)



- [그림 6-7]을 보면 종교를 가질 경우, 그리고 진보에 가까울수록 사형제 폐지와 대체형벌 도입 찬성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종교는 중도 집단에서 찬성 비율의 차이를 크게 만들. 정치적 무관심 집단은 종교가 없는 경우 보수나 중도와 비슷한 찬성 비율을 보이며, 종교가 있는 경우 이 두 집단의 중간 정도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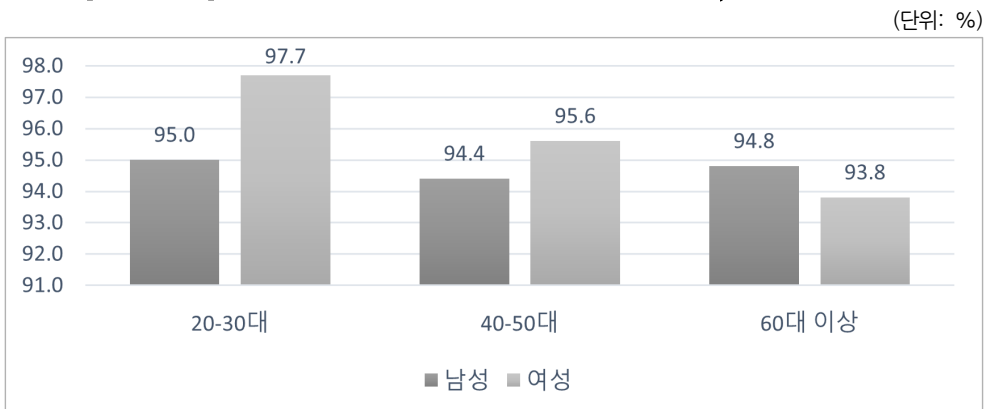
[그림 6-7] 사형제 폐지와 대체 형벌 도입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6.2.2.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 강력 혹은 흉악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의 배경변수별 비교가 [그림 6-8]부터 [그림 6-10]에 제시되어 있음
-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찬성 비율을 성별, 연령대별로 비교한 [그림 6-8]에 따르면, 20~30대 여성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아 97.7%에 이릅니다. 반면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40~50대 남성과 60대 이상 여성으로 94.4%와 93.8%입니다. 20~30대와 40~50대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찬성 비율이 높지만, 60대 이상에서는 남성의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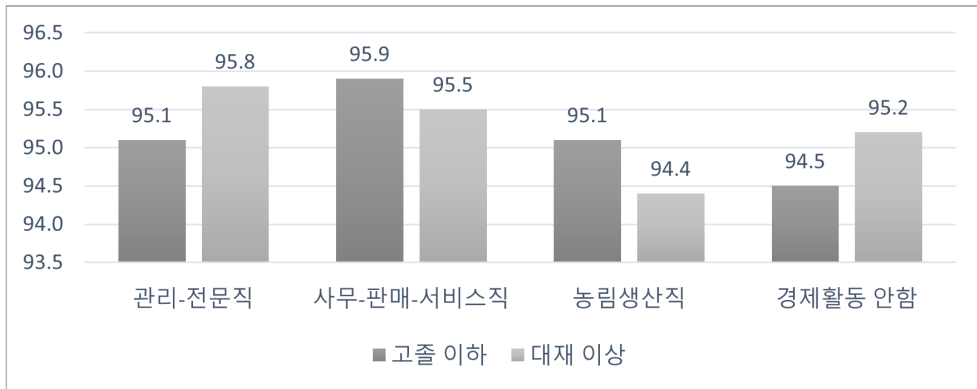
[그림 6-8]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에 대한 찬성 비율은 교육 수준 및 직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림 6-9]에 나타난 결과가 보여줌

[그림 6-9]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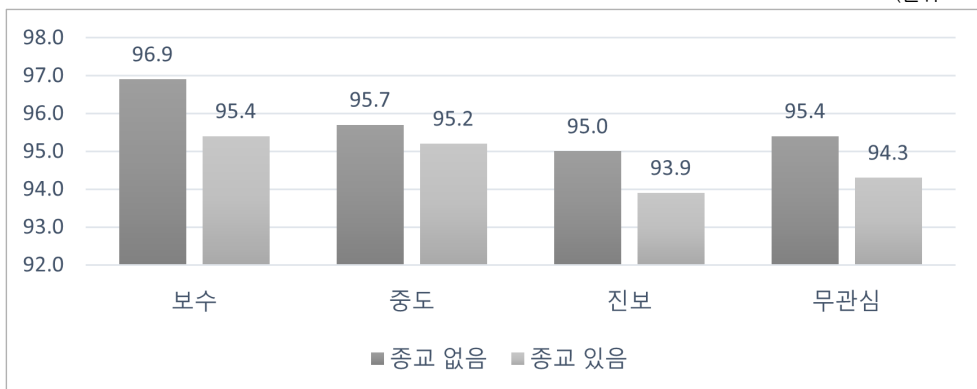
(단위: %)



- 종교 유무와 정치적 성향은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에 찬성하는 비율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 오는 것으로 [그림 6-10]에서 확인할 수 있음. 종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진보에 가까울수록 얼굴 공개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음. 하지만 전반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임. 정치적 무관심층은 중도와 대체로 유사한 찬성 비율을 보임

[그림 6-10]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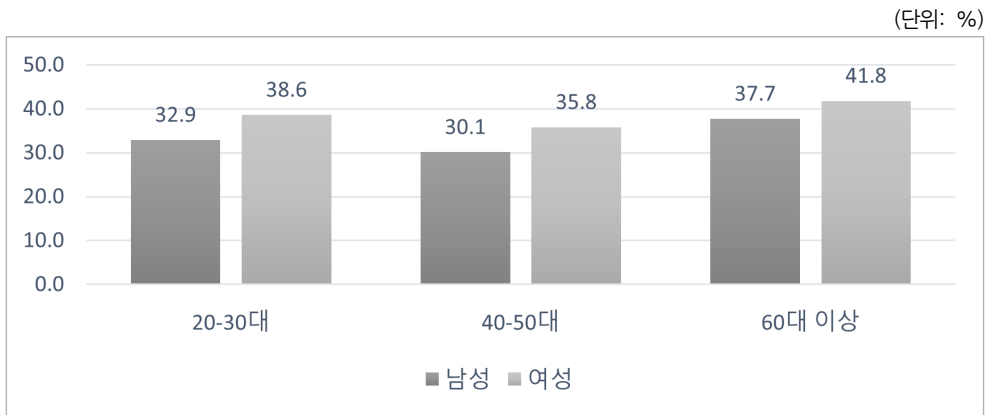
(단위: %)



6.2.3. 국가정보기관의 개인 간 대화 및 통신기록 수집, 조사

- 개인 간 대화나 통신기록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침해임.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그것이 다수의 안전을 위한다는 생각에서일 것임. 이에 대한 찬성 비율을 성별, 연령대별로 비교한 [그림 6-11]에 따르면, 여성일수록,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40~50대 남성으로 30.1%인 반면, 가장 높은 것은 60대 이상 여성으로 41.8%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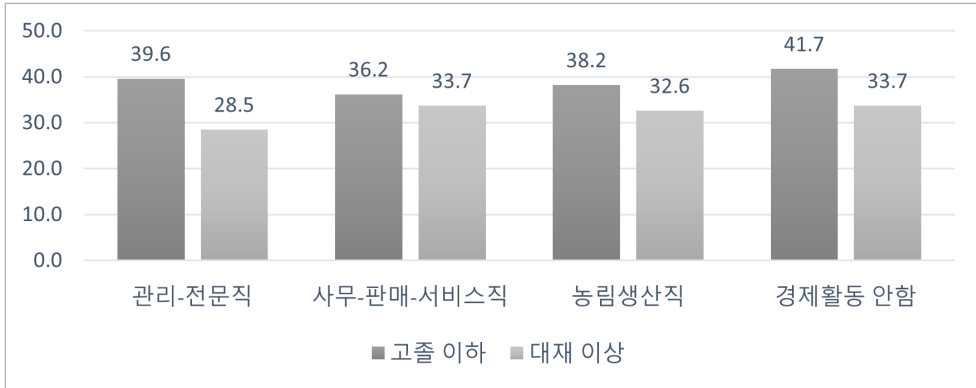
[그림 6-11] 국가정보기관의 개인 간 대화 및 통신 조사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 개인 간 대화 및 통신의 조사와 수집을 찬성하는 비율은 교육 수준과 직업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음. [그림 6-12]을 보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낮았음
 - 직업별 차이는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른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사무, 판매, 서비스직의 찬성 비율이 가장 낮고 관리·전문직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대학교 재학 이상의 경우 사무, 판매, 서비스직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고, 관리·전문직의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6-12] 국가정보기관의 개인 간 대화 및 통신 조사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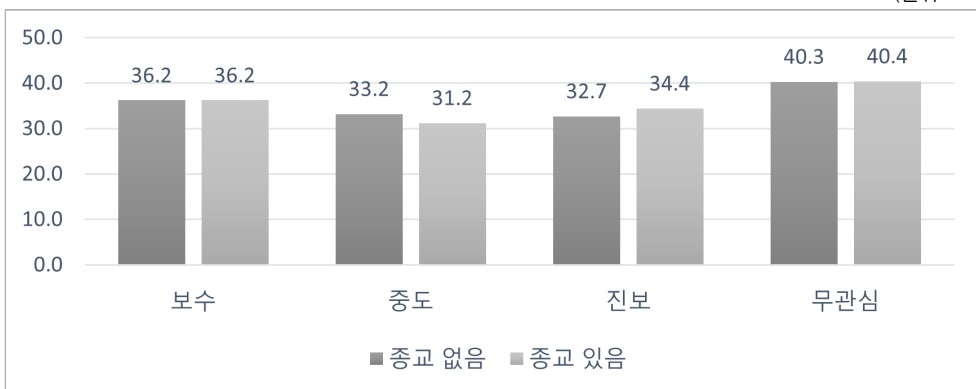
(단위: %)



- 개인 간 대화와 통신의 조사와 수집을 허용하지는 찬성 비율은 종교 유무와 정치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임. 하지만 차이의 양상은 다소 복잡함. 종교의 경우 보수와 중도에서는 종교를 가진 경우 찬성 비율이 더 낮았으며, 진보와 무관심층에서는 종교를 가진 경우 찬성 비율이 더 높았음. 또한 정치 성향별로는 다른 경우와 달리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 진보가 아닌 중도층이었으며,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인 것은 정치적 무관심층이었음

[그림 6-13] 국가정보기관의 개인간 대화 및 통신 조사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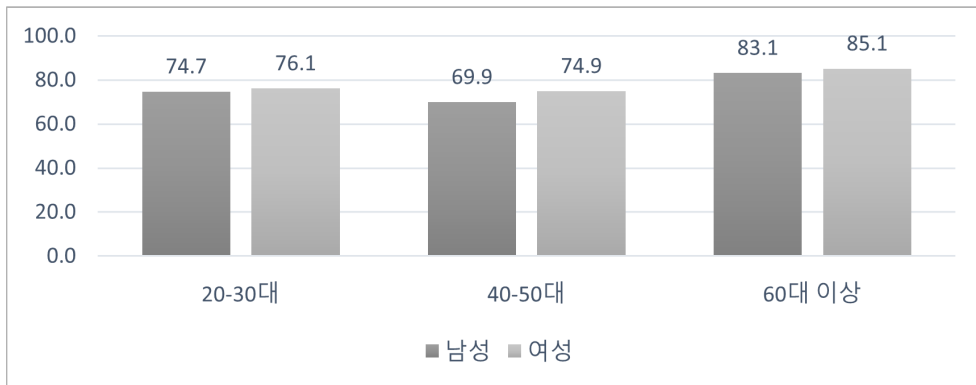


6.2.4.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역시 사형제와 마찬가지로 인권침해적 소지를 가진 법과 제도로 오랜 쟁점이 되어왔음.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은 성별,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임. [그림 6-14]를 보면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40~50대 남성으로 69.9%임. 반면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60대 이상 여성으로 85.1%임.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국가보안법 유지를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음. 한편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직선보다 U자형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그림 6-14] 국가보안법 유지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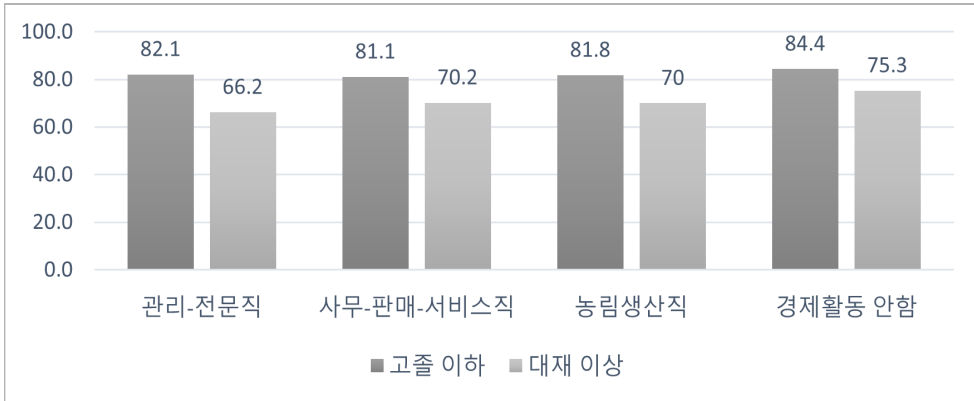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6-15]에서 보듯이 국가보안법 유지 찬성 비율은 교육 수준과 직업군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특히 교육 수준별 차이가 두드러져서 대학교 재학 이상은 모든 직업군에서 국가보안법 유지를 찬성하는 비율이 10%p 가까이 낮음. 직업별 차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교 재학 이상 모두 존재하며 관리 전문직에서 가장 낮은데, 특히 대학교 재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직업별 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6-15] 국가보안법 유지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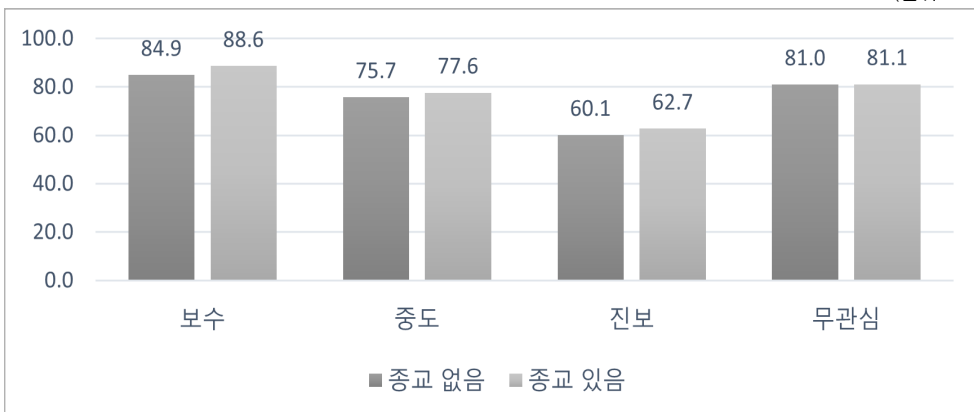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6-16]은 국가보안법 유지를 찬성하는 비율의 정치, 사상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보여 줌.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종교의 유무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에 비해서는 20%p 이상, 중도에 비해서는 10%p 이상 찬성 비율이 높음. 하지만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도 절반 이상은 국가보안법 유지에 찬성하는 점도 주목할 만함.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응답자는 중도와 보수의 중간에 가까운 비율을 보임

[그림 6-16] 국가보안법 유지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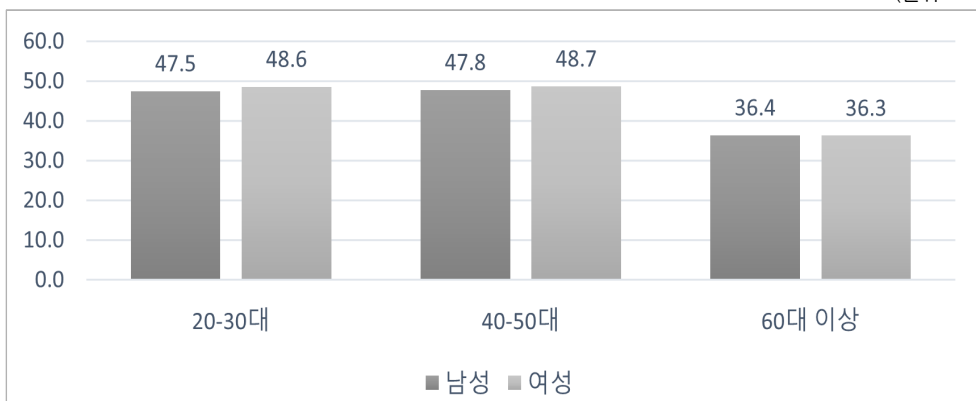
(단위: %)



- 사형제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도 유지 찬성 비율이 높은 편인데 대체 법률을 적용할지 여부를 물으면 의견의 분포가 다소 바뀜.
- 국가보안법을 대신해서 형법이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의 성별, 연령대 별 비교를 보여주는 [그림 6-17]을 보면, 이 그림에서는 성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전과 60대 이후 간에 10%p 가까운 차이가 있으며, 60대 이후 연령대는 이전 연령대에 비해 찬성 비율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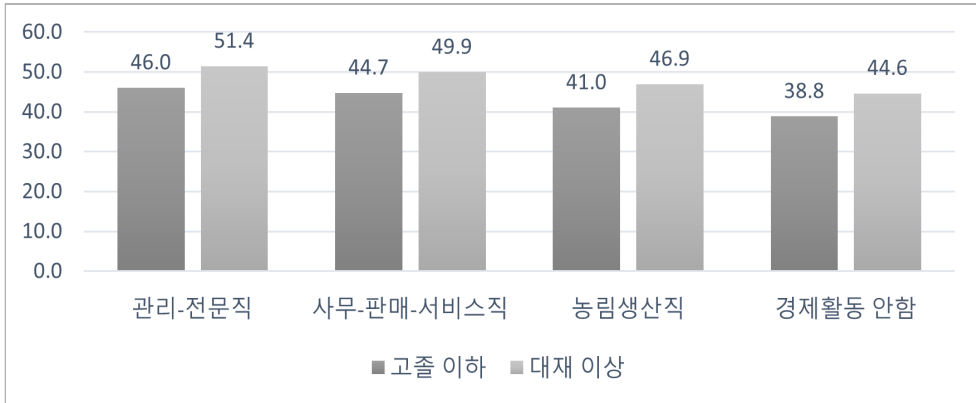
[그림 6-17] 국가보안법 대체 법률 적용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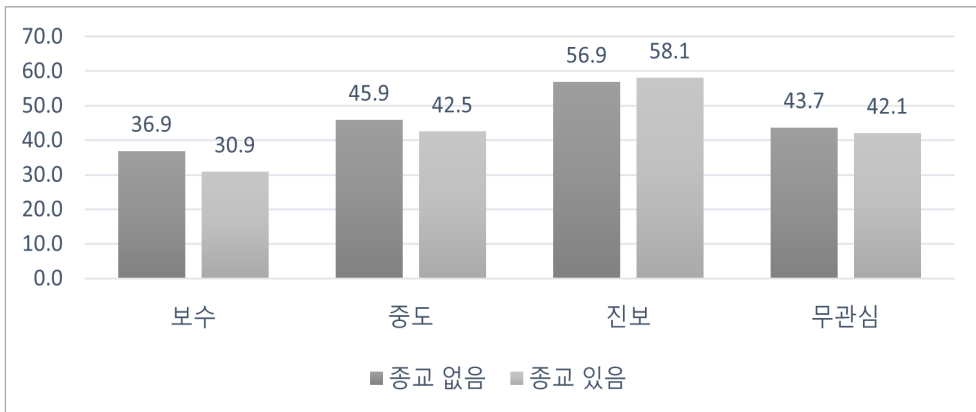
- [그림 6-18]은 국가보안법 대신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를 함.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모든 직업에서 5%p 이상 대체 법률 적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직, 농림생산직의 순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2~3%p씩 줄어들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은퇴자나 주부는 가장 낮은 찬성 비율을 보임

[그림 6-18] 국가보안법 대체 법률 적용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단위: %)



- 국가보안법 대신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찬성 비율은 종교 유무와 정치 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정치 성향에 따라 보수, 중도, 진보의 순서대로 각각 10%p 가량 찬성 비율이 증가하며, 정치적 무관심층은 중도와 비슷한 비율을 보임. 종교의 유무는 진보 성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보수 및 중도 성향에서는 종교를 가질 경우 찬성 비율이 낮아지는 유의한 차이를 보임

[그림 6-19] 국가보안법 대체 법률 적용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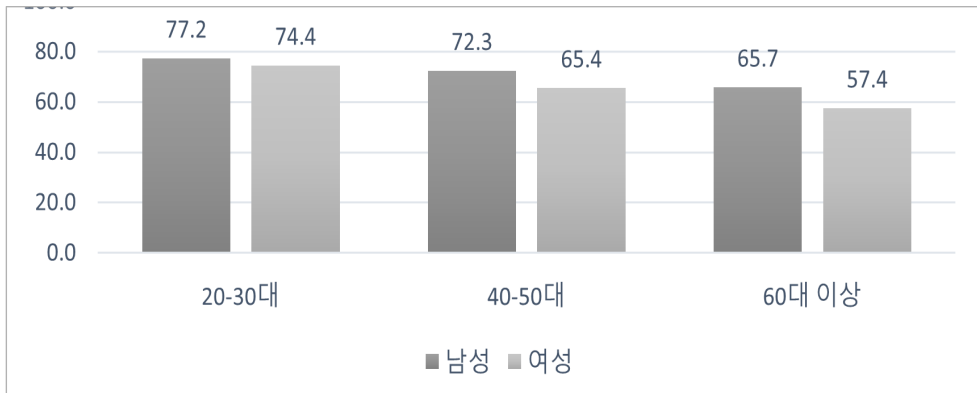


6.2.5. 집회와 시위의 자유

-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중요한 일부임.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임. 또한 성별 연령대별로 찬성 비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찬성 비율은 5%p 이상씩 낮아짐. 또한 성별 비교를 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대에 따라 3~7%p씩 낮은 찬성 비율을 보임

[그림 6-20]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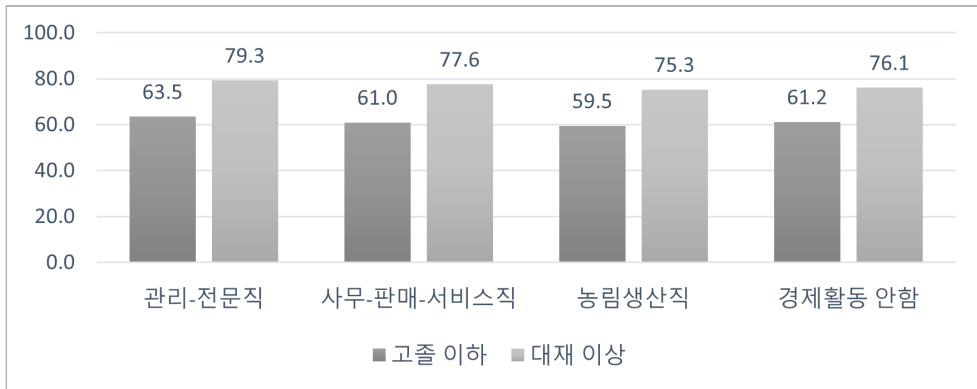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6-21]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에 대한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를 보여줌. 찬성 비율은 교육 수준에 따라 모든 직업군에서 15%p가 넘는 차이를 보임. 대학교 재학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찬성 비율이 크게 높음. 직업별 비교에서는 관리·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직, 농림생산직의 순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2~3%p씩 줄어들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은퇴자나 주부는 사무·판매·서비스직과 비슷한 찬성 비율을 보임

[그림 6-21]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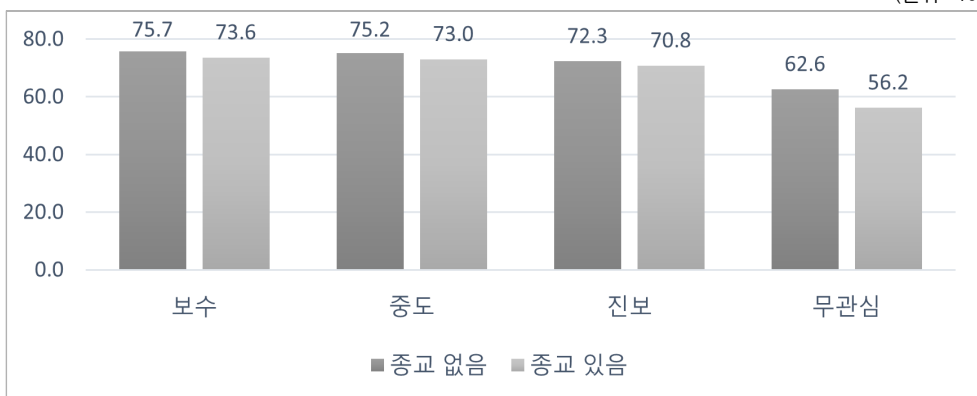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6-22]는 집회와 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정치, 사상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보여줌.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자유권 보장에 더 적극적인 진보 성향의 찬성 비율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더 낮다는 것임. 아마도 2020년 여름 보수세력의 8.15 집회 등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음. 보수 성향은 중도 성향과 비슷한 수준이며, 정치적 무관심층이 10%p 가까운 큰 차이를 보이며 가장 낮은 찬성 비율을 보임. 종교가 있는 경우 찬성 비율이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낮지만 큰 차이는 아님

[그림 6-22]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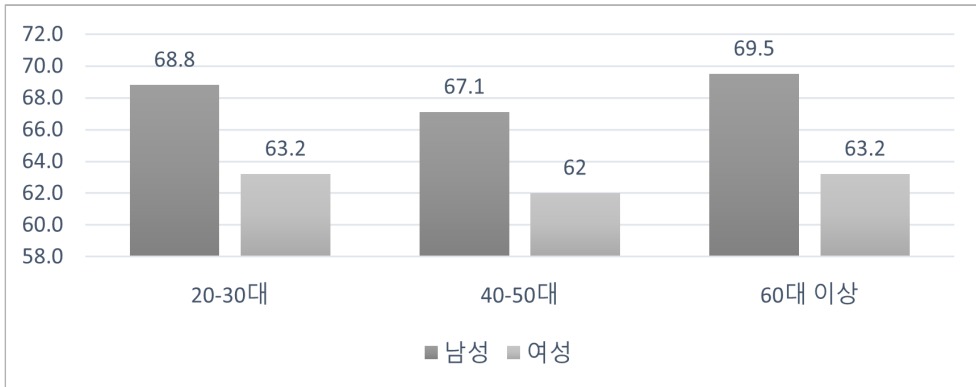


6.2.6. 학생 차별

- [그림 6-23]에 나타난 학생 차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 비율은 절반이 넘어 높은 편인데 연령대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성별 차이는 유의하고 큰 편임.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4~7%p 가까이 낮은 찬성을 보임

[그림 6-23] 학생 차별 허용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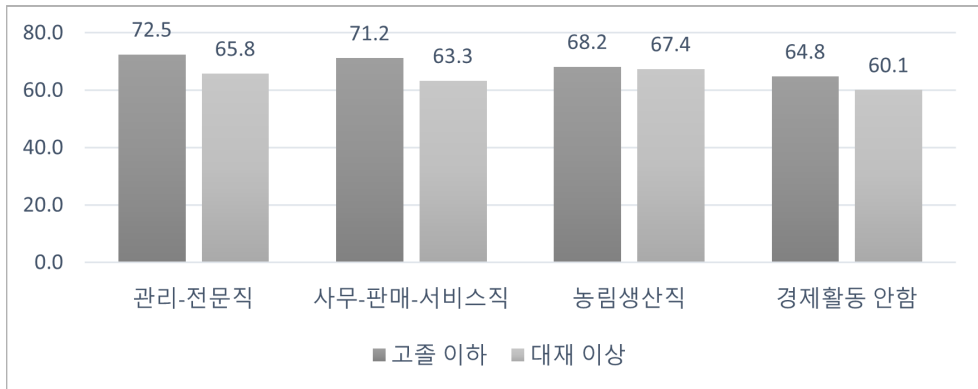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6-24]를 보면 학생차별을 허용해야 한다는 비율의 분포는 교육 수준과 직업의 상호 작용에 의해 복잡한 양상을 보임.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농림생산직에 비해 사무·판매·서비스직이, 그리고 그에 비해 관리·전문직에서 허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대학교 재학 이상에서는 관리·전문직과 사무·판매·서비스직에 비해 농림생산직에서 허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경제활동을 안하는 집단에서는 허용 비율이 가장 낮으며 대학교 재학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에 비해 낮음

[그림 6-24] 학생 체벌 허용 비율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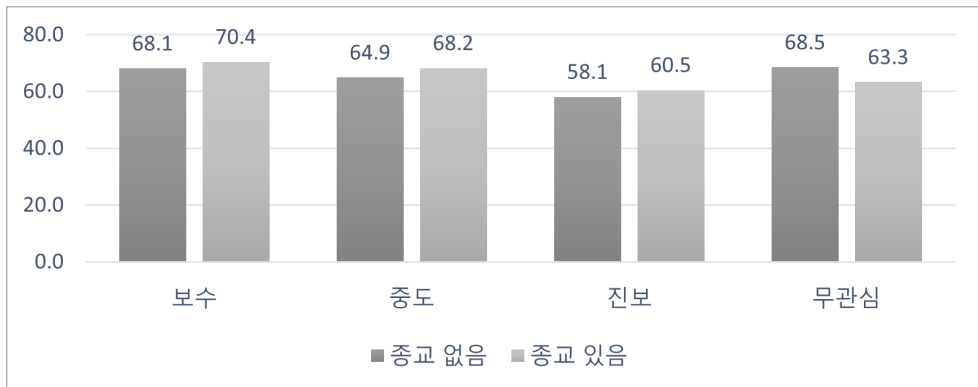
(단위: %)



- 학생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의 분포는 [그림 6-25]에서 보듯이 정치 성향과 종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보수, 중도, 진보의 순서대로 허용하는 비율이 3~7%p씩 낮아지며, 종교가 있는 사람은 무종교인 사람보다 허용 비율이 2~3%p씩 높음. 정치적 무관심층은 중도 성향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허용비율이 반대로 낮다는 차이를 보임.

[그림 6-25] 학생 체벌 허용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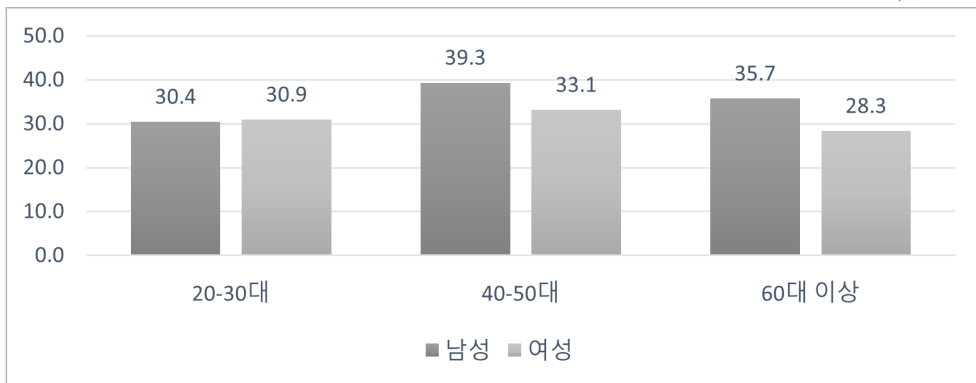


6.2.7. 난민

- 한국은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되었지만,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18년 제주도 예멘난민 집단 신청 이후임. 난민을 가급적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인권 관련 중요한 쟁점임
- [그림 6-26]은 난민 허용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를 보여줌.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진보적 성향에 가까운 40~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성별 차이는 20~30대에서는 없으며, 40~50대에서는 6%p 차이를 보이며 여성들의 허용 비율이 남성보다 낮음. 60대 이상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허용 비율을 보임.

[그림 6-26] 난민 허용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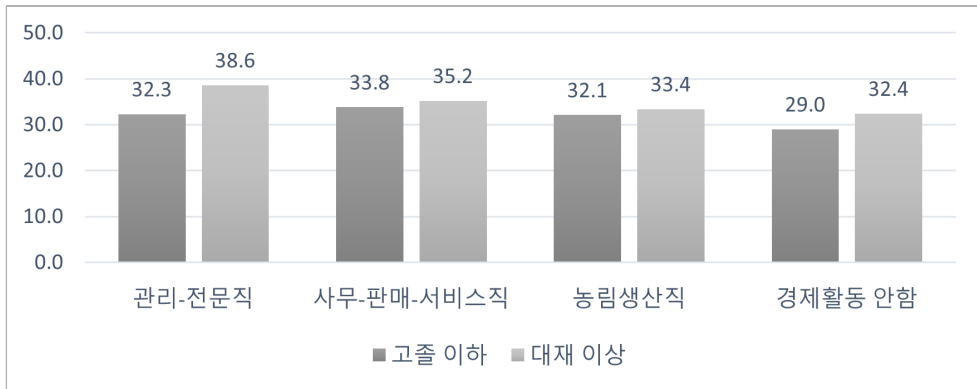
(단위: %)



- 난민 허용 비율은 교육 수준과 직업에 따라 크지는 않지만 일관된 차이를 보임.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에서 사무·판매·서비스직, 농림생산직으로 갈수록 찬성 비율이 낮으며, 경제활동을 안하는 집단은 가장 낮은 허용 비율을 보임. 대학교 재학 이상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일관되게 높은 허용 비율을 보임

[그림 6-27] 난민 허용 비율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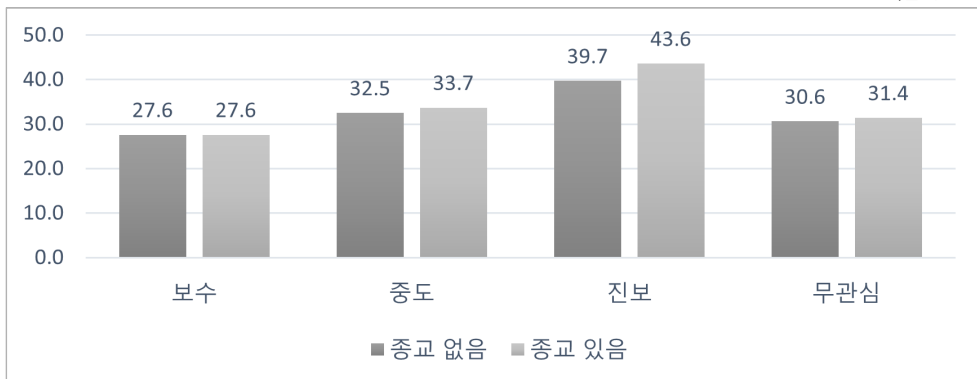
(단위: %)



- 난민 허용 비율은 정치 성향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임. 보수에 비해 중도, 그에 비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각각 4~8%p 더 높은 허용 비율을 보임. 정치적 무관심층은 중도와 비슷한 비율을 보임. 종교를 가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관되게 높은 난민 허용 비율을 보이는데 그 차이는 진보 성향에서 가장 큼

[그림 6-28] 난민 허용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단위: %)



6.2.8. 적극적 우대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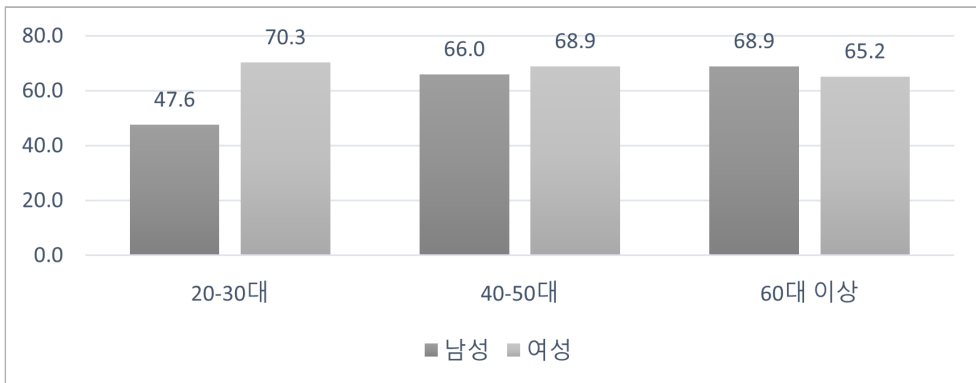
- 약자들이 구조적 차별 때문에 출발선에서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적극적 우대조치임. 이것은 단순히 현재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누적

된 차별의 결과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기 위한 것임

-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해 여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은 것에 대해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가 [그림 6-29]에 제시되어 있음.
- 적극적 우대조치의 대상이기도 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 조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성별 차이는 20~30대에서만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40~50대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줄어들며, 60대 이상에서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이 남성의 찬성 비율이 더 높은 양상을 보임
- 20~30대 여성의 70.3%가 적극적 우대조치를 찬성하는 반면 같은 연령대 남성에서 찬성 비율은 47.6%에 그쳤음. 20~30대 남성은 전체 성별, 연령대별 집단 중에서 예외적으로 낮은 찬성 비율을 보임

[그림 6-29]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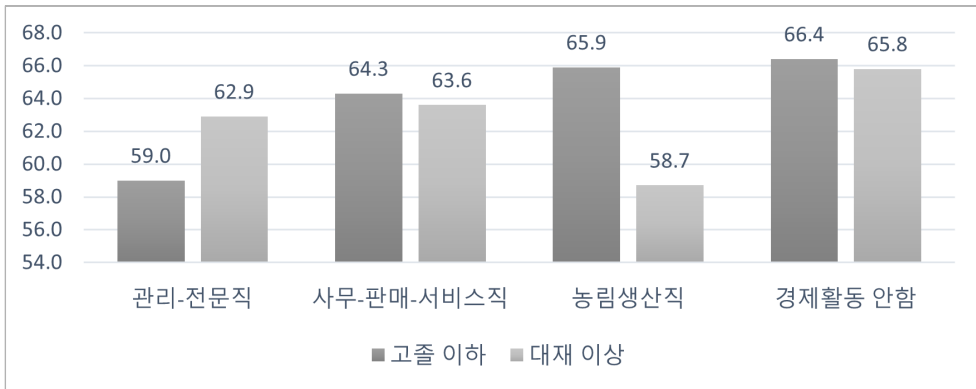
(단위: %)



-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찬성의 교육 수준별, 직업별 차이는 복잡함. 직업별로 찬성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경제활동을 안하는 집단에서 가장 높음. 이는 여성인 가정주부의 높은 찬성 비율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교육 수준별 차이는 관리·전문직의 경우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찬성 비율이 높으며, 반대로 농림생산직에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남

[그림 6-30]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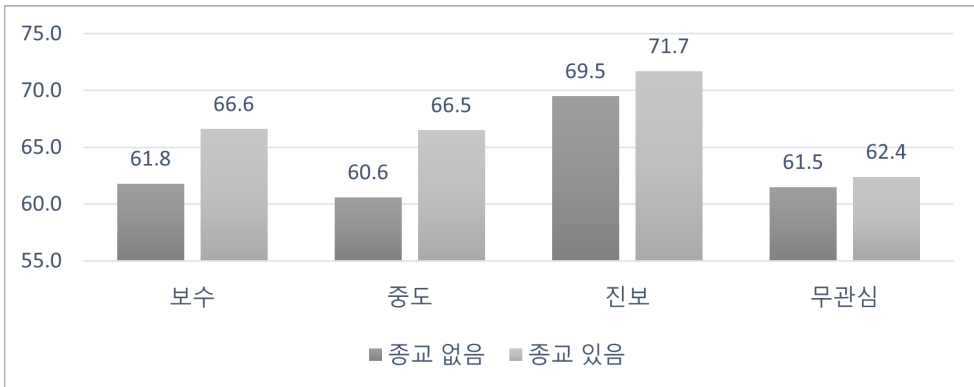
(단위: %)



-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찬성 비율은 종교 유무와 정치 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종교를 지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보수와 중도, 무관심 집단이 비슷한 찬성 비율을 보이는 반면, 진보 성향 집단은 5%p가 넘는 차이를 보이며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찬성 비율을 보임

[그림 6-31]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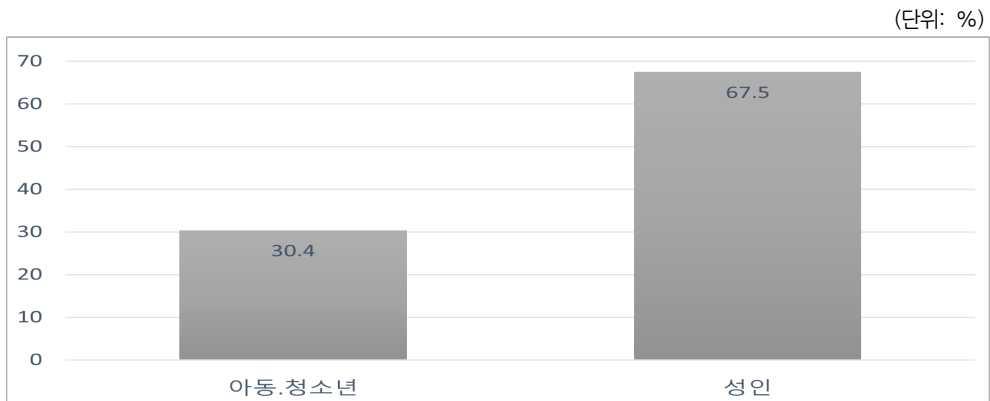


6.3.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쟁점

6.3.1. 독자적 판단과 결정 능력

-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이지만 아동·청소년은 인권 측면에서 취약집단일 가능성이 높음. 그것은 정신, 신체적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동·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동일한 권리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한국은 이러한 일반적 조건에 유교적 '장유유서'의 전통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아동과 청소년이 결정 능력이 부족해서 부모나 교사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 비율을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비교한 것이 [그림 6-32]임. 아동·청소년의 30.4%만이 부모와 교사 생각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성인은 그 두 배가 넘는 67.5%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아동·청소년의 의견은 2020년 실시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동일한 문항을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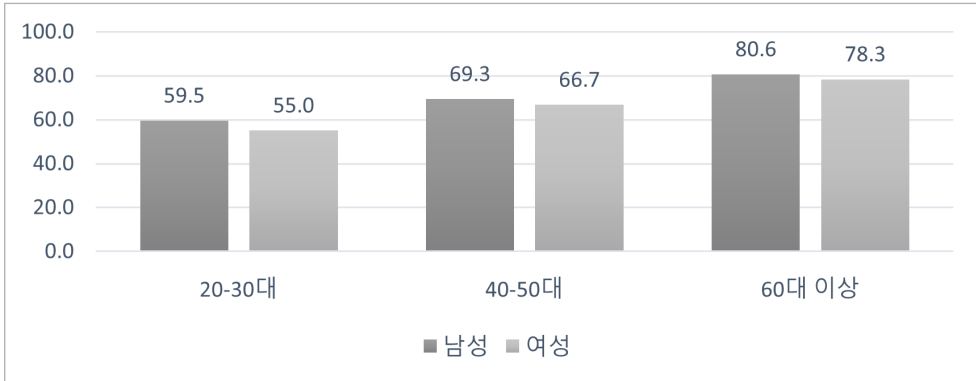
[그림 6-32] 아동·청소년의 부모, 교사 의견 추종 찬성 비율의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 아동·청소년이 부모나 교사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6-33]임.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령대에 따라 찬성 비율은 큰 차이를 보임. 각 연령대별로 올라갈수록 10%p씩 찬성 비율이 높아짐. 하지만 20~30대에서도 아동·청소년에 비해 두배 가까운 비율로 찬성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함. 한편 성별 비교에서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찬성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낮으며, 특히 그 차이는 20~30대에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6-33] 아동·청소년의 부모, 교사 의견 추종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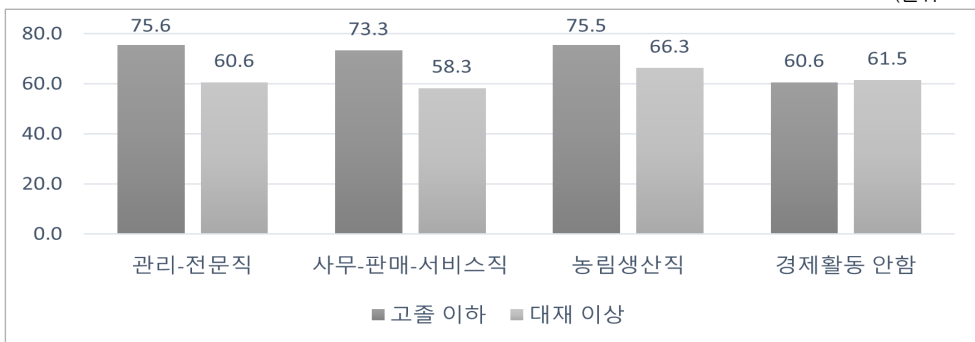
(단위: %)



- 아동·청소년이 부모나 교사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 비율을 교육 수준별, 직업별로 살펴보면, 교육 수준별 차이가 모든 직업군에서 크게 나타남. [그림 6-34]를 보면 직업군별로 대학교 재학 이상 교육 수준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10~15%p 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남. 직업군을 비교하면 찬성 비율이 비경제활동, 농림생산직, 사무·판매·서비스직, 관리·전문직의 순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6-34] 아동·청소년의 부모, 교사 의견 추종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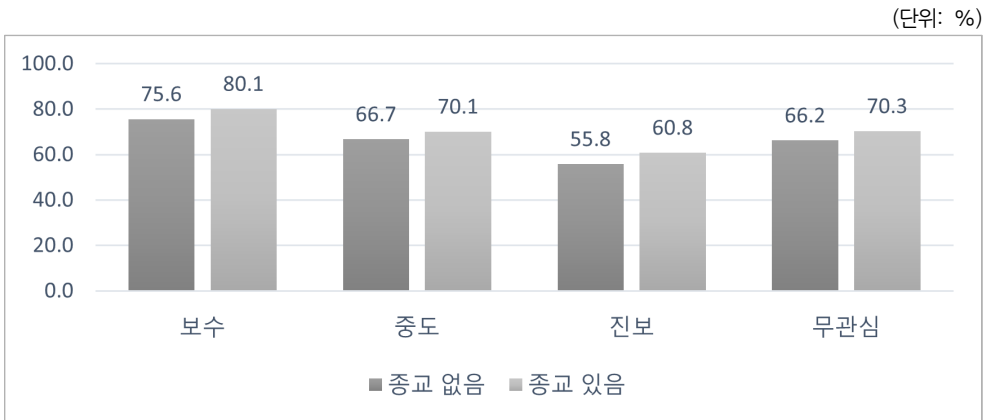
(단위: %)



- 아동·청소년이 부모나 교사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 비율은 종교 유무와 정치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 [그림 6-35]를 보면 종교를 가진 집단은 그렇지 않

은 집단에 비해 찬성 비율이 2~5%p씩 높았으며, 보수에서 중도, 진보로 갈수록 7~10%p씩 찬성 비율이 낮아짐. 무관심층은 대체로 중도 집단과 비슷한 찬성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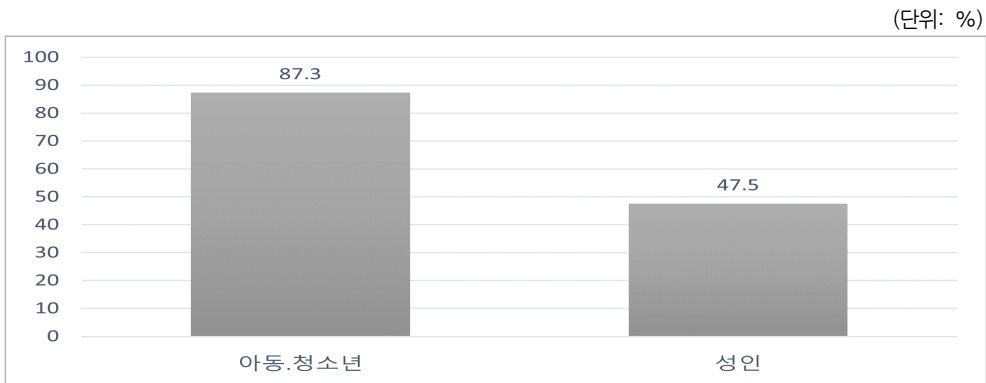
[그림 6-35] 아동·청소년의 부모, 교사 의견 추종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6.3.2. 사회, 정치문제 관심과 참여

- 아동·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 비율 역시 아동·청소년과 성인 간에 큰 차이를 보임. [그림 6-36]을 보면 이 주장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대다수인 87.3%가 찬성하는 반면, 성인에서는 절반이 채 못 되는 47.5%만이 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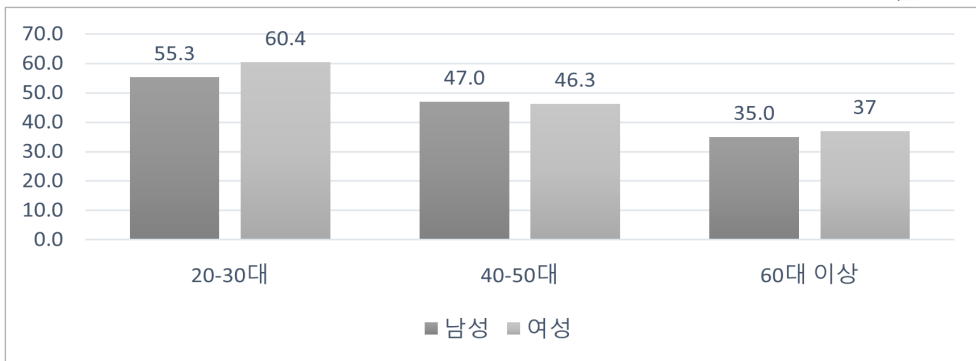
[그림 6-36]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찬성 비율의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찬성하는 비율은 [성별,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찬성 비율이 7~15%p가 낮아지고 있음. 성별 차이는 연령대에 따라 상당히 다른데, 가장 차이가 큰 것은 20~30대 집단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6%p 더 높으며, 40~50대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60대 이상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음

[그림 6-37]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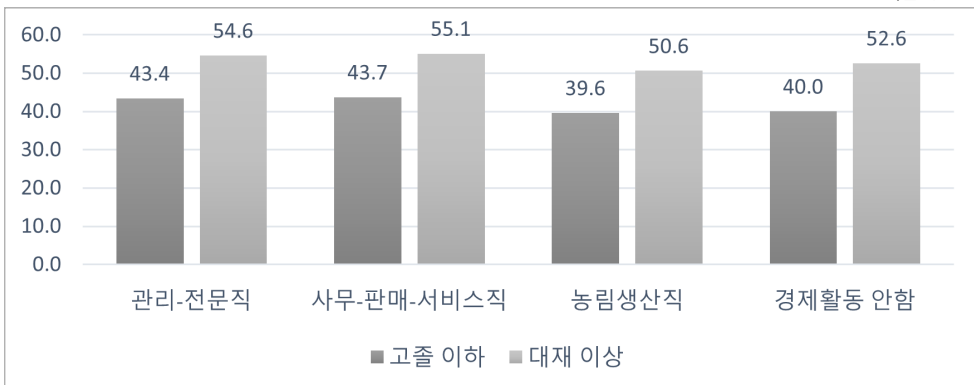
(단위: %)



-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찬성 비율은 교육 수준별, 직업별로도 큰 차이를 보임. 대학교 재학 이상 교육 수준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직업군에 따라 9~14%p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남. 직업군별 차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교육 수준자에서 더 두드러짐. 관리·전문직에서 사무·판매·서비스직, 농림생산직으로 갈수록 2~3%p씩 찬성 비율이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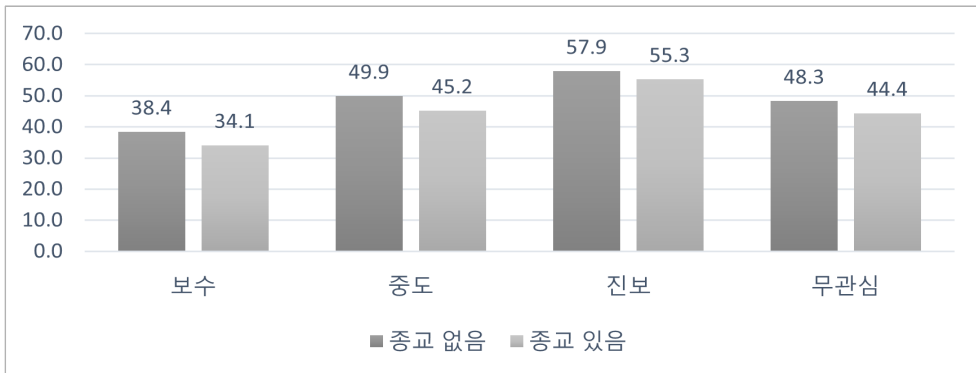
[그림 6-38]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단위: %)



-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찬성은 종교 유무와 정치 성향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임. [그림 6-39]를 보면 보수에서 중도, 진보로 갈수록 찬성 비율이 7~10%p씩 높아짐. 정치적 무관심층은 중도집단과 비슷한 찬성 비율을 보임. 종교가 있는 경우 모든 정치 성향에서 무종교 집단보다 찬성 비율이 낮는데 그 차이는 진보에 비해 보수와 중도 집단에서 더 커서 5%p씩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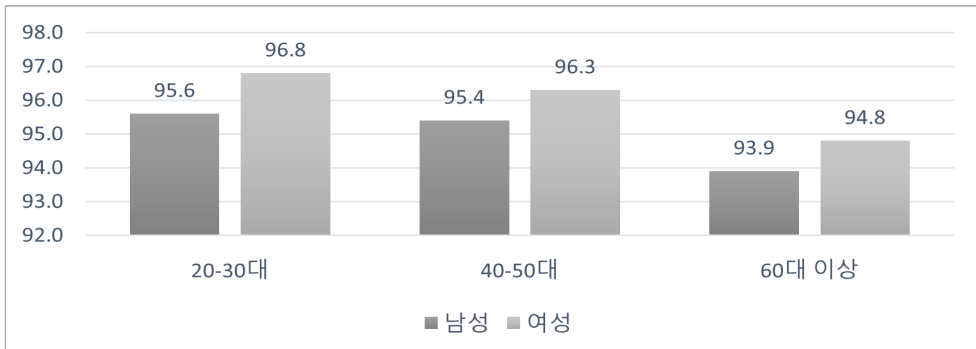
[그림 6-39]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단위: %)



6.3.3. 인권 수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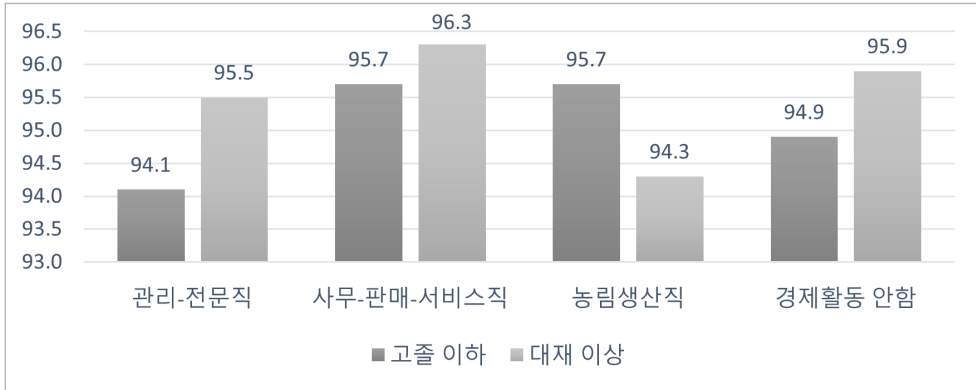
-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에 인권에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 비율은 대단히 높은데 이는 [그림 6-40]에서 [그림 6-42]에서 보듯이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의식적 배경에 상관없이 94~98%의 높은 찬성을 보이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6-40] 각급 학교 정규수업 인권내용 강화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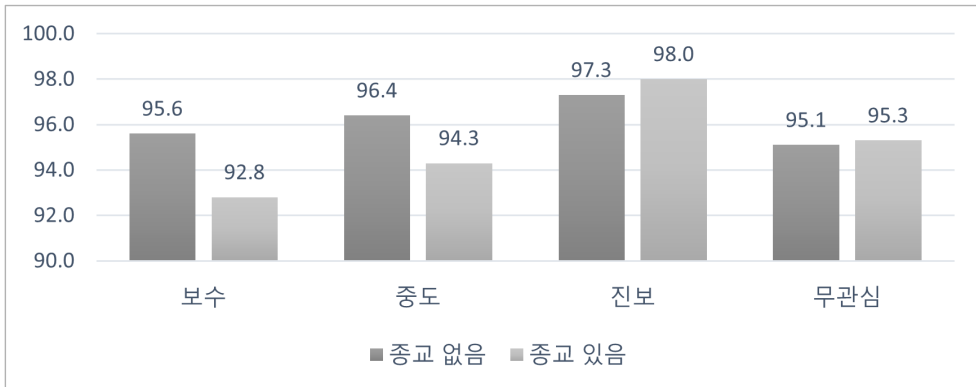
[그림 6-41] 각급 학교 정규수업 인권내용 강화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단위: %)



[그림 6-42] 각급 학교 정규수업 인권내용 강화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단위: %)



6.4. 소수자, 약자와의 거리 및 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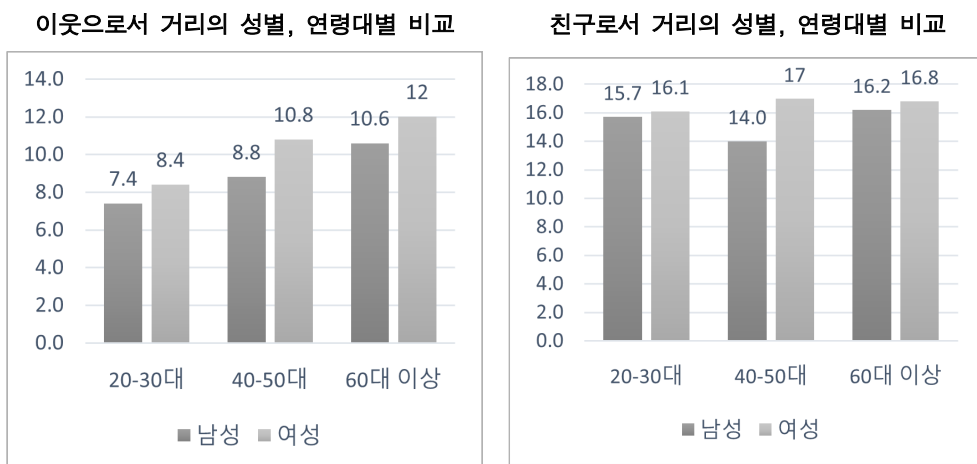
- 소수자나 약자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반대로 보면 이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는 생각이기도 함. 20세기 후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이 늘어 왔음. 사회과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가 줄어드는 것으로 표현함.

-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는 한국에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 이처럼 포용을 통한 사회적 거리 감소가 일어나는지를 조사함. 이러한 사회적 거리 감소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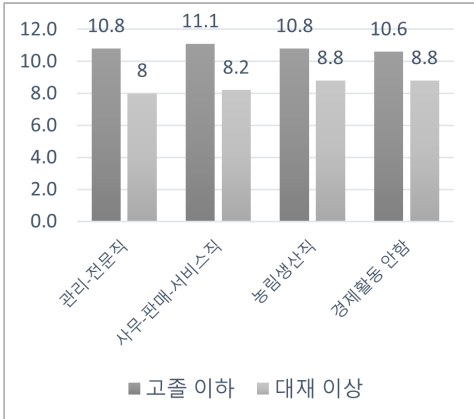
6.4.1. 장애인과의 거리 및 포용

- [그림 6-43]은 장애인들을 이웃 혹은 친구로 지내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비율로 측정된 사회적 거리를 배경 변수별로 비교한 결과임
 - 이웃으로 지내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성별,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거리가 2%p 정도씩 늘어나며, 친구로 지내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성별,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교육 수준과 직업별로 비교하면 장애인에 대한 이웃으로서의 사회적 거리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모든 직업군에서 2%p 가량 감소하며, 직업군별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친구로서의 장애인과의 거리 역시 교육 수준이 대학교 재학 이상일수록 모든 직업군에서 다소 낮지만 직업별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음
 - 종교 유무와 정치 성향은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장애인과의 거리에 차이를 보이는데 보수 성향에 비해 진보가 사회적 거리가 작으며, 종교인은 보수나 중도 성향 집단에서는 거리가 더 큰 반면, 진보나 무관심층에서는 거리가 작아지는 상반된 결과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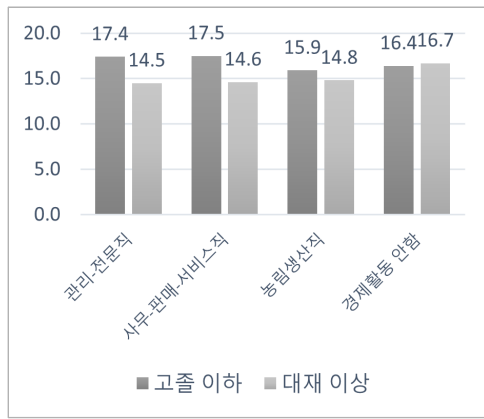
[그림 6-43] 이웃, 친구로서 장애인과의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차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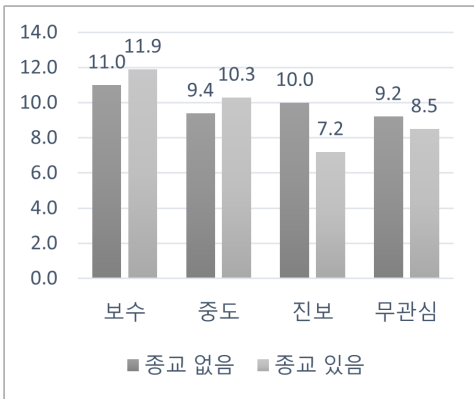
이웃으로서 거리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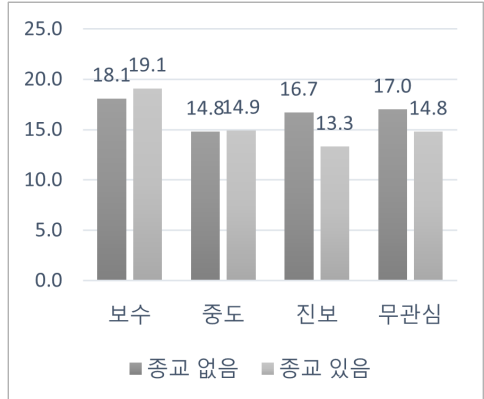
친구로서 거리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이웃으로서 거리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친구로서 거리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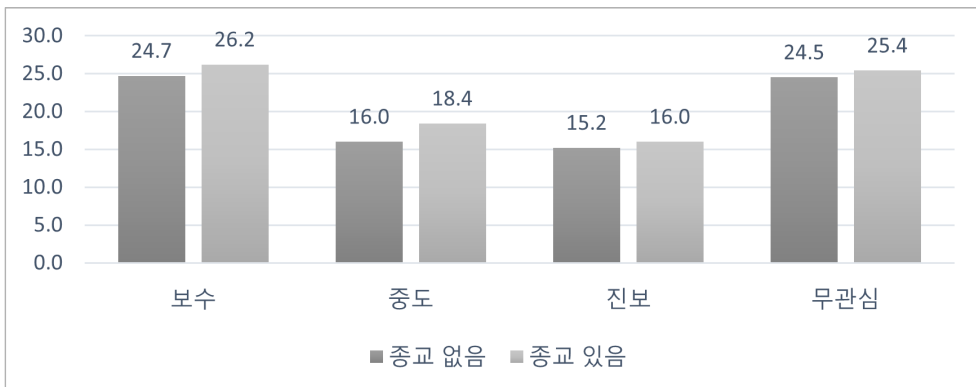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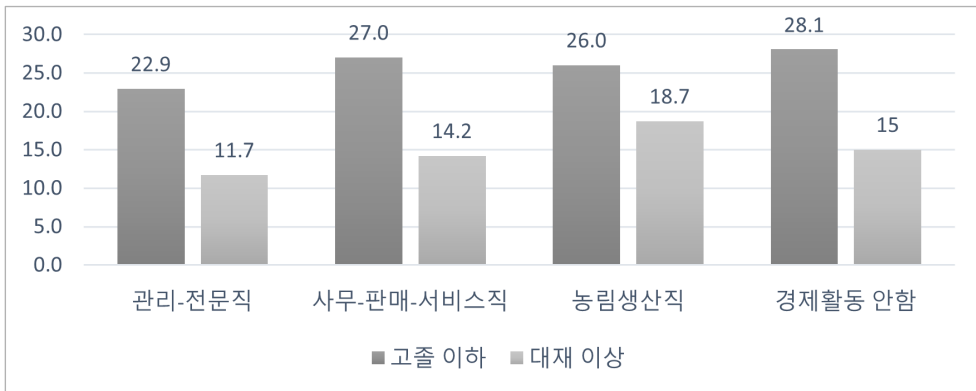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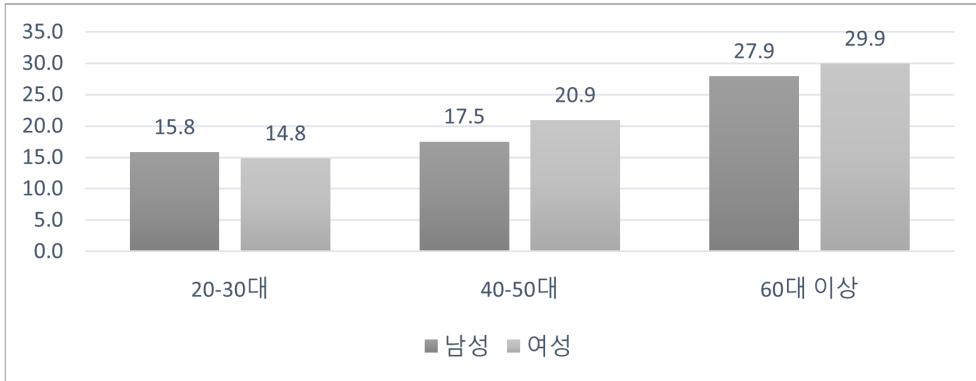


- [그림 6-44]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 지도자로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비율로 측정한 결과를 배경 변수별로 비교한 것임
- 성별, 연령대별 비교를 보면, 지도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거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특히 60대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성별 차이는 40~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약간 거리가 큰 반면, 20~30대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를 보면, 대학교 재학 이상의 교육 수준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8~14%p 거리가 낮게 나타나며, 직업별로는 대학교 재학 이상에서는 농림생산직에 비해 사무·판매·서비스직이, 그에 비해 관리·전문직이 2~3%p씩 거리가 낮은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관리·전문직이 다른 직업들에 비해 6~8%p 가까이 낮게 나타남

- 의식적 배경별 비교를 보면 장애인 선출 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중도와 진보에서는 비슷한 반면, 그에 비해 보수와 무관심층에서는 거리가 8~10%p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6-44] 선출 지도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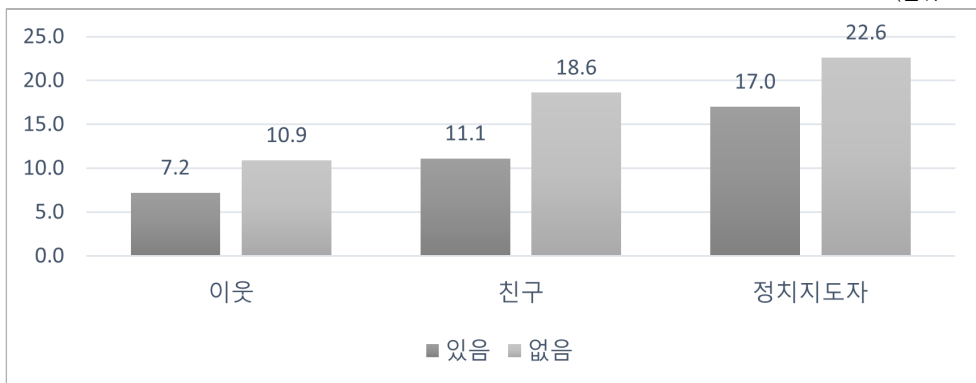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6-45]는 위에서 살펴본 이웃, 친구, 선출 지도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거리가 장애인을 친구나 가족, 이웃으로 둔 경우 달라지는지 비교한 결과임. 이 그림을 보면 장애인과 사회적 관계를 가진 경우에 이웃으로서 장애인과의 사회적 거리가 11.1%에서 7.2%로 4%p 가까이 감소하며, 친구로서 장애인과의 사회적 거리는 18.6%에서 10.9%로 7.7%p 감소함. 또한 선출 지도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22.6%에서 17%로 5.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6-45] 장애인 친구나 이웃, 친척 존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의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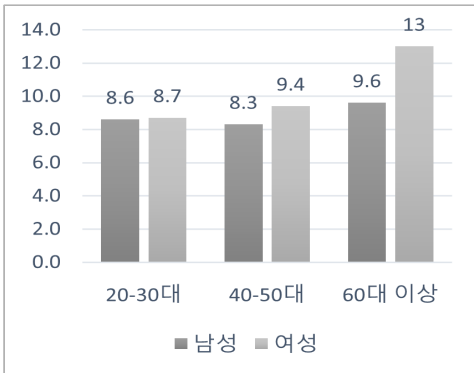
6.4.2. 결혼이주민과의 거리 및 포용

- 결혼이주민을 이웃이나 친구로 지내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비율로 측정한 사회적 거리를 배경 변수별로 비교한 결과가 [그림 6-46]임
 - 이웃이나 친구로서 결혼이주민과의 사회적 거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30대와 40~50대의 차이는 별로 없는 반면, 60대 이상에서 거리가 크고 또한 성별 차이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의 결과를 보면 직업별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교육 수준별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모든 직업에서 유의하게 사회적 거리가 낮게 나타났음
 -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로 사회적 거리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보수에 비해 중도가, 그에 비해 진보가 사회적 거리가 낮게 나타났으며, 정치적 무관심층은 보수와 진보의 중간 정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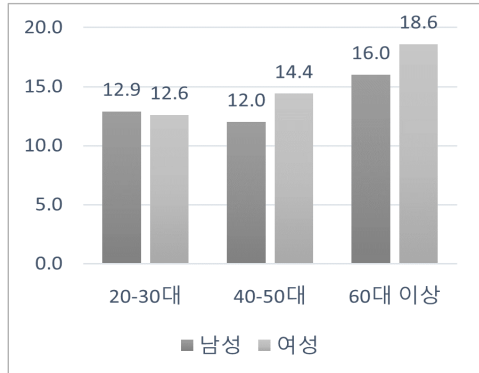
한편 종교를 가진 경우는 진보에서만 사회적 거리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정치 성향에서는 모두 사회적 거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6-46] 이웃, 친구로서 결혼이주민과의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차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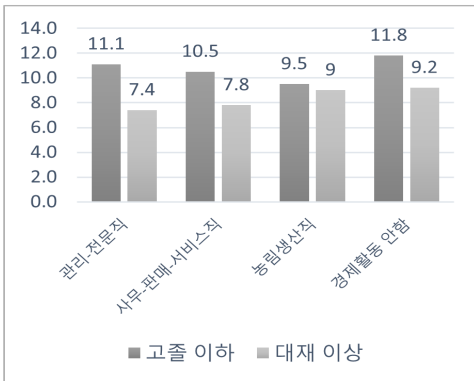
이웃으로서 거리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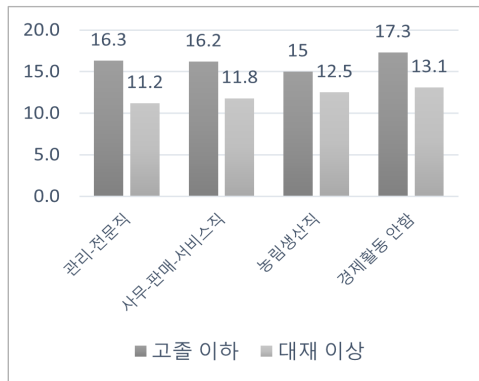
친구로서 거리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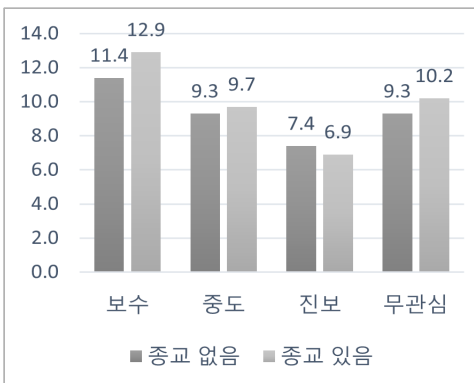
이웃으로서 거리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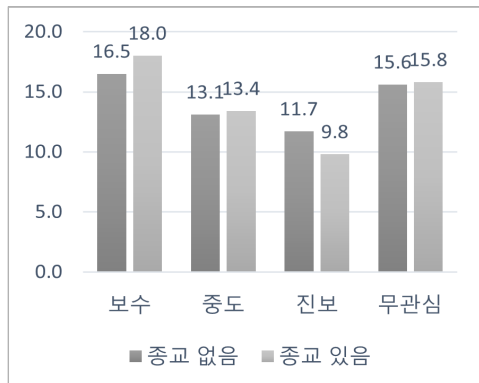
친구로서 거리의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이웃으로서 거리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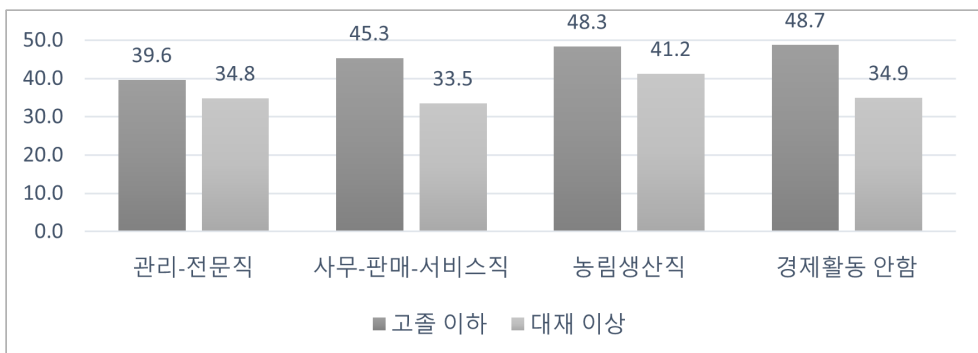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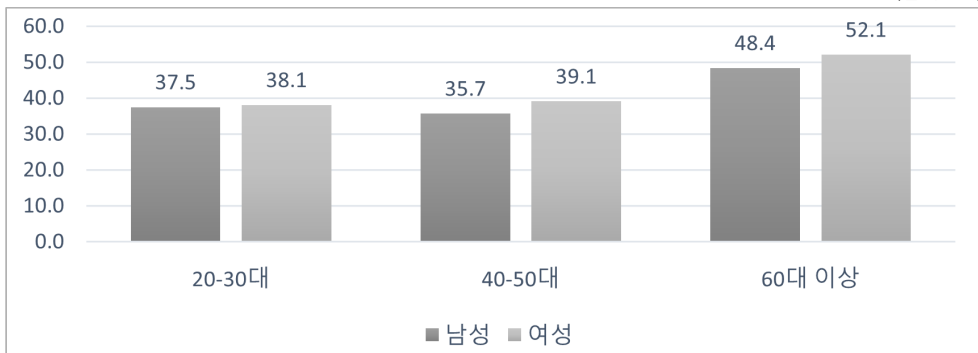
친구로서 거리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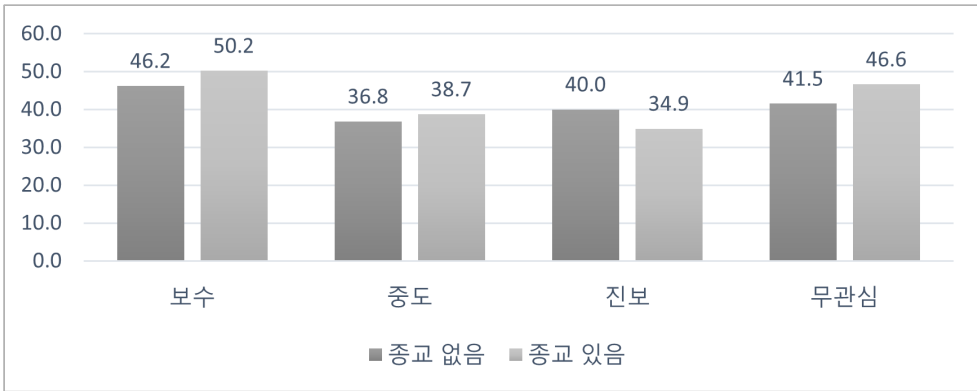


- 선출된 정치 지도자로서 결혼이주민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비율로 측정된 사회적 거리를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정치사상적 배경변수별로 비교한 것이 [그림 6-47]임. 선출 지도자로서의 거리는 이웃이나 친구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남
 - 성별, 연령대별 비교를 보면 연령대별로는 이웃이나 친구로서 거리감과 마찬가지로 60대 이상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성별 차이는 20~30대에서는 안 나타나고, 40~50대와 60대 이상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거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를 보면 대학교 재학 이상 교육 수준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모든 직업에서 사회적 거리가 4~10%p 낮음.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직업별 사회적 거리의 차이가 대학교 재학 이상에 비해 더 큰 것을 볼 수 있음
 - 종교 유무, 정치 성향에 따른 비교 역시 이웃이나 친구로서의 거리와 마찬가지로 보수가 중도 성향이 진보에 비해 거리가 크고, 또한 종교가 진보 성향에서만 거리를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6-47] 선출 지도자로서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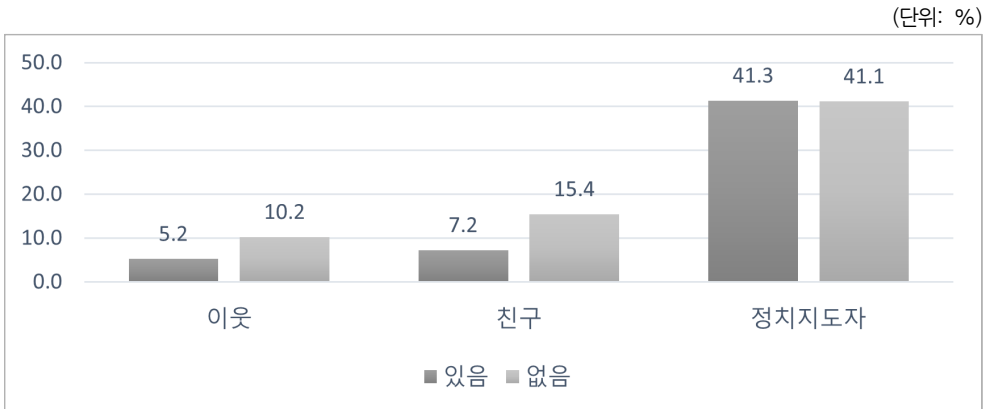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6-48]은 친구, 이웃, 선출 지도자로서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이들을 친구, 이웃, 친척으로 지내는 것에 의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여줌. 결혼이주민과의 사회적 관계는 이웃으로서의 거리를 10.2%로부터 5.2%로 5%p 줄이는 반면, 친구로서의 거리는 15.4%에서 7.2%로 8.2%p 줄임. 반면 선출 지도자로서의 거리감은 관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차이가 거의 없음.

[그림 6-48] 결혼이주민 친구나 이웃, 친척 존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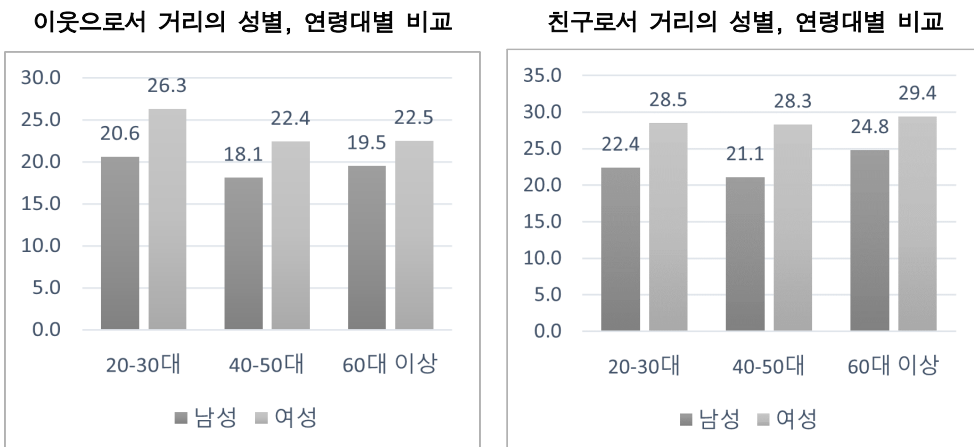


6.4.3. 이주노동자와의 거리 및 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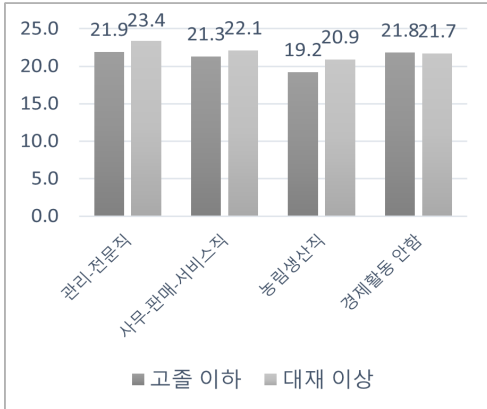
- [그림 6-49]는 이주노동자를 이웃 혹은 친구로 지내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비율로 측정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의식적 배경별 비교 결과임
- 장애인이나 결혼이주민과 달리 이주노동자와의 사회적 거리는 높은 연령대에서 더 크지 않고, 이웃으로서의 거리는 20~30대가 위의 연령대보다 더 거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 비교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웃으로서나 친구로서나 이주노동자에게 거리를 두는데 이는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임
-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를 보면 이웃으로서의 거리에서 교육 수준은 대학교 재학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거리가 확연하게 큰 반면, 친구로서의 거리에서는 반대로 대학교 재학 이상의 거리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작음. 이주노동자에 대한 친구로서의 거리에서는 직업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은 데 비해 이웃으로서의 거리에서는 직업별 차이가 두드러지고 교육 수준에 따라 상반된 패턴을 보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사무·판매·서비스직과 비경제활동 집단에서 거리가 가장 큰 반면, 대학교 재학 이상에서는 관리·전문직의 거리가 가장 큼. 한편 농림생산직은 거리가 어느 교육 수준 수준에서건 이웃으로서 이주노동자와의 거리가 가장 작음
- 의식적 배경별 비교 결과를 보면 보수 성향에 비해 중도와 진보가 이웃으로서나 친구로서 이주노동자와 사회적 거리가 작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함. 또한 종교를 가진 사람은 보수 성향일 경우 거리가 더 큰 반면, 진보 성향일 경우는 거리가 가장 작음

[그림 6-49] 이웃, 친구로서 이주노동자와의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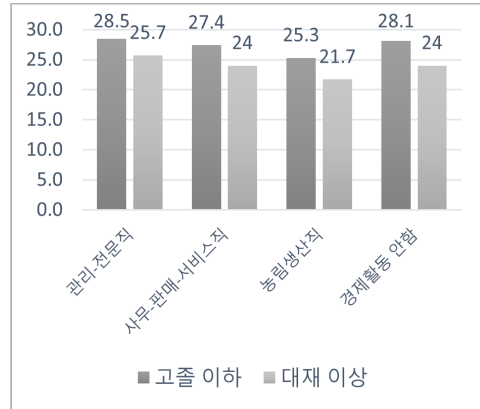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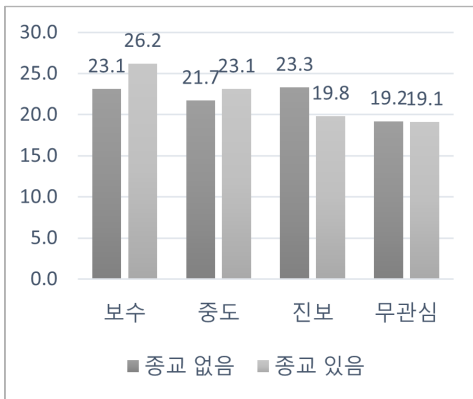
이웃으로서 거리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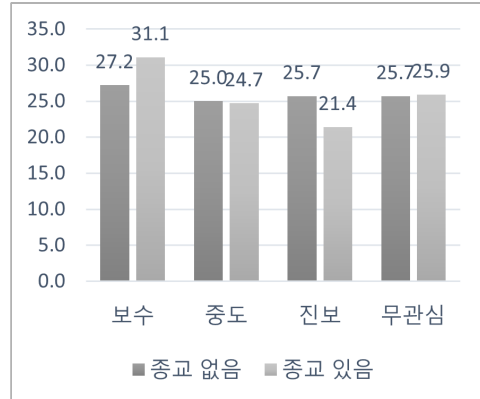
친구로서 거리의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이웃으로서 거리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친구로서 거리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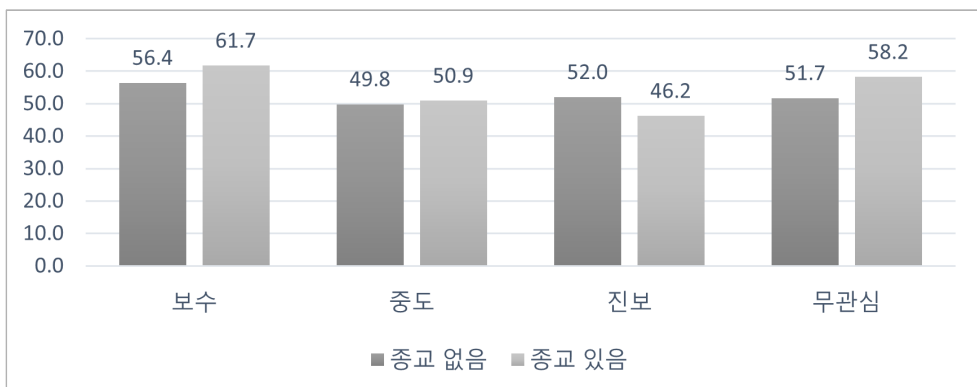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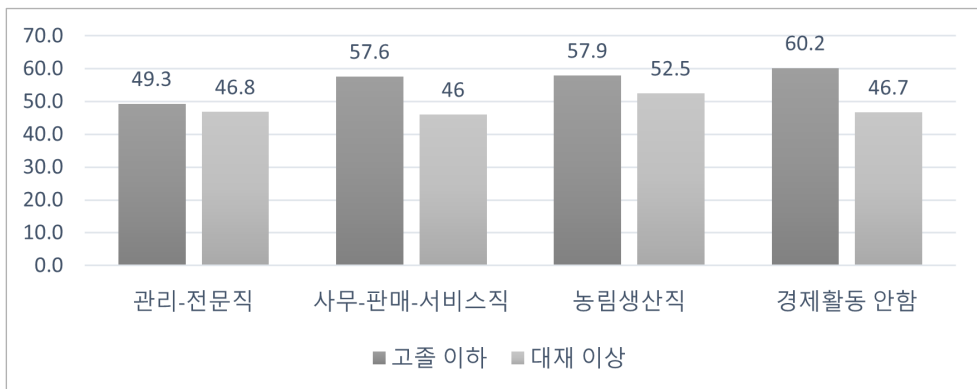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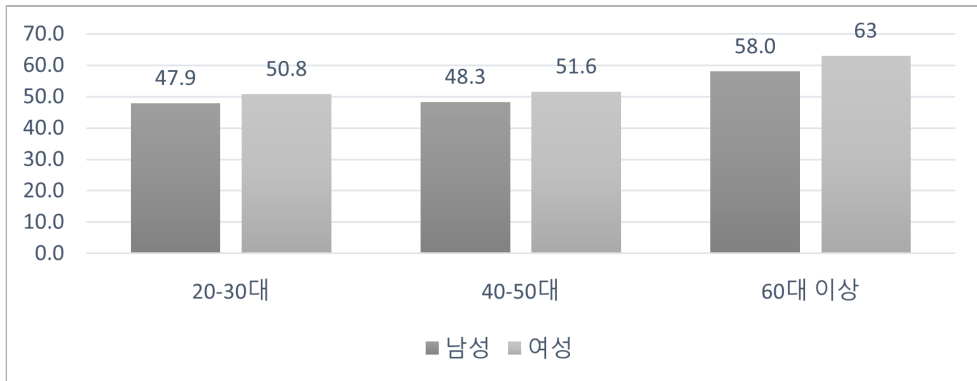


- 선출 지도자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거리는 이웃이나 친구로서의 거리에 비해 두배 가까이 큼. 이것은 결혼이주민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출 지도자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비교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6-50]임
- 성별, 연령대별 비교 결과를 보면 이웃이나 친구로서의 거리와 달리 선출 지도자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60대 이상이 아래 연령대에 비해 10%p 이상 큼. 성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큰 거리를 보임
-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결과에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모든 직업군에서 거리가 작고, 직업별 차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만 관리·전문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종교 유무와 정치 성향별 비교에서는 이웃 및 친구로서의 거리와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이 중도 및 진보에 비해 더 거리가 크고, 종교는 보수 성향에서는 거리를 키우는, 진보 성향에서는 거리를 줄이는 효과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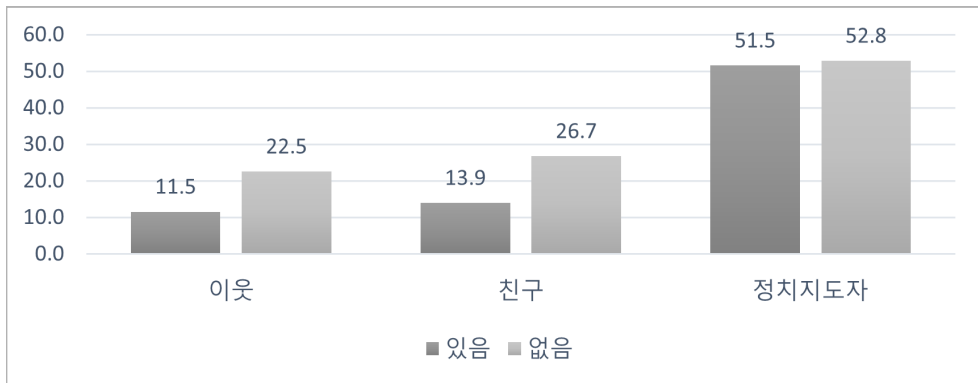
[그림 6-50] 선출 지도자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비교

(단위: %)



- 이주노동자와 친구나 이웃, 친척인 경우 사회적 거리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그림 6-51]이 보여줌. 이웃이나 친구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거리감은 이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있는 경우 상당한 정도로 줄어듦. 이웃으로서의 사회적 거리는 22.5%에서 11.5%로 11%p가, 친구로서의 사회적 거리는 26.7%에서 13.9%로 12.8%p가 줄어듦. 이웃으로서나 친구로서나 거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듦. 하지만 선출 지도자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거의 줄어들지 않음. 이것은 결혼이주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임

[그림 6-51] 이주노동자 친구나 이웃, 친척 존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의 비교 (단위: %)



6.4.4. 북한이탈주민과의 거리 및 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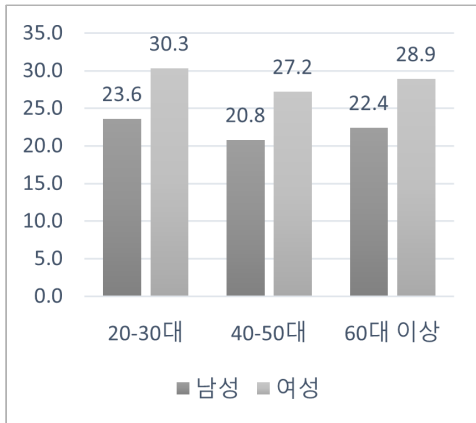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과 이웃이나 친구로 지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비율로 측정한 사회적 거리를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의식적 배경별로 비교한 결과가 [그림 6-52]임
 - 성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4~7%p 거리가 더 큼. 연령대별 비교를 보면 이웃으로서의 거리는 20~30대가 가장 거리가 먼 반면, 친구로서의 거리에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크지 않음.
 - 사회경제적 비교 결과를 보면 이웃으로서의 사회적 거리에서는 교육 수준 및 직업간 차이가 크지 않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 대학교 재학 이상의 거리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적은 정도임. 친구로서의 사회적 거리 역시 직업간 차이는 크지 않지만 교육 수준간 차이는 모든 직업군에서 5~7%p 가량 차이를 보이며 대학교 재학 이상의 거리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적음

- 의식적 배경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적 거리의 차이를 보면, 이웃으로서의 거리나 친구로서의 거리 모두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적었음.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음. 종교의 효과는 진보 집단에서만 보이는데 종교를 가진 경우의 거리가 무종교인 경우보다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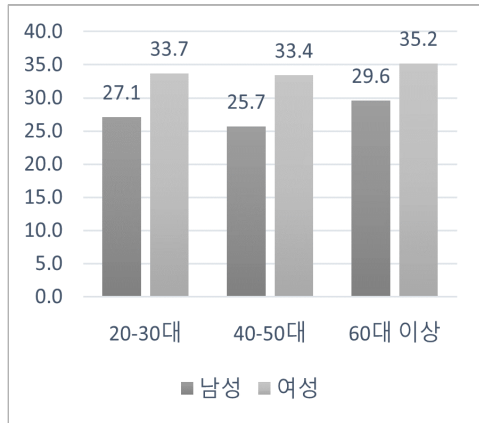
[그림 6-52] 이웃, 친구로서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차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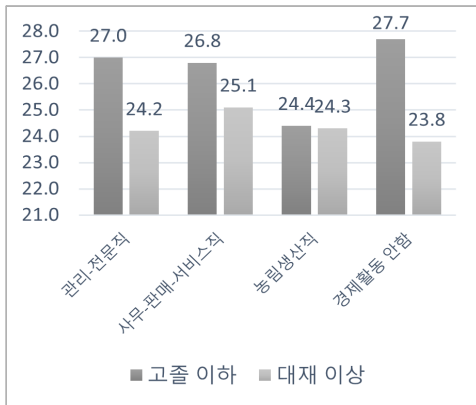
이웃으로서의 거리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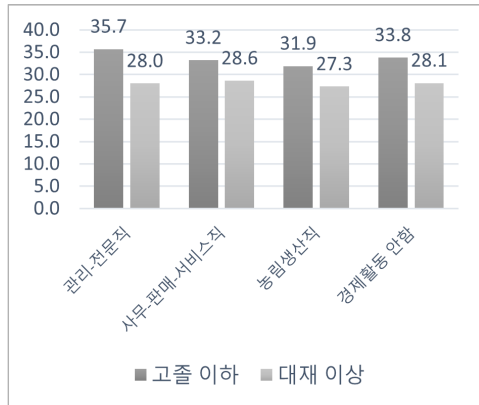
친구로서의 거리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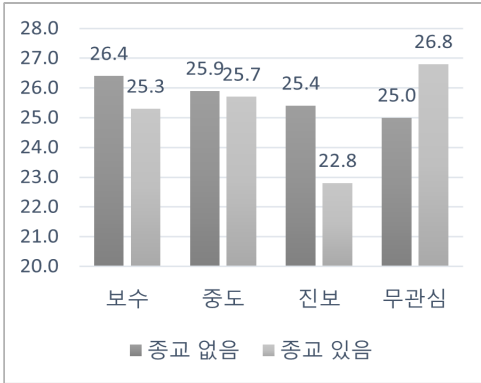
이웃으로서 거리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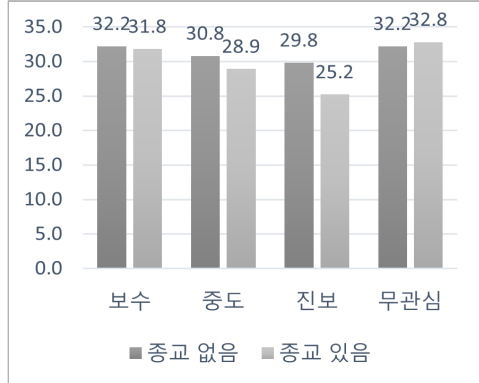
친구로서 거리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이웃으로서 거리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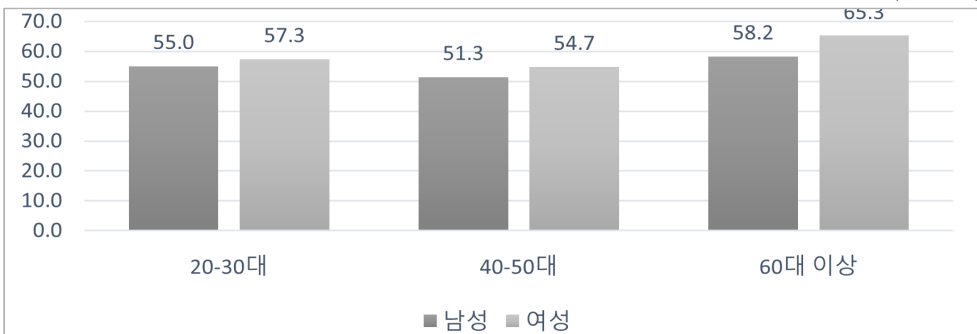
친구로서 거리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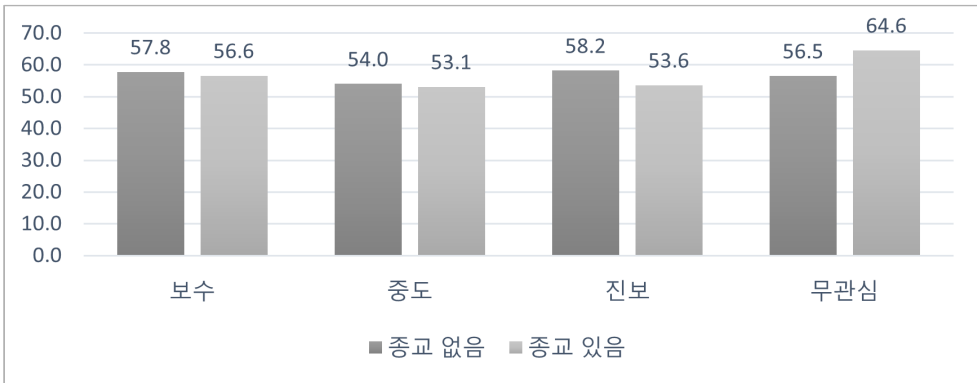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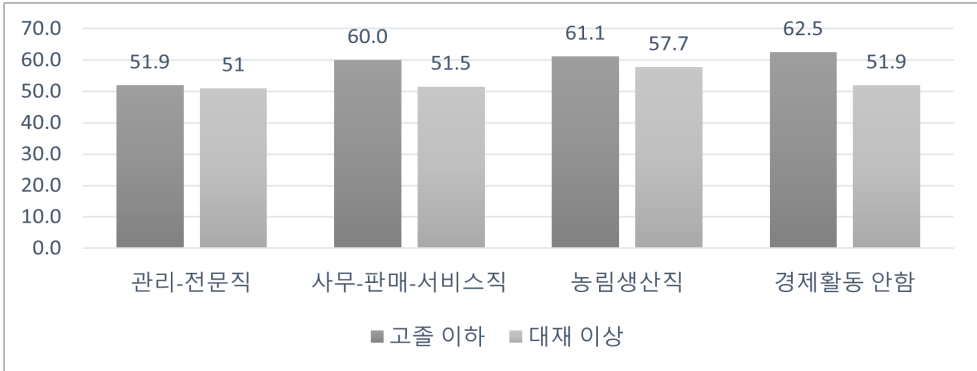


● 선출 지도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비율로 측정된 사회적 거리를 배경 변수별로 비교한 것이 [그림 6-53]임

- 성별, 연령대별 비교를 보면 성별 차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거리가 더 크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짐. 연령대별 비교를 보면 40~50대가 가장 거리가 적고, 60대 이상이 가장 큼
-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결과를 보면 관리·전문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거리가 적으며, 교육 수준별 차이는 관리·전문직을 제외한 다른 직업들에서 대학교 재학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두드러지게 거리가 적음
- 종교 유무, 정치 성향에 따른 비교를 보여주는 아래 그림에서 중도가 보수와 진보에 비해 사회적 거리가 가장 적었음. 한편 종교는 진보 성향에서는 거리를 낮추지만, 무관심층에서는 거리를 높이는 효과를 보임. 그 밖의 경우에는 종교의 효과가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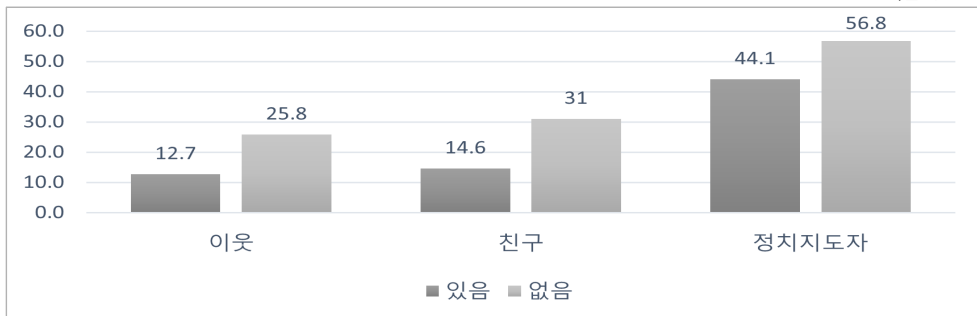
[그림 6-53] 선출 지도자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비교 (단위: %)





- 북한이탈주민을 친구, 이웃, 친척으로 둔 경우 사회적 거리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림 6-54]가 보여줌. 이웃으로서의 사회적 거리는 25.8%로부터 12.7%로 13.1%p, 친구로서의 사회적 거리는 31.0%로부터 14.6%로 16.4%p, 그리고 선출된 정치 지도자로서 사회적 거리는 56.8%로부터 44.1%로 12.7%p 줄어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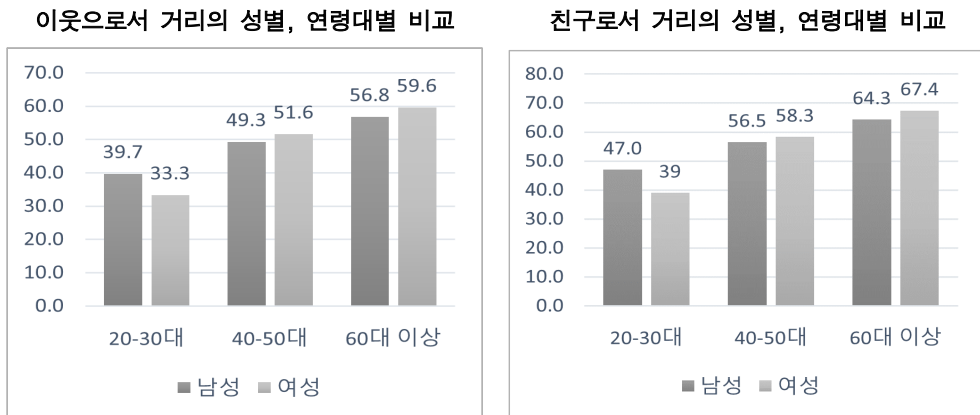
[그림 6-54] 북한 이탈주민 친구나 이웃, 친척 존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의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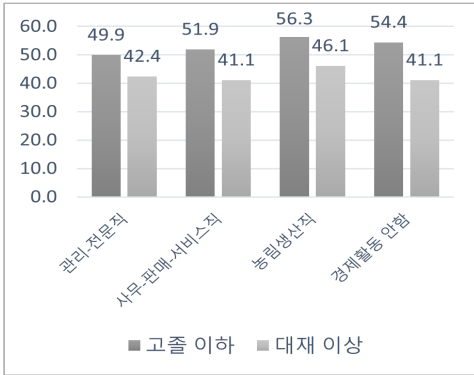
6.4.5. 성소수자와의 거리 및 포용

- 성소수자와 이웃 혹은 친구로 지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비율로 측정한 사회적 거리를 배경변수별로 비교한 것이 [그림 6-55]임
- 성별, 연령대별 비교 결과를 보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사회적 거리는 7~10%p씩 커짐. 20~30대의 거리가 50% 이하인 반면 40~50대 이상은 50%를 넘음. 성별 차이는 40~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미약하게 거리가 더 큰 반면, 20~30대에서는 여성이 5%p 이상 거리가 적음
-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결과를 보면 이웃으로서의 거리나 친구로서의 거리 모두 관리·전문직이 사회적 거리가 가장 적고, 사무·판매·서비스직, 농림생산직으로 갈수록 거리가 3~5%p씩 커짐. 교육 수준 차이는 모든 직업군에서 5~12%p 가까이 크게 보임
- 종교, 정치 성향별 비교 결과를 보면 보수에서 중도, 진보로 갈수록 일관되게 성소수자에 대한 이웃이나 친구로서의 사회적 거리가 줄어들음. 정치적 무관심층은 중도와 비슷한 거리를 보임. 종교를 가진 경우 모든 정치 성향에서 8~9%p 더 거리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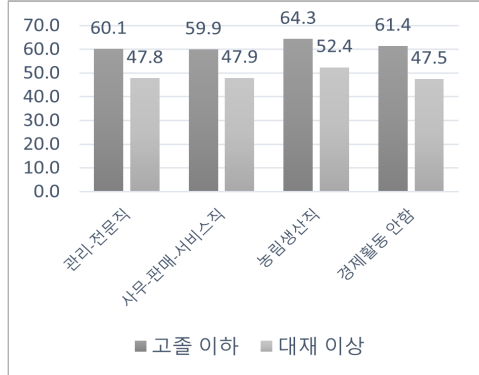
[그림 6-55] 이웃, 친구로서 성소수자와의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차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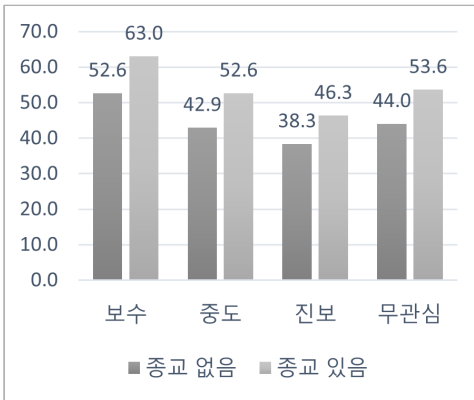
이웃으로서 거리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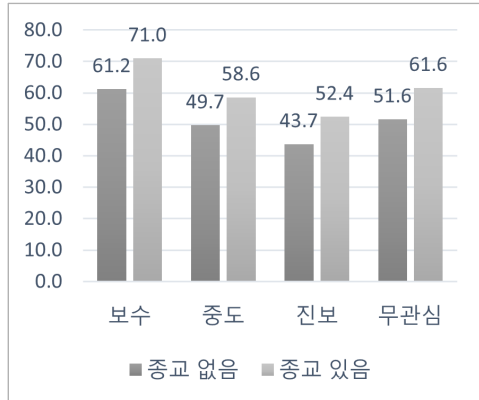
친구로서 거리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이웃으로서 거리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친구로서 거리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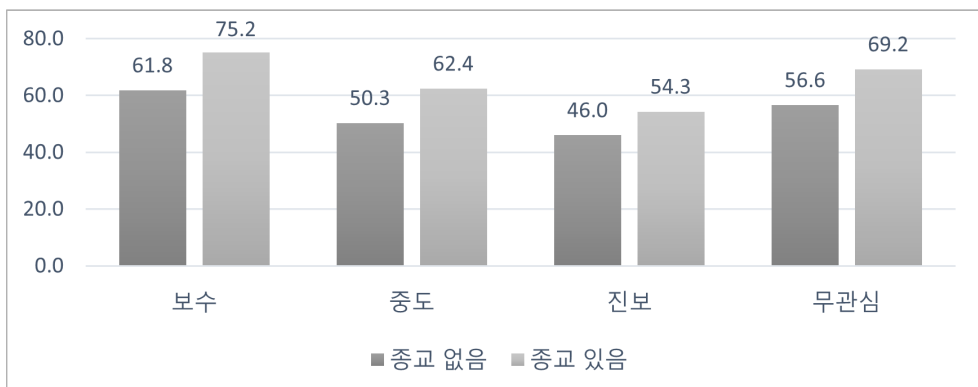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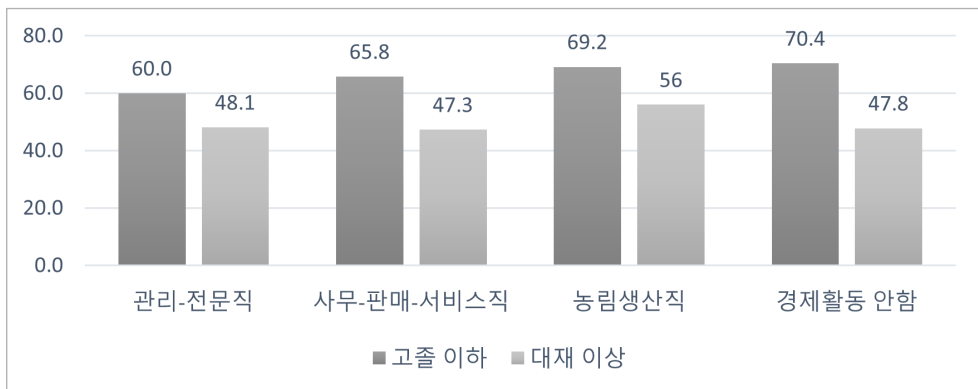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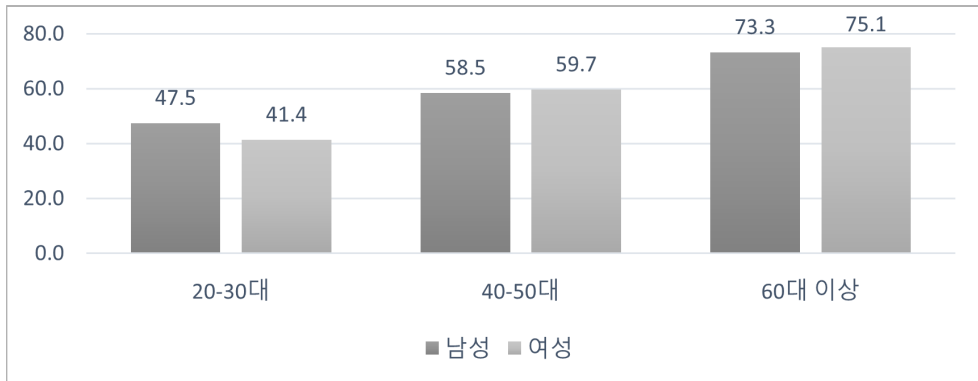


● [그림 6-56]은 선출 지도자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배경 변수별로 비교한 것임

- 성별, 연령대별 비교를 보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12~15%p씩 거리가 커짐. 성별 차이는 40~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미약하게 더 거리가 크지만 20~30대에서는 6%p 여성이 더 적음
-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결과를 보면 직업별로 관리·전문직의 거리가 가장 적고 사무·판매·서비스직, 농림·생산직으로 갈수록 거리가 커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농림·생산직과 비슷한 거리를 보임. 교육 수준별 차이는 모든 직업에서 대학교 재학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11~18%p 거리가 적게 나타남
- 종교, 정치 성향별 비교 결과를 보면 보수 성향에서 중도, 진보로 갈수록 뚜렷하게 거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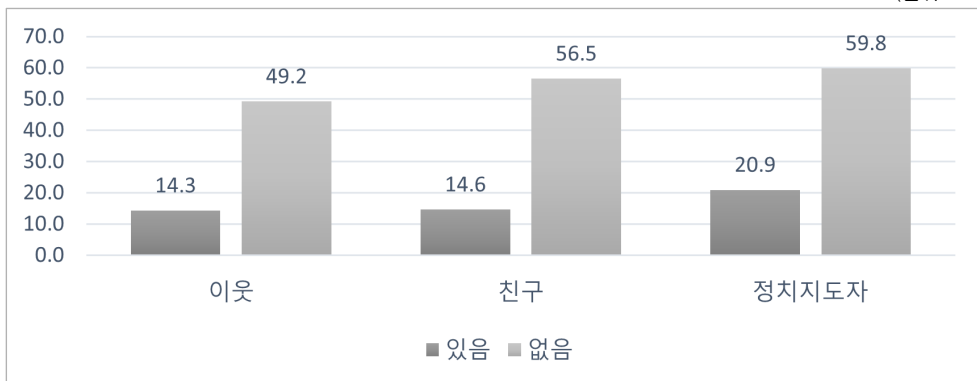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정치적 무관심층은 보수와 중도의 중간 정도임. 종교를 가진 경우 모든 정치 성향에서 10~13%p 거리가 늘어남

[그림 6-56] 선출 지도자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비교 (단위: %)



- 성소수자를 친구, 이웃, 친척으로 둔 경우에 사회적 거리가 줄어드는 정도를 [그림 6-57]이 보여줌. 이웃으로서 거리는 49.2%에서 14.3%로 35%p, 친구로서의 거리는 56.5%에서 14.6%로 42%p, 선출 지도자로서의 거리는 59.8%에서 20.9%로 39%p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6-57] 성소수자 친구나 이웃, 친척 존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의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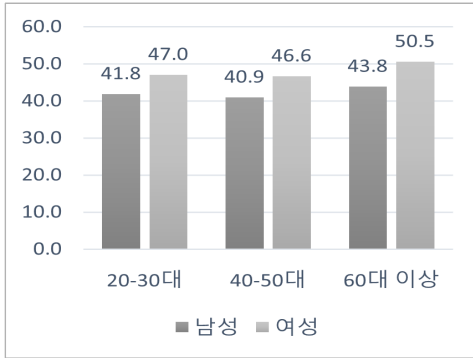
6.4.6. 난민과의 거리 및 포용

- 난민과 이웃이나 친구로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는 비율로 측정한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6-58]임
 - 먼저 성별, 연령대별 비교를 보면 연령대별 차이는 60대 이상에서만 아래 연령대에 비해 4~8%p 거리가 커짐.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에게 비해 5~7%p 거리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결과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관리·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직, 농림생산직으로 갈수록 일관되게 거리가 커지며, 대학교 재학 이상에서는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리가 농림생산직과 비슷함. 교육 수준별 차이는 관리·전문직을 제외한 다른 직군에서 대학교 재학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거리가 적음
 - 의식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보면 보수에서 진보로 갈수록 거리가 일관되게 줄어들며, 가장 큰 차이는 보수와 중도 사이에서 보임. 정치적 무관심층은 중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 종교는 보수와 무관심층에서는 거리를 크게 하고, 진보에서는 거리를 줄이는 효과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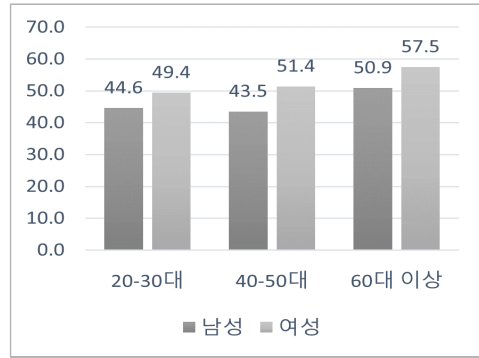
[그림 6-58] 이웃, 친구로서 난민과의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차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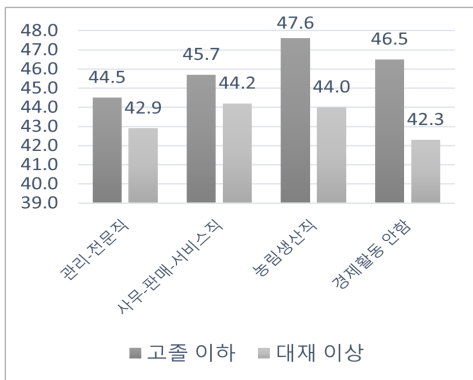
이웃으로서 거리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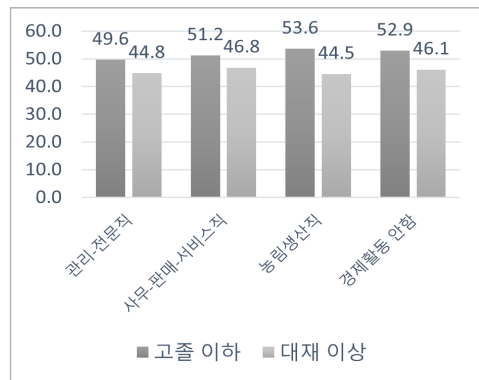
친구로서 거리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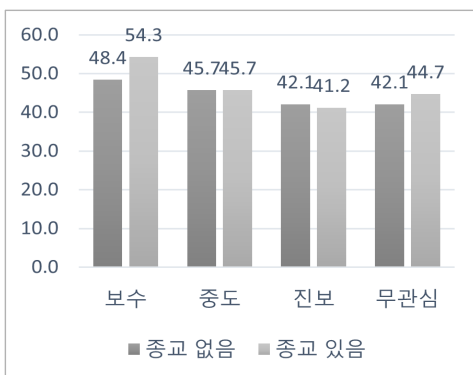
이웃으로서 거리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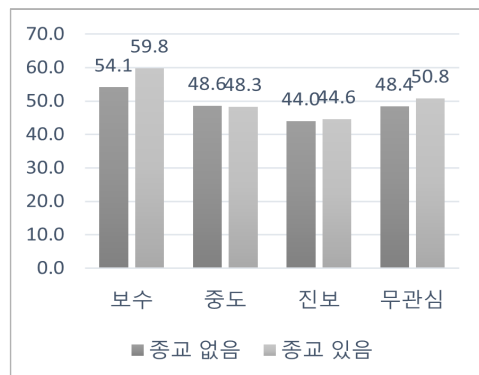
친구로서 거리의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이웃으로서 거리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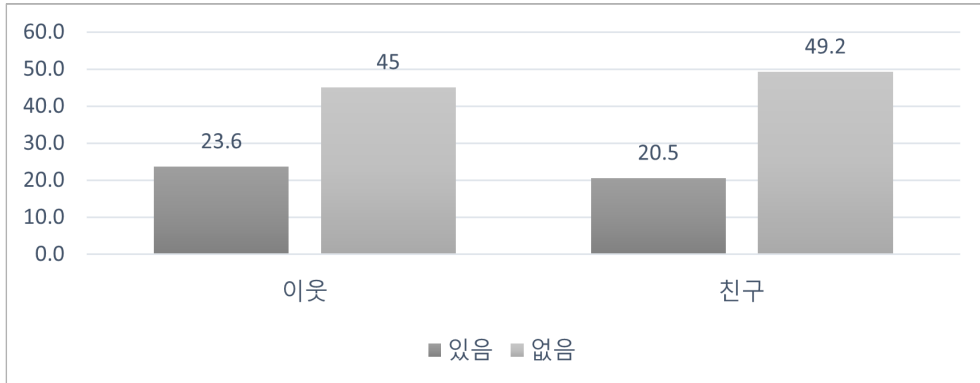
친구로서 거리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 난민을 친구나 이웃, 친척으로 둔 경우 거리가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보여주는 [그림 6-59]에 따르면 이웃으로서의 거리는 45%로부터 23.6%로 21.4%p, 친구로서의 거리는 49.2%에서 20.5%로 28.7%p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6-59] 난민 친구나 이웃, 친척 존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의 비교

(단위: %)



6.4.7. 인구집단으로서 여성, 청년, 노인과의 거리

- 여성, 청년, 노인과 같은 인구집단은 소수자라고 하기에는 우리 주변에 편재하기 때문에 이웃이나 친구와 같은 거리를 논하는 것의 의미가 약함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취약집단의 성격을 갖기도 함. 따라서 이들을 선출 지도자로 받아들이기 불편하다는 비율을 통해 이들에 대한 거리를 측정하였음

1) 여성 선출 지도자에 대한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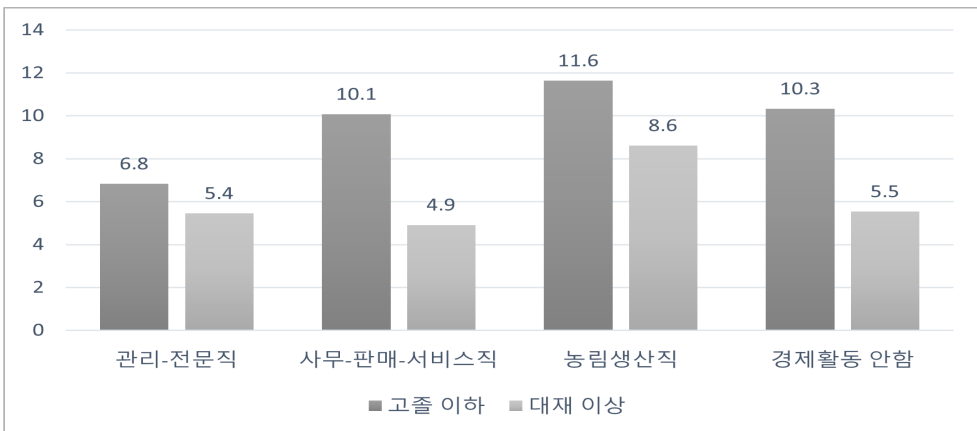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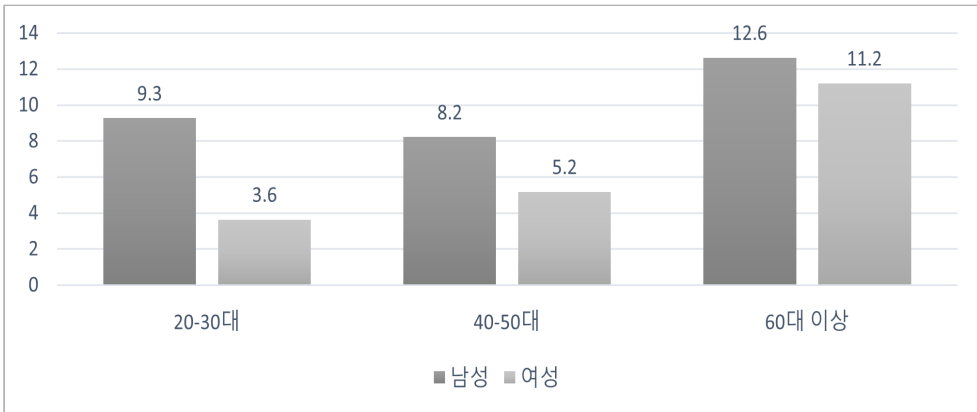
- [그림 6-60]은 선출 지도자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배경 변수별로 보여줌
 - 성별, 연령대별 비교를 보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성별 차이가 뚜렷함을 볼 수 있음. 20~30대에서는 5.6%p, 40~50대에서는 3.0%p의 성별 거리 차이가 있음. 60대 이상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 1.4%의 거리 차이를 보임.
 - 사회경제적 변수별 비교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의 거리가 가장 큼. 직업이 있는 경우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관리·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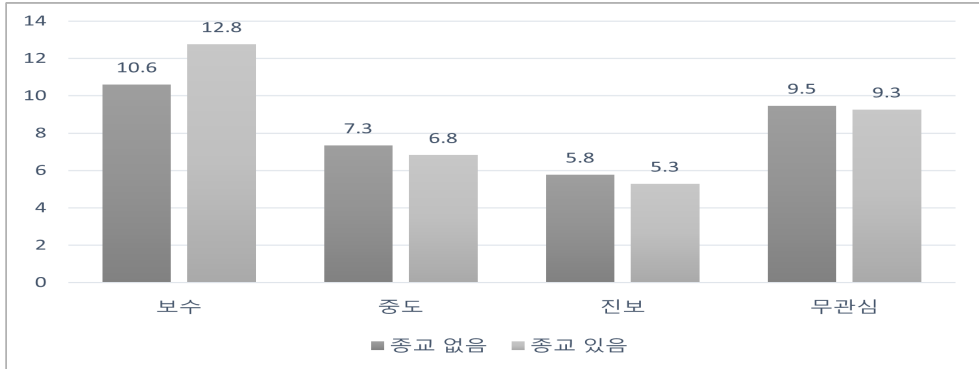
농림생산직으로 갈수록 거리가 커지며, 대학교 재학 이상에서는 농림생산직의 거리가 가장 큰 반면, 사무·판매·서비스직에서 거리가 가장 작음

- 의식적 배경별 비교를 보면 보수에서 진보로 갈수록 거리가 크게 줄어들며, 보수가 두드러지게 다른 성향에 비해 거리가 큼. 종교는 보수 성향에서만 거리를 크게 하는 효과를 보임

[그림 6-60] 선출 지도자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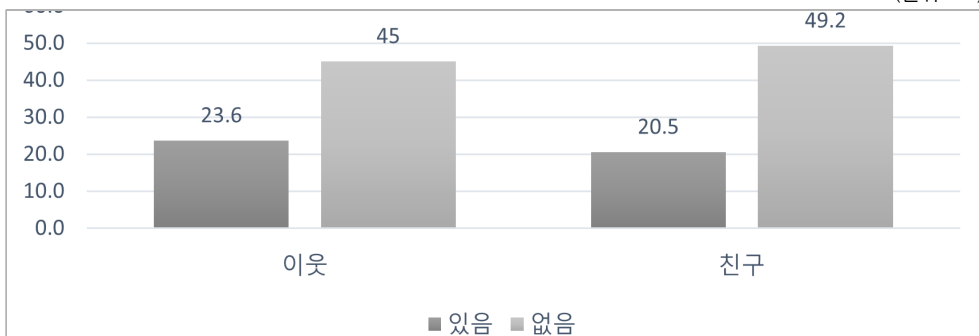
2) 청년 선출 지도자에 대한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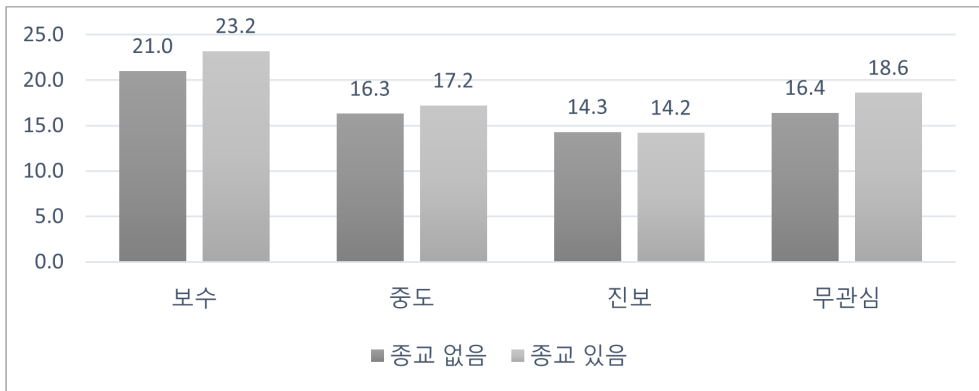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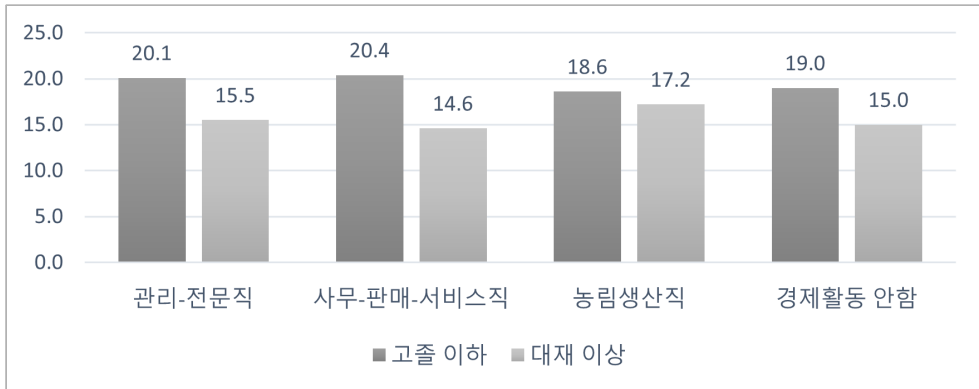
- 청년을 선출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하다는 비율로 측정한 거리의 배경 변수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6-61]임. 여성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거리가 10~20%로 높지는 않음

- 성별, 연령대별 비교 결과를 보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거리가 커짐. 또한 성별 차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거리가 더 적으며 특히 40~50대에서 차이가 조금 더 큼
-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결과를 보면 직업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며, 교육 수준별 차이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모든 직업군에서 3~4%p 거리가 작음
- 의식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보면 보수에서 진보 성향으로 갈수록 선출 지도자로서 청년에 대한 거리가 줄어들며 특히 보수는 다른 성향에 비해 거리가 두드러지게 큼. 종교가 있는 경우 모든 정치 성향에서 청년에 대한 거리는 더 커짐

[그림 6-61] 선출 지도자로서 청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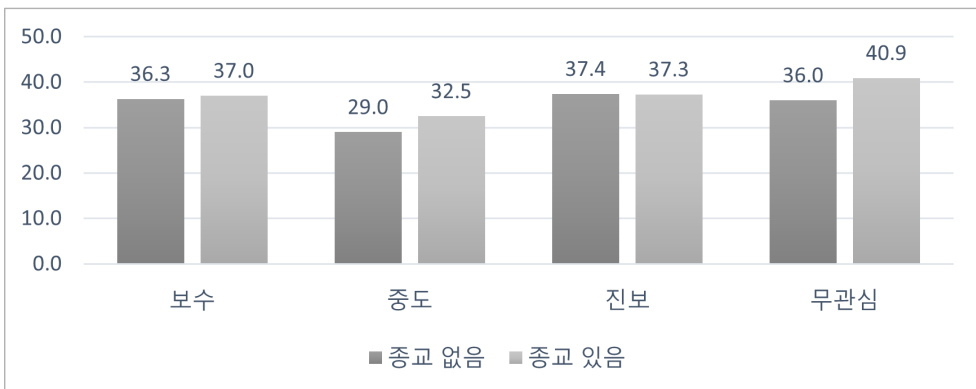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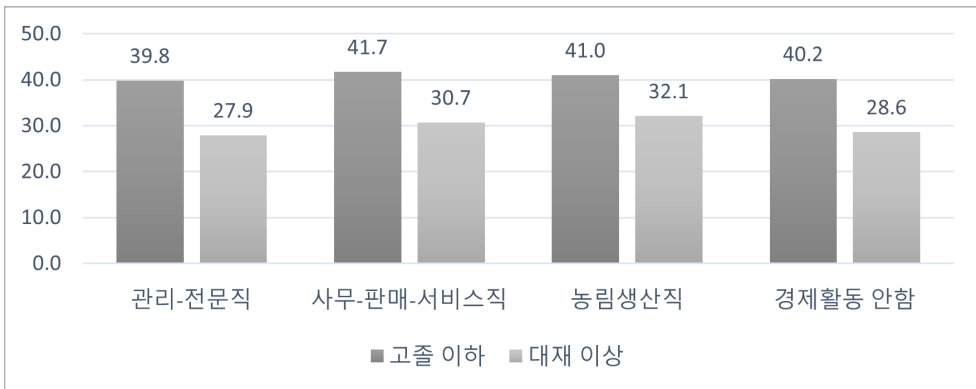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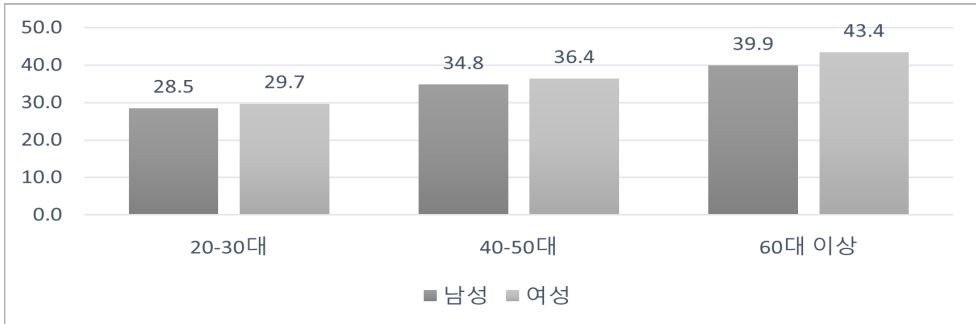


3) 노인 선출 지도자에 대한 거리

- 노인을 선출 지도자로 받아들이기 불편하다는 비율로 측정한 사회적 거리는 전반적으로 여성이나 청년보다 높음. 선출 지도자로서 노인에 대한 거리를 배경 변수별로 비교한 것이 [그림 6-62]임
- 성별, 연령대별 비교를 보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노인을 지도자로 불편하게 여기는 비율이 5~8%p씩 커짐.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의 거리가 전반적으로 더 크고, 성별 차이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를 보면 사무·판매·서비스직과 농림생산직이 관리·전문직과 비경제 활동 집단에 비해 노인 지도자에 대한 거리가 더 크고, 교육 수준별 차이는 모든 직업군에서 대재 이상이 고졸 이하에 비해 10%p 정도 거리가 더 크게 나타남

- 종교, 정치 성향별 차이를 보면 중도 성향의 가장 거리가 낮고, 다른 집단들은 대체로 비슷한 거리를 보임. 종교를 가진 경우 모든 성향에 걸쳐 노인에 대한 거리를 더 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6-62] 선출 지도자로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배경 변수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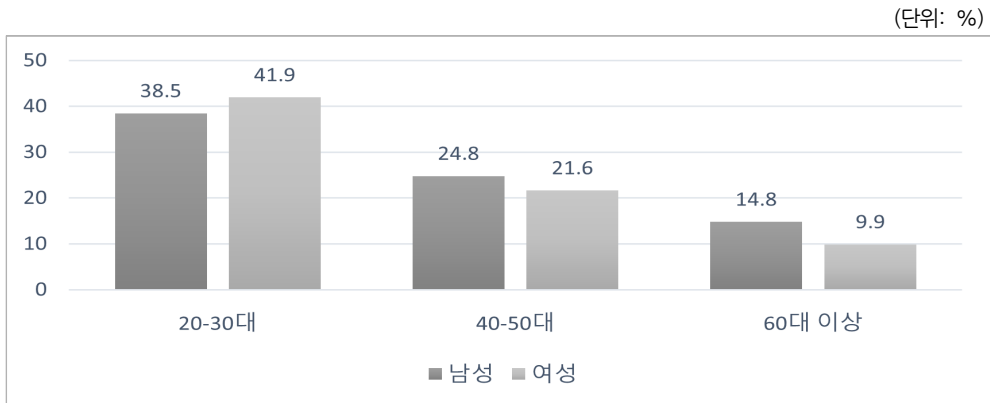


6.5. 혐오표현에 대한 경험과 의견

6.5.1. 혐오표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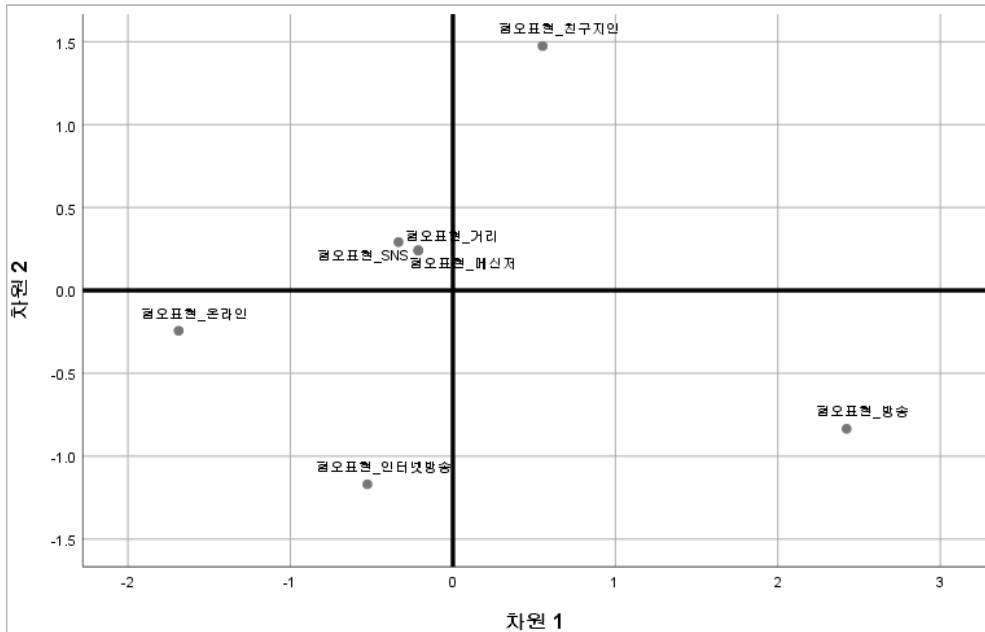
- [그림 6-63]은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차이를 보여 줌. 20~30대가 50% 이상 경험한 반면, 60대 이상은 10%대에 머물러 연령대별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음. 성별 차이를 보면 40~50대 이상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이 경험한 반면, 20~30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많음

[그림 6-63] 혐오표현 경험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접한 경로와 표현의 대상을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음. 접한 경로와 대상 모두 응답자들이 일정한 패턴 속에서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응답의 패턴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음.
 - 다차원적도는 응답자들이 서로 함께 응답한 경로나 대상을 가까이, 함께 응답하지 않은 경로나 대상을 멀리 둬으로써 공간적으로 거리를 표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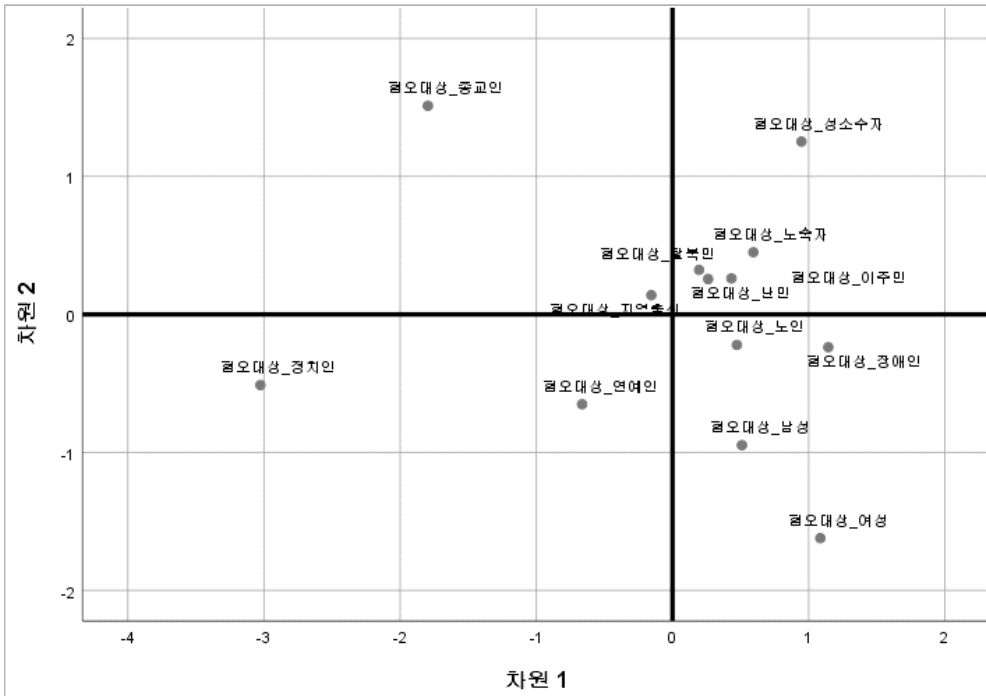
[그림 6-64]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의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 [그림 6-64]는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의 다차원척도 결과임

- 가운데에는 길거리나 메신저, SNS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이나 장소, 매체가 위치함. 친구나 지인, 가족과 같은 직접적 인간관계는 위에 혼자 위치함. 이것은 비대면 매체가 아닌 대면 상호작용이 별도의 경로라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위와 아래의 축은 대면과 비대면의 축이라고 할 수 있음
- 텔레비전 라디오 등 공중파 방송은 아래 오른쪽에 떨어져 있음. 또한 아래 왼편에는 온라인 포털, 커뮤니티나 인터넷 방송이 있음. 오른쪽과 왼편의 축은 공중파 방송이라는 전통적 매체와 인터넷을 매개로 한 새로운 매체 간의 축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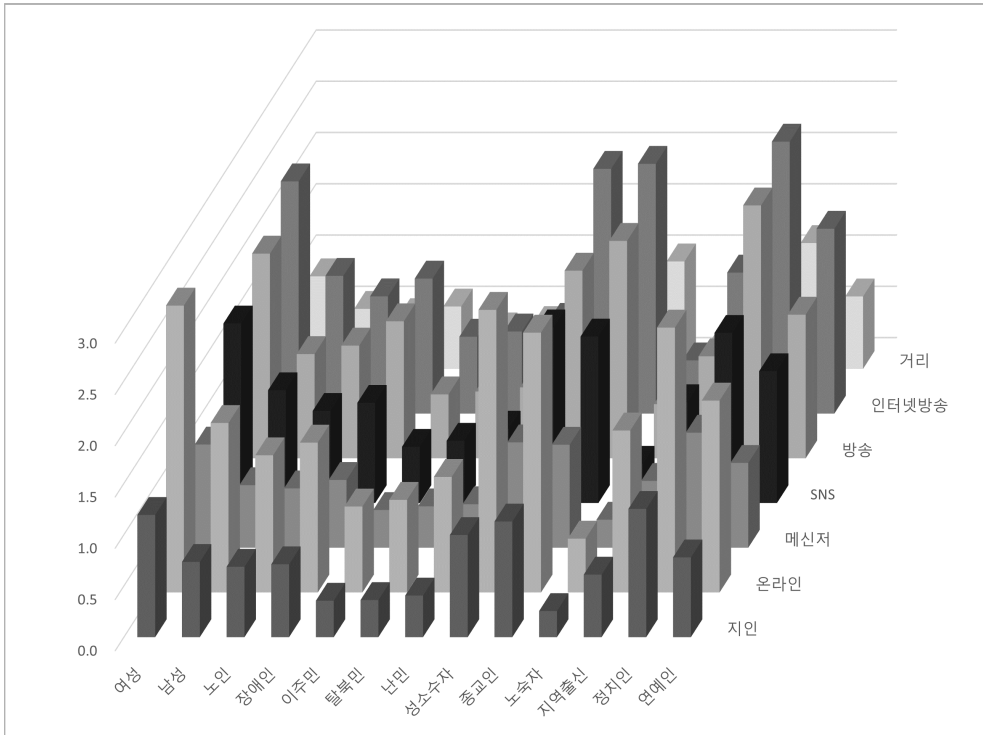
[그림 6-65] 혐오표현 대상의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 [그림 6-65]는 혐오표현의 대상을 다차원척도 분석한 결과임. 여기에서 가까운 거리에 뭉쳐 있는 대상들은 함께 언급되었거나 함께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들임.
- 가운데 위치한 대상들은 자주 등장하지 않는 대상으로 노숙자, 이주민, 난민, 탈북민, 노인, 장애인과 특정 지역출신 등임
- 오른쪽 위쪽에는 성소수자가 위치하며, 왼쪽 위쪽에는 특정 종교인이 위치함. 이들은 윤리와 정체성의 정치에서 주로 등장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반된 진영에 속함
- 한편 왼쪽 아래에는 정치인과 연예인이 함께 속하는데 이들은 일종의 셀러브리티 즉 유명인들로서 혐오표현 대상이 됨. 오른쪽 아래는 남성과 여성으로 젠더정치의 두 주체라는 의미가 있음. 이를 종합해 보면 그림의 오른쪽은 일종의 정체성의 정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6-66] 혐오표현 접한 경로와 대상의 교차분석 결과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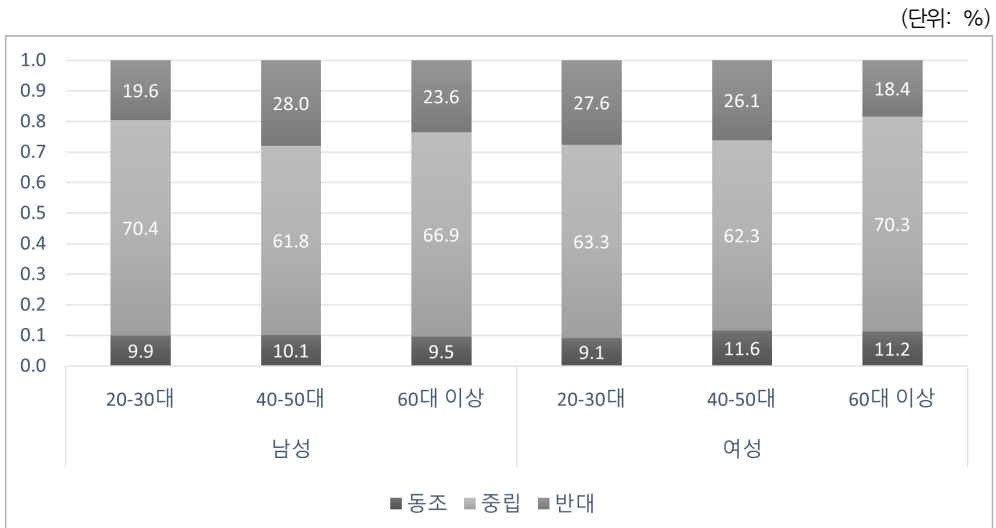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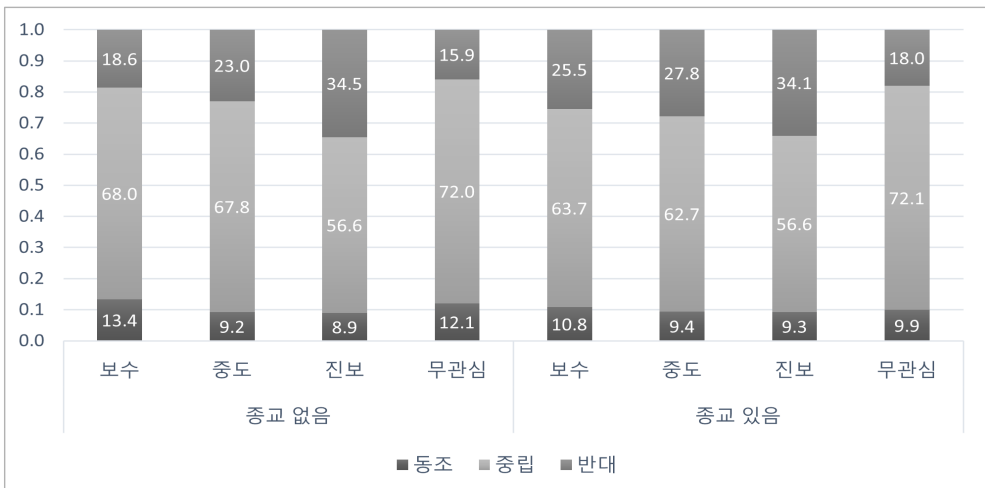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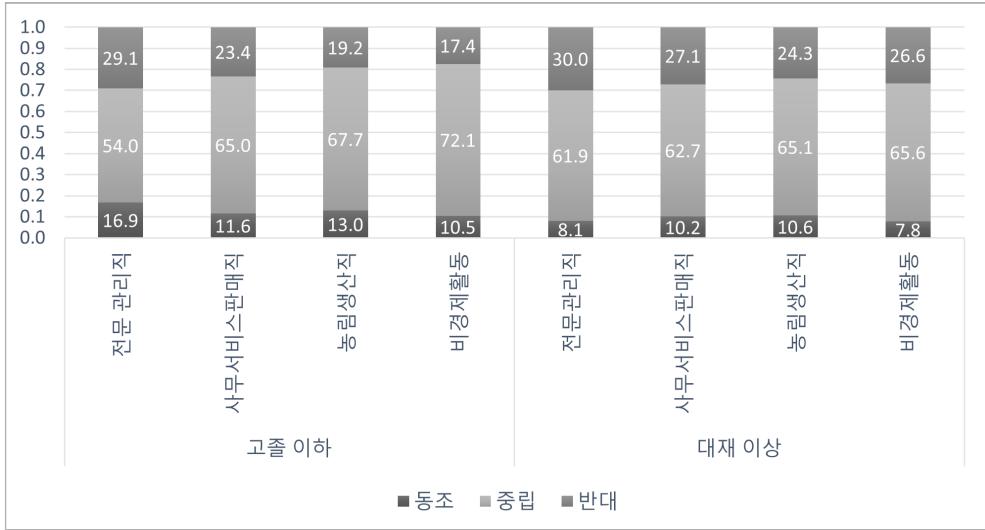
- [그림 6-66]은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와 혐오의 대상을 교차분석한 결과임. 일반적 교차분석과 달리 이들 측은 모두 다중선택을 허용한 결과임
 - 어느 경로와 어떤 대상이 주로 연결되는가를 보면 인터넷 방송의 경우 정치인과 연예인, 성소수자, 종교인이 등장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과 특정 지역출신, 성소수자와 정치인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SNS에서도 여성과 성소수자, 종교인이 주로 등장함

6.5.2.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 [그림 6-67]은 혐오표현을 접한 응답자가 어떤 반응을 하였는가를 배경 변수별로 비교한 결과임
- 인구학적 변수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동조는 10% 내외인 반면, 중립과 반대는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임. 반대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40~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은 20~3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중립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의 경우 20~30대, 여성은 60대 이상임
- 교육 수준별, 직업별 비교 결과를 보면 동조에서 교육 수준별 차이는 전문관리직에서 두드러져서 대학교 재학 이상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관리직은 두배 가까이 동조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전반적으로 대학교 재학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반대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음. 정치 사상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보면 종교는 보수 성향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동조 비율을 높이고 반대 비율을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음
-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에서 진보로 갈수록 반대의 비율이 일관되게 높아지고 있음

[그림 6-67]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의 배경변수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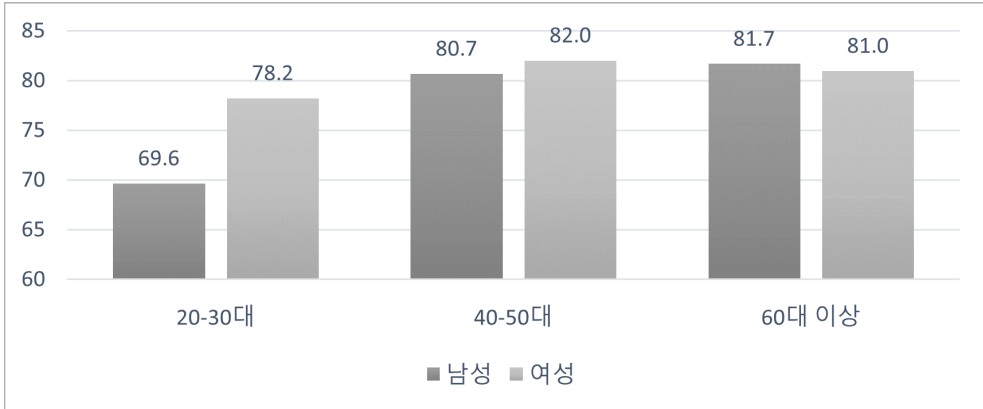
6.5.3. 혐오표현에 대한 의견

- 혐오표현의 문제는 혐오라는 인권침해적 공격과 표현의 자유라는 정치시민적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사안임. 자유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반대할 것이며, 안전과 보호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찬성할 것임
-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찬성하는 비율을 성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가 [그림 6-68]임. 40~50대 이상이 80%가 넘는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는 것에 비해, 20~30대는

그보다 찬성 비율이 낮으며 성별로 차이를 보임. 20~30대 여성이 78% 찬성으로 다른 성별-연령대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20~30대 남성은 70%로 다른 집단에 비해 10%p 넘게 낮은 찬성 비율을 보임

[그림 6-68] 혐오표현 규제 찬성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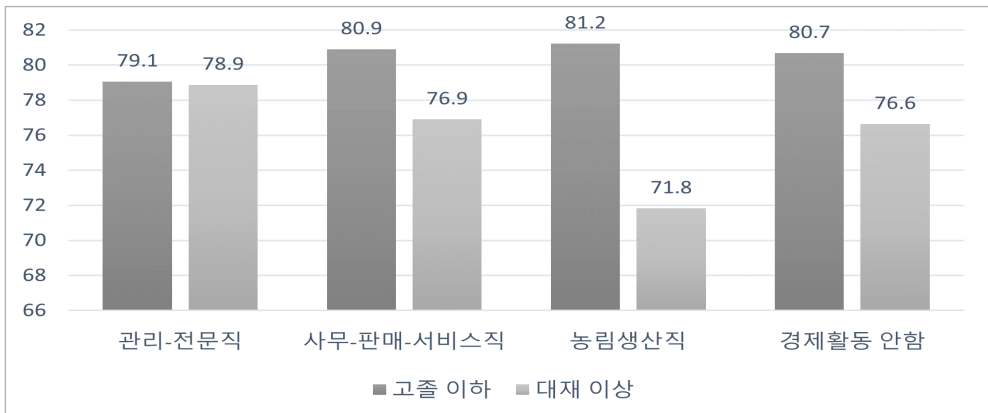
(단위: %)



- 혐오표현에 대한 찬성비율을 교육 수준별, 직업별로 비교한 결과가 [그림 6-69]임. 대체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직업별 차이가 보이지 않음. 반면 대학교 재학 이상에서는 직업별 차이가 큰 편인데 특히 농림생산직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5~7%p 낮은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6-69] 혐오표현 규제 찬성 비율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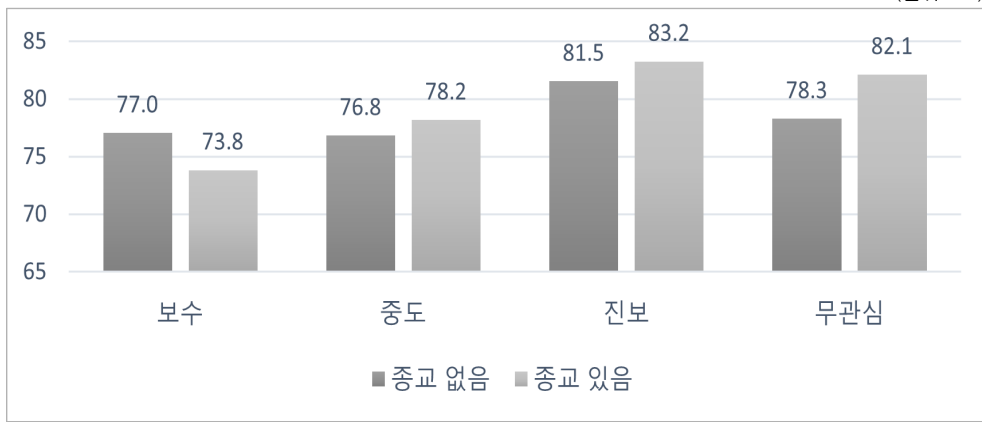
(단위: %)



- 혐오표현 규제 찬성 비율을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로 비교한 [그림 6-70]에 따르면 보수에서 진보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함. 정치적 무관심층은 진보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임. 한편 종교의 효과는 보수에서만 찬성 비율을 낮추고, 다른 성향에서는 찬성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6-70] 혐오표현 규제 찬성 비율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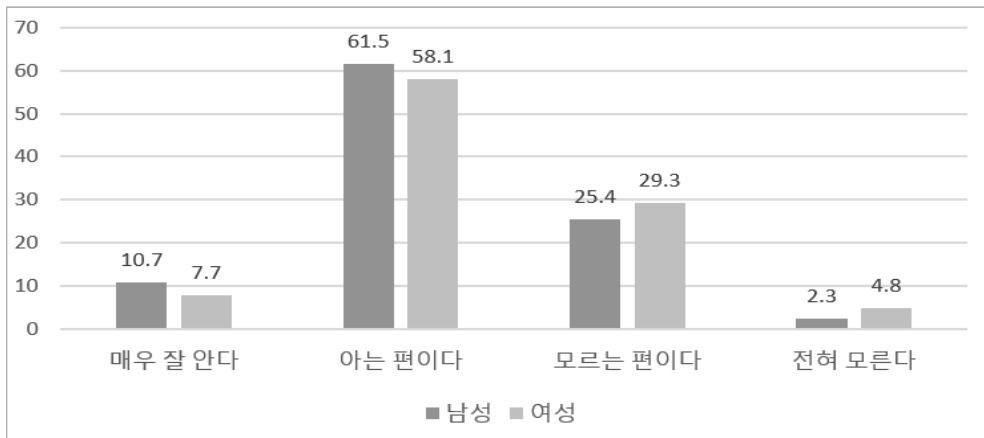
7 인권교육 및 개선

7.1. 인권 규범 인지의 배경별 분석

-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와 행동규범에 대해 ‘안다’는 응답이 69.0%로 ‘모른다’는 응답(31.0%)보다 높았음
-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권 규범을 인지하고 있는 남성 비율은 72.2%로 전체 응답보다 높았고 여성(65.8%)과 비교해서도 6.4%p 높았음

[그림 7-1] 인권 규범 인지의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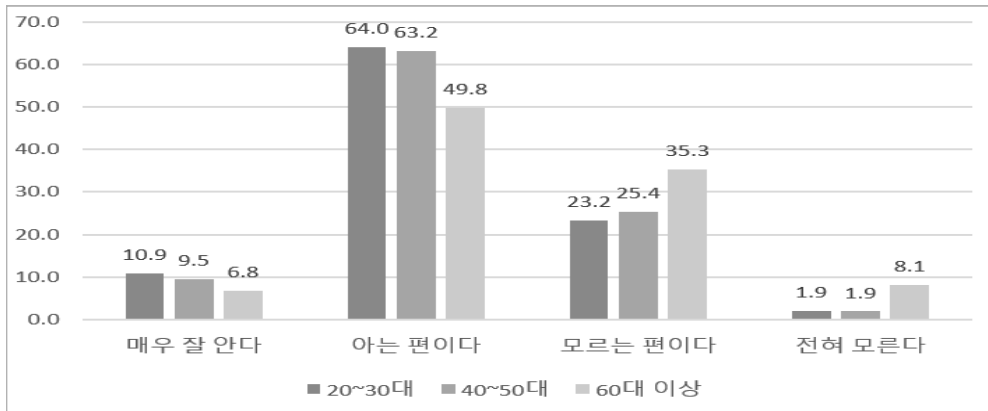
(단위: %)



-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매우 잘 안다’는 20~30대(10.9%) , ‘전혀 모른다’는 60대 이상 연령대(8.1%)에서 가장 높았음

[그림 7-2] 인권 규범 인지의 연령대별 비교

(단위: %)



- 성별,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 남성이 2.86점으로 인권 규범 인지 정도가 가장 높았고, 40~50대(2.83점), 20~30대 여성(2.82점), 40~50대 남성(2.78점) 순이었음

<표 7-1> 인권 규범 인지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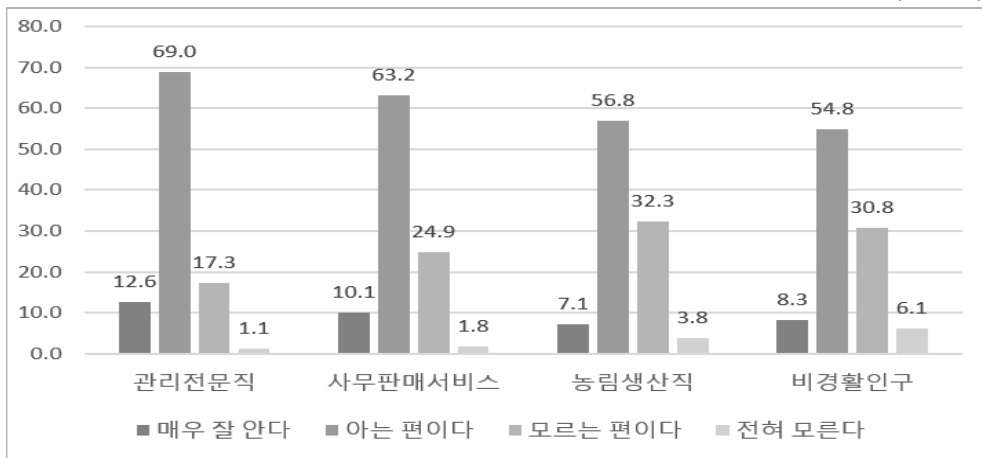
구분	남성	여성
20~30대	2.86	2.82
40~50대	2.83	2.78
60대 이상	2.71	2.42

주1) '1점=전혀 모른다', '4점=매우 잘 안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인권 규범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다고 해석해야 함

- 직업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직업군에서 ‘아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모르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높았던 직업군은 농림생산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였음

[그림 7-3] 인권 규범 인지의 직업별 비교

(단위: %)



- 교육 수준과 직업을 함께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2.85점)와 대학교 재학 이상(2.95 점)에서 모두 관리·전문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음. 직업 분야와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 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대학교 재학 이상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차별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높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음

<표 7-2> 인권 규범 인지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단위 : 점)

구분	관리·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직	농림생산직	경제활동 안함
고졸 이하	2.85	2.71	2.59	2.46
대재 이상	2.95	2.88	2.83	2.90

*주) '1점=전혀 모른다', '4점=매우 잘 안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인권 규범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다고 해석해야 함

- 종교와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종교가 있는 경우(2.89점)와 없는 경우(2.87) 모두에서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졌을 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인지율이 높았음. 가장 낮은 인지율을 보이는 집단은 종교가 없고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경우(2.51점)였음

<표 7-3> 인권 규범 인지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단위 : 점)

구분	보수	중도	진보	무관심
종교 없음	2.73	2.83	2.89	2.51
종교 있음	2.76	2.80	2.87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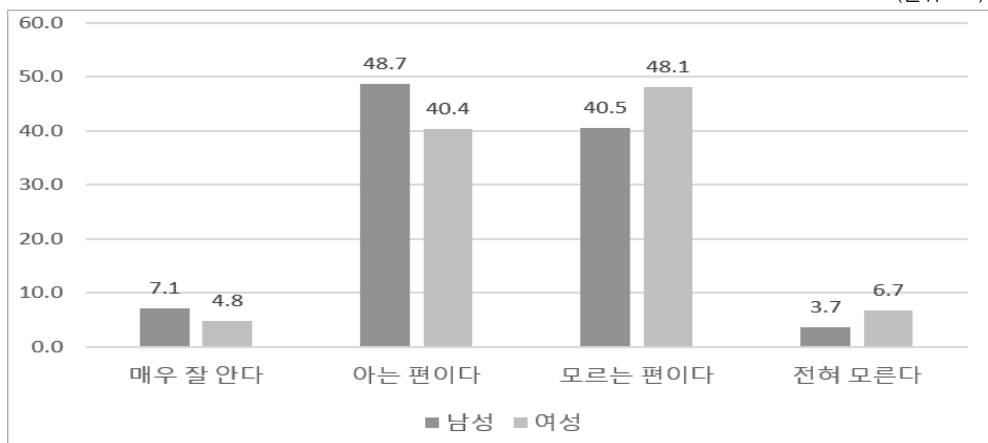
*주) '1점=전혀 모른다', '4점=매우 잘 안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인권 규범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다고 해석해야 함

7.2.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처 인지의 배경별 분석

-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50.5%로 2019년 40.6%보다 9.9%p 높았음
- 인권침해와 차별 시 대처방법에 있어 전 연령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대처방법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40~5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음

[그림 7-4]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처 인지여부의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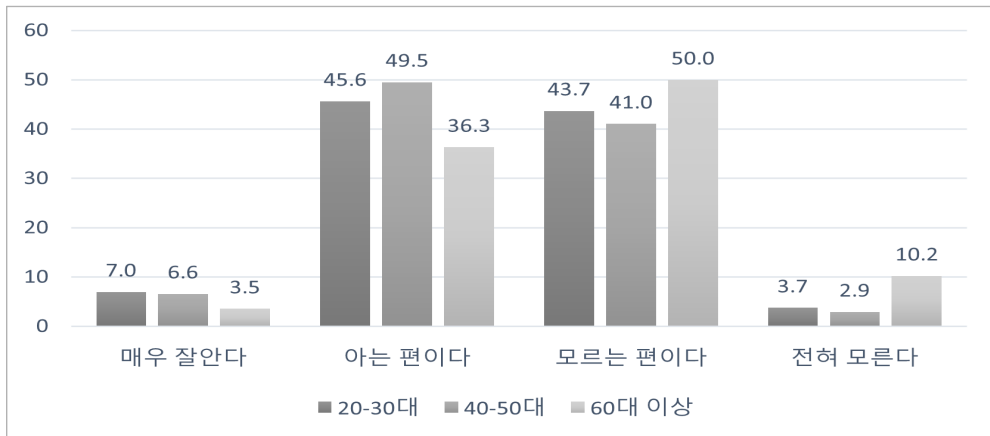
(단위: %)



-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30대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안다(매우+아는 편)는 응답이 52.6%, 40~50대는 56.1%로 모른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며, 60대 이상의 경우 안다는 응답의 비율이 39.8%,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10.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처 인지도가 낮은 편으로 확인됨

[그림 7-5]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처 인지의 연령대별 비교

(단위: %)



<표 7-4>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처 방법의 인지 정도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단위: 점)

구분	남성	여성
20~30대	2.62	2.50
40~50대	2.63	2.54
60대 이상	2.49	2.21

주) '1점=전혀 모른다', '4점=매우 잘 안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인권 규범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다고 해석해야 함

- 성별,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40~50대 남성의 대처방법 인지도가 높았고, 60대 이상 여성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7-5>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처 방법의 인지 정도

구분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값
20~30대	남성	2.62	0.12***	0.00	339.12
	여성	2.50			
40~50대	남성	2.63	0.08***	0.00	259.14
	여성	2.54			
60대 이상	남성	2.49	0.28***	0.00	708.75
	여성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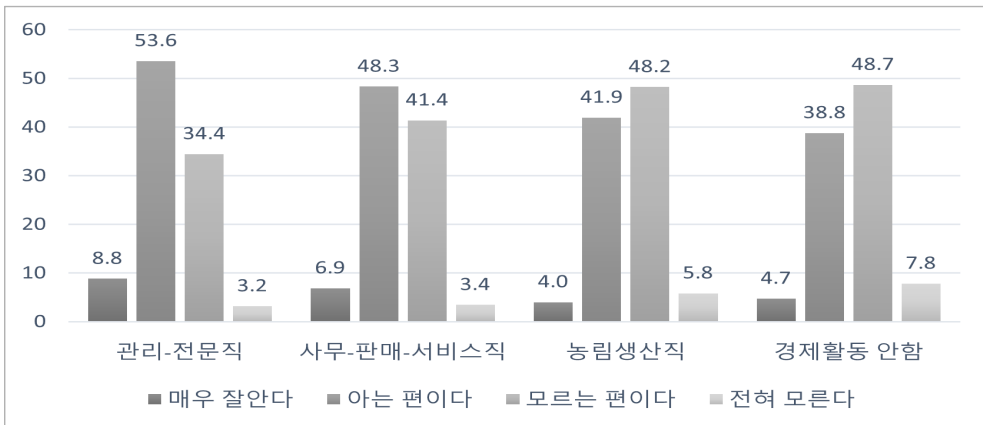
*p<0.05 **p<0.01 ***p<0.001

*주) '1점=전혀 모른다', '4점=매우 잘 안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인권 규범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다고 해석해야 함

- 직업별로 살펴본 결과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매우+아는 편)는 응답은 관리·전문직에서 62.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사무·판매·서비스직에서는 55.2%, 농림생산직은 45.9%,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43.5%로 알고 있다고 응답해 직업의 차이에 따라 대처 방법 인지도의 차이가 확인됨

[그림 7-6]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처 방법의 인지 정도의 직업별 비교

(단위: %)



- 학력과 직업을 함께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2.57점)와 대학교 재학 이상(2.69점) 모두에서 관리·전문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체하는지에 대해 타 집단보다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짐.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2.27점)이, 대학교 재학 이상에서는 농림생산직(2.59점)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차별받았을 때 대체 방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임

<표 7-6>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처 방법의 인지 정도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단위 : 점)

구분	관리·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직	농림생산직	경제활동안함
고졸 이하	2.57	2.50	2.39	2.27
대재 이상	2.69	2.64	2.59	2.62

- 종교와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종교가 있는 경우(2.61점)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에도 진보적 정치 성향(2.63점)을 가졌을 때 인권침해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음. 반면, 종교가 있는 경우(2.36점)와 없는 경우(2.31점) 모두 정치적으로 무관심할 때 가장 낮은 인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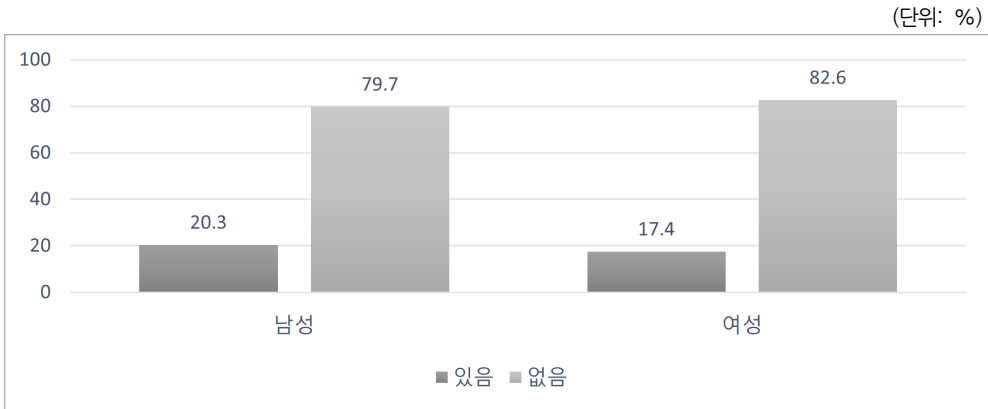
<표 7-7>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처 방법의 인지 정도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단위 : 점)

구분	보수	중도	진보	무관심
종교 없음	2.51	2.58	2.63	2.31
종교 있음	2.55	2.56	2.61	2.36

7.3. 인권교육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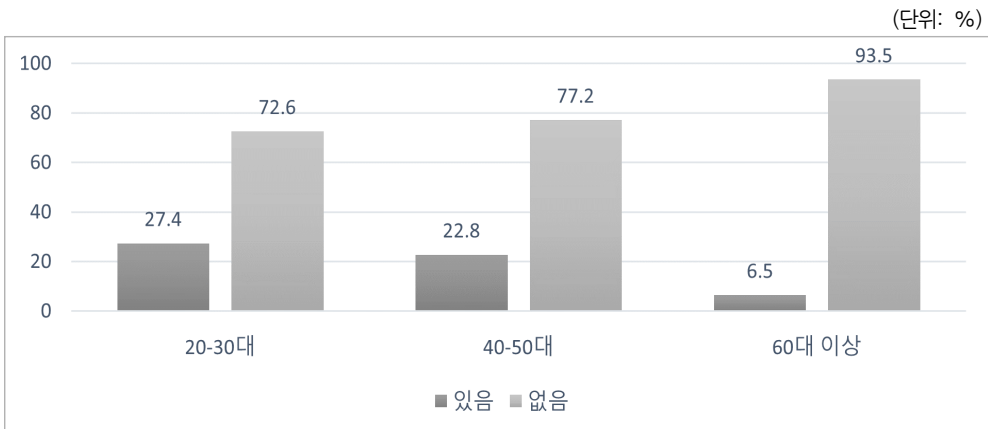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인권교육 경험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인권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79.7%인데 반해서 여성은 82.6%로 여성의 인권교육 경험률이 2.9% 높게 나타남

[그림 7-7]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성별 비교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인권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60대 이상의 집단에서 인권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93.5%로 20~30대의 인권교육 경험률 72.6%에 비해 상당히 낮아 향후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그림 7-8]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



<표 7-8> 인권교육 경험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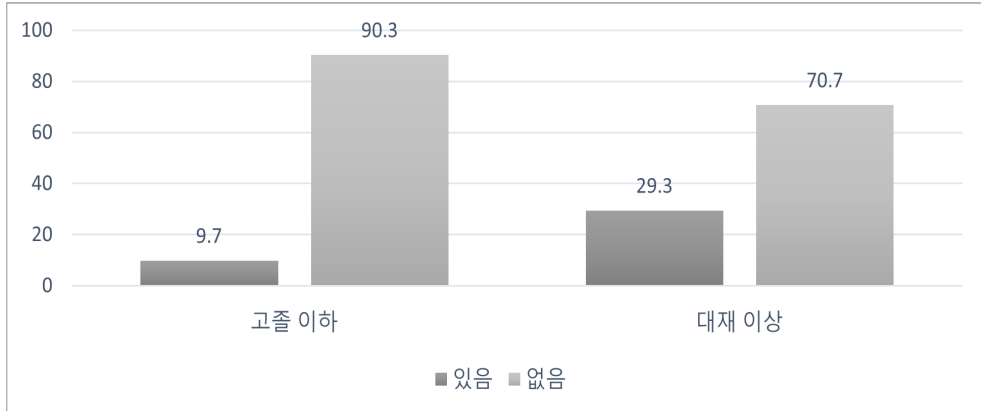
구분	남성	여성
20~30대	0.25	0.27
40~50대	0.24	0.21
60대 이상	0.08	0.06

주) '0점=교육경험 없음', '1점=교육경험 있음'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교육을 접한 정도가 높다고 해석해야 함

- 교육 수준별 인권교육 경험의 차이로 살펴본 결과 대학교 재학 이상의 응답자 중에서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한 비율은 29.3%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인권교육 경험을 9.7%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았음. 이는 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인권교육을 경험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므로 향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을 시사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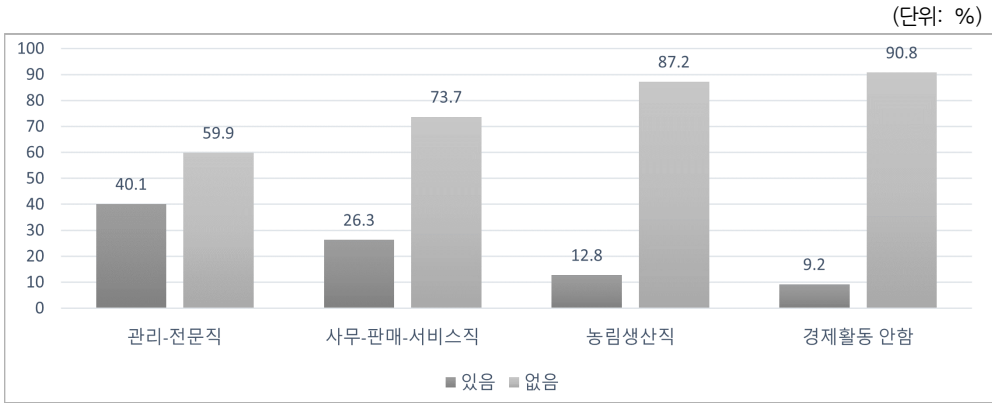
[그림 7-9]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교육 수준별 비교

(단위: %)



- 직업별 인권교육 경험으로 살펴본 결과 관리·전문직에서 인권교육 경험 비율은 40.1%로 사무·판매·서비스직 26.3%, 농림생산직 12.8%,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 9.2%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그림 7-10]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직업별 비교



- 학력과 직업을 함께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0.24점)와 대학교 재학 이상(0.42점) 모두에서 관리-전문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타 집단에 비해 높은 모습을 보임. 반면 인권교육 경험이 가장 낮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0.05점)와 대학교 재학 이상(0.15점)에서 모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이었음

<표 7-9> 인권교육 경험의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단위 : 점)

구분	관리-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직	농림생산직	경제활동 안함
고졸 이하	0.24	0.17	0.11	0.05
대재 이상	0.42	0.31	0.23	0.15

주) '0점=교육경험 없음', '1점=교육경험 있음'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교육을 접한 정도가 높다고 해석해야 함

- 종교와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종교가 있는 경우(0.27점)와 없는 경우(0.26점) 모두에서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졌을 때 인권교육을 받은 정도가 가장 높았고, 무관심일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0.12점, 종교가 없는 경우 0.1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표 7-10> 인권교육 경험의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단위 : 점)

구분	보수	중도	진보	무관심
종교 없음	0.18	0.23	0.26	0.14
종교 있음	0.15	0.23	0.27	0.12

주) '0점=교육경험 없음', '1점=교육경험 있음'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교육을 접한 정도가 높다고 해석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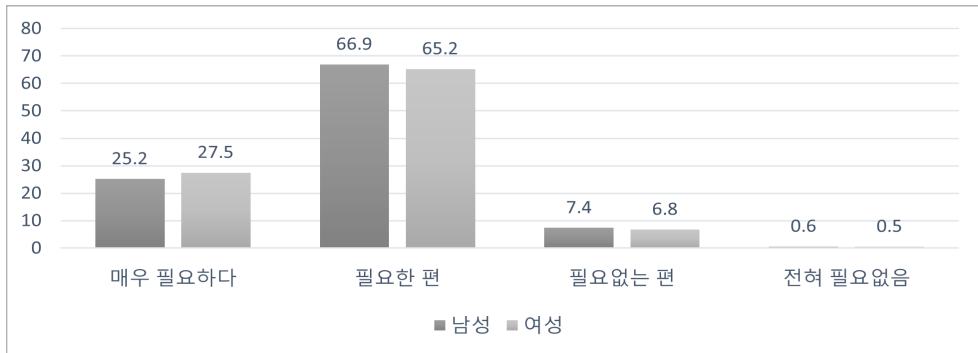
7.4. 인권교육 필요성 및 교육대상, 주제

7.4.1. 인권교육 필요성 비교

-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해 남성은 92.1%, 여성은 92.7%가 필요하다(매우+필요한 편)고 응답함

[그림 7-11]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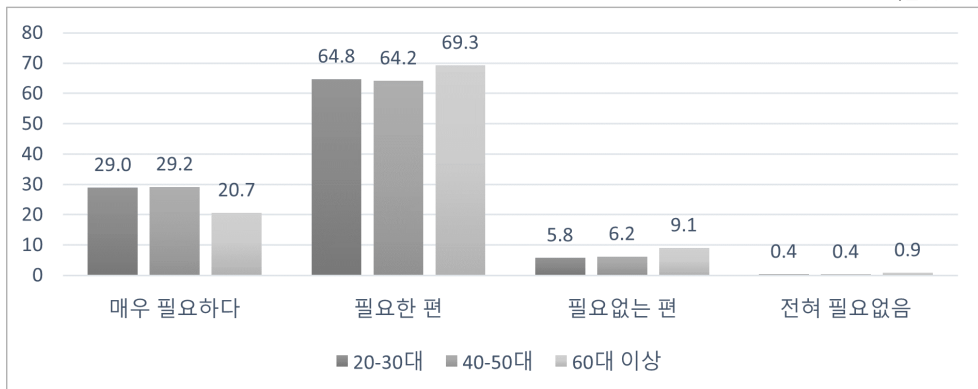
(단위: %)



-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있어 20~30대에서는 93.8%, 40~50대 93.4%, 60대 이상 9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함

[그림 7-12]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

(단위: %)



- 성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 여성 집단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3.30점)는 응답이 가장 높고 60대 이상 여성(3.07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7-11>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비교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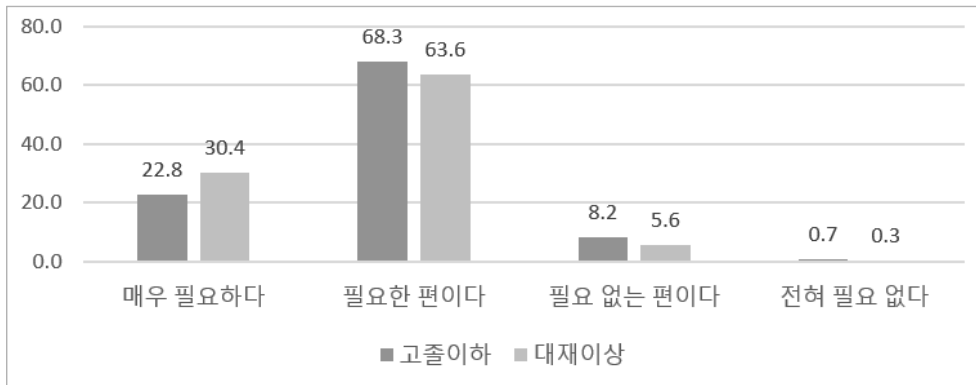
구분	남성	여성
20~30대	3.16	3.30
40~50대	3.20	3.25
60대 이상	3.12	3.07

*주) '1점=전혀 필요 없다', '4점=매우 필요하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정도가 높다고 해석해야 함

-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교육 수준 별로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교 재학 이상 모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91%, 대학교 재학 이상의 집단 중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94%로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13]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교육 수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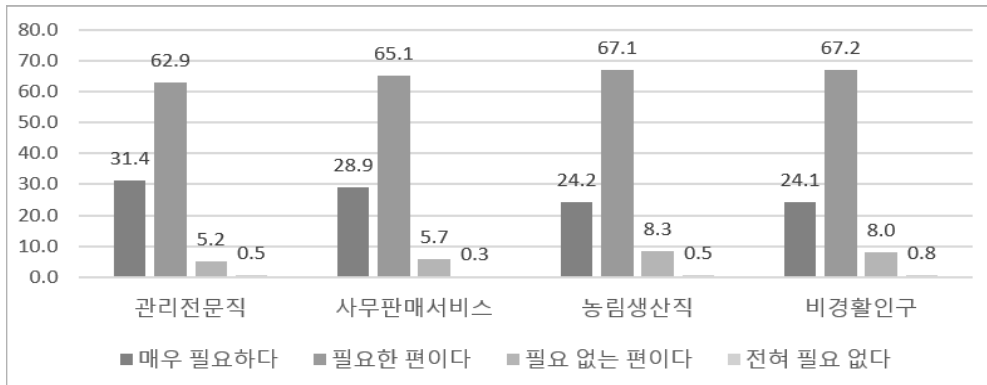
(단위: %)



- 직업별로 살펴본 결과 관리·전문직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94.5%로 가장 높고, 사무·판매·서비스직은 94.0%, 농림생산직은 91.3%로 직업별 편차는 크지 않음

[그림 7-14]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직업별 비교

(단위: %)



- 교육 수준과 직업별로 비교하면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사무·판매·서비스직(3.16점), 대학교 재학 이상에서는 관리·전문직(3.27점)에서 높게 느끼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3점 이상(4점=매우 필요하다)으로 인권교육 필요성을 높게 느끼고 있음

<표 7-12>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수준, 직업별 비교

(단위: 점)

구분	관리·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직	농림생산직	경제활동 안함
고졸 이하	3.15	3.16	3.13	3.09
대재 이상	3.27	3.26	3.17	3.23

*주) '1점=전혀 필요 없다', '4점=매우 필요하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정도가 높다고 해석해야 함

- 종교와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종교가 있는 경우(3.32점)와 없는 경우(3.33 점) 모두에서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졌을 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 종교 유무와 상관없이 정치 성향이 무관심일 경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표 7-13>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종교 유무, 정치 성향별 비교

(단위 : 점)

구분	보수	중도	진보	무관심
종교 없음	3.16	3.20	3.32	3.09
종교 있음	3.13	3.18	3.33	3.10

*주) '1점=전혀 필요 없다', '4점=매우 필요하다'이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정도가 높다고 해석해야 함

7.4.2. 인권교육 여부별 인권교육 필요성 비교

-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95.5%)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91.7%)보다 인권교육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음, 인권교육 유경험자의 인권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40.3%로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17.1%p 높아 인권교육 확대를 통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전파할 필요가 있음

<표 7-14> 인권교육 여부별 인권교육 필요성

(단위 : %)

인권 교육	인권교육 필요성				전체	카이제곱
	매우 필요	필요	필요 없음	전혀 필요없음		
안받음	23.2	68.5	7.7	0.6	100.0%	348.327 ***
받음	40.3	55.2	4.1	0.4	100.0%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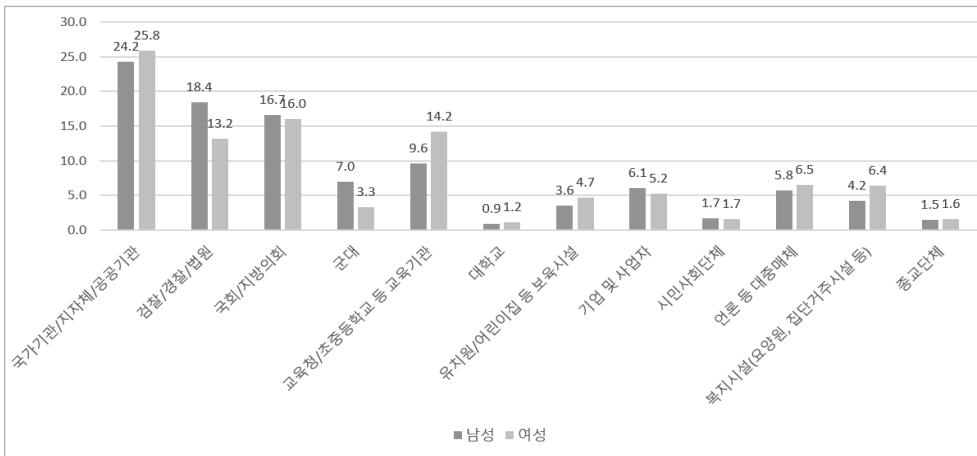
7.4.3. 인권교육이 필요한 대상 비교

-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의식을 높여야 할 대상(1순위)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25.0%로 가장 많았음
-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24.2%), 여성(25.8%) 모두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응

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두 번째로 응답한 대상의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 검찰·경찰·법원(18.4%), 여성은 국회·지방의회(16.7%)를 꼽음

[그림 7-15] 인권교육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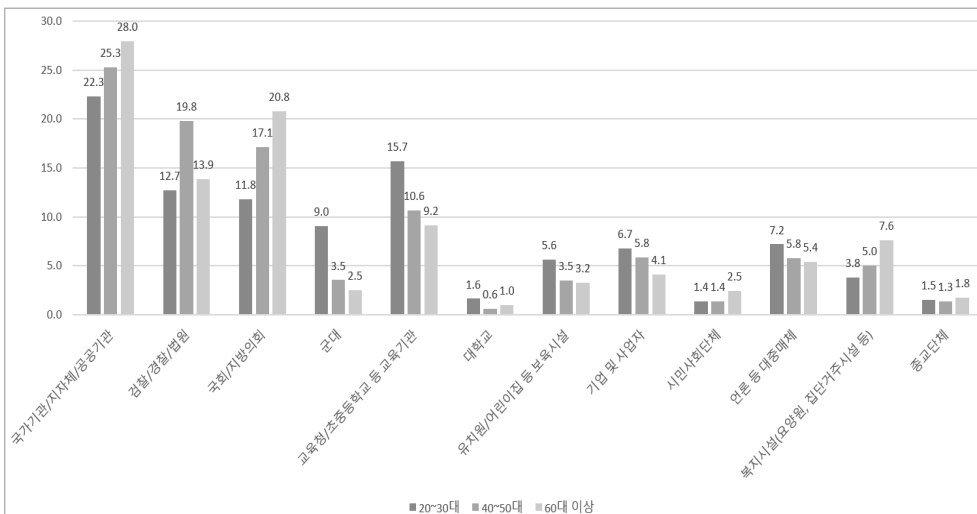
(단위: %)



- 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1순위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라고 응답하였음. 60대 이상에서 인권교육의 대상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8%로 40~50대 연령층(25%)이나 20~30대 연령층(2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그림 7-16] 인권교육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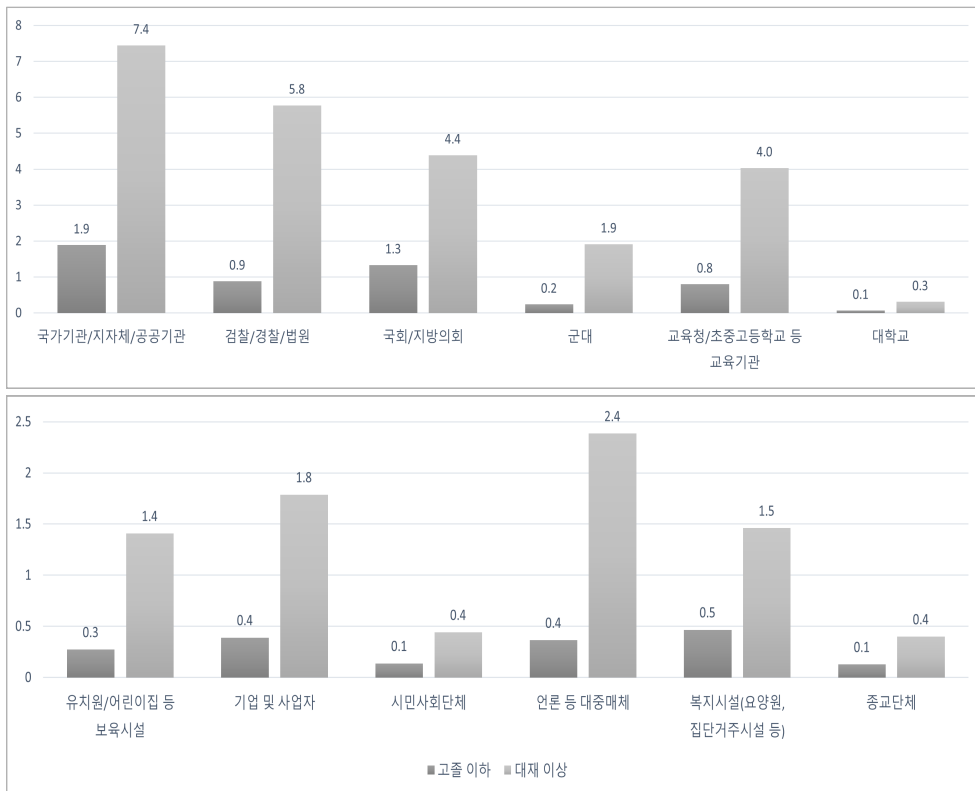
(단위: %)



- 교육 수준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학교 재학 이상인 집단에서는 1순위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7.4%), 2순위로 검찰·경찰·법원(5.8%), 3순위로 국회·지방의회(4.4%)를 꼽음.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에서는 1순위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1.9%), 2순위로 국회·지방의회(1.3%), 3순위로 검찰·경찰·법원(0.9%)을 꼽음

[그림 7-17] 인권교육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교육 수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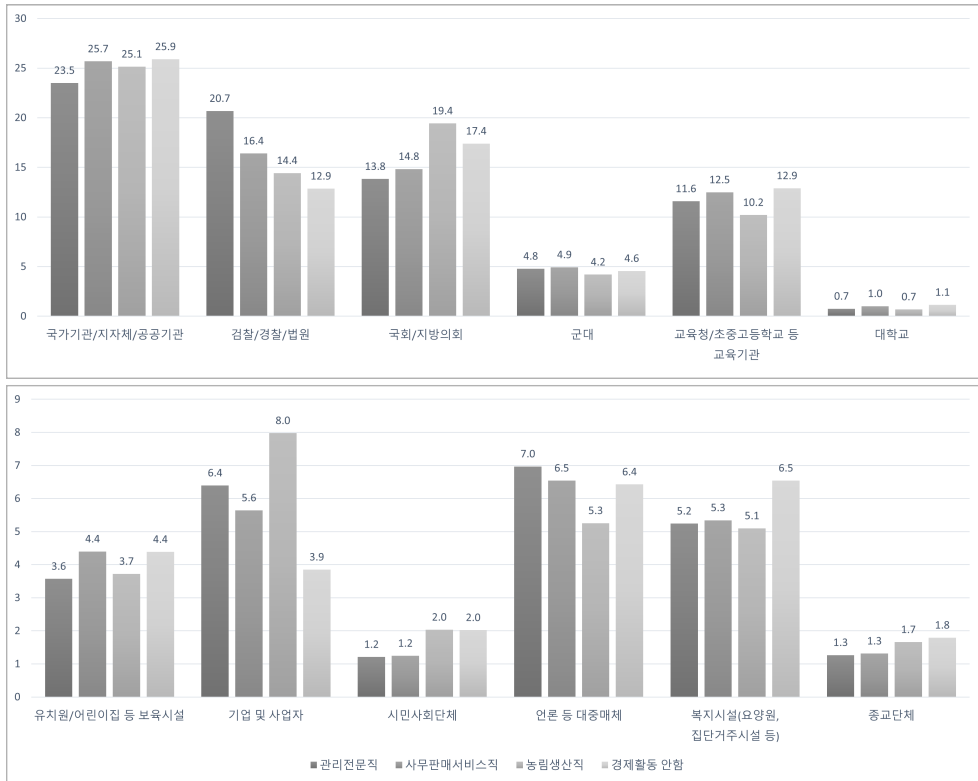
(단위: %)



- 직업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직업군에서 1순위로 모두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꼽았음. 두 번째로 많은 응답으로 관리·전문직과 사무·판매·서비스직 종사자는 검찰·경찰·법원을 선택한 반면, 농림생산직 종사자는 국회·지방의회를 선택하였음

[그림 7-18] 인권교육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직업별 비교

(단위: %)



7.4.4.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비교

-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1순위)는 성평등(19.9%), 혐오·차별 예방(18.0%), 장애인 인권(17.7%), 노동 인권(15.9%)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가장 시급한 주제로 노동 인권(19.0%)을 꼽은 반면, 여성은 성평등(23.6%)에 대한 응답이 높았음
 - 여성은 2019년에 이어 성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인권교육 주제에서 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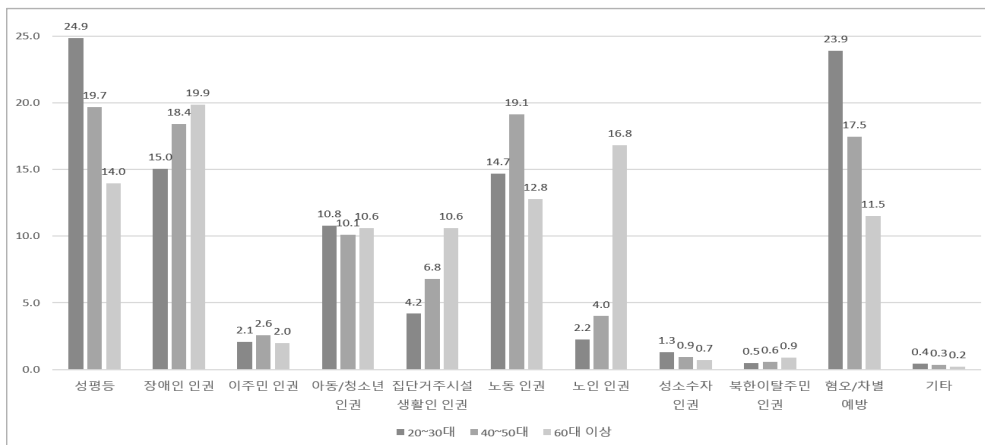
<표 7-15>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에 대한 성별 비교

구분	남성				여성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성평등	17.7	3	16.1	4	25.8	1	23.6	1
장애인 인권	24.9	1	18.5	3	22.3	2	16.9	3
이주민 인권	4.1	7	2.4	8	3.0	7	2.1	8
아동·청소년 인권	10.6	5	9.8	5	11.0	4	11.1	5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	9.4	6	7.0	6	8.5	6	6.9	7
노동 인권	-	-	19.0	1	-	-	12.8	4
노인 인권	10.8	4	6.1	7	10.3	5	7.8	6
성소수자 인권	1.5	9	1.0	9	0.9	9	1.0	9
북한이탈주민 인권	1.8	8	0.7	10	1.1	8	0.5	10
혐오·차별 예방	18.7	2	18.8	2	16.9	3	17.2	2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는 성평등(24.9%)과 혐오·차별 예방(23.9%)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반해서, 40~50대는 성평등(19.7%)과 노동 인권(19.1%)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반면 60대 이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인권(19.9%)이며, 그 다음은 노인 인권을 꼽았음(16.8%)

[그림 7-20]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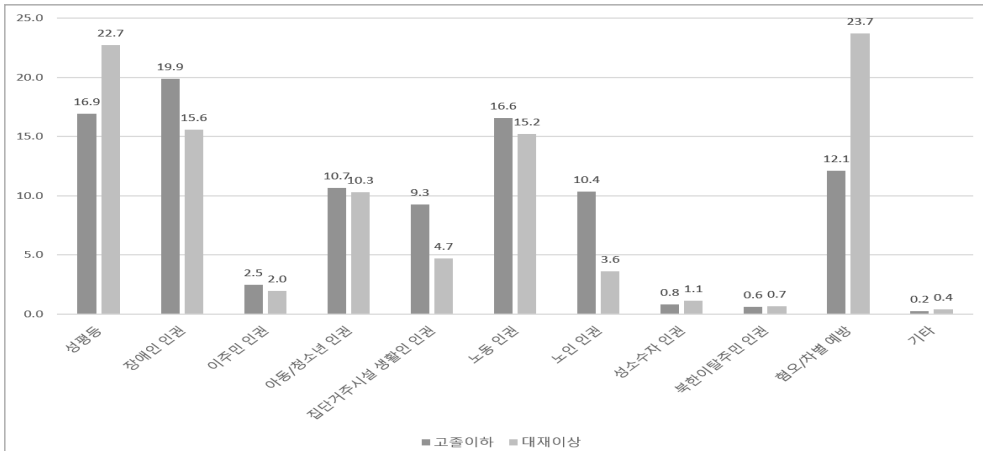
(단위: %)



- 교육 수준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인권(19.9%)이고 다음은 성평등(16.9%)이라고 응답한 반면, 대학교 재학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혐오·차별 예방이며(23.7%) 그다음은 성평등(22.7%)이었음

[그림 7-21]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에 대한 교육 수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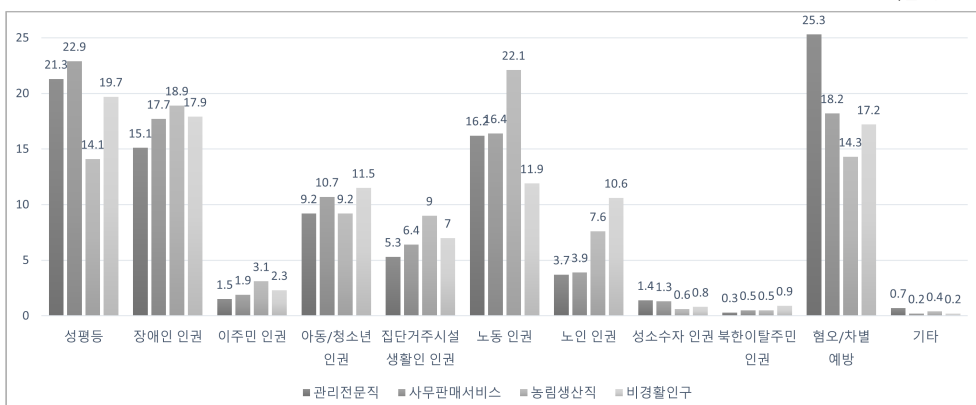
(단위: %)



- 직업별로 결과 관리·전문직의 경우 혐오·차별 예방(25.3%), 성평등(21.3%)을 시급한 주제로 선택한 반면, 사무·판매·서비스직은 성평등(22.9%), 혐오·차별 예방(18.2%)을, 농림생산직의 경우 노동 인권(22.1%), 장애인 인권(18.9%)을 꼽아 직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7-22]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에 대한 직업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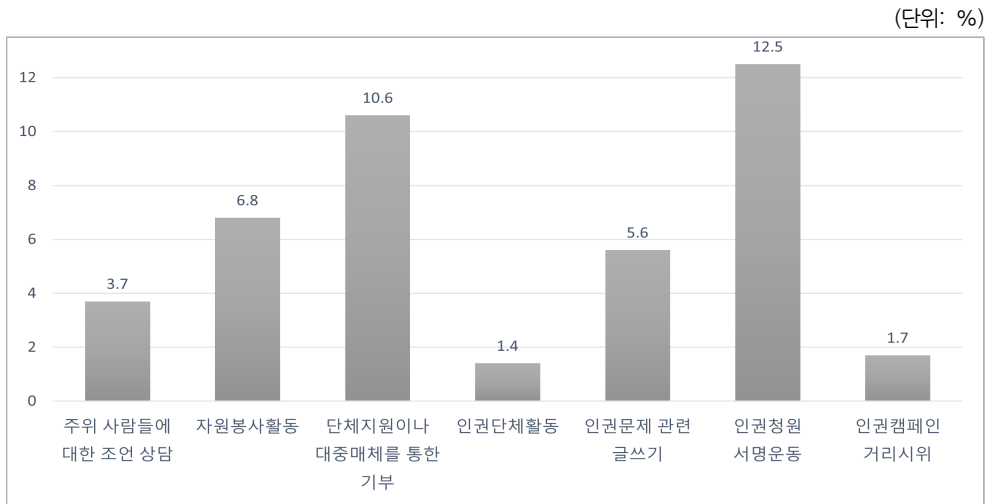
(단위: %)



7.5.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 지난 1년간 인권침해와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많이 한 활동은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12.5%)이었고, 다음으로 단체 지원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기부(10.6%),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6.8%)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23]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복수응답)



-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의 수를 성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여성이 0.59개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 여성이 0.19개로 가장 낮았음

<표 7-16>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수 비교

구분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값
20~30대	남성	0.41	-0.18***	0.030	-6.051
	여성	0.59			
40~50대	남성	0.52	0.04	0.027	1.286
	여성	0.48			
60대 이상	남성	0.26	0.07***	0.022	3.483
	여성	0.19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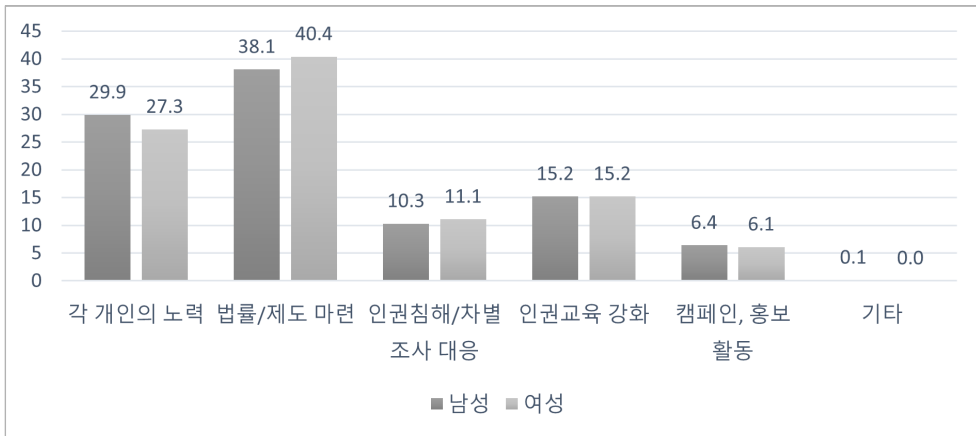
*주) '0점=활동경험 없음', 1점 이상부터 인권활동에 참여한 횟수임. 높은 점수일수록 인권침해 및 차별해소를 위한 활동에 대한 정도가 높다고 해석해야 함

7.6.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법

-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법률과 제도의 마련이 인권보호와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응답하였음. 남성의 경우 각 개인의 노력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2019년보다 2.5%p 감소한 반면, 법률과 제도 마련은 6.1%p 상승함

[그림 7-24] 성별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법 인식 비교

(단위: %)



<표 7-17> 성별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방안 비교

구분	남성				여성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각 개인의 노력	32.4	1	29.9	2	28.2	2	27.3	2
법률·제도 마련	32.0	2	38.1	1	34.1	1	40.4	1
인권침해·차별 조사 대응	12.0	4	10.3	4	11.7	4	11.1	4
인권교육 강화	17.6	3	15.2	3	19.0	3	15.2	3
캠페인, 홍보활동	6.0	5	6.4	5	7.1	5	6.1	5

7.7.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

- 인권침해와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등 공공기관(67.0%)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1순위)
- 성별에 따른 응답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정부 등 공공기관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으로 꼽았고, 2019년에 비해 비율이 각각 3.5%p, 3.6%p 상승함

<표 7-18> 성별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비교

구분	남성				여성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정부 등 공공기관	62.4	1	65.9	1	64.5	1	68.1	1
시민사회단체	5.5	4	6.2	5	5.4	4	6.5	4
차별받는 개인 또는 집단	4.0	5	6.7	4	3.7	5	5.8	5
언론	10.9	3	9.3	3	10.1	3	8.8	3
교육기관	15.9	2	11.1	2	15.9	2	10.2	2
국제기구	0.8	6	0.5	6	0.4	6	0.4	6
기타	0.4	7	0.3	7	0.1	7	0.2	7

제 2 부

통계로 본 인권상황 국제 비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국가인권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국가인권통계는 11개 인권영역과 41개 인권 주제에 걸쳐 총 460건이 작성됨
- 국가인권통계는 정부가 집계하는 각종 국가통계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국가인권실태조사」 자료로 작성됨. 국가인권통계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측정된 시계열 통계로 작성되기 때문에 인권상황의 변화와 동향을 살펴보는 데 유용함. 하지만 한국의 인권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인권상황의 객관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이 장에서는 OECD를 비롯한 해외 주요 기관들의 국제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고자 함
- 먼저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발한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권리 유형에 따라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나누어 살펴봄
 - 시민·정치적 권리는 인권지수 연구기관인 Human Rights Measurement Initiative (HRMI)가 개발한 안전권과 역능권 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봄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삶의 질의 주요 국면, 즉 건강, 교육, 노동, 물질적 생활수준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봄. 여기에는 OECD가 회원국으로부터 집계한 공식 통계를 활용함
- 다음으로 여성, 아동, 노인과 같은 인권 취약집단의 인권상황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살펴봄. 특히 OECD의 성별 자료를 이용하여 젠더 불평등의 상대적 수준을 가늠해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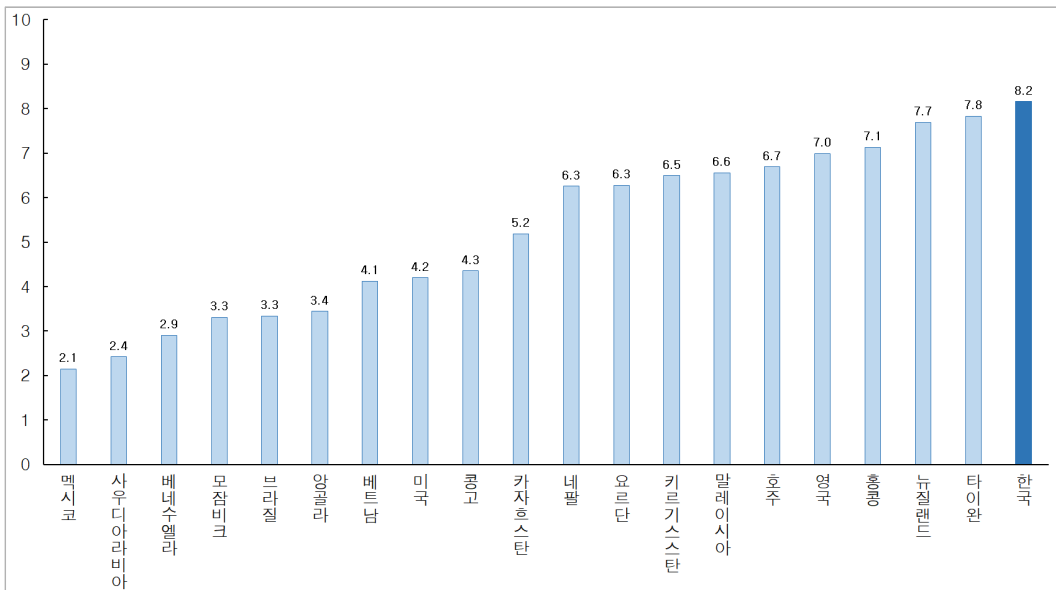
1 시민·정치적 권리 국제 비교

- 이 절에서는 Human Rights Measurement Initiative(HRMI)가 개발한 안전권과 역능권 지수를 통해 시민·정치적 권리의 수준을 비교해 보고자 함

1.1. 안전권

- HRMI 안전권 지수는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Right to freedom from arbitrary arrest), 실종으로부터의 자유권(Right to freedom from disappearance), 사형으로부터의 자유권(Right to freedom from the death penalty), 비사법적 처형으로부터의 자유권(Right to freedom from extrajudicial execution), 고문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권(Right to freedom from torture) 등 5가지 하위 항목으로 이루어짐
- HRMI가 2020년에 측정한 한국의 안전권 지수는 10점 만점 기준 8.2점으로 비교 대상 20개 국가 중 1위임. 한국에 이어 타이완(7.8점), 뉴질랜드(7.7점), 홍콩(7.1점), 영국(7.0점) 등이 높음

[그림 1] HRMI 안전권 지수, 2020



*자료: HRMI Rights Tracker(<https://rightstracker.org>).

- 안전권 지수의 하위 항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서 3위, 실종으로부터의 자유권에서 1위, 사형으로부터의 자유권에서 공동 1위, 비사법적 처형으로부터의 자유권에서 2위, 고문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권에서 3위 등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순위를 나타냄

<표 1> HRMI 안전권 지수 항목별 점수,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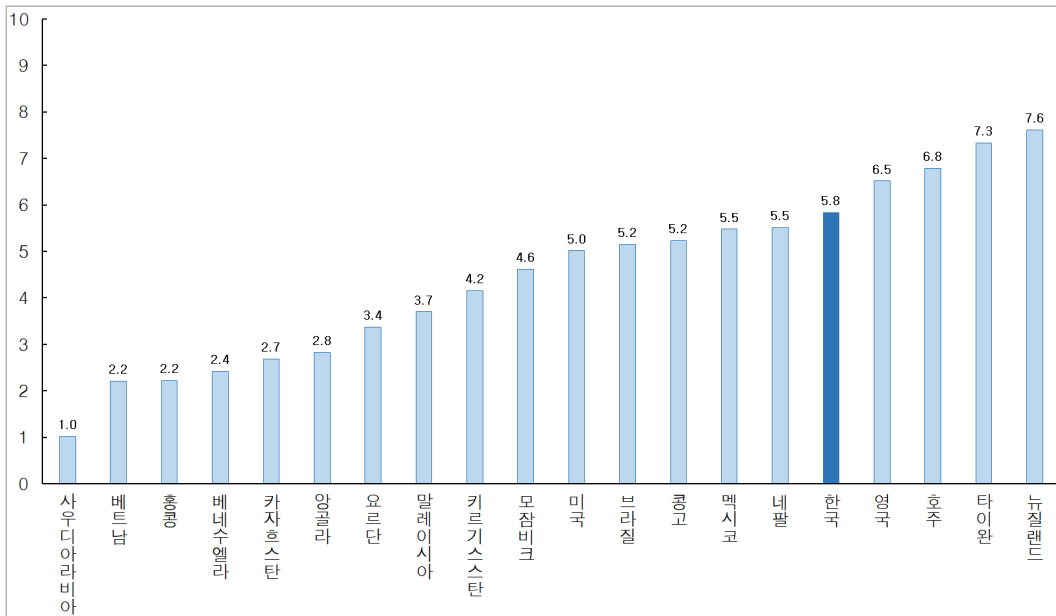
국가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실종으로부터의 자유권	사형으로부터의 자유권	비사법적 처형으로부터의 자유권	고문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권
한국	6.4	9.2	10.0	7.8	5.7
타이완	7.2	8.8	7.7	7.8	6.6
뉴질랜드	6.6	8.7	10.0	7.3	5.8
홍콩	2.6	7.9	10.0	8.1	4.6
영국	5.9	8.3	10.0	6.6	5.5
호주	5.4	8.4	10.0	6.0	4.9
말레이시아	4.9	7.7	10.0	6.7	4.2
키르기스스탄	4.0	7.6	10.0	7.1	4.1
요르단	3.2	6.5	10.0	7.6	4.3
네팔	4.2	7.4	10.0	6.4	4.9
카자흐스탄	2.6	5.9	10.0	6.6	2.9
콩고	3.8	5.8	10.0	4.4	4.1
미국	4.0	6.6	4.4	4.0	3.6
베트남	2.8	4.9	4.4	5.7	3.8
앙골라	4.1	5.0	10.0	3.0	4.7
브라질	3.1	4.3	10.0	2.9	2.8
모잠비크	1.2	4.8	10.0	3.8	2.7
베네수엘라	2.6	3.8	10.0	2.7	3.3
사우디아라비아	1.1	3.2	4.2	4.1	2.8
멕시코	3.3	1.7	10.0	3.5	2.6
한국 순위	3·20	1·20	1·20	2·20	3·20

*자료: HRMI Rights Tracker(<https://rightstracker.org>).

1.2. 역능권

- HRMI 역능권 지수는 결사권(Right to assembly and association), 표현권(Right to opinion and expression), 참여권(Right to participate in government)의 3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성됨
- 한국의 역능권 지수는 10점 만점 기준 5.8점으로 뉴질랜드(7.6점), 타이완(7.3점), 호주(6.8점), 영국(6.5점)에 이어 비교 대상 20개국 중 5위로 평가됨

[그림 2] HRMI 역능권 지수, 2020



*자료: HRMI Rights Tracker(<https://rightstracker.org>).

- 역능권 지수의 하위 항목별로 보면, 한국은 표현권과 참여권에서 각각 4위와 5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지만 결사권에서는 11위로 떨어짐

<표 2> HRMI 역능권 지수 항목별 점수, 2020

국가	결사권	표현권	참여권
뉴질랜드	6.9	7.4	7.8
타이완	7.4	7.1	7.4
호주	6.4	6.1	7.6
영국	5.6	6.5	7.3
한국	5.0	6.1	6.8
네팔	5.9	4.6	5.6
멕시코	5.9	4.7	6.0
콩고	5.7	4.2	5.7
브라질	5.9	4.1	5.8
미국	5.3	5.3	4.7
모잠비크	4.7	3.6	5.8
키르기스스탄	5.8	3.1	3.6
말레이시아	3.7	3.6	4.4
요르단	3.0	2.3	4.6
앙골라	3.0	3.1	3.0
카자흐스탄	3.0	2.8	2.8
베네수엘라	3.0	2.6	2.5
홍콩	2.7	2.8	2.3
베트남	2.8	2.2	2.4
사우디아라비아	1.7	1.3	1.1
한국 순위	11·20	4·20	5·20

*자료: HRMI Rights Tracker(<https://rightstracker.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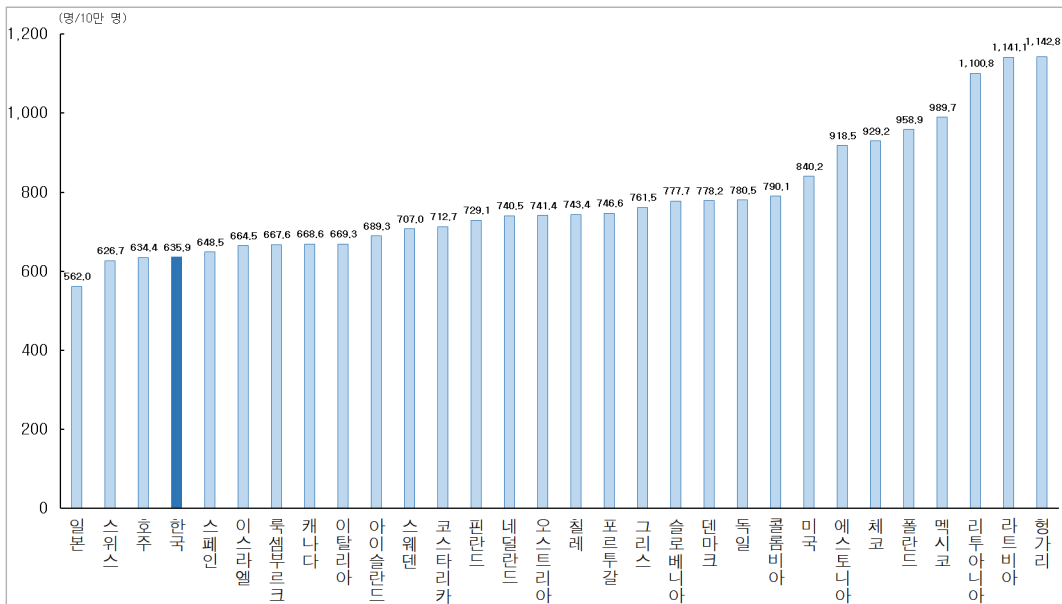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제 비교

- 이 절에서는 한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수준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함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건강, 교육, 노동, 물질적 생활수준 등 개인 삶의 주요 국면별로 나누어 살펴봄. 건강 영역에서는 사망과 의료지출, 교육 영역에서는 교육성취와 교육지출, 노동 영역에서는 근로시간과 저임금근로, 물질적 생활수준 영역에서는 빈곤과 사회지출 수준을 비교함

2.1. 건강

- 사망률은 생명권의 핵심 지표임. 한국인의 사망률은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635.9명으로 비교 대상 30개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임. 한국보다 사망률이 낮은 나라는 일본, 스위스, 호주 등에 불과함
- 한국인의 사망률은 2000년 1,131.7명에서 2019년 595.1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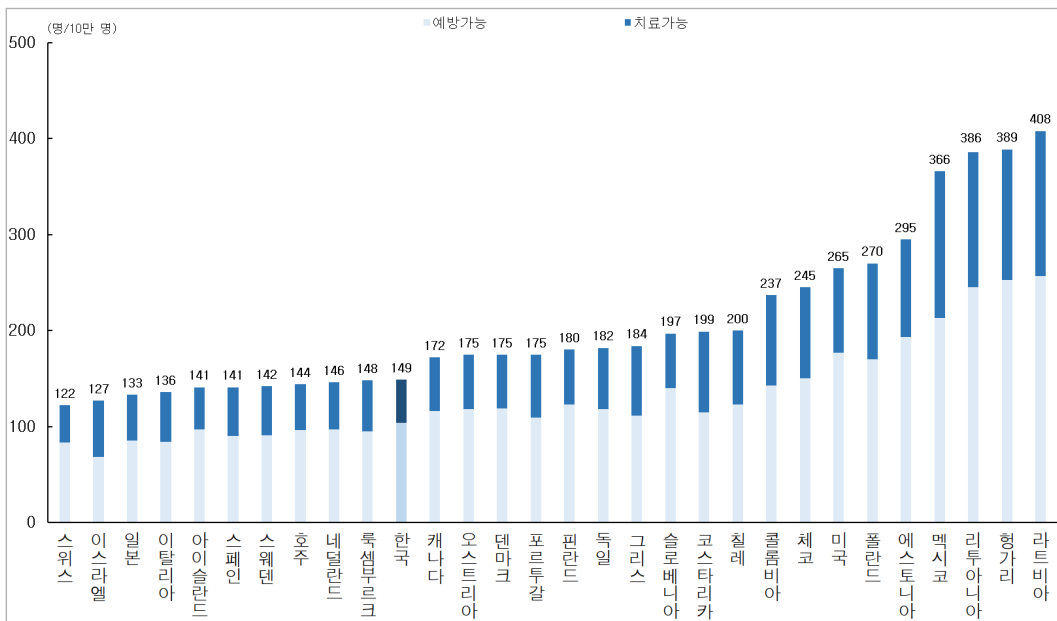
[그림 3] OECD 회원국의 사망률, 2017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 공중보건이나 안전관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했거나, 조기검진이나 시의적절한 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했던 사망자의 규모를 나타내는 회피가능사망률은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49명으로 비교 대상 30개 국가 중 11번째로 낮음
- 같은 해 기준 치료가능사망률은 45명으로 스위스와 아이슬란드에 이어 3번째로 낮지만 예방가능사망률은 104명으로 11번째 낮은 데 그침. 예방가능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사고나 자살에 의한 사망자가 많은 한국적 특징을 보여 주는 결과로 이해됨
- 앞서 살펴본 전체 사망률이 글로벌 최하위 수준인 점에 비추어 보면 회피가능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한국의 회피가능사망률은 2000년 344명에서 2010년 214명, 2019년 139명으로 꾸준히 감소함

[그림 4] OECD 회원국의 회피가능사망률,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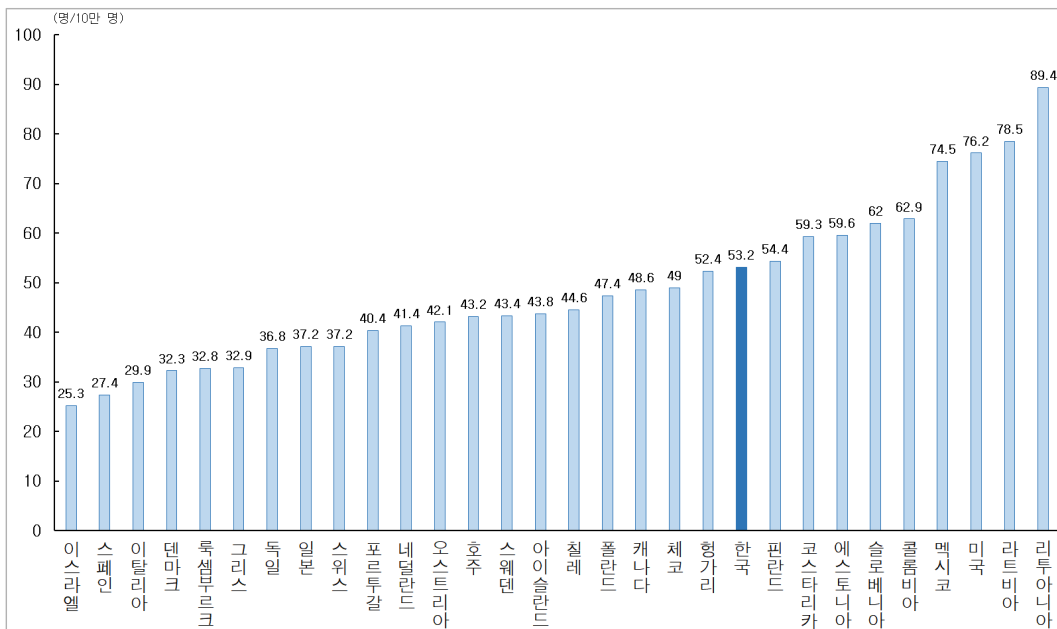


*주) 회피가능사망률 = 예방가능사망률 + 치료가능사망률.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 한편 질병이 아닌 사고, 범죄, 자살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53.2명으로 집계됨. 이는 비교 대상 30개 국가 중 10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전체 사망률이 낮은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임
- 한국인의 사망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2003년 90.4명, 2007년 78.8명, 2013년 67.8명, 2015년 59.6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며,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50.3명으로 더욱 낮아짐
- 사망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사망원인별로 상대적 수준과 변화 추세에서 다른 양상을 보임. 2017년 기준 사고사망률은 25.3명으로 비교 대상 30개 국가 중 12번째로 낮지만 자살률은 23.0명으로 30개국 중 리투아니아에 이어 29번째로 높음. 또한 사고사망률은 2000년 56.7명에서 2010년 34.0명, 2019년 20.7명으로 꾸준히 감소해 온 반면 자살률은 2000년 16.8명에서 2009년 33.8명으로 증가한 후 최근인 2018년과 2019년까지도 24.7명과 24.6명으로 줄어드는 데 그침

[그림 5] OECD 회원국의 사망외인사망률,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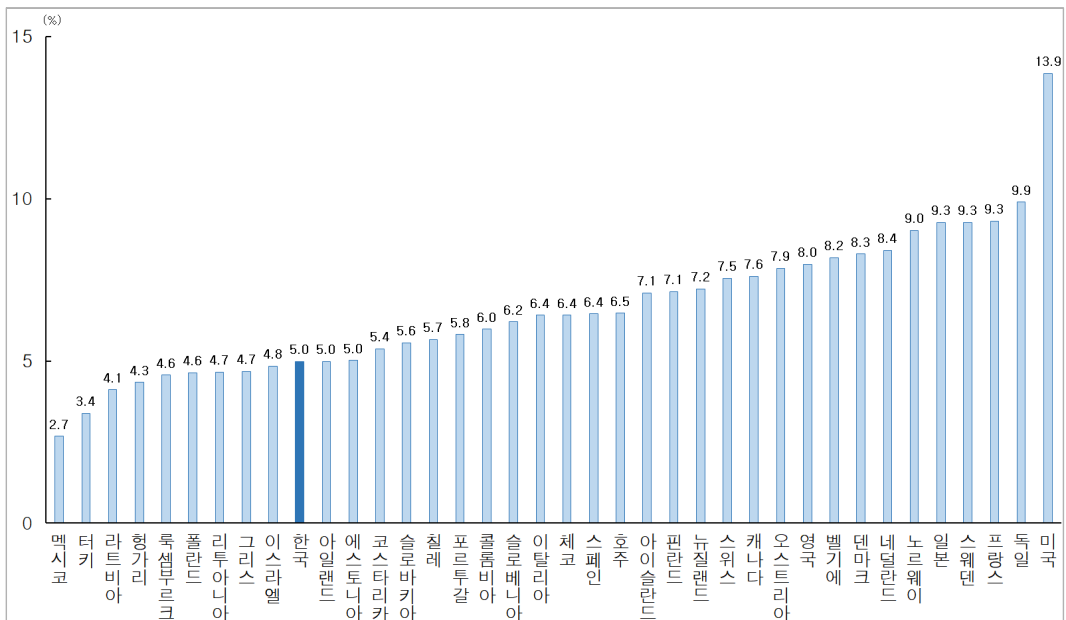


*주) 인구 10만 명당 사고·폭력·자살 사망자 수.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 정부와 의무가입보험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 즉 공공의료지출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5.0%에 그침. 이 비율은 미국이 13.9%로 가장 높고 한국은 비교 대상 38개 국가 중 29번째로 낮음
- 미국에 이어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노르웨이 등이 9%대의 높은 공공의료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공공의료지출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 지난 2010년 3.6%에 그쳤던 공공의료지출 비율은 2015년 3.9%, 2020년 5.2%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그림 6] OECD 회원국의 공공의료지출 비율,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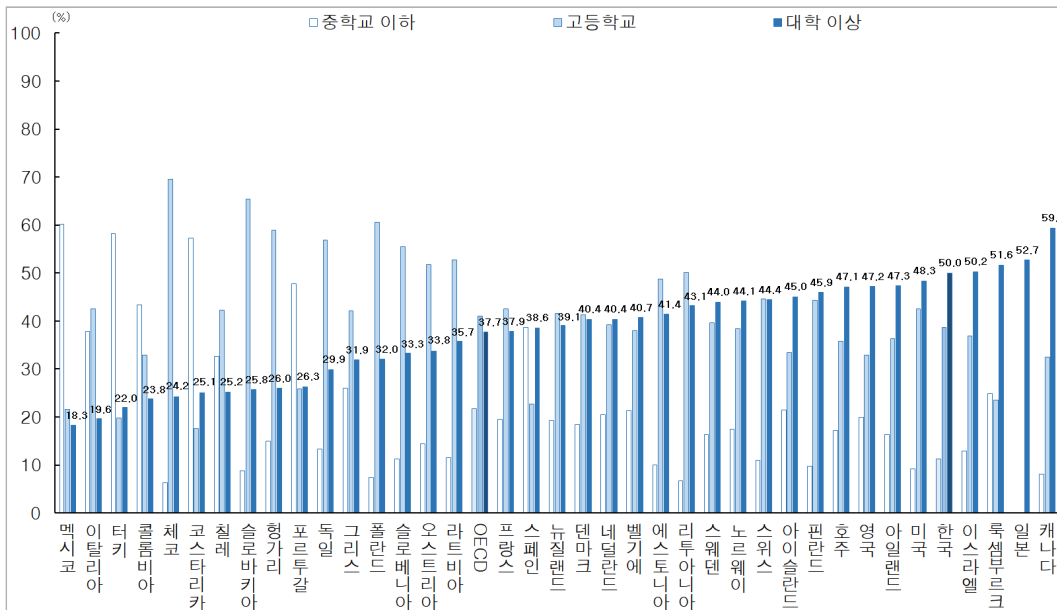
*주) GDP 대비 정부(중앙·지방) 및 의무가입(건강보험·산재보험·장기요양보험·자동차책임보험)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 비율.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2.2. 교육

- 한 나라 국민의 교육 수준은 그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 한국 성인(25-64세) 중고등교육(대학 이상)을 이수한 사람들의 비율은 50%로 캐나다(59.4%), 일본(52.7%), 룩셈부르크(51.6%), 이스라엘(50.2%)에 이어 비교 대상 38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음. OECD 회원국 평균이 37.7%임을 고려하면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매우 높은 수준임
- 한편 한국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38.7%로 OECD 평균(41.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고(37개국 중 22위), 초·중학교 이수율은 11.3%로 OECD 평균(21.7%)의 절반 수준에 그침(37개국 중 27위)
-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초·중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낮은 대신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지난 1995년 18.1%에서 2000년 23.8%, 2005년 31.6%, 2010년 39.0%, 2015년 45.4%, 2019년 50.0%로 계속 높아지고 있음

[그림 7] OECD 회원국의 교육단계별 이수율,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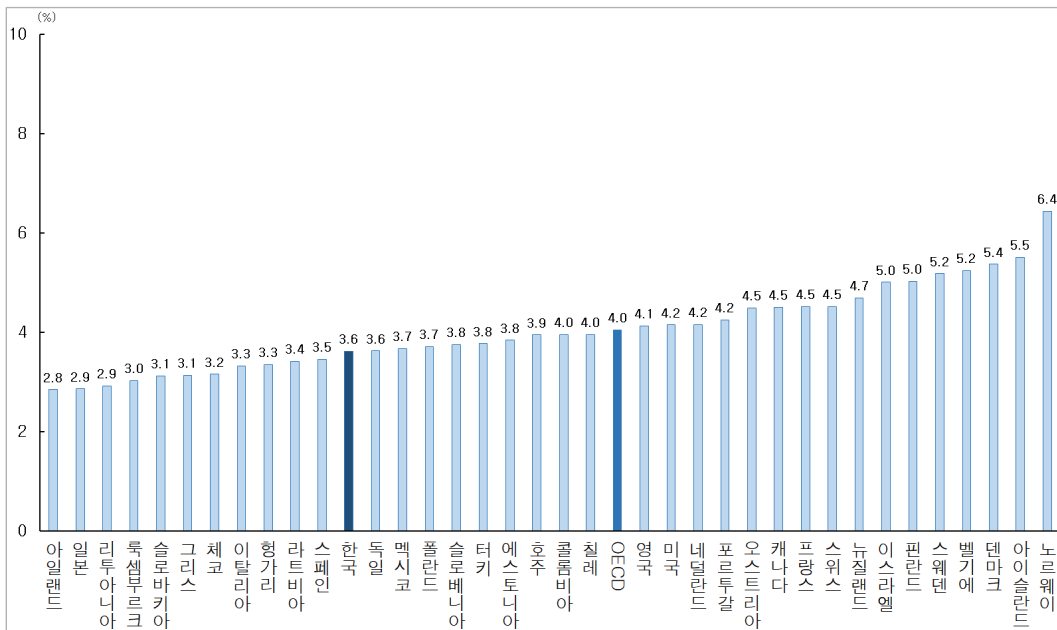


*주) 25-64세 인구 중 각급학교 이수자 비율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 정부가 교육에 투입하는 자원의 규모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공교육지출 규모는 국민이 누릴 교육권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지출 비율은 2017년 기준 3.6%로 OECD 회원국 평균 4.0%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임(37개국 중 26위)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등은 GDP의 5% 이상을 공교육에 지출하고 있음

[그림 8] OECD 회원국의 공교육지출 비율,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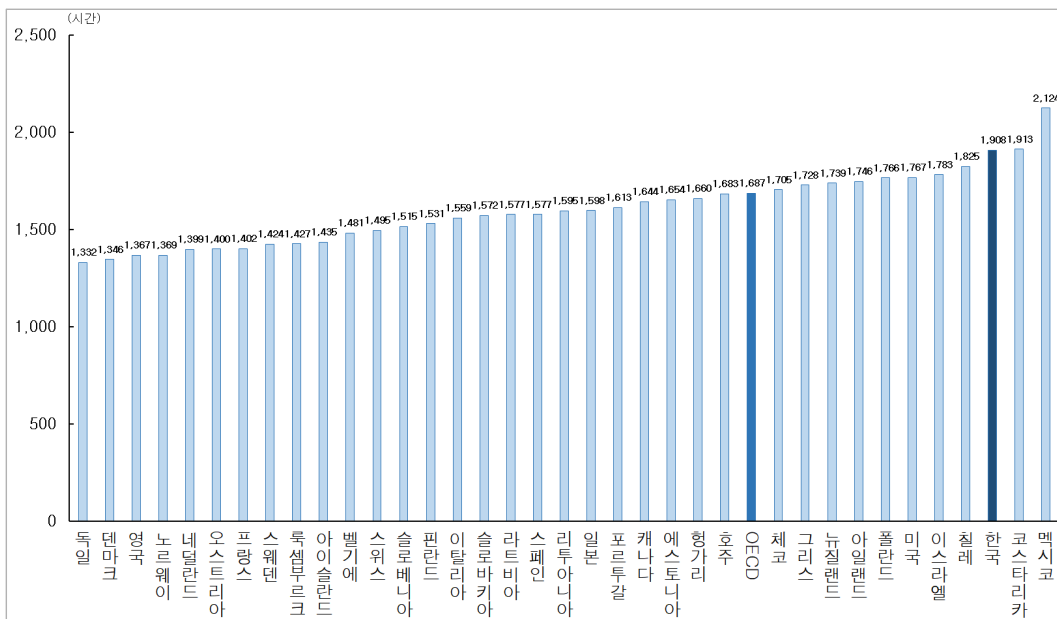
*주) GDP 대비 정부의 공교육비(초등·중등·고등) 지출 비율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2.3. 노동

- 근로자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일자리 질 관련 지표들로 가늠해 볼 수 있음. 한국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국제적으로 매우 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OECD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0년 기준 1,908시간으로 멕시코(2,124시간)와 코스타리카(1,913시간)에 이어 비교 대상 36개 국가 중 3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남.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1,687시간)보다 200여 시간 더 많은 것임
- 독일,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웨덴,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등 서유럽과 북유럽 선진국의 근로시간은 연간 1,400시간 내외에 불과함
-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 2010년 2,163시간에 달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부터는 2,000시간 미만으로 낮아짐(2018년 1,993시간, 2019년 1,967시간, 2020년 1,908시간)

[그림 9] OECD 회원국의 취업자 근로시간,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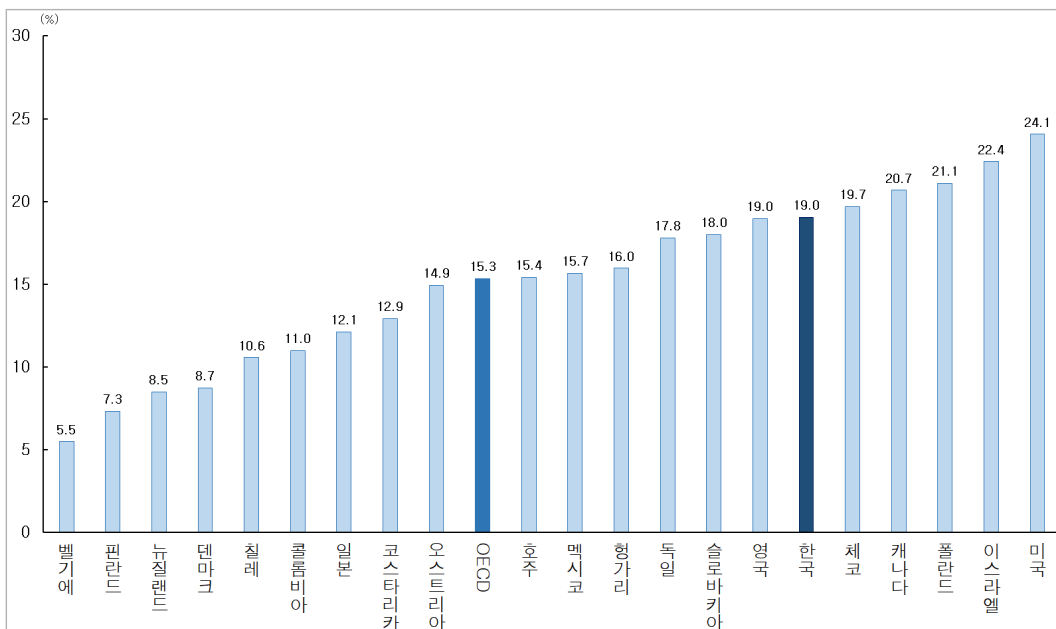


*주)전체 취업자의 연간 근로시간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 저임금근로자의 규모를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 양상을 가늠해 볼 수 있음. 저임금근로자는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전일제(full-time) 근로자로 정의되는데, 2018년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9.0%로 집계됨. 이는 비교 대상 21개 국가 중 미국과 이스라엘, 폴란드, 캐나다, 체코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준임. OECD 회원국 평균은 15.3%에 그침
- 벨기에(5.5%), 핀란드(7.3%), 뉴질랜드(8.5%), 덴마크(8.7%) 등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함
-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줄곧 20% 초중반대(2000년 24.6%, 2005년 25.4%, 2010년 24.7%, 2015년 23.5%, 2017년 22.3%)를 유지하다가 2018년부터 10% 후반대(2018년 19.0%, 2019년 17.0%)로 낮아지기 시작함

[그림 10] OECD 회원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 2018



*주) 전일제 근로자 중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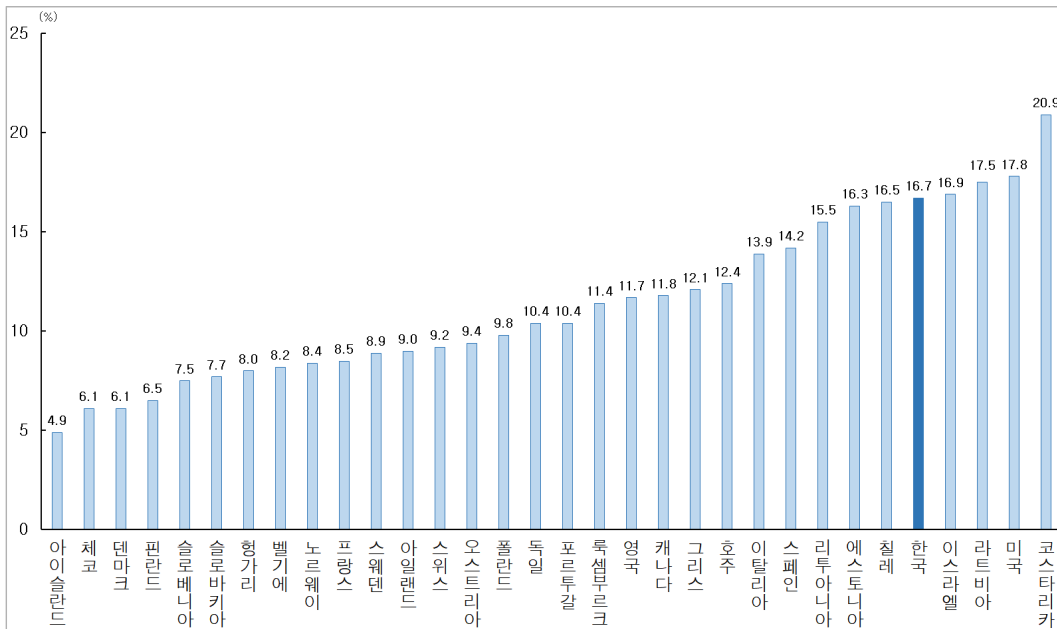
2) 벨기에·칠레는 2017년 자료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2.4. 물질적 생활수준

- 상대적 빈곤율은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 상대적 빈곤율은 빈곤선(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 소득층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 50% 이하 기준으로 산정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16.7%임. 한국은 비교 대상 32개국 중 코스타리카, 미국, 라트비아, 이스라엘에 이어 5번째로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국가임
- 상대적 빈곤율은 아이슬란드, 체코, 덴마크, 핀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에서 대체로 낮음
-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공식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큰 변화 없이 17% 초중반대(2015년 17.5%, 2016년 17.6%, 2017년 17.3%)를 유지하다가 2018년에 16%대로 낮아지는 의미 있는 개선 추세를 보임

[그림 11] OECD 회원국의 상대적 빈곤율,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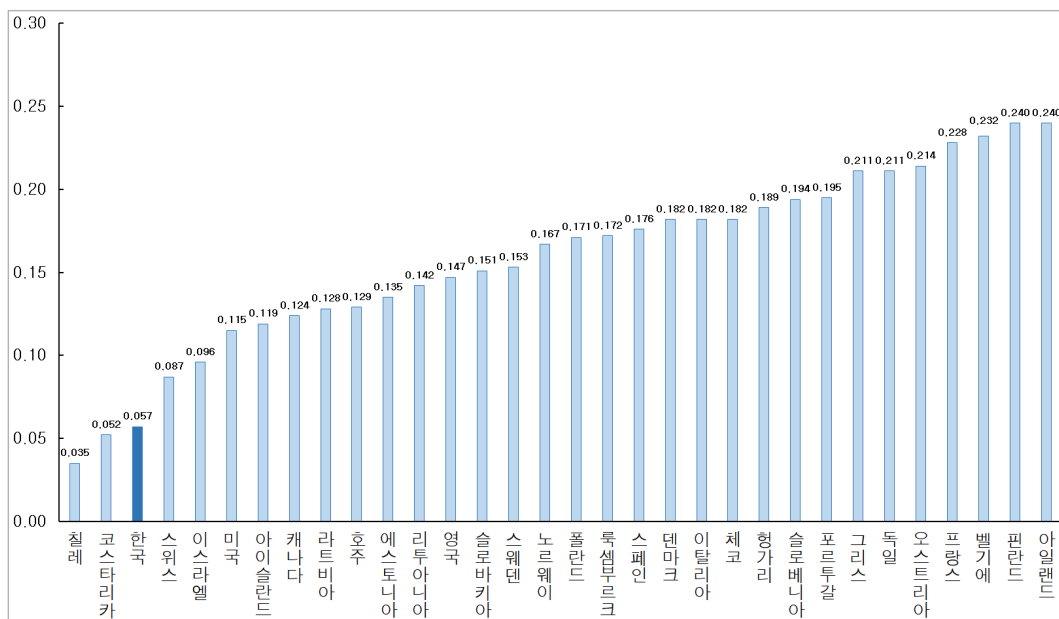
*주 1)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의 비율

2) 아이슬란드·덴마크·헝가리·아일랜드·스위스·독일·이탈리아·칠레·미국은 2017년 자료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 소득 불평등의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정부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완화 효과를 평가해 볼 수 있음. 지니계수는 세금이나 수당과 같은 정부의 재정정책이 반영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산출됨. 즉 시장소득(세전)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세후) 지니계수를 말하는데, 시장소득 지니계수보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낮다면 이는 곧 재정정책의 효과로 이해할 수 있음
-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로 산출한 한국의 소득재분배효과 지수는 2018년 기준 0.057로 비교 대상 32개 국가 중 칠레(0.035)와 코스타리카(0.052)에 이어 3번째로 낮음
- 한국과 시장소득 지니계수 수준이 비슷한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등의 소득재분배효과 지수는 각각 0.167, 0.153, 0.124로 한국보다 훨씬 높음
- 한국의 소득재분배효과 지수는 2015년 0.044, 2016년 0.047, 2017년 0.052, 2018년 0.057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

[그림 12] OECD 회원국의 소득재분배효과 지수,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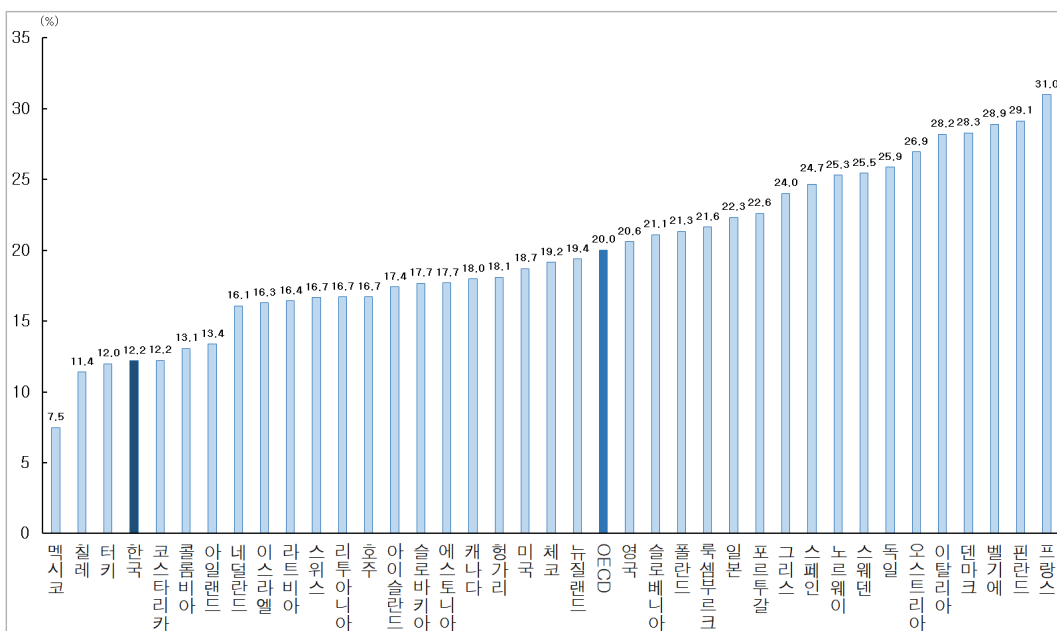
*주 1) 소득재분배효과 지수 = 시장소득 지니계수 -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2) 아일랜드·독일·헝가리·덴마크·이탈리아·아이슬란드·미국·스위스·칠레는 2017년 자료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쏟는 노력은 각종 사회지출의 총 규모로 평가할 수 있음.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20.0%에 크게 못 미치는 12.2%로 집계됨. 이는 비교 대상 38개 국가 중 멕시코(7.5%), 칠레(11.4%), 터키(12.0%)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준임
- 프랑스(31.0%), 핀란드(29.1%), 벨기에(28.9%), 덴마크(28.3%), 이탈리아(28.2%) 등은 GDP의 30%에 육박하는 공공사회지출을 집행하고 있음
-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지난 1990년 2.6%에서 2000년 4.4%, 2005년 5.9%, 2010년 7.9%, 2015년 9.6%로 꾸준히 늘어났고 최근에도 매년 증가함(2017년 10.1%, 2018년 10.8%, 2019년 12.2%)

[그림 13] OECD 회원국의 공공사회지출 비율, 2019



*주 1)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2) 일본·호주는 2017년, 뉴질랜드·캐나다·스위스·콜롬비아·코스타리카는 2018년 자료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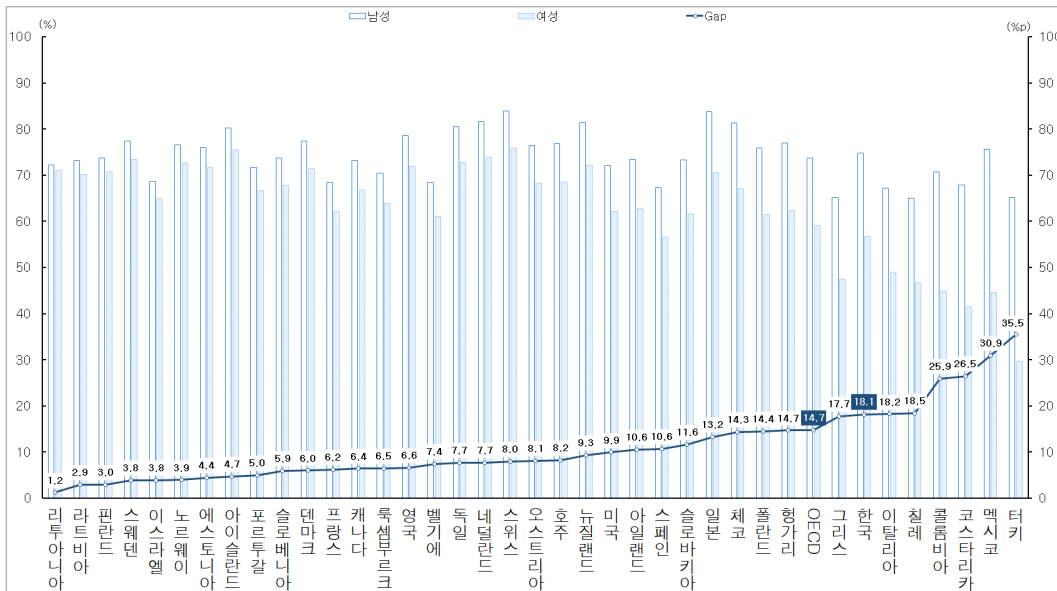
3 취약집단 인권상황 국제 비교

- 이 절에서는 여성과 아동, 노인을 포함하는 인권 취약집단의 인권상황을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자 함.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자리를 갖기가 어렵고 일을 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으며 승진에서도 한계를 가짐. 이러한 측면에서 일자리 전반에서 나타나는 젠더 불평등의 양상을 살펴봄. 아동의 경우에는 영아사망과 유아취원, 아동빈곤,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을 비교해 보고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빈곤, 노인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을 비교해 봄

3.1. 여성

-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2020년 기준 56.7%로 남성의 74.8%에 비해 18.1%p 낮음. 이 같은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비교 대상 38개국 중 7번째로 큰 수준임
- 한국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0년 21.3%p에서 2015년 20.2%p, 2020년 18.1%p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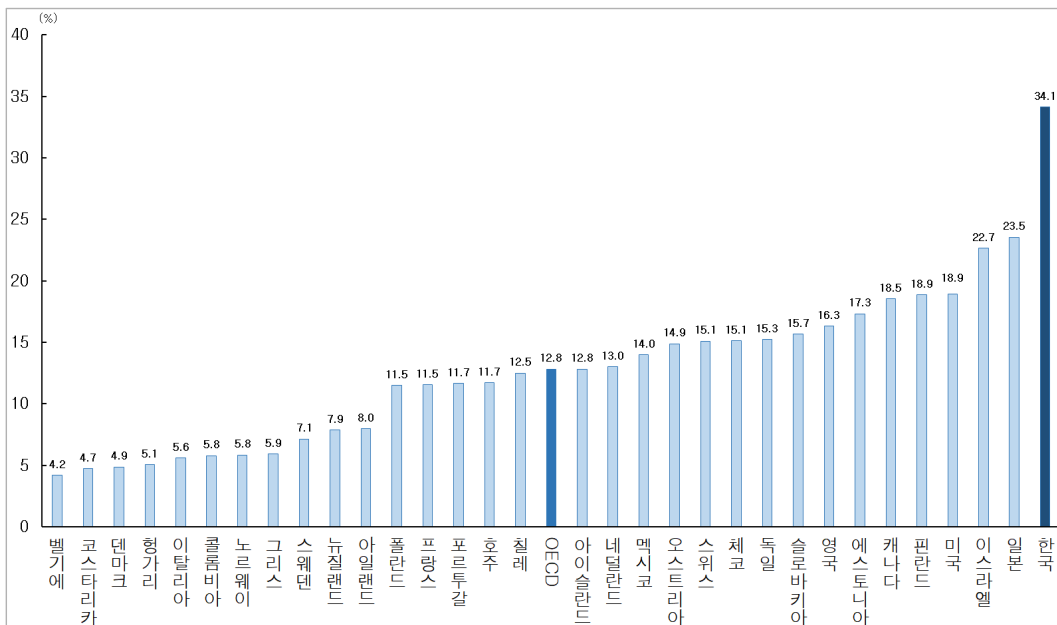
[그림 14] OECD 회원국의 여성 고용률, 2020



*주 1) 15-64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2) 독일은 2019년 자료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 한국은 고용률의 성별 격차도 크지만 임금에서의 성별 격차는 더욱 큼. 한국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2018년 기준 34.1%임. 이는 여성 근로자 임금이 남성 근로자 임금의 65.9%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함
-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비교 대상 32개 국가 중 압도적으로 가장 큼. 한국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큰 일본(23.5%)이나 이스라엘(22.7%)보다도 격차가 훨씬 더 심함
-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의 유럽 선진국들은 성별 임금격차가 5% 내외에 불과하며, OECD 회원국 평균도 12.8%에 그침
-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10년까지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이지 않다가(2000년 41.7%, 2005년 39.6%, 2010년 39.6%) 이후부터 조금씩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2011년 36.6%, 2017년 34.6%, 2018년 34.1%, 2019년 32.5%)

[그림 15] OECD 회원국의 성별 임금격차,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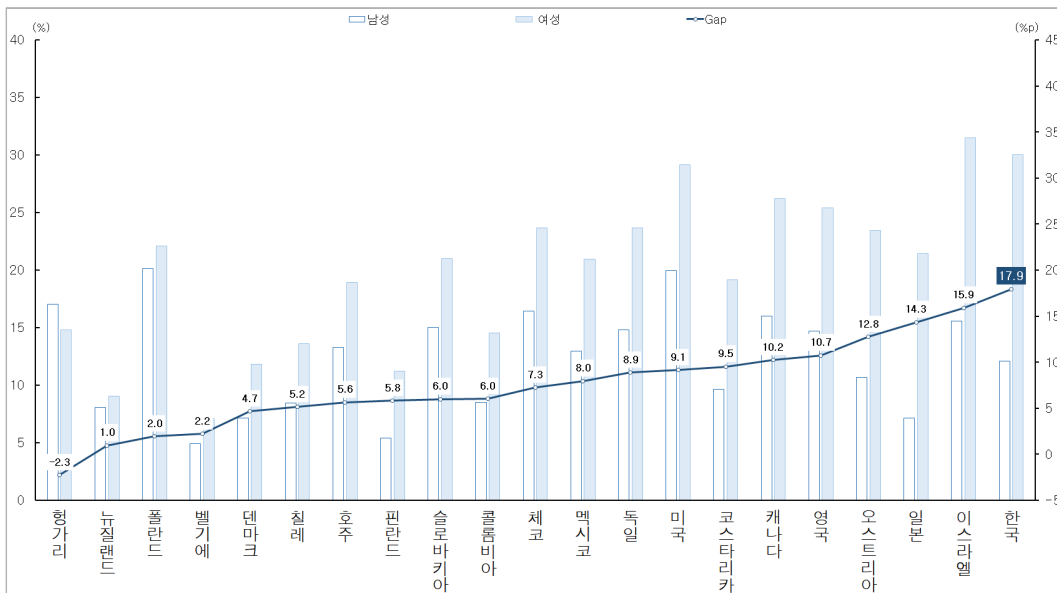
*주 1) 임금격차 = (남성 중위임금 - 여성 중위임금) ÷ 남성 중위임금 × 100

2) 벨기에·칠레는 2017년 자료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 일자리에서의 불평등의 양상은 저임금근로자의 비율로도 확인할 수 있음. 한국 여성 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기준 30.0%로 비교 대상 21개 국가 중 이스라엘(31.5%)에 이어 2번째로 높음
- 한국은 저임금근로자 비율의 남녀 간 차이도 큼. 2018년 기준 남성 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2.1%로 같은 해 여성 근로자의 30.0%보다 17.9%p 낮음. 이러한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율의 격차는 비교 대상 21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비교 대상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은 남녀 간 차이가 10%p 이내에 그침
- 한국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며(2000년 45.8%, 2005년 41.9%, 2010년 40.4%, 2015년 37.6%, 2019년 26.1%), 저임금근로자 비율의 남녀 간 차이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2000년 30.7%p, 2005년 24.0%p, 2010년 24.3%p, 2015년 22.4%p, 2019년 15.0%p)

[그림 16] OECD 회원국의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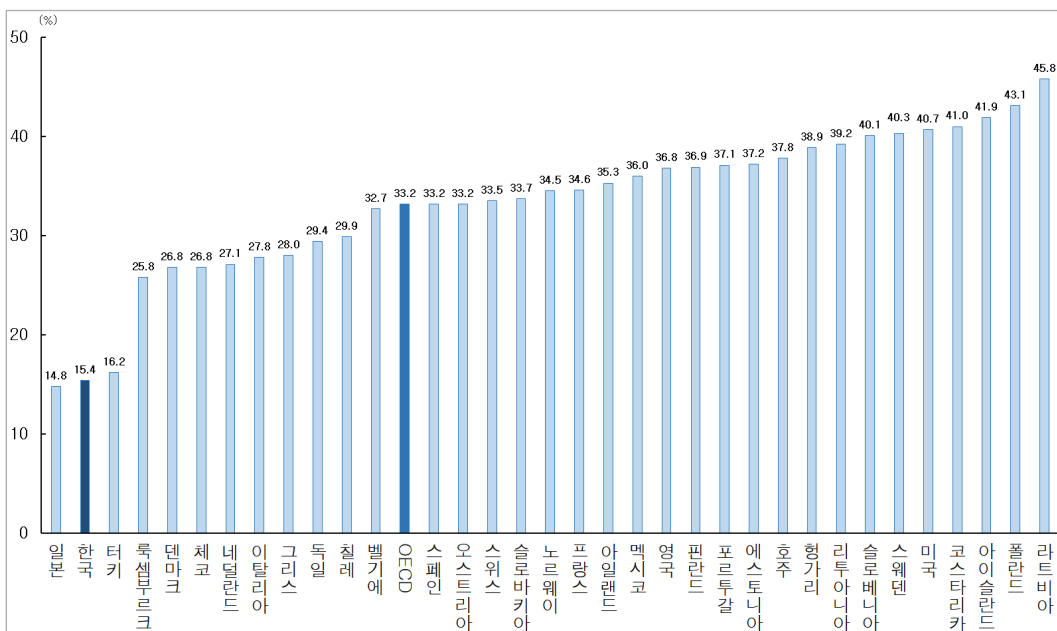
*주 1) 전일제 근로자 중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2) 벨기에·칠레는 2017년 자료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 한국 여성은 일자리의 질에서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지만 직장 내 승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OECD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직장 내 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 2019년 기준 15.4%에 불과함.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33.2%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비교 대상 34개국 중 일본(14.8%)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임
- 한국, 일본, 터키 3개국을 제외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리직 여성 비율이 25%를 상회함
- 한국의 직장 내 관리직 여성 비율은 2016년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2010년 9.4%, 2013년 11.4%, 2016년 9.8%) 최근 들어 다소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2017년 12.3%, 2018년 14.5%, 2019년 15.4%)

[그림 17] OECD 회원국의 관리직 여성 비율,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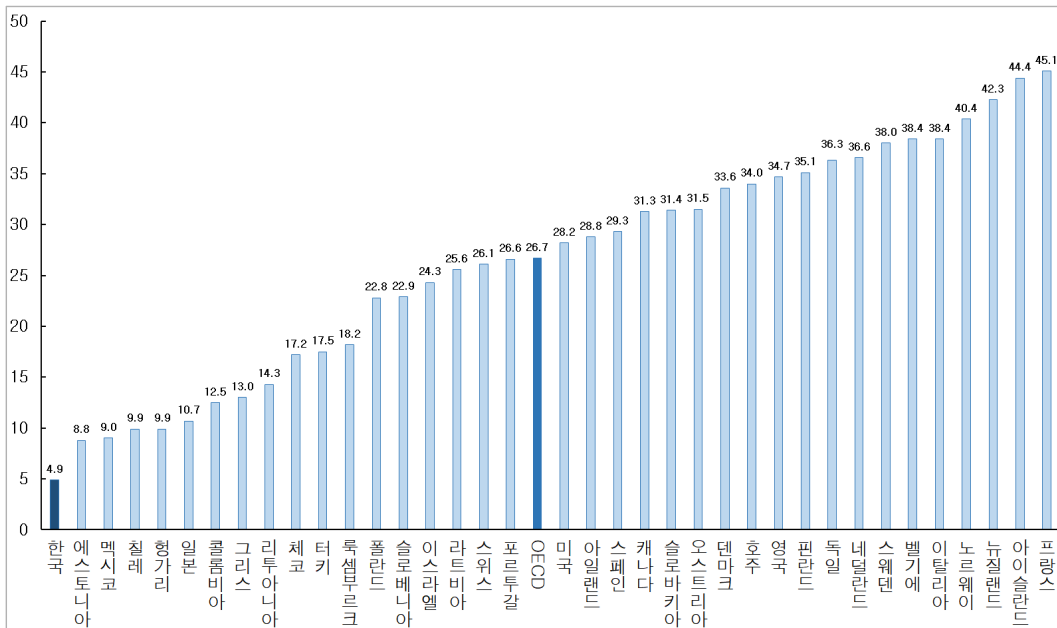


*주) 호주는 2018년 자료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 한국 여성은 기업의 이사회 참여율도 낮음. 대기업의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4.9%에 불과함.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6.7%에도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 37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프랑스(45.1%), 아이슬란드(44.4%), 뉴질랜드(42.3%), 노르웨이(40.4%) 등의 선진국들에서는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이 40%를 상회함
- 한국 여성의 기업 이사회 비율은 최근 들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함(2018년 2.3%, 2019년 3.3%, 2020년 4.9%)

[그림 18] OECD 회원국의 대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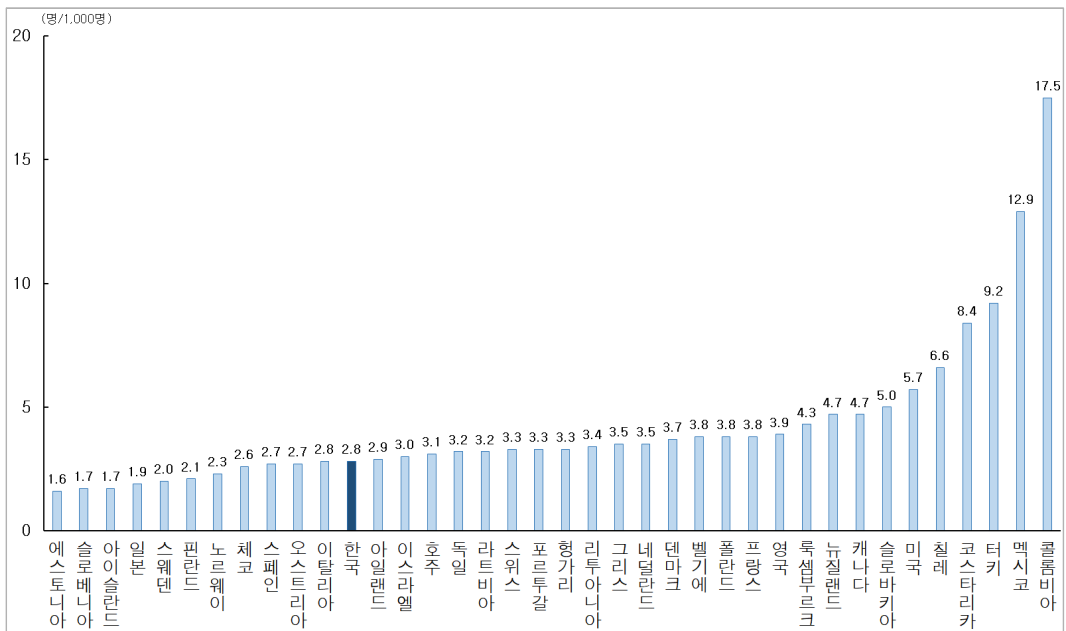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3.2. 아동

- 영아 사망률은 아동 생명권의 핵심 지표임.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사망아 수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산출된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2018년 기준 2.8명으로 비교 대상 38개국 중 이탈리아와 함께 11번째로 낮음
-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일본(1.9명), 스웨덴(2.0명), 핀란드(2.1명), 노르웨이(2.3명) 등에 비해서는 높지만 독일(3.2명), 덴마크(3.7명), 프랑스(3.8명), 영국(3.9명), 미국(5.7명)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지난 2005년 4.7명에서 2010년에 3.2명으로 줄었고 2014년에는 3명으로 감소함. 2015년부터는 2.7-2.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2015년 2.7명, 2016년 2.8명, 2017년 2.8명, 2018년 2.8명, 2019년 2.7명)

[그림 19] OECD 회원국의 영아 사망률,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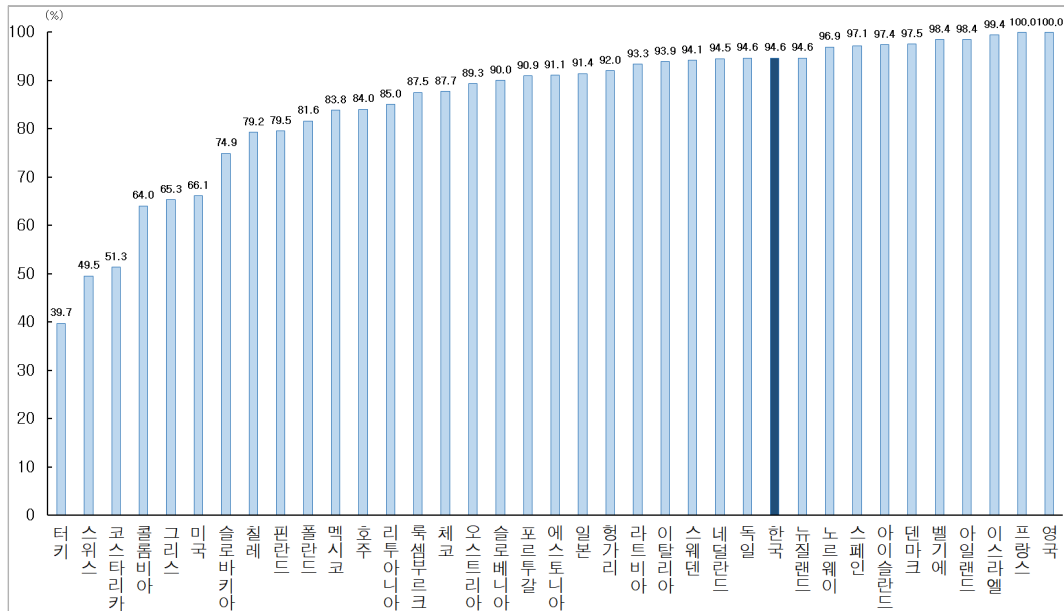
*주 1) 출생아 1,000명당 사망아 수

2) 뉴질랜드는 2017년 자료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 돌봄이 필요한 나이의 아동들이 공적 돌봄의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취원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만 3-5세 아동 취원율은 2017년 기준 94.6%에 달하며, 이는 OECD 비교 대상 37개 국가 중 독일과 함께 10번째로 높은 수준임
- 영국과 프랑스는 100%의 완전 취원을 달성하였으며, 이 두 나라 외에도 서유럽과 북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90% 이상의 완전 취원에 가까운 수준에 있음
- 한국의 유아 취원율은 2010년에는 84.6%에 그쳤으나 2013년에 처음으로 90%를 넘긴 후 90% 초반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2013년 93.0%, 2014년 92.5%, 2015년 91.9%, 2016년 93.4%, 2017년 94.6%)

[그림 20] OECD 회원국의 유아 취원율,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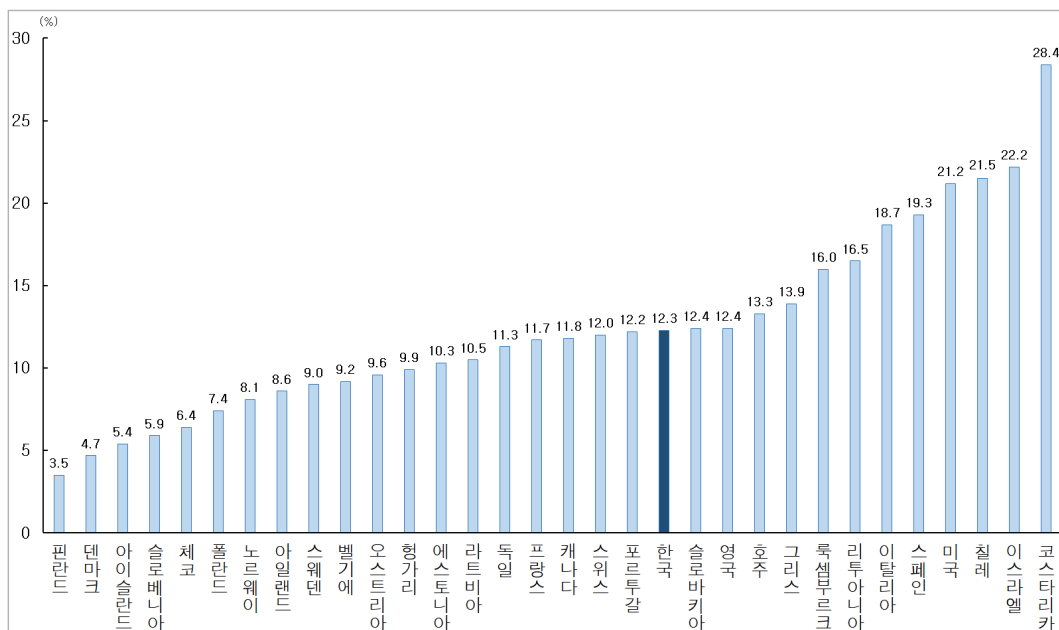


*주) 3-5세 유아 취원율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 상대적 빈곤율은 아동 불평등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지표임. 경제적 불평등은 아동 삶 전반에 걸쳐 또 다른 불평등을 낳는 원인이 될 수 있음. 한국 아동(0-17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기준 12.3%로 비교 대상 32개국 가운데 13번째로 높음
- 이스라엘(22.2%), 미국(21.2%), 스페인(19.3%), 이탈리아(18.7%) 등이 한국보다 높은 반면 핀란드(3.5%), 덴마크(4.7%), 아이슬란드(5.4%) 등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 한국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국제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부터 조금씩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2015년 16.0%, 2016년 15.2%, 2017년 14.2%, 2018년 12.3%)

[그림 21] OECD 회원국의 아동 상대적 빈곤율,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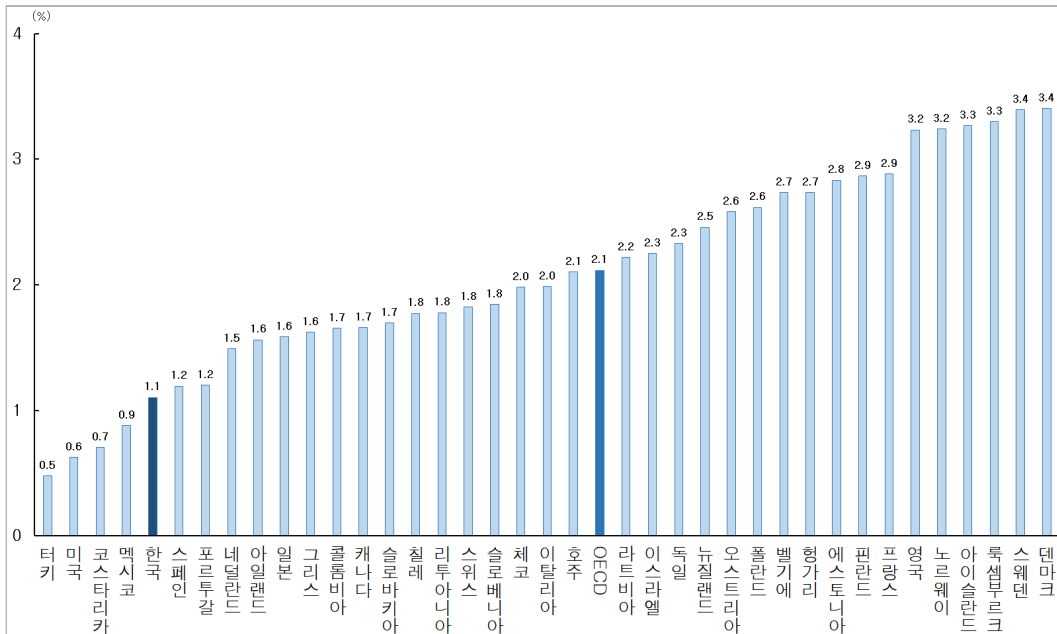
*주 1) 0-17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

2) 덴마크·아이슬란드·아일랜드·헝가리·독일·스위스·이탈리아·미국·칠레는 2017년 자료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 보육비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은 아동 웰빙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간접적 지표임. 201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족에 대한 현금 및 현금성 공공지출 비율은 1.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임. 비교 대상 38개국 중에서는 터키(0.5%), 미국(0.6%), 코스타리카(0.7%), 멕시코(0.9%)에 이어 5번째로 낮음
- 덴마크(3.4%), 스웨덴(3.4%), 룩셈부르크(3.3%), 아이슬란드(3.3%), 노르웨이(3.2%), 영국(3.2%) 등의 나라들에서는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의 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GDP 대비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은 2000년 0.1%에서 2005년 0.2%, 2010년 0.7%, 2015년 1.1%, 2018년 1.2%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

[그림 22] OECD 회원국의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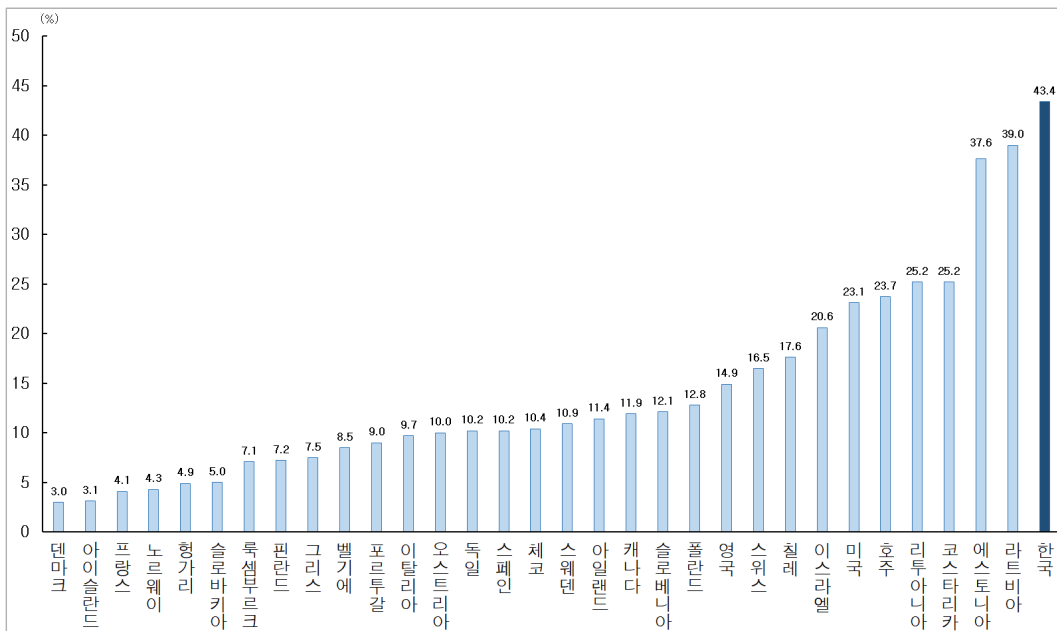
*주) GDP 대비 가족에 대한 현금 및 현금성 공공지출 비율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3.3. 노인

-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지만 한국 노인의 경제적 생활은 매우 빈곤함. 2018년 한국 노인(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43.4%로 OECD 비교 대상 32개국 중 가장 높음.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30%를 넘는 나라가 없음
- 덴마크(3.0%), 아이슬란드(3.1%), 프랑스(4.1%), 노르웨이(4.3%), 헝가리(4.9%) 등은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5% 이내에 불과함
-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통계가 공표된 최근 연도로만 한정하여 보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음(2015년 44.3%, 2016년 45.0%, 2017년 44.0%, 2018년 43.4%)

[그림 23] OECD 회원국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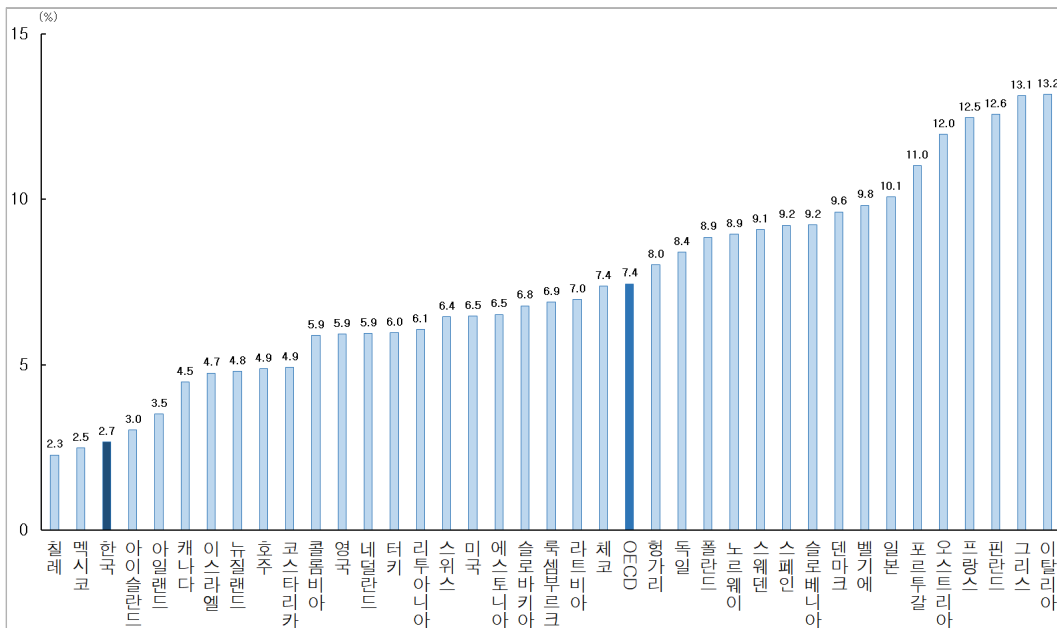
*주 1)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

2) 덴마크·아이슬란드·헝가리·이탈리아·독일·아일랜드·스위스·칠레·미국은 2017년 자료임

*자료: OECD Data(<https://data.oecd.org>)

- 노인에 대한 현금 및 현금성 공공지출 규모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2017년 기준 GDP의 2.7%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OECD 38개국 중 칠레(2.3%)와 멕시코(2.5%)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임. OECD 회원국 평균이 7.4%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국제 수준에 크게 뒤처짐
- 이탈리아(13.2%), 그리스(13.1%), 핀란드(12.6%), 프랑스(12.5%), 오스트리아(12.0%), 포르투갈(11.0%), 일본(10.1%) 등에서는 노인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의 10% 이상 규모로 집행됨
- 한국의 노인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은 2000년 1.2%에서 2005년과 2010년에 1.3%와 1.8%로 늘어났고 이후 2015년과 2018년에는 2.6%와 2.8%로 증가함

[그림 24] OECD 회원국의 노인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 2017



*주) GDP 대비 노인에 대한 현금 및 현금성 공공지출 비율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맺음말

-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자료의 심층분석 결과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은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 돌입한 것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음. 전반적으로 국가적 비상상황은 자유의 제약, 약자들에 대한 보호의 약화, 일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불평등 심화 등 인권 측면에서 우려의 여지가 높은 문제들을 제기함. 그에 비해 전반적으로 인권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다소 개선된 면도 있음. 이는 국민들이 비상적 상황에 직면하여 자유와 평등 등 인권적 가치에 우선해서 생명의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인권에 대한 생각과 의견이나 인권 관련 경험은 인구학적 배경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음. 이는 두 가지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한 측면은 인구학적 배경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이념이나 가치, 사고의 성향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일 수 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구학적 배경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인권적으로 다른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표출될 수 있음.
- 인구학적 취약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과 청소년, 노인, 여성들 중에서 인구와 관련해서 의견과 경험이 다른 집단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성 그 중에서도 20-30대 여성들이 두드러짐. 20-30대 여성들은 약자나 취약집단에 대한 공감과 인권옹호적인 의견이 다른 인구집단 특히 20-30대 남성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남. 또한 20-30대 여성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인권침해나 차별의 경험 또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객관적인 현실의 반영만은 아니고 주관적으로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인구학적 취약집단 중에서 노인의 경우 20-30대 여성들과 반대로 인권적으로는 취약집단에 속하는 반면, 인권의식이나 인권에 대한 의견 모두 약한 특성을 보임. 노인들의 경우 학교나 직장에 속해있지 않아서 인권교육을 경험할 기회도 약하다고 할 수 있어 노인들 자신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노인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반대로 인구학적 취약집단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인권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아서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사회의 성인 일반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약한 인식을 보임. 아동, 청소년의 인식조사 결과와 본 조사 결

과의 차이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임

- 인권의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중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피해자인 빈곤층, 차별의 대상이 되는 이주민 등에 대해서 대표적 취약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반면 이들에 대해서 사회경제적 거리감 또한 높아서 국민들의 인권의식에서의 모순적 경향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음. 취약집단으로 인식하면서도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참고문헌

한준 외, 2019. 『한국의 인권통계 2019』, 국가인권위원회.

OECD, 2020. *HOW'S LIFE? 2020*.

HRMI Rights Tracker 웹사이트, <https://rightstracker.org>.

Our World in Data 웹사이트, <https://ourworldindata.org/human-rights>.

2020 국가인권통계 심층보고서

| 인쇄일 | 2021년 12월 24일

| 발행일 | 2021년 12월 24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02)2125-9797

| F A X | 02)2125-0913

ISBN : 978-89-6114-873-3 93310 (비매품)